

한일관계사 학술회의

도래인과 고대 한일관계

일 시 : 2018년 11월 10일 (토)

장 소 : 한성백제박물관 회의실

주 최 : 한일관계사학회

후 원 : 동북아역사재단

◆ 초대의 글 ◆

안녕하십니까?

고대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인간(집단)에 관한 연구는 일본학계에서 야마토(大和)왕권과 고대의 한일 관계를 설명하는 소재로 「귀화인(歸化人)」론을 제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어 한국학계에서도 「귀화인」, 「도래인(渡來人)」, 「도해인(渡海人)」 등의 용어 정립 문제를 비롯해 한국의 이주민과 유민이 일본 고대국가 형성에 미친 영향과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진행된 「도래인」 연구는 한국 문화의 유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7세기 이전 시기에 집중된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도래인의 총체적 규명을 위해서는 이후의 나라(奈良)·헤이안(平安) 시대의 「도래인」계 씨족의 삶까지 시야에 넣은 통시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학회에서는 「도래인과 고대 한일관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라·헤이안 시대를 함께 아우르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계 「도래」 씨족이 출신을 바꾼 이유와 방법에 관해 검토하고, 「백제왕」의 후손이라 칭하는 백제계 「도래」 씨족의 삶을 복원하며, 「도래」계 씨족과 씨족의식에 관해 통시대적으로 고찰하려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에 공사다망하시리라 믿습시다만, 학술회의에 오셔서 올바른 「도래인」상과 고대 「한일관계」상을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귀중한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2018년 11월 10일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김동명 올림

학 술 회 의 일 정

2018년 11월 10일 (토)

12:30~13:00 등 록

13:00~13:10 개회식

개회사 김동명(한일관계사학회 회장)

제 1 부

사회: 나행주(건국대학교) 13:10~16:00

1. 연민수(전 동북아역사재단) 三己汶의 鹽乘津설화와 吉田連

토론 이병로(계명대학교)

2. 김은숙(한국교원대) 和朝臣씨의 발전과 『和氏譜』의 편찬

토론 김은정(충남대학교)

14 : 10 ~ 14 : 30 휴 식

3. 서보경(부경대학교) 「東西文部」와 大祓

토론 나행주(건국대학교)

4. 박재용(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고대 일본의 「亡命百濟官人」과 그 후예씨족

토론 송완범(고려대학교)

5. 이근우(부경대학교) 고대 일본의 씨족 개념으로 본 도래인

토론 이재석(한성대학교)

16 : 00 ~ 16 : 20 휴 식

제 2 부

종합토론

16:20~18:00

종합토론 사회: 정효운(동의대)

이병로(계명대학교)

김은정(충남대학교)

나행주(건국대학교)

송완범(고려대학교)

이재석(한성대학교)

목 차

연민수(전 동북아역사재단)

三己汶의 鹽乘津설화와 吉田連 4

김은숙(한국교원대)

和朝臣씨의 발전과 『和氏譜』의 편찬 28

서보경(부경대학교)

「東西文部」와 大祓 64

박재용(충남역사문화연구원)

고대 일본의 「亡命百濟官人」과 그 후예씨족 104

이근우(부경대학교)

고대 일본의 씨족 개념으로 본 도래인 138

한일관계사 학술회의

三己汶의 鹽乘津설화와 吉田連

연민수(전 동북아역사재단)

三己汶의 鹽乘津설화와 吉田連

연민수(전 동북아역사재단)

1. 서언
2. 吉田連의 原郷과 三己汶
3. 吉大尙의 渡倭와 후예씨족
4. 鹽乘津설화의 생성과 吉田連의 출자개변
5. 결어

1. 서언

『新撰姓氏錄』(이하 『姓氏錄』)에 그 出自가 皇別로 분류된 「吉田連」조에 따르면 崇神天皇 때에 任那國에서 동북방에 있는 三己汶이 신라와의 상쟁으로 통치하기 어려우니 장군의 파견을 요청하자, 이에 응해서 일본천황은 鹽乘津彦命(이하 鹽乘津)을 파견하여 鎮守시켰다고 한다. 염승진의 후손들은 대대로 기문의 지를 통치해 왔는데, ‘吉’을 성으로 삼고 후에 吉田連으로 改姓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한편 『續日本後紀』承和4년조에는 “始祖鹽乘津은 大倭人이고, 國命에 따라 삼기문의 지에 거주했는데 백제에 예속되어 염승진의 8세손인 達率 吉大尙이 일본에 망명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기록을 『성씨록』과 비교하면 吉氏의 시조가 염승진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속일본후기』에서는 염승진의 후손인 길대상이 달솔이라는 백제관위를 갖고 있어 기문의 지가 백제의 지배하에 있던 지역임을 말하고 있다.

염승진설화는 일찍이 江戸시대 新井白石을 비롯하여 근대사학에서는 일본이 임나의 땅을 통치하기 위해 파견한 ‘鎮守’장군으로 이해하고 이른바 임나 일본부설의 기원으로 삼아왔다¹⁾. 특히 한일강제병합 직후 발행된 『歷史地理

1) 연민수, 2018, 「任那日本府 史料의 세계와 日本史學」, 『韓國古代史研究』 91.

』朝鮮號 특집호에서 임나일본부의 기원에 대해 崇神天皇 말년에 意富加羅가 사신을 보내 장군을 요청해 오자 천황이 鹽乘津彦命을 보내 鎮守시켰고, 그 자손들이 대대로 가라를 통치했다고 한다²⁾. 당시 임나일본부설을 당연한 것으로 믿던 학문적 풍토하에서 『일본서기』의 기록보다 앞선 시기에 임나지배의 기원을 『성씨록』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국내학계에 알려져 있는 末松保和의 『任那興亡史』(1949)에서 말하는 『일본서기』 신공기49년(369)조에 나오는 가야7국평정기사보다 무려 4백년이나 이른 시기에 이미 임나일본부가 설치된 기록으로 보았다. 염승진 전승은 그 후에씨족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만들어진 설화일뿐 역사적 사실로서 사료적 가치를 논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 전승이 만들어진 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당시 도래계 씨족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치적 지향점을 이해하는 데에는 주목되는 기록이다. 8세기후반의 일본사회는 씨족적 계보질서가 혼란해진 상태에서 많은 도래계 씨족들이 출자개변을 통해 신분상승을 노리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염승진설화도 그러한 유형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임나일본부설의 기원으로 되어 있는 염승진과 그의 후예들이 ‘鎮守’했다는 己汶의 지가 백제, 신라에 의해 병합되어 가는 역사적 과정을 검토하고, 염승진의 8세손으로 나오는 吉大尙의 渡倭 사정을 통해 이 설화의 허실을 밝힌다. 나아가 염승진설화의 생성의 기초가 된 전거사료를 분석하고, 吉田連이 그들의 출자와 시조전승을 어떻게 개변해 가는지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吉田連의 原郷과 三己汶

『성씨록』의 左京皇別 「吉田連」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大春日朝臣同祖。 觀松彦香殖稻天皇[諡孝昭]皇子天帶彦國押人命四世孫彦國菴命之後也。 昔磯城瑞籬宮御宇御間城入彦天皇御代，任那國奏曰，臣國東北有三己汶地[上己汶中己汶下己汶]地方三百里，土地人民亦富饒與新羅國相爭，彼此不能攝治，兵戈相尋，民不聊生，臣請將軍令治此地，即爲貴國之部也。天皇大悅，勅群卿，令奏應遣之人，卿等奏曰，彦國菴命孫鹽垂津彦命，頭上有贅三岐如松樹

2) 大森金五郎, 1911, 「任那日本府の興廢」, 『歴史地理』臨時増刊 朝鮮號特輯, 106~129쪽.

[因號松樹君]其長五尺，力過衆人，性亦勇悍也。天皇令鹽垂津彦命遣，奉勅而鎮守，彼俗稱宰爲吉，故謂其苗裔之姓，爲吉氏。男從五位下知須等，家居奈良京田村里間，仍天璽國押開豐櫻彦天皇[謚聖武]神龜元年，賜吉田連姓[吉本姓，田取居地名也]今上弘仁二年，改賜宿禰姓也。續日本紀合。

위 사료는 吉田連의 조상계보와 유래에 대한 설명이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孝昭천황의 황자 天帶彦國押人命의 4세손인 彦國菴命의 후예이다. 옛적 肅宗천황대에 임나국이 사신을 보내 臣國의 동북방에 三己汶이 있는데 신라와의 상쟁으로 다스리기 어려우니 장군을 보내 통치하게 해 준다면 귀국의 部로 삼겠다. 천황은 기뻐하여 孝昭로부터 나온 彦國菴命의 후예 염승진을 보내 鎮守시켰다. 그 후예의 姓은 吉氏이고 聖武천황 신기원년(724)에 吉田連으로 개성했다고 한다.

염승진의 후예로 나오는 吉田連씨는 자신의 原鄉을 『성씨록』에서 임나국의 東北에 三己汶이 있는데 地方 3백리라고 하였다. 이 기록은 기문의 지에 대한 지리적 위치를 설명한 것인데, 방향성에서 맞지 않는다. 임나에서 동북이란 낙동강과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분포해 있는 가야제국의 위치에서 볼 때 『성씨록』에 나타난 기문은 낙동강 서쪽의 대구나 경주방면에 해당하여 이른바 임나의 영역과는 거리가 있다. 다만 다음 문장인 토지와 인민들이 풍요로워 신라와 더불어 상쟁했다고 하니 신라와 접경지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료에 나타난 전후의 문장은 모순이 없다. 이에따라 일찍이 今西龍도 「加羅疆域考」에서 『삼국사기』 지리지의 “開寧郡，古甘文小國也”라는 기사에 근거하여 己汶=甘文, 경상북도 開寧설을 주장한 바 있다³⁾.

한편 『翰苑』 백제전에는 「括地志」를 인용하여, “熊津河源出國東界，西南流，經國北百里，又西海入海，廣處三百步，其水至清，又有基汶河在國，源出其國南山，東南流大海”라고 기록하고 있다. 웅진하의 원천은 나라의 동계에서 나와 서남방으로 흘러들어가고, 또 기문하의 원천은 남쪽 산에서 나와 동남방 대해로 흘러간다고 한다. 즉 웅진하는 서해로 빠지고 기문하는 동남으로 흘러나간다고 기술하고 있듯이 기문의 지는 『성씨록』에서 말하는 가야의 동북방이 아니라 전라북도 팔공산에서 발원하여 임실, 남원, 구례, 하동으로 이어지는 섬진강유역임을 알 수 있다. 今西龍은 그의 後稿(「己汶伴跋考」)에서는 前

3) 今西龍, 1919 「加羅疆域考」, 『史林』 4-3·4, 同 1970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354쪽.

說을 수정하여 기문을 남원으로 비정하였다. 그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南原小京」조에 “本百濟古龍郡 新羅并之 神文王五年 初置小京 景德王十六年 置南原小京 今南原府”라고 하는 기술에서, 백제의 古龍은 기문과 同義로 大水의 의미로 본다⁴⁾. 또 『梁職貢圖』에는 “旁小國…等附之”라고 하여 백제 주변의 소국으로 부용화된 국으로서 “叛波·卓·多羅·前羅·新羅·止迷·麻連·上巳文·下枕羅”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上巳文(上巳汶)의 국명이 보이듯이 웅진에서 볼 때 백제의 남방지역에 해당한다. 기문=남원설은 현재의 위치 비정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梁職貢圖』의 백제의 ‘旁小國’들은 양나라에 파견된 백제측의 주장을 그대로 전제한 것으로 모두 백제의 부용국은 아니다. 특히 신라의 경우는 경쟁국에 대한 대항의식에서 나온 백제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생각된다.

기문국의 역사적 변천과 관련하여 『일본서기』 현종기3년(是歲)조에 나오는 帶山城 전투에 대해 살펴보자.

紀生磐宿禰가 임나에 웅거하여 고구려와 통하였다. 서쪽으로 三韓의 왕이 되고자 하여 관부를 정비하고 수리해서 스스로 神聖이라고 칭하였다. 임나의 左魯那奇他甲背 등의 계책을 써서 백제의 적막이해를 爾林에서 죽였다. 帶山城을 쌓아서 東道를 막아 지켰다. 식량을 운반하는 나루가 차단되어 군사가 굶주리고 곤핍하게 하였다. 백제왕이 크게 노하여 領軍 고이해와 內頭 막고해 등을 파견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帶山을 공격했다. 이에 기생반숙네가 군사를 보내 역공하였다. 기력이 더욱 강해져서 가는 곳마다 모두 깨뜨렸다. 하나로써 백을 상대하였다. 갑자기 병사가 힘이 다해졌다. 전세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임나로부터 돌아왔다. 이 때문에 백제국은 좌로나기타갑배 등 300여 인을 죽였다⁵⁾.

이 기록은 기생반숙네라는 왜인을 중심으로 보면 그가 임나를 거점으로 고

4) 今西龍, 1922 「已汶伴跋考」, 『史林』 7-4, 同 1970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389 쪽.

5) 『日本書紀』 顯宗紀3年(是歲)條, “紀生磐宿禰, 跨據任那, 交通高麗. 將西王三韓, 整脩官府, 自稱神聖. 用任那左魯那奇他甲背等計, 殺百濟適莫爾解於爾林[爾林高麗地也]. 築帶山城, 距守東道. 斷運粮津, 令軍飢困. 百濟王大怒, 遣領軍古爾解內頭莫古解等, 率衆趣于帶山攻. 於是, 生磐宿禰, 進軍逆擊. 膽氣益壯, 所向皆破. 以一當百. 俄而兵盡力竭. 知事不濟, 自任那歸. 由是, 百濟國殺佐魯那奇他甲背等三百餘人”.

구려와 통하고 삼한의 왕이 되고자 관부를 정비하고 스스로를 神聖이라고 했다는 등 왜의 임나지배의 한 유형으로 생각된다. 岸俊男은 임나지역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상정하고 紀氏의 조상이 대화정권의 外征 때 한반도경영에 관여했던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다⁶⁾. 이른바 『일본서기』 사관에 충실한 해석으로 외정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이러한 가야제국과 교류했던 紀氏의 가전에서 나온 조상의 무훈을 미화하는 필법이다. 개개의 씨족, 호족들의 교류가 대화정권의 전승으로 흡수되면서 『일본서기』 편찬시의 대한 복속사관에 의한 윤색으로 생각된다. 이 사건은 백제가 가야와의 전쟁에서 주장인 좌노나기타갑배를 비롯하여 300여인을 살해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백제가 웅진 천도후에 남하과정에서 일어난 재지세력과의 충돌이고 병합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나오는 爾林과 帶山城은 백제와 임나의 경계선상의 지역으로 생각되고 백제의 남하 경로인 섬진강유역의 중상류지역으로 임실, 남원 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이다. 대산성전투와 관련된 임나는 남원을 중심으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己汶國으로 보아 대과없을 것이다⁷⁾. 기문의 지는 『일본서기』 계체기7년조에 “以己汶·滯沙賜百濟國”라고 하여 滯沙와 영토적으로 연속한 지역으로 나오고, 滯沙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河東郡, 本韓多沙郡”이라 하여 섬진강 하류역인 하동이다. 요컨대 기문국은 백제가 섬진강유역을 따라 남하하는 주요 관문으로 이곳을 제압한 후 순조롭게 하동까지 접수하여 드디어 남해안을 통해 대외교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섬진강중하류 지역인 기문·대사지역의 백제의 영역화 과정에 대해 『일본서기』 계체기7년(505)에서 동10년조에 이르는 관련 기사를 통해 검토해 보자.

- ① 7년하6월, 백제가 姐彌文貴장군, 州利郎爾장군을 穗積臣押山에 팔려 보내고 오경박사를 바쳤다. 별도로 말하기를, 伴跋國이 臣國인 己汶의 땅을 약탈했으니, 원컨대 천은을 내려 원래대로 해주십시오.
- ② 7년동11월, 백제 姐彌文貴將軍, 斯羅 汶得至, 安羅 辛已奚·賁巴委佐, 伴跋 既殿奚·竹汶至等등이 조정에 이르니, 은칙을 내려 己汶, 滯沙를 百濟國에 주었다. 이달, 伴跋國이 戢支를 보내 珍寶를 바치고 己汶의 땅을 줄 것을

6) 岸俊男, 1966 「紀氏に関する一考察」, 『日本古代政治史研究』, 塙書房, 102~108쪽.

7) 연민수, 1990 「6世紀前半 加耶諸國을 둘러싼 百濟·新羅의 動向」, 『신라문화』 7, 同 1998 『고대한일관계사』, 해안, 참조.

호소했으나 끝내 주지 않았다.

- ③ 10년하5월, 백제가 前部木笏不麻甲背를 보내 物部連 등을 己汶에서 맞이하여 국중으로 인도하였다.
- ④ 10년추9월, 백제가 州利即次將軍을 物部連에 딸려 보냈다. 己汶의 땅을 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별도로 오경박사 漢高安茂를 보내 博士段楊爾와 교대할 것을 청하였다.

이 일련의 기사는 이른바 『일본서기』에 나오는 국토할양기사로 한반도남부의 일부 지역을 일본이 백제에게 하사했다는 내용이다. 임나의 지를 할양한다는 것은 바로 임나복속이 전제된 인식이고 가야 內官家사상과 백제 복속사관이 투영된 8세기 일본지배층의 정치적 이념의 투영이다. 이 기사에서 기문은 대가야의 별칭인 伴跋國의 세력권에 속하는 국으로 나와 이른바 대가야연맹체론의 근거로 되어 왔다⁸⁾. 5세기후반에서 6세기전반에 이르는 대가야의 성장과 더불어 가야의 서부지역인 섬진강중하류지역은 가야의 정치문화권으로 백제의 남하에 따른 대가야연맹체력의 대응으로 생각된다. 이때 백제는 왜왕권과의 군사적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오경박사 등 선진문물을 제공하는 정치적 교섭이 진행되었다. 계체기9년조에 “物部連이 수군 5백명을 이끌고 帶沙江으로 직행하였다⁹⁾”거나 “물부련이 대사강에 머문지 6일, 伴跋가 군사를 일으켜 공격하여 옷과 물건을 약탈하고 장막을 불태워 물부련이 두려워 도망쳤다¹⁰⁾”라는 전승은 당시의 상황을 말해준다. 『일본서기』 계체기23년조에 보이는 백제가 왜에 사자를 보내 “請, 以加羅多沙津, 爲臣朝貢津路”라고 하여 백제가 다사진을 확보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적어도 6세기초에는 기문을 비롯한 섬진강하류역까지 백제의 영역화는 이루어졌으며 백제의 지방통치체제인 5방제가 성립하게 된다. 『續日本後紀』 承和4(837)년6월조에 나오는 “시조 塩乘津은 大倭人이다. 후에 国命에 따라서 三己汶의 땅에 거주하였다. 그 地는 百濟에 예속되기에 이르렀다”라는 기사는 기문국이 백제의 침공으로 대가야연맹체에서 떨어져나가 백제영역으로

8) 김태식, 1992 『加耶聯盟史』, 일조각, 田中俊明, 1992 『大加耶連盟の興亡と任那』, 吉川弘文館.

9) 『日本書紀』 繼體紀9年春2月(是月)條, “到于沙都嶋, 傳聞伴跋人, 懷恨銜毒, 恃強縱虐. 故物部連, 率舟師五百, 直詣帶沙江. 文貴將軍, 自新羅去”.

10) 『日本書紀』 繼體紀9年夏4月條, “物部連於帶沙江停住六日. 伴跋興師往伐. 逼脫衣裳, 劫掠所齎, 盡燒帷幕. 物部連等, 怖畏逃遁. 僅存身命, 泊汶慕羅[汶慕羅嶋名也]”.

편입되었음을 말해준다.

백제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된 기문의 지는 백제가 멸망하는 7세기후반이 되면 신라의 영역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사실을 『삼국사기』 지리지의 「南原小京」 “本百濟古龍郡 新羅并之 神文王五年 初置小京 景德王十六年 置南原小京 今南原府”라고 기록하고 있다. 신라가 통일 직후 설치한 정치군사상의 요충지에 5소경을 두었는데, 기문이 있던 남원은 전라도지방에 대한 통치질서를 위해 설치한 특별행정구역이다. 『성씨록』에 나오는 “三己汶의 땅은 지방 3백리이고 토지와 인민은 풍요로우나 신라국과 相爭하여 전쟁이 그치질 않아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이 기록은 백제가 당이 웅진도독부를 설치하여 백제구지에 대한 군정을 실시할 당시 당군을 몰아내고 신라의 영역으로 편입할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는 기록으로 생각된다.

3. 吉大尙의 渡倭와 후예씨족

임나에 파견된 염승진의 후손이 기문의 지에 거주하다가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일본조정에 관료로서 봉사하고 그 후예씨족들의 활동에 대해 알아보자. 『속일본후기』 승화4(837)년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右京人左京亮從五位上吉田宿禰書主, 越中介從五位下同姓高世等, 賜姓興世朝臣. 始祖鹽乘津, 大倭人也. 後順國命, 住居三己汶地. 其地遂隸百濟. 鹽乘津八世孫, 達率吉大尙, 其弟少尙等, 有懷土心, 相尋來朝. 世傳醫術, 兼通文藝. 子孫家奈良京田村里. 仍賜姓吉田連¹¹⁾.

이 기록은 右京人으로서 左京亮의 京職을 맡고 있는 종5위상 吉田宿禰書主가 興世朝臣으로 사성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 左京亮은 왕경의 좌경의 행정, 사법, 경찰을 담당하는 중앙관으로 大夫에 이은 당상관이 맡는 차관급 보직이다. 그의 시조는 大倭人 염승진이고 삼기문에 살다가 그 땅이 백제에 예속되어 염승진의 8대손인 달솔 吉大尙과 그의 동생 少尙 등은 고국에 그리워 이어서 내조하였고, 대를 이어 의술에 종사하며 문예에도 통달하였다고 한다. 자손들이 奈良京 田村里에 거주하였으므로 吉田連 성을 주었다고 사성

11) 『續日本後紀』 承和4(837)년6月己未條.

의 유래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위 기록에서 “其地遂隸百濟”는 앞에서 살펴본 백제의 기문국 병합을 말한다. 그 다음 문장인 달솔 길대상 등이 고국이 그리워 일본으로 왔다고 하는 내용과 인과관계처럼 기술되어 있으나 이것은 시조전승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오류이다. 吉大尙이란 인물은 『일본서기』 천지10년 춘정월조에 백제 망명자들에게 관위수여식에서 “吉大尙[解藥]”이라 하여 약의 제조에 능한 재능이 있어 小山下의 관위를 받는다. 이때 50여명의 백제 망명인들이 천지조정에서 법률, 병법, 의약, 유학, 음양 등에 전문지식인을 발탁하여 백제에서의 관직, 관위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한다¹²⁾. 길전련의 가문이 대대로 의술에 종사하게 된 것도 그 시작은 씨족의 망명 1세대인 길대상에서부터였다. 길대상이야말로 吉田連氏의 중시조로서 그 이전의 가문의 유래에 대해서는 기문국 출신으로 5세기 후반 어느 시기에 백제에 예속되어 백제인, 백제관료로 살아가다가 663년 백강전투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온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도래계씨족들이 시조전승과 출자를 말할 때 망명시의 조상의 출신국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그 이전 시기의 역사를 거슬러 제3국에 병합되기 전의 국명을 자신의 原郷으로 주장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길대상의 가전에 기문국이라는 조상의 원향에 대한 기록이 있었는지, 존재했다면 그의 후예씨족들에게도 전승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吉田連 씨족에 있어서 시조전승에 기문이라는 지명, 국명을 거론하는 것이 씨족의 현실의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는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에 기문의 지를 백제에게 할양했다고 하듯이 원래 일본의 복속지 출신이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吉田連으로의 사성에 대해서는 자손 대대로 奈良京 田村里에 거주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씨록』에서는 이를 부연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천황이 염수진언명을 보내 鎮守시켰는데, 그 나라의 풍속에 宰를 칭하여 吉이라고 했다고 하여 염승진의 후예들의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어 일족이 奈良京 田村里에 거주했기 때문에 성무천황 신귀원년(724)에 吉田連의 성을

12) 『日本書紀』 天智10년춘정월조, “是月, 以大錦下授佐平余自信·沙宅紹明[法官大輔]以小錦下, 授鬼室集斯[學職頭]以大山下, 授達率谷那晉首[閑兵法]·木素貴子[閑兵法]·憶禮福留[閑兵法]·答怱春初[閑兵法]·怱日比子贊波羅金羅金須[解藥]·鬼室集信[解藥]以上小山上, 授達率德頂上[解藥]·吉大尙[解藥]·許率母[明五經]·角福牟[閑於陰陽]以小山下, 授餘達率等, 五十餘人.

하사했는데 그 분주에 “吉本姓, 田取居地名也”라고 하여 거주지명인 ‘田’자를 취하여 吉田連으로 했고, 今上(嵯峨)천황때인 弘仁2년(811)에는 宿禰로 개성했다고 한다. 『성씨록』에 보이는 吉田이라는 성의 유래는 재론할 여지없는 윤색이다. 吉氏는 백제망명인 吉大尙의 씨명으로 宰와는 관계가 없다. 『성씨록』의 ‘吉’의 유래에 대해 “彼俗稱宰爲吉”이라는 말은 『일본서기』 敏達紀6년 하5월조에, 일본에서 大別王과 小黑吉士를 백제국에 宰로 보냈다는 기사인 분주에 왕명을 받들어 三韓에 사신이 되는 것을 宰라고 칭한다¹³⁾고 하는 기록을 참조하였다. 한편 일본고대의 외교업무에 ‘吉士’라는 姓을 갖은 씨족이 담당하였고, 또 길사는 신라의 17관위 중의 14위에 해당하는 관제이며, 『北史』 백제전에 백제왕호인 犍吉支의 ‘吉支’ 등의 사례가 나온다. 또 『古事記』 應神天皇段에 阿知吉師, 和邇吉師는 『일본서기』 應神紀15년조에 나오는 백제계 씨족인 阿直岐와 王仁으로 『고사기』의 인명어미인 吉師는 인물에 대한 경칭으로 사용하였다¹⁴⁾. 이와같이 길사는 한반도에서 사용한 제도에서 유래한 것이고 이것이 도래인들에 의해 전해져 하나의 성으로 수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길전련씨의 성의 유래를 염승진설화와 관련시켜 吉을 왕명을 받들어 파견된 宰로 보는 것은 『일본서기』 편찬시의 윤색이다. 吉大尙의 ‘吉’은 宰나 吉士와는 무관한 고유의 씨명이고, 吉의 일본식 발음인 ‘키시’ 혹은 ‘키치’에서 연유하여 吉士, 吉師와 동일한 의미로 전화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吉田氏는 『성씨록』에서 언급된 거주지명의 ‘田’과 결합하여 ‘吉田’의 씨명을 갖게 된 것은 분명하다. 길대상의 행적에 대해서는 『懷風藻』의 大友皇子傳에 따르면 그는 대우황자의 빈객으로서 백제 망명 지식인 沙宅紹明, 塔本春初, 許率母, 木素貴子 등과 함께 ‘學士’로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듯이 한시문을 交歡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⁵⁾. 대우황자는 천지의 황태자로서 왕위계승자였으나 임신의 난에서 천무에게 패한 결과 죽음을 맞이하였지만, 그 직전까지 황태자이자 태정대신의 지위에서 정무를 수행하던 인물이었다. 대우황자

13) 『日本書紀』 敏達紀6年夏5月條, “遣大別王與小黑吉士, 宰於百濟國[王人奉命, 爲使三韓, 自稱爲宰. 言宰於韓, 蓋古之典乎. 如今言使也]”

14) 吉士의 성격에 대해서는 三浦圭一, 1957 「吉士について-古代における海外交渉-」, 『日本史研究』 34, 동 1981 『中世民衆生活史の研究』, 思文閣出版, 請田正幸, 「吉士集團の性格」, 『續日本紀研究』 227, 1967 참조.

15) 『懷風藻』 大友皇子傳, “淡海朝大友皇子, 二首. 皇太子者, 淡海帝之長子也. … 年甫弱冠, 拜太政大臣, 總百揆以試之. 皇子博學多通, 有文武材幹. 始親萬機, 群下畏莫不肅然. 年二十三, 立爲皇太子. 廣延學士, 沙宅紹明. 塔本春初, 吉太尙許率母木素貴子等, 以爲賓客…”

의 몰락 이후 길대상의 행적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대우황자와 교유했던 인물 중에 沙宅昭明의 경우는 『일본서기』 천무2년 윤6월조에 “大錦下 백제의 沙宅昭明이 죽었다. 사람됨이 총명하고 지혜로워 당시에 수재로 불리었다. 이에 천황이 놀라서 은혜를 내려 外小紫의 관위를 추증하였다. 아울러 본국의 大佐平의 관위를 내렸다¹⁶⁾”고 기록하고 있다. 또 許率母는 동 천무6년5월조에 “大博士 백제인 率母에게 칙을 내려 大山下의 관위를 내리고, 식봉 30호를 지급하였다¹⁷⁾”고 기록하고 말미에 “壬申年之勞., 贈小紫位”라고 하여 임신의 난 때에 천무를 도운 공으로 관위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다. 길대상이 임신의 난에서 어느 편에 가담했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아들인 吉宜가 문무4년(700)에 환속하기 전까지 승려의 신분인 점을 감안하면 천무측에 가담하지 않아 천무조에서는 관직에 등용되지 못한 것 같다¹⁸⁾. 길대상을 포함한 백제망명인들은 천지조때 천도한 近江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했다. 천지4년에 백제인 4백여명을 近江의 神前郡으로 이주시키고 천도한 지 2년 후에는 다시 7백여명을 사민시켰다. 이 지역에 대규모의 백제인을 이주시킨 것은 새로운 왕도에서 새로운 국가건설의 구상하에서 백제인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지역에는 石塔寺를 비롯하여 백제인들이 세운 불교사원이 조영되고 있어 吉宜 등 일부 지식인들 중에는 불교에 귀의했다고 보인다. 백제의 패망으로 망명한 상황에서 또 다시 전란이 발생해 길대상 일족은 속세를 떠나 안식처를 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吉大尙 이후의 그의 일족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자. 『속일본기』 신귀원년(724)5월조에, “從五位上吉宜, 從五位下吉智首並吉田連”라고 하여 사성기록이 보인다. 이와 대응하여 『성씨록』의 「吉田連」조에는 “故謂其苗裔之姓, 爲吉氏. 男從五位下知須等, …神龜元年賜吉田連姓”이라고 하여 (吉)知須의 인명이 나온다. 知須는 바로 『속일본기』의 해당 인물인 吉智首으로 吉宜와

16) 『日本書紀』天武2년閏6월을유삭경인조, “大錦下百濟沙宅昭明卒. 爲人聰明叡智, 時稱秀才於是, 天皇驚之. 降恩以贈外小紫位, 重賜本國大佐平位”.

17) 『日本書紀』天武6년5월임술삭조, “勅, 大博士百濟人率母授大山下位, 因以封卅戶, 是日, 倭畫師音禱授小山下位”.

18) 천무조때 백제의 신귀화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은 신라와의 국교를 회복하여 신라 불교를 수입하는 등 신라와의 교류에 전념했던 까닭에 백제인을 등용하지 않고 反天智정책을 취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平野邦雄, 1993 『歸化人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128쪽, 서보경, 2013 「新撰姓氏錄에 기재된 鎮守將軍 후에 씨족의 出自改變」, 『일본연구』 57, 42쪽.

함께 신귀원년에 吉田連의 성을 받는다. 佐伯有清에 따르면 『성씨록』과 『속일본기』의 해당 기사를 비교한 결과 『성씨록』의 “男從五位下知須等”기사의 男과 從 사이에 ‘從五位上吉, 次’라는 6자의 누락을 지적한다¹⁹⁾. 이 지적에서 인명 ‘宜’를 보완하면 ‘從五位上吉宜’이 되고 ‘次’는 반드시 보입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한편 『続日本紀』文武4년(700)8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온다.

“乙丑, 勅僧通德·惠俊並還俗, 代度各一人, 賜通德姓陽侯史名久爾曾, 授勤廣肆, 賜惠俊姓吉名宜, 授務廣肆, 爲用其藝也”.

通德과 惠俊 2인의 승려를 환속시키고 대신에 각 1인씩 득도 시켜 승려로 했다. 통덕에게 陽侯史 姓과 구이승이라는 명을, 혜준에게는 吉의 姓과 宜이라는 名을 주었는데, 이들의 기예를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들은 모두 도래인의 후손으로 승려 중에서 재능있는 자를 환속시켜 새로운 성과 관위를 하사하여 조정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러한 환속책은 持統朝에서 8세기초 元明朝에 보이고 대부분 도래계 출신자로서 신라를 통한 대륙문물의 수입과 율령제의 학예부분의 진용을 갖추기 위해서였다²⁰⁾. 요컨대 문필, 기예, 천문, 역법 등에 뛰어난 자를 현실의 정책에 반영하는 인재발굴책이다. 임신의 난 이후 배제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발탁으로 당시 인재난에 고심하고 있던 상황을 말해준다. 陽胡史에 대해서는 『일본서기』 추고기10년(602)조에 백제승 관료로부터 역법을 배웠다는 玉陳이 그의 선조로 나오고 있듯이 아마도 역법에 재능이 있어 발탁되었다고 보인다. 吉宜와 그의 동생으로 보이는 길지수는 백제멸망 직후 일본에 온 길대상의 후손으로父子관계라고 생각된다. 현전하는 『성씨록』 자체가 초략본이어서 원문의 주요 부분이 생략되었고, 『속일본후기』에 전하는 길대상 기술도 『성씨록』에서는 누락되었다고 보인다.

吉宜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승려가 되었지만 그의 가문은 의술에 뛰어나 조정의 뜻에 따라 환속하였으며 和銅7年(714)에는 정6위하에서 2단계 승진하여 종5위하에 서임된다. 또 양노5년(721)에 “文人和 武士는 국가에서 중시

19) 佐伯有清, 2007 『新撰姓氏錄の研究』 考證編第二, 吉川弘文館, 32쪽.

20) 關晃, 1955 「遣新羅使の文化史的意義」, 『山梨大學學藝學部研究報告』 6, 同 1996 『古代の歸化人』, 吉川弘文館, 246~253쪽.

하는 바이며 의술·卜筮·方術은古今을 통해 중히 여기고 있다. 여러 신료중에 학업에 뛰어나 師範이 될 만한 사람에게는 특별히 상을 내려 후진에게 격려와 자극을 주도록 하라”는 조서에 따라 종5위상으로 승진하여 의술방면에서 포상받았다²¹⁾. 또 天平2년(730)에 태정관에서 조정에 올린 상주문에 의하면, “음양, 의술, 七曜(천문학), 頒曆 등의 학술은 국가의 중요한 道이므로 이를 폐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제박사를 보면 고령이고 노쇠하다. 만일 학술을 가르치기 어려우면 이 業이 끊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여 吉田連宜 등 7인에게 각각 제자를 취하여 학업을 교습시키고, 계절마다 의복과 식료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²²⁾. 이와같이 吉宜는 일본조정에서 신임받는 관료, 지식인으로서 입지를 굳혔고, 神龜元年(724)에 吉에서 吉田連을 사성받아 無姓에서 정식으로 일본적 氏姓의 관료가 되었다. 그는 天平5년(733)에는 국가의 공문서를 비롯하여 불교, 유교의 경전 등 국가의 장서를 관리하는 圖書寮의 장관직인 圖書頭に 임명되었고²³⁾, 동10년(738)에는 궁정관인의 의료, 調藥, 의술전문가의 양성, 약용식물의 채배 등을 총괄하는 典藥寮의 장관인 典藥頭를 역임하였다²⁴⁾. 또한 『藤氏家傳』下 「武智麻呂傳」에는 宿儒, 文雅, 方士, 陰陽, 曆算, 咒禁, 僧綱 등 각계의 명망가의 이름을 열거하는 가운데 “方士有吉田連宜”라고 하여 점복이나 의술, 연금술 등에 능한 方士의 필두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吉田連宜는 漢詩에도 밝아 『懷風藻』에 「正五位下圖書頭吉田連宜, 二首[年七十]」이라는 제하의 「秋日於長王宅宴新羅客, 一首」, 「從駕吉野宮, 一首」 등 長屋王의 저택에서 신라사를 맞이하는 연회와 聖武천황이 吉野에 순행할 때 동행하여 지은 한시 2편을 남기는 등 문학가로서도 뛰어난 활약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고대의 和歌를 집성한 『萬葉集』에는 왕경인 奈良에서 大宰府의 장관으로 부임해 있던 大伴旅人에게 보낸 화답의 書簡과 短歌 4首(『萬葉集』5-864·865·866·867)를 남겼다²⁵⁾. 그는

21) 『續日本紀』 養老五年正月甲戌, “詔曰, 文人武士國家所重, 醫卜方術古今斯崇, 宜擢於百僚之內, 優遊學業, 堪爲師範者, 特加賞賜, 勸勵後生, 因賜…醫術從五位上吉宜, …各絕十疋, 絲十紵, 布廿端, 鍬廿口”.

22) 『續日本紀』 天平2년3월신해조, “太政官奏稱, …又陰陽醫術及七曜頒曆等類, 國家要道, 不得廢闕, 但見諸博士, 年齒衰老, 若不教授, 恐致絕業, 望仰, 吉田連宜, 大津連首, 御立連清道, 難波連吉成, 山口忌寸田主, 私部首石村, 志斐連三田次等七人, 各取弟子將令習業, 其時服食料亦准大學生, 其生徒陰陽醫術各三人, 曜曆各二人, …詔並許之”.

23) 『續日本紀』 天平5년12월경신조.

24) 『續日本紀』 天平10년윤7월계묘조.

漢詩와 일본의 和歌의 벽을 넘나드는 당대 최고 수준의 교양인으로 知的인 소양으로 천황의 마음을 사로잡아 정치적 신임이 두터워졌다고 생각된다.

한편 『文德實錄』 嘉祥3년(850)11월조의 종4위하 治部大輔 興世朝臣書主의 「卒傳」에는 그의 祖父는 정5위상 圖書頭兼內藥正相摸介 吉田連宜이고, 父는 內藥正 정5위하 古麻呂인데, 모두 侍醫가 되어 여러 대에 걸쳐 조정에서 봉사하였다. 宜 등은 儒道에 뛰어나 門徒들로 성황을 이루었다고 한다²⁵⁾. 그는 문예와 의술, 儒道, 방술 등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발휘해 도래계 씨족 중에서도 그 활약상이 저건되고 있다. 吉宜의 동생인 吉智首 역시 『懷風藻』에 「從五位下出雲介吉智首, 一首[年六十八]」이라고 한시에 밝은 문학적 재능이 있는 인물로서 出雲國의 出雲介라는 관직을 역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吉田連宜의 아들인 정5위하 古麻呂는 內藥司의 장관인 內藥正에 보임되어 왕실의 진료와 약의 처방을 담당하는 최고위의 의관을 지냈다. 吉田連氏는 吉田宿禰(811년), 興世朝臣(837년)으로 改姓을 거쳐 손자인 興世朝臣書主에 오면, 그의 「卒傳」에 보이듯이 和泉守, 備前守, 左京亮, 信濃守, 木工頭, 治部大輔의 중앙과 지방의 요직의 장관직을 거쳤고, 유학과 무예 그리고 和琴의 연주에도 뛰어났다고 한다.

그밖에 吉田連의 일족으로서는 吉田連兄人이 있다. 그는 『大日本古文書』 (3-122)의 「皇后宮職牒」에 “天平廿年十月八日從七位上守侍醫兼行大屬河内大目吉田連兄人”라고 하여 천평20년(748)에 황후궁의 侍醫가 되었고, 天平勝寶元年(749)에 紫微少忠이 되고 동3년에 종5위하로 승진되었다. 紫微少忠이 소속된 紫微中台는 원래 光明皇太后的 家政機關이었지만, 황태후의 신임을 얻은 藤原仲麻呂의 정치, 군사기관의 성격이 권력기관이었다. 吉田連斐太麻呂는 神護景雲4년(770)에 외종5위하에 오르고 光仁朝 寶龜2년(771)에 內藥正에 보임되어 10년 이상이나 내약료의 장관직에 종사하였고, 동10년(779)에는 종5위하로 승진하면서 光仁천황의 侍醫도 겸하게 되었다. 또한 伊豆守를 지낸 吉田連季元²⁷⁾, 越中介를 지낸 吉田連高世²⁸⁾ 등도 길대상의 피를 이

25) 吉田宜의 書簡은 大宰帥에 재임중이던 귀족이자 萬葉歌人인 大伴旅人が 梅花宴 32首 (815~846番歌), 「松浦河に遊ぶ序」, 歌11首(853~863番歌)를 吉田宜에게 보낸 데 대한 답신으로 短歌 4首를 첨부하여 보냈다. 867番歌의 좌측에 「天平二年七月十日」의 날짜가 주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川上富吉, 2016 「吉田連宜傳考-萬葉集」人物傳, 研究(9), 『大妻女子大學紀要·文系』 48, 참조

26) 『文德實錄』 嘉祥3년(850)11월기묘조, “從四位下治部大輔興世朝臣書主卒, 書主右京人也. 本姓吉田連, 其先出自百濟. 祖正五位上圖書頭兼內藥正相摸介吉田連宜, 父內藥正正五位下古麻呂, 竝爲侍醫, 累代供奉, 宜等兼長儒道, 門徒有錄…”.

은 자손들이다. 吉田連 가문에서 侍醫 등 의료종사가 많이 배출된 것은 ‘世傳醫術’이라 하여 의술이 가업으로 계승되었고 뛰어난 실력으로 조정으로부터 신임을 얻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²⁹⁾.

4. 鹽乘津설화의 생성과 吉田連의 출자개변

염승진설화는 8세기후반 吉田連氏에 의해 시조전승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 설화의 서술에 모티브가 되고 있는 주요 용어, 제도에 대해 살펴보자.

『성씨록』의 「吉田連」조에 임나국왕이 일본천황에게 “臣請將軍令治此地，即爲貴國之部也．…天皇令鹽乘津彦命遣，奉勅而鎮守”라고 하여 임나국의 영토인 기문의 땅에 장군을 파견하여 다스리게 하면, 貴國의 部가 되겠다고 하고, 이에 천황은 염승진을 파견하니 칙을 받들어 鎮守하였다고 한다. ‘貴國’이라는 말은 『일본서기』 신공기, 응신기에 「百濟記」를 인용하여 일본을 달리 표현한 용례가 보이는데, 백제인이 자국의 기록에 상대의 국명을 표기하지 않고 귀한 나라라는 경어체를 사용한 것은 「백제기」에 손질이 가해진 윤색이다³⁰⁾. 이것은 『성씨록』 편찬국에 제출된 吉田連氏의 씨족의 家傳인 本系帳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서기』의 용례를 모방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部’란 大和정권이 지방세력을 복속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왕권에 복속, 봉사하는 정치적 집단으로 그 유래는 백제의 五部制, 部司制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6세기전반 磐井의 난 이후 대화정권이 구주지역에 군사적 부민이 설치되었다. 동시에 복속된 지방호족을 지배하는 형태로 屯倉制와 더불어 지방지배의 재조적 정비였다. 반정의 난후에 설치된 那津官家は 구주라는 異域 세계를 지배한다는 표현으로 ‘官家’의 용어를 사용했으며, 이것은 한반도제국에 대한 복속지로서의 의미로 재생되었다. 部 역시 관가와 같은 대화정권의 복속지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 임나국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의 복속해 있었다는 『일본서기』 이래의 일본고대문헌에 계승된 복속사관에 기초

27) 『續日本紀』 延曆3년8월을축조.

28) 『續日本後紀』 承和4년6월기미조.

29) 吉田連氏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서보경, 2017 「고대 일본의 吉田氏 연구」, 『일본학』 45, 참조.

30) 津田左右吉, 1924 『古事記及日本書紀の研究』, 岩波書店, 560~561쪽.

하고 있다.

다음은 ‘鎭守’라는 용어에 대해 살펴보자. 이 말은 주둔하여 지킨다는 군사적인 주둔군을 의미하고 鎭守將軍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軍政官 즉 관할 사령관이다. 진수장군은 보통 鎭將이라고 하며 그 유래는 중국 北魏시대에 州郡에 주둔하는 군단, 즉 鎭을 관할하는 長을 말한다. 隋唐시대에도 계승되어 변경의 주요 거점지역에 주둔하는 장군을 진장이라고 일컬었다. 『일본서기』 天智3년조에 “百濟鎭將劉仁願, 遣朝散大夫郭務悰等, 進表函與獻物”라고 하여 百濟鎭將 유인원이 唐使인 곽무중을 일본에 보냈고, 동 6년조에도 “百濟鎭將劉仁願, 遣熊津都督府熊山縣令上柱國司馬法聰等, 送大山下境部連石積等於筑紫都督府”라고 하여 역시 백제진장인 유인원이 웅진도독부의 마법총을 축자도독부에 보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진장은 이른바 점령군 사령관을 일컫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일본고대의 대외관문인 북구주에 설치된 大宰府의 전신 기구의 명칭으로서 『일본서기』 大化5年(649)조에 ‘筑紫大宰帥’를 비롯한 천지에서 천무조에 ‘筑紫率’ ‘筑紫總領’ 등이 보이고 천지6년(667)조에는 ‘筑紫都督府’라고 하여 군사적 성격의 기관이 보인다. 天平12년(740)에는 藤原広嗣의 난을 계기로 일시 군사적 기능을 강화하는 鎭西府가 설치되었는데, 중앙에서 볼 때 서쪽인 구주를 관할하는 지방기구를 의미한다. 『성씨록』에 나오는 鎭守將軍, 鎭將의 명칭도 이러한 전거사료에서 인용된 용어이고, 현지에 주둔하여 군권을 장악한 통치자로서의 표현한 것이다. 鎭將 설화는 같은 도래계 씨족이자 동족으로 나오는 眞野臣에게도 볼 수 있다. 『성씨록』 右京 皇別上 「眞野臣」조에, 진야신은 孝昭천황의 아들 천족 언국인인명의 3세손인 언국즙명의 후예이다. 그 손인 대시전숙네가 신공황후의 신라 정벌시에 鎭守將軍으로 머물러 신라왕녀를 취해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인 佐久命의 9세손인 和珥部臣鳥 등이 近江國 眞野村에 거주한 까닭에 眞野臣 姓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한반도제국에 파견된 일본의 장군이나 사자가 현지의 여성과 결혼하여 그 자손들이 후에 일본에 귀화했다는 전승으로 도래계 씨족들이 父姓(日本姓)으로 스스로의 개성을 정당화할 때 이용하는 상투적인 수단으로 인용할 수 없다³¹⁾. 그러나 실제로 일본에서 장군이나 사자의 파견과는 관계없이 『일본서기』 등의 사서에서 타씨족의 시조전승에 가탁하여 자신의 조상전승으로 재창출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31) 加藤謙吉, 2011 「渡來系氏族の出自改變-皇別・神別諸氏との同祖・同族化をめぐる」 『古代韓日交流と相互認識』 東北亞歴史財團韓日國際會議發表集, 148쪽.

길전련씨의 염승진설화는 『일본서기』 승신기말년에서 수인기의 초년에 나오는 임나국에서 파견되었다는 蘇那葛叱知 전승에서 구했다고 생각된다. 해당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 ①“任那國遣蘇那曷叱知，令朝貢也”(『日本書紀』崇神紀65년추7월조).
- ②“是歲，任那人蘇那曷叱智請之，欲歸于國。蓋先皇之世來朝未還歟。故敦賞蘇那曷叱智。仍齎赤絹一百匹賜任那王。然新羅人遮之於道而奪焉。其二國之怨，始起於是時也。[一云，御間城天皇之世，額有角人，乘一船泊于越國筥飯浦。故號其處曰角鹿也。問之曰，何國人也。對曰，意富加羅國王之子，名都怒我阿羅斯等，亦名曰于斯岐阿利叱智干岐。傳聞日本國有聖皇以歸化之。…仕活目天皇逮于三年。天皇問都怒我阿羅斯等曰，欲歸汝國耶。對語，甚望也。天皇詔阿羅斯等曰，汝不迷道必速詣之，遇先皇而仕歟。是以改汝本國名，追負御間城天皇御名，便爲汝國名。仍以赤織絹給阿羅斯等，返于本土。故號其國謂彌摩那國，其是之緣也。於是阿羅斯等以所給赤絹，藏于己國郡府。新羅人聞之，起兵至之，皆奪其赤絹。是二國相怨之始也。…]”(『日本書紀』垂仁2년조).

이 사료는 일본의 대외관계 기록으로는 최초이고 임나와 일본의 외교관계이다. 이때의 임나사는 意富加羅國이라 하여 ‘오호가야’ 즉 대가야의 의미인데, 초기 가야제국의 중심국인 금관국으로 생각된다. 三品彰英에 의하면 임나사 蘇那葛叱智의 蘇는 훈이 金(쇠)이고 那는 任那의 那로 국(나라)으로 보고, 葛은 大의 뜻이고 叱智는 읍장을 의미하는 臣智로 金官邑長으로 해석한다³²⁾. 타당한 지적으로 생각한다. 요컨대 蘇那는 金國, 쇠나라, 『일본서기』 계체기23년조의 금관국 4읍의 하나인 須那羅를 가리키듯이 蘇那葛叱智는 금관국의 지배자의 칭호에 어울리는 말이다. “日本國有聖皇以歸化”과 같은 변국관이 깔려있고, 승신의 이름인 ‘미마키(御間城)天皇의 御名을 따 임나의 국명을 彌摩那라고 했다고 하듯이 양국의 종속관계의 연유를 설명하고 있다. 『성씨록』(未定雜姓 右京) 「三間名公」조에도 “彌麻奈國主 牟留知王의 후예이다”라고 하여 가야왕족의 후예임을 주장하는 후예씨족이 보이고 있다. 위 사료에서 임나일본부란 용어는 사용하고 않으나 임나의 복속의 기원을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측하는 사료이다. 여기에 신라를 개입시켜 귀국하는 소나갈질지의 물건을 신라인이 길을 막고 약탈했다(新羅人遮之於道而奪)는 기록

32) 三品彰英, 『日本書紀朝鮮關係記事考證』 上卷, 吉川弘文館, 1962, 11~13쪽.

은 신공기47년조에 “新羅人捕臣等禁囹圄…則奪我貢物”라고 하여 신라가 백제의 대일 공물을 빼앗았다는 내용과도 통하며 신라적시관, 惡人觀을 상징하는 내용이다. 신라와 임나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의 “其二國之怨, 始起於是時也”, 분주의 “是二國相怨之始也” 등도 원한의 기원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성씨록』에 나오는 “與新羅國相爭”과 대응하는 내용으로 『성씨록』이 『일본서기』를 참조하여 기술한 흔적이다. 또 『일본서기』에 임나사의 모습을 ‘額有角人’이라 하여 이마에 뿔이난 인물로 묘사한 것도 『성씨록』에 보이는 “頭上有贅三岐如松樹[因號松樹君]”라고 하여 염승진의 머리 위에 3개의 혹이 달려 松樹君이라 불리었다는 설화도 동일한 모티브를 갖는 전승으로 『성씨록』이 『일본서기』를 기초로 하여 꾸며낸 이야기이다. 즉 염승진설화는 길전련씨가 자신들의 시조전승으로 임나사 소나갈질지의 전승을 모델로 하여 8세기후반에 家傳인 本系帳에 기록하여 『성씨록』 편찬시에 편찬국에 제출하여 성공적으로 등재된 것이다³³⁾.

『성씨록』 序文을 보면, 勝寶年間(749~756)에 특별 은칙을 내려 諸蕃 출신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였다고 하여 신고제에 의한 무제한의 사성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蕃俗과 和俗의 씨족이 혼란해지고, 미천한 신분이 고귀한 후손으로 바뀌어졌고, 삼한의 번객들이 일본신의 후손이라고 일컫게 되었다고 한다. 또 원류를 알지 못하여 조상의 순서를 뒤바꾸거나, 자기 조상을 잃어버리고 잘못 다른 씨에 들어가거나, 다른 씨에 교묘하게 들어가 자기 조상으로 삼기도 한다고 하여 조상에 대한 부회, 가상이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³⁴⁾. 이러한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 환무천황은 각 씨족으로부터 本系帳을 제출시켜 『성씨록』의 기초자료로 삼았다. 『日本後紀』 延曆18년에 전하는 내용을 보면, “천하의 신민에 속하는 씨족은 많으나 출자는 같으면서 별과이기도 하고, 本宗을 달리하면서 같은 성을 갖은 자도 있다. 계보를 기록한 譜牒에 의거하려고 해도 改姓이 행해지고, 조사가 뜻대로 되지 않

33) 『신찬성씨록』에는 蘇那葛叱智의 별명인 都怒我阿羅斯等を 시조로 하는 3명의 가야계 씨족이 나온다. 「左京諸蕃任那」 “清水首, 出自任那國人都怒何阿羅志止也”, 동 “大市首, 出自任那國人都怒賀阿羅斯止也”, 「大和國諸蕃任那」 “辟田首, 出自任那國主都奴加阿羅志等也”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은숙, 「新撰姓氏錄의 加耶系 氏族」, 『韓國古代史論集』 2, 1991, 참조.

34) “勝寶年中, 特有恩旨, 聽許諸蕃, 任願賜之, 遂使前姓後姓文字斯同, 蕃俗和俗氏族相疑, 萬方庶民, 陳高貴之枝葉, 三韓蕃賓, 稱日本之神胤, …新進本系多違故實, 或錯綜兩氏混爲一祖, 或不知源流倒錯祖次, 或迷失己祖過入他氏, 或巧入他氏以爲己祖, 新古煩亂不易芟夷, 彼此謬錯不可勝數…”(『新撰姓氏錄』 序).

는다. 호적과 計帳에서는 本宗과 枝族을 구별할 수 없다. 이에 천하에 포고하여 본계장을 진상토록 하라. 三韓과 中國으로 부터의 도래씨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하라”³⁵⁾는 칙명을 내린다. 이렇듯 도래계 씨족 중에는 皇別, 神別의 유력씨와의 同祖, 同族關係를 주장하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단 도래계 뿐아니라 일본씨족들 사이에서도 나타나고 도래계 중에는 한반도나 중국의 유력 왕에게 시조의 계보를 연결시키는 현상도 나타났다.

그러나 유력씨족들 중에는 개변된 시조계보를 그대로 제출하였고, 그 주장을 인정받아 조작된 출자를 성공시킨 사례도 적지않다. 이러한 현상은 延曆 17년(798)의 太政官符에서도 알 수 있듯이 “頃年改名者衆, 其計多端, 或避見課而入不課, 或除無蔭以附有蔭, 如此輩類, 其奸繁多”³⁶⁾라고 하여 과역을 피하고 蔭敍에 들어가 그 자손들이 敍位되어 관직에 진출하는 수단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출자개변에 성공한 씨족들은 환무천황과 가까운 和家麻呂, 坂上田村麻呂·菅野真道과 같은 유력 씨족들이었다. 길전련의 경우는 공경의 반열에 선 유력씨족은 아니었지만 “世傳醫術, 兼通文藝³⁷⁾”라는 “國家要道³⁸⁾”의 학문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권력에 접근할 수 있었다. 『令義解』의 醫病令2 「醫生等取藥部及世習」조에 “무릇 醫生·按摩生·咒禁生·藥園生은 먼저 藥部와 世習한 자를 선발한다고 하고, 그 분주에 “世習者, 三世習醫業, 相承爲名家者也”라고 하여 세습에 대해 ‘3대에 걸쳐 의업을 익혀 계승하여 名家가 된 것’이라고 정의한다. 게다가 학생 선발에도 세습가문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興世朝臣書主의 「卒傳」에 보이듯이 조부는 ‘正五位上圖書頭兼內藥正相模介吉田連宜’, 부는 ‘內藥正正五位下古麻呂’였고, “竝爲侍醫累代供奉”라고 하여 시의로서 여러대에 걸쳐 봉사해 왔음을 기록하고 있다. 吉大尙에서 시작된 醫業은 吉田連宜→吉田連古麻呂→興世朝臣書主에 이르는 4대에 걸쳐 계승되고 있는 의술의 명가로서 지위를 확보하였다. 특히 시의는 천황의 건강을 살피는 주치의로서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35) “勅, 天下臣民, 氏族已衆, 或源同流別, 或宗異姓同, 欲據譜牒, 多經改易, 至檢籍帳, 難弁本枝, 宜布告天下, 令進本系帳, 三韓諸蕃亦同…”(『日本後紀』 延曆18年(799)12月戊戌條).

36) 『類聚三代格』 卷17 延曆17년(798)2월8일부

37) 『續日本後紀』 承和4년6월기미조.

38) 『續日本紀』 天平2년3월신해조.

吉田連의 출자개변은 아마도 吉田連古麻呂가 內藥正과 시의로 봉직했던 연력3년(784)에서 수년 사이에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桓武천황의 재위시기이며 백제계 도래인을 우대했던 시기이며 길전련씨로서는 백제계 출신에 더하며 천황측근에서 근시하는 시의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皇別로 출자를 개변하는 작업을 시도했다고 보인다. 씨족의 본계장에 皇別로 개변한 후, 환무천황이 연력18(799)에 각 씨족들의 본계장을 제출하라는 칙명에 따라 상진하여 그대로 『성씨록』에 등재된 것이다³⁹⁾. 한편 출자를 皇別로 개변한 길전련씨의 조상은 신무에 이어 제2대 천황으로 나오는 孝昭의 皇子인 天帶彦國押人命의 4세손 彦國菴命의 후예로 기록되어 있다. 孝昭에서 開化까지는 缺史8대라 하여 이른바 가공의 시대이다⁴⁰⁾. 그런데 『성씨록』에는 이로부터 출자를 구하는 씨족들이 6할이 넘고 이 중에서 孝昭를 元祖로 하는 후예들이 46씨에 달하고 있어 많은 씨족들이 출자개변이 용이한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고 보인다. 길전련씨의 경우는 송신, 수인기에 나오는 소나갈지지를 모델로 하여 전설과 역사시대의 접점을 이루는 염승진 설화를 만들어 내어 위조된 본계장을 실제의 사실로 알리는데에 유효했다고 생각된다. 조정에서는 결사8대의 천황들과 그 후손들을 시조로 삼는 씨족의 家牒을 검증하기가 쉽지 않았다. 따라서 많은 씨족들은 8세기 나라시대에 대규모 사성이 이루어질 때 높은 성을 받기 위해 시조와 출자를 변조하였고, 다시 『성씨록』 편찬을 위해 본계장의 제출이 명해졌을 때 재차 새로운 출자로 개변했던 것이다.

한편으로는 吉田氏 일족의 거주지와 관련해 그 일대에 살던 타 씨족과의 교류와 공동체의식을 통해 동족화의 흐름이 나타났다고 하는 연구가 있다. 加藤謙吉에 의하면 添上郡 일대는 와니系 諸氏의 일대 거주지로 (大)春日氏, 大宅氏, 小野氏, 栗田氏, 柿本氏, 櫟井氏, 和珥部(和邇部·丸部)氏, 山上氏, 井代氏 등의 본거 혹은 大和 진출 후의 거점이 놓여진 지역이었고, 吉田氏는

39) 吉田連씨의 本系帳의 개변과 제출을 吉田連古麻呂의 아들인 吉田宿禰書主, 吉田宿禰高世이 주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서보경, 2013 「新撰姓氏錄에 기재된 鎮守將軍 후에 씨족의 出自改變」, 『일본연구』 57, 44쪽). 『大寶令』의 「選敍令」에 의하면 敍位되는 초년은 25세 이상이고, 蔭敍라 하더라도 21세 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어 당시 이들의 나이는 20세임을 감안하면 출자개변이라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40) 缺史八代는 『古事記』, 『日本書紀』에 즉위년과 봉년, 계보 이외에는 그 시대의 천황의 사적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제2대 綏靖에서 제9대 開化에 이르는 8인의 시대를 가리킨다. 이것은 중국의 참위설인 신유혁명사상의 영향도 있고, 천황가의 기원의 장구함과 정통성을 나타내기 위한 편찬 이념에 의해 만들어진 계보이다.

添上郡에서 이들 와니系 諸氏와의 교류를 통해 점차 동족화를 진행하고 이
윅고 天押帶日子命(天足彦國押人命)의 후예씨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으로 논
하였다⁴¹⁾. 아마도 씨족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지역적 공동체의식이 발전하
여 同族化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孝昭를 遠祖로 하는 공동의 시조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집단적 공동전선에 의한 출자개변은 당시의 보편적
인 현상이었고 계보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성씨록』을 편찬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각 씨족들이 제출한 본계장의 내용대로 수용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현상에는畿內지역에서 가문의 본계장을 제출할 수 있는 씨족은 지
배계층을 이루는 중상류 귀족들이 많았고 1182씨라고 하더라도 본계에서 分
枝되어 의제적인 동족관계를 생각하면 동류의 씨족이 많아 원래의 씨족의
수는 이보다 대폭 줄어든다. 요컨대 『성씨록』에 등재된 씨족들은 나름대로
一門을 이루고 살던 씨족들로서 천황가로부터 파생된 수많은 지족들과 大化
前代의 氏姓制 체제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이어온 세습화된 관료, 귀족집단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도래계 엘리트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
된다. 도래계의 경우도 천황가와 친소관계에 영향을 받아 위로 올라갈수록
상위의 성을 받거나 출자의 개변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 총 1182씨 중 皇
別, 神別, 蕃別이 각각 335씨, 404씨, 326씨 그밖에 미정잡성 117씨 등으로
균등하게 배분한 것도 등재의 취사선택에서 편집된 통계수자임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반면 『성씨록』에 등재되지 못한 씨족들은 동일한 개변이라도
신분상의 이유로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吉田連은 弘仁2年(811)에 宿
禰로 개성되었고, 承和4年(837)에는 朝臣의 姓을 받아 도래계의 최고위 성을
취득하게 되었다. 당대의 중시되던 의술이라는 가업에 더해 황별로의 출자의
개변이 가져온 성공적인 改姓이었다.

5. 결어

고대일본의 姓과 出自는 신분상승의 주요 요인이었다. 씨성제사회에서 율
령제 고대국가로 전환하는 8세기대에는 改姓을 통해 고위직으로 이동하는
발판을 만들었고, 이에따라 출자개변도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씨성의

41) 加藤謙吉, 2011 「渡來系氏族の出自改變-皇別神別諸氏との同祖・同族化をめぐる」 『古代
韓日交流と相互認識』, 150쪽.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각 씨로부터 본계장을 제출받아 『신찬성씨록』을 편찬하기에 이르렀다.

기문의 지에 ‘鎭守’하여 대대로 통치했다는 염승진설화도 기문국 출신으로 백제관료인 吉 大尙이 백제멸망 후 망명하여 상급관료의 반열에 들어선 후에 시조전승, 출자개변을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염승진이란 가공의 인물이 생성된 것은 『일본서기』 승신기말년에서 수인기초년에 보이는 임나국에서 파견된 소나갈질지 설화를 통해 만들어졌다. 머리에 흑이 달리고 이마에 뿔이 났다는 외형적인 유사성, 임나와 신라의 원한관계의 기원도 동일 모티브이고, 삼기문의 ‘鎭守’장군 이야기는 임나의 국명이 승신의 미마키라는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복속사관 등 동일한 소재였다. 『성씨록』의 시조전승은 『國史』 속의 등장인물에서 찾는 것이 신뢰성을 보증하는 최고의 방법이었다. 타 씨족의 전승을 자신의 것으로 하는 부회의 행위는 보편적으로 행해졌고, 장구한 시조전승을 위해 전설속의 인물을 이용하여 가상된 계보를 만들기도 하였다. 『일본서기』의 缺史8代の 孝昭의 지족으로부터 출자를 구하는 행위는 검증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거주지의 친연성을 통해 씨족간의 의제적인 동족화를 이루어 시조를 공유하는 집단적 同祖현상도 나타났다. 이른바 씨족간의 同族·同祖라는 일체감을 조성하여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일은 개변된 출자로 『성씨록』에 등재하는 데에 성공하는 일이 많았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시조전승의 조작, 출자의 개변은 중상급 씨족이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길대상을 시조로 하는 吉田連 가문은 의술, 문예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다. 천황의 시의로서 典藥寮의 장관으로서 봉사했고 4대에 걸쳐 의술을 가업으로 이어갔던 명문가였다. 문예에도 재능을 발휘하여 漢詩와 和歌를 능통하게 지어내는 학문의 기예들이 나왔다. 『회풍조』와 『만엽집』에 문장을 남기고, 때로는 천황의 순행에 동행하고 당대 최고의 권세가였던 長屋王과의 문학적 交遊도 하였다. 문학을 통한 권력에의 접근이며 가문의 위상과 정치적 입지를 높이기 위한 도구였다.

8세기말에서 9세기초에 걸쳐 이루어진 수많은 출자와 시조전승의 개변은 도래계 씨족들에게는 더 높은 출사의 길이었고 가문이 번영해 나가는 수단이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상은 도래계라는 의식이 점차 소멸되어가는 일본화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염승진설화도 원래는 기문출신의 백제관료였던 길전련씨가 일본에서 파견된 진수장군의 후예로 둔갑시키면서 고대일본왕권의 한반도 복속사관의 이념을 만족시켜주는 효과도 있었다. 여기에 출자를

皇別로 개변하여 원향이 일본 국적이 되어 천황제 율령국가의 귀족사회에서
세제와 음서제의 혜택을 받는 5위 이상의 고위관료로서 一門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한일관계사 학술회의

和朝臣씨의 발전과 『和氏譜』의 편찬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和朝臣씨의 발전과 『和氏譜』의 편찬

김은숙(한국교원대학교)

1. 서론
2. 8세기 전반의 倭史氏
3. 桓武天皇의 모후 和史新笠
4. 桓武天皇과 和朝臣씨의 발전
5. 和氣朝臣清麻呂와 환무천황
6. 『和氏譜』의 편찬과 百濟王仁貞, 津連眞道
7. 결론

1. 서론

현존 『신찬성씨록』에는 9세기 초 평안경과 기내에 살고 있던 백제계 씨족 중에 백제왕의 후손임을 자칭하는 씨족들이 모두 27씨 존재한다.

沙半王--半毗(右京)

比流王--春野連(右京), 面(右京), 汶斯氏(右京), 岡屋公(山城國)

避流王--廣井連(攝津國)

肖古王--眞野造(右京)

速古大王--三善宿禰(右京), 錦部連(河內國)

貴首王--菅野朝臣(右京), 雁高宿禰(右京)

貴須王의 후손 味散君--葛井宿禰(右京)

貴須王의 후손 智仁君--宮原宿禰(右京), 船連(右京)

貴須王의 후손 麻侶君 --津宿禰(右京)

貴須王의 후손 宇志--中科宿禰(右京)

近貴首王--廣津連(右京)

辰斯王子知宗--岡原連(河內國)

直支王 -- 林連(河內國)
毗有王 -- 不破連(右京)
比有王 -- 飛鳥戶造(右京)
比有王男琨伎王 -- 飛鳥戶造(河內國)
末多王 -- 飛鳥戶造(河內國)
武寧王 -- 和朝臣(左京)
明王 -- 市往公(右京)
惠王 -- 百濟朝臣(左京)
義慈王 -- 百濟王(右京)

이들 27씨는 모두 백제의 왕이나 왕의 후손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보이는 백제왕은 사반왕, 비류왕, 근초고왕, 근구수왕, 진사왕, 전지왕, 비유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혜왕, 의자왕으로 모두 12명이다. 이들은 좌경에 2씨, 우경에 18씨, 하내국에 5씨, 섭진국에 1씨, 산성국에 1씨가 있어 우경에 가장 많이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의 姓(가바네)을 살펴보면 천무천황이 정한 8색의 姓 중에서 朝臣 姓이 3씨, 宿禰 姓이 6씨, 連성이 8씨 등 모두 18씨이다. 나머지는 8색의 姓 이외의 姓(百濟王, 飛鳥戶造, 眞野造, 岡屋公, 市往公)을 가지고 있거나 姓을 가지고 있지 않다(半毗.面, 汶斯).

그렇다면 『신찬성씨록』에서 백제왕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씨족들은 과연 일본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었으며, 이들의 조상 계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이들 중에서 百濟王氏의 경우는 천무8성 질서를 초월하고 있으며, 8,9세기에 걸쳐 수많은 관인을 배출하면서 도래계 씨족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씨족으로 많은 연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朝臣을 사성 받은 和朝臣씨에 초점을 맞추어 화조신씨의 일본사회에서의 모습과 그들의 씨족 계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화조신씨와 『화씨보』의 편찬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해서는 佐伯有清의 『新撰姓氏錄の研究』考證篇 제5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¹⁾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화사(왜사)씨, 화조신씨 관련 사료를 검토하여 화조신씨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환무천황대에 이루어진 『화씨보』의 편찬과정에 대해

1) 화조신 씨에 대해서는 佐伯有清의 『新撰姓氏錄の研究』考證篇 第5(吉川弘文館, 1983)에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며, 왜사씨에 대해서는 이근우의 「桓武天皇 母系는 武寧王의 후손인가」(『한국고대사연구』26, 2002.)가 있다.

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8세기 전반의 倭史氏

『신찬성씨록』에서 백제계를 주장하는 씨족 중에서 天武8姓 중에 가장 높은 姓을 사성받은 씨족은 화조신과 백제조신, 관야조신이다. 이들은 천무8성 중에 두 번째 姓인 朝臣을 사성 받았다. 이 세 씨족이 朝臣을 사성받은 시기는 백제조신 749년에서 757년 사이, 화조신 783년, 관야조신 790년이였다.

이들은 모두 평안경에 거주하였는데, 화조신과 백제조신은 좌경, 관야조신은 우경에 거주하였다. 화조신은 『성씨록』 좌경 제번 백제조에 필두로 등장하는 씨족으로, 여기에서는 화조신이 백제국 都慕王의 18세손 무령왕의 후손이라고 적고 있다.²⁾

그런데 『續日本紀』延暦2년(783) 4월 병인조에서 “좌경인 외종5위하 和史國守 등 35인에게 조신(朝臣) 姓을 사여하였다.”라는 기사를 통해 화조신씨의 원래 씨성은 和史(야마토노후히토)씨였음을 알 수 있다. 和史씨가 사서에 처음 보이는 것은 8세기 후반으로, 『속일본기』天應元年(781) 夏四月 계묘조에서 和史國守가 정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다.³⁾

和史씨는 고문서나 목간에서는 倭史(야마토노후히토), 또는 倭毗登(야마토노후히토)로 표기되었으나,⁴⁾ 현재까지 발굴된 사료에 등장하는 倭史(倭毗登)씨는 倭毗登廣名,倭史人足,倭史眞首名, 세 명에 불과하다.

倭毗登廣名은 평성궁에서 발굴된 목간에 이름이 보이고 있어 8세기에 倭毗登廣名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으나 그에 관해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 倭史人足과 倭史眞首名은 『대일본고문서』에 수록된 「正倉院文書」에 보인다. 왜사인족은 造東大寺司 寫經所에서 사경에 종사하였던 사람으로 천평18년(746)부터 천평승보3년(751)까지 그 이름이 보인다. 특히 천평18년(746) 3월24일자 「倭史人足解」라는 자필 문서를 통해 그의 필적도 알 수 있는데, 그는 이 문서에서 자신이 『成實論』의 사경에 사용한 종이에 대해 보고하면서 제5권 25장, 제12권 25장, 제14권 23장, 총73장의 종이를 사용

2) 和朝臣 百濟國都慕王十八世孫武寧王之後也.

3) 『續日本紀』天應元年 夏四月 癸卯條, “正六位上船連田口.和史國守.伊勢朝臣水通.武生連鳥守.上毛野公薩摩.土師宿祢道長.正七位上物部多藝宿祢國足並外從五位下.”

4) 上田正昭는 倭가 和로 표기되는 것은 養老令이 시행된 天平寶字元年(757) 이후라고 보았다.(上田正昭『大和朝廷』講談社,1995,41-42쪽.)

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⁵⁾ 왜사인족은 천평19년(747) 12월 2일에도 經師들이 『法華經義疏』 등의 사경을 위해 351장을 사용한 내역을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작성하였다.⁶⁾

한편 조동대사사 사경소에서 작성한 문서에서도 倭史人足이 보인다. 즉 천평20년(748) 4월 25일자 「寫書所解」에 의하면 출가를 원한 27명 중에 倭史人足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나이 22세이며 좌경 1조 2방에 사는 호주 倭史眞首名の 호구로 사경소에서 3년간 근무하였다고 注를 달고 있다.⁷⁾ 倭史眞首名은 이 문서 이외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지만, 왜사족인의 호주였다는 점에서 추측해보면 족인의 아버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천평20년(748) 8월부터 천평승보3년(751)까지의 왜사족인의 근무상황을 말해주는 세 건의 문서도 「정창원문서」 속에 포함되어 있다. 첫째 문서는 천평20년 8월부터 천평승보원년(749) 7월까지의 근무자들의 근무상황을 기록한 사경소의 「經師等上日帳」으로, 여기에서 왜사족인은 ‘未選舍人’으로 등장하고 있어, 당시 그가 사경소의 舍人 후보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왜사인족의 근무상황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천평20년에는 9월에 낮 14일, 밤15일, 천평승보 원년에는 5월에 낮 10일, 밤 9일, 6월에 낮 17일, 밤 16일 근무하였으며, 그가 필사한 용지는 모두 121장이었다.⁸⁾

둘째 문서는 天平勝寶 원년(749) 8월부터 천평승보 2년(750) 7월까지의 왜사인족의 근무상황을 말해주는 「經師上日帳」으로, 여기에서는 그가 無位로, 총 157일 근무하여, 428장 사경하였고 大佛에 1일 공봉하였고, 4일 禮佛하였음을 알 수 있다.⁹⁾ 셋째 문서는 천평승보2년(750) 8월부터 다음해 7월까지의 근무상황을 말해주는 「經師上日帳」으로 여기에도 왜사족인의 근무상황이 적혀 있다. 그런데 이 문서에서 왜사족인은 右大舍人으로 등장하고 있어 그가 未選舍人에서 우대사인으로 승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천평승보2년 8월에 낮 10일, 밤 8일, 12월에 낮 15일, 밤 11일, 천평승보3년 1월에 낮 16일, 2월에 낮 20일, 3월에 낮 16일, 밤 14일, 4월에 낮 18일, 밤 17일, 5월에 낮 3일 밤, 2일 근무하였다.¹⁰⁾

이상이 正倉院文書の 왜사족인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창원문서를 통해 왜사족인이 19세였던 746년부터 24세였던 751년까지 조동대사사의 사경소에

5) 『大日本古文書』9권, 144쪽.

6) 『大日本古文書』9권, 590-591쪽.

7) 『大日本古文書』3권, 80쪽.

8) 『大日本古文書』10권, 354쪽.

9) 『大日本古文書』3권, 287쪽.

10) 『大日本古文書』4권, 432-433쪽.

서 사경 작업에 종사하였으며, 미선사인에서 右大舍人으로 승진하였으나, 관위는 없는 無位者였음을 알 수 있다.

왜사족인은 751년 이후 더 이상 고문서에서 보이지 않는다. 造東大寺司 寫經所의 사경작업은 그후로도 계속 되었으므로, 왜사족인이 사경관련 문서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왜사족인의 신변의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가 죽었거나 또는 748년에 출가를 원하고 있는 점에서 751년 이후에 승려가 되어, 범명을 가지게 되어 속세에서의 이름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倭史足人 이외에는 8세기 전반에 활약하는 和史(倭史)氏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화사씨가 당시 일본 사회에서 한미한 지위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和史(倭史)라는 씨성의 和(倭,야마토)라는 씨명은 大和國 城下郡 大和(야마토)郷이라는 지명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¹¹⁾ 史(후히토)라는 姓은 천무8성에 포함되지 않는 姓이다. 史라는 姓은 문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씨족에게 사여한 성으로 도래계가 대부분이었다. 왜사씨도 大和 지역에 정착하여 문필을 담당하면서 倭史씨로 불리게 되었을 것이다.

『속일본기』에는 史라는 姓을 가진 씨족으로 津史, 山田史, 田邊史 등이 보인다. 이들 씨성을 가진 사람들의 관위를 살펴보면, 일부 관위가 5위까지 오른 사람도 있었으나, 대부분은 관위 6위에서 8위 정도의 낮은 관위에 머물렀다.¹²⁾ 그런데 和史씨는 8세기 중엽까지는 그나마 낮은 관위를 가진 사람도 배출하지 못 하였다. 다른 史姓씨족과 비교해서도 和史씨가 매우 한미한 씨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화사씨는 783년 4월에 환무천황으로부터 화조신이라는 씨성을 사여 받았다. 조신은 천무8성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성이며, 천황의 후손이 아닌 씨족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이었다.

3. 桓武天皇의 모후 和史新笠

그렇다면 환무천황이 이렇게 한미한 和史씨에게 朝臣이라는 성을 사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자신의 어머니가 和史씨였기 때문이었다. 환무천황의 어머니 和史新笠(?-789)에 대해서는 그녀의 흥전을 통해 대강을 알 수 있다.¹³⁾

11)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考證編, 제5편(앞의 책).

12) 이근우, 「환무천황 모계는 무령왕의 후손인가」, 앞 논문.

『속일본기』에 실린 그녀의 홍전에 따르면 그녀의 姓은 和氏로 휘는 新笠이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는 史라는 姓을 생략하고 和氏라고만 적고 있는데, 『속일본기』나 8세기의 고문서나 등에서는 姓을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화사씨는 783년 4월에 조신을 사성 받았으므로, 굳이 史라는 한미한 姓을 생략하였을 것이다.

홍전에서는 新笠의 아버지는 乙繼(오토츠구)이며 어머니는 大枝朝臣眞妹(오오에노아손마아네)였다고 적고 있다. 신립의 아버지 을계가 사서에 보이는 것은 『속일본기』 연력9년 춘정월 임자조의 新笠의 홍전과 『속일본기』 연력9년 12월 임진삭조, 그리고 『일본후기』 연력23년 하4월 신미조의 和朝臣家麻呂의 홍전이다.¹⁴⁾ 이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신립의 아버지 을계가 高野朝臣을 씨성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고야조신은 寶龜年間(770-)에 신립에게 사여된 씨성이었다. 을계에게 언제 이 씨성이 사여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신립에게 사여한 시기 또는 그 후일 것이다.

신립의 어머니 土師眞妹에 대해서도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위에 제시한 세 사료에서 을계와 진매의 관위는 贈正1위로 나온다. 이는 新笠이 789년 12월 28일에 죽은 후 1주기를 앞둔 790년 12월 1일에 환무천황이 이미 고인이 된 외조부모 乙繼와 眞妹에게 추증한 것이다. 환무천황은 자손에 의해 조상을 귀하게 되는 것이 『춘추』의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조부모에게 관위 正1위를 추증하였고 외조모의 씨성 土佐宿禰도 大枝朝臣으로 고친 것이다.¹⁵⁾

을계의 생전 모습은 사서에 보이지 않으므로, 그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가 하급관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있지만,¹⁶⁾ 추증 받은 正1위 이외에 을계의 관위를 명기한 사료는 보이지 않아, 그가 하급

13) 『續日本紀』延暦9年 正月 壬子條, “葬於大枝山陵.皇太后姓和氏.諱新笠.贈正一位乙繼之女也.母贈正一位大枝朝臣眞妹.后先出自百濟武寧王之子純陀太子.皇后容德淑茂.夙著聲譽.天宗高紹天皇龍潛之日.娉而納焉.生今上.早良親王.能登內親王.寶龜年中.改姓爲高野朝臣.今上即位.尊爲皇太夫人.九年追上尊號.曰皇太后.其百濟遠祖都慕王者.河伯之女感日精而所生.皇太后即其後也.因以奉諡焉.”

14) 『日本後紀』延暦23年 夏4月 辛未條, “中納言從三位和朝臣家麻呂薨.詔贈從二位大納言.家麻呂.贈正一位高野朝臣弟嗣之孫也.其先百濟國人也.爲人木訥.無才學.以帝外戚.特被擢進.蕃人入相府.自此始焉.可謂人位有餘.天爵不足.其雖居貴職.逢故人者.不嫌其賤.握手相語.見者感焉.時年七十一.”

15) 『續日本紀』延暦9年 12月 壬辰朔條, “詔曰.春秋之義.祖以子貴.此則礼經之垂典.帝王之恒範.朕君臨宇內.十年於茲.追尊之道.猶有闕如.興言念之.深以懼焉.宜朕外祖父高野朝臣.外祖母土師宿禰.並追贈正一位.其改土師氏爲大枝朝臣.夫先秩九族.事彰常典.自近及遠.義存曩籍.亦宜菅原眞仲.土師菅麻呂等同爲大枝朝臣矣.”

16) 村尾次郎, 『桓武天皇』吉川弘文館, 1963.

관인이었는지도 알 수 없다. 『속일본기』에서 관인은 외종5위하 이상으로 승진하는 경우나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기사가 실리므로, 만약 을계가 6위 이하의 하급관인이었고 특기할 만한 일이 없었다면 『속일본기』에 생전의 을계 관련 기사가 등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6위 이하의 하급관인이었더라도 외손자인 山部황자(뒤의 환무천황)가 황태자가 된 773년 1월 이후에 그가 살아 있었다면, 더 높은 관위를 수여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생전의 을계의 관위에 대한 기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773년 1월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또는 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상 을계에 대해 검토한 결론은 을계는 773년 1월 이전에 죽었으며,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 수 없는 인물로, 그가 하급관인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을계의 딸 和史新笠은 어떻게 광인천황(709-782)의 처가 되었을까? 광인천황은 천지천황의 손자이며 施基(志紀)親王(?-716)의 아들이었다. 그녀와 백벽왕 사이에서 장녀 能登內親王(733-781)이 태어난 해가 733년이므로, 화사신립은 732년 이전에 백벽왕의 처가 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能登內親王 이외에 山部王(환무천황, 737-806), 早良王(750-785)을 낳았다.¹⁷⁾

7세기 후반 천무천황이 즉위한 후에 천무천황의 직계가 천황 자리를 이어가던 8세기 전반에 천지천황의 직계인 백벽왕이 황위를 계승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백벽왕의 아버지 施基(志紀)親王은 708년에 3품이었다가 715년에 2품으로 승진한 후 716년 8월에 죽었다. 백벽왕의 어머니는 紀橡姫로, 종5위하로 709년에 征蝦夷副將軍과 內藏頭를 역임하였던 紀諸人の 딸이었다.

백벽왕에게는 이복형제로 어머니가 천무천황의 딸 託基皇女였던 춘일왕(703 이전-745)과 湯原王(?-?)이 있었다. 춘일왕은 723년 음서로 무위에서 종4위하를 받고 731년에 종4위상, 743년에 종4위하로 승진하였으나 745년에 죽었다. 唐元왕은 『만엽집』에 그의 노래 19수가 전해지는 歌人이었지만, 그의 관위나 관직에 관한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백벽왕은 29세가 된 737년에야 비로서 음서로 무위에서 종4위하를 받았으나, 745년에 춘일왕이 죽은 후에는 시기천황의 아들로써 유일하게 관인으로 활약하게 된다.

화사신립을 처로 맞이한 732년 이전은 백벽왕이 無位였던 시절이었다. 和史신립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볼 때 그녀가 집안 배경 덕분에 백벽왕의 처가 된 것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그녀의 薨傳에서는 그녀가 용모와

17) 山背王은 光仁천황의 장자로 737년에 태어났으므로 新笠이 광인천황과 만났던 것은 736년 이전이었다.

인품이 뛰어나 젊었을 때부터 주위의 평판이 자자했다고 한다. 환무천황의 모후의 홍전이므로 당연히 과장은 있겠지만, 신립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백백왕의 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白壁王은 화사신립 이외에 여러 명의 처를 맞았다. 이복형제 탕원왕의 딸 尾張女王을 맞아들여 蔣田王(751-781)을 낳았으며, 성무천황의 딸 井上內親王(717-775)을 맞아들여 酒人內親王(754-829)과 他戶親王(761-775)을 낳았다. 백백왕의 정치적 지위는 성무천황의 딸 정상내친왕과의 결혼과 타호황자의 탄생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칭덕천황 대 말에는 정3위 대납언이었다. 칭덕천황이 770년 8월에 후사 없이 죽자, 성무천황의 사위였던 백백왕이 황태자로 발탁되었다. 그는 770년 10월에 천황으로 즉위한 후 정상내친왕을 황후로 임명하였고 그녀의 아들 타호친왕을 황태자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광인천황을 巫蠱하였다는 혐의로 772년 3월에 정상황후를 폐위되고 이어서 5월에 그녀의 아들 타호황태자가 폐위되었다.¹⁸⁾ 새로 황태자 후보로 거론될 수 있는 사람으로 화사신립 소생의 산부친왕과 牟良親王(750-785), 미장여왕 소생의 蔣田親王(751-781)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관인으로서의 경력을 쌓은 사람은 산부친왕 뿐이었다.

山部王은 28세 때인 764년 9월에 일어난 藤原仲麻呂의 난 때 효검상왕 즉에서 활약한 후 그 해 10월에 칭덕천황에게 종5위하를 사여 받아 관인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¹⁹⁾ 그후 종5위상으로 승진하였고 大學頭를 역임하였다. 광인천황의 즉위 후에 4품 산부친왕으로서 侍從을 거쳐 771년 3월에 8성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사였던 中務省의 장관(卿)으로 임명되었다. 中務卿은 천황 옆에서 조칙을 심의하여 서명하고 상표문을 수납하는 일과 함께 국사 편찬, 諸國의 호적과 租調帳의 관할, 僧尼의 명부 관할, 女官의 名簿와 考敍, 位記를 담당하였다. 대학두나 중무경을 역임한 점에서 산부친왕이 문인 관료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광인천황의 아들 중에서 경력이나 나이를 감안할 때 산부친왕을 능가할 사람은 없었다. 773년 1월에 산부친왕은 황태자로 임명되었다.²⁰⁾

그러나 황태자의 어머니 화사신립의 지위가 상승하는 것은 778년 1월 29

18) 이 사건은 산부친왕의 즉위를 바랐던 藤原朝臣百川, 藤原朝臣良繼 등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있다.(김은숙, 「光仁天皇의 井上皇后 廢后 사건」 『한일관계사연구』 57, 2017)

19) 『續日本紀』 天平寶字8年 冬10月庚午條. 同 天平神護2年11月 丁巳條. 村尾次郎 『桓武天皇』 吉川弘文館, 1963, 20-24쪽.

20) 『續日本紀』 寶龜4年 春正月 戊寅條 “立中務卿四品諱爲皇太子.(하략)”

일로, 정4위하에서 종3위로 승진하여,²¹⁾이 때 비로소 夫人의 지위에 올랐던 것이다. 광인천황이 777년에 故 정1위 좌대신 藤原朝臣永手(714-771)의 딸 藤原朝臣曹司(758-793)²²⁾를 夫人으로 맞았음에도,²³⁾화사신립에게는 778년 1월에야 夫人의 지위를 사여한 것은 그녀의 집안이 한미하였기 때문이었다.

신립이 夫人의 지위에 오른 것은 산부황태자의 즉위가 멀지 않았음을 말해 준다. 천황의 모후에 걸맞은 신분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광인천황은 화사신립에게 천무8성 중에 제2위에 해당하는 朝臣이라는 姓과 高野라는 씨명을 사여하였다.²⁴⁾ 그런데 광인천황이 화사신립에게 高野라는 지명을 씨명으로 하사한 것이 주목된다. 그것은 효겸(칭덕)천황이 高野천황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효겸(칭덕)천황은 770년 8월 17일에 大和國 添下郡 佐貴郷의 高野山陵에 매장되었고,²⁵⁾ 그래서 효겸(칭덕)천황을 『속일본기』에서는 高野천황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고야산릉이 있었던 지역은 和史新笠의 외가 土師씨의 본거지 菅原, 秋篠와 가까운 지역으로, 화사신립이 살던 곳으로 추정된다. 그렇다고는 해도 忌諱하지 않고 굳이 高野라는 씨명을 화사신립에게 사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화사신립의 씨명을 高野로 명명함으로써 그녀가 고야천황과 관련성이 있다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된다면 산부황태자는 고야천황의 후계자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²⁶⁾ 즉 고야조신이라는 씨성은 산부황태자와 고야천황의 관련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다른 화사씨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다.

781년 4월 3일에 광인천황의 양위를 받아 산부황태자가 즉위한 후 그녀는 4월 27일에 황태부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정3위로 승서되었다.²⁷⁾ 신립이 황태부인이 된 후 그녀를 위한 사무소로 中宮職이 설치되어, 그녀가 789년 12월에 사망할 때까지 중궁직의 장관인 중궁대부로 大伴宿禰伯麻呂, 藤原朝臣鷹

21) 『續日本紀』寶龜9年 春正月 丙子條 “授從四位下高野朝臣從三位.” 여기에서는 씨명만 보이고 있는데, 이는 忌諱로 환무천황의 모후의 이름 ‘신립’을 적지 않은 것이다.

22) 『一代要記』桓武天皇記.

23) 『續日本紀』寶龜8年 8月 己丑條.

24) 新笠의 흥전에서는 寶龜年間(770-781)에 광인천황이 신립에게 새로운 성을 내렸다고 적고 있으나, 아마도 신립이 부인 지위를 얻게 된 778년 1월 전후일 것이다.

25) 『續日本紀』寶龜元年 8月 丙午條 “葬高野天皇於大和國添下郡佐貴郷高野山陵.” 高野는 현재 奈良縣 奈良市 山陵町이다.

26) 瀧浪貞子, 「高野新笠と大枝賜姓」 『日本古代宮廷社會の研究』 思文閣出版, 1991.

27) 『續日本紀』天應元年 夏四月 乙卯條, “皇太夫人從三位高野朝臣加正三位.”

取,紀朝臣家守,紀朝臣船守,石川朝臣名足,石川朝臣豊人,和氣朝臣清麻呂가 임명되어 그녀를 보좌하였다.

4. 桓武天皇과 和朝臣씨의 발전

환무천황의 즉위 이후 황태부인 新笠의 친가 和史씨에 대한 우대도 이어진다. 환무천황은 자신의 어머니가 광인천황의 후궁에서 오래 동안 낮은 지위에 머물렀던 것에 대해 보상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외가인 화사씨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기 때문이었으므로 화사씨의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하였다. 환무천황은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은 781년 4월 15일에 화사씨를 대표하였던 和史國守를 정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시켰다.²⁸⁾ 이로써 화사씨가 처음으로 사서에 보이게 되었다. 國守는 乙繼의 아들이며 환무천황의 외삼촌이었다. 화사국수는 그해 10월에는 造法華寺次官으로 임명되었고, ²⁹⁾다음 해 782년 8월에는 園池正으로 임명되었다.³⁰⁾

환무천황은 783년 4월에는 和史國守 등 35명에게 和朝臣이라는 씨성을 수여하였다.³¹⁾ 원래 朝臣은 천무천황대인 684년에 제정된 8色の 姓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성으로, 684년에 52씨에게 수여되었다. 이들 52씨는 대부분 천황의 후손을 칭하였던 씨족이었다.

한반도에서 이주하였다는 전승을 가진 씨족에게 朝臣 성을 수여한 것은 효검천황대로, 고구려 출신의 肖奈王씨가 처음으로 750년 肖奈王福信 등 6명이 高麗朝臣이라는 씨성을 수여 받았다. 『신찬성씨록』에서 高麗朝臣씨는 고구려왕 好台의 7세손 延典王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²⁾ 두 번째는 『신찬성씨록』좌경 제번 백제조에서 백제 해왕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백제조신씨다. 749년 백제왕경복이 陸奥國의 장관으로서 황금생산에 성공하였을 때 육

28) 『續日本紀』天應元年 夏四月 癸卯條, “正六位上船連田口.和史國守.伊勢朝臣水通.武生連鳥守.上毛野公薩摩.土師宿祢道長.正七位上物部多藝宿祢國足並外從五位下.”

29) 『續日本紀』天應元年 冬10月 己丑條, “從四位下五百枝王爲侍從.從四位下淡海眞人三船爲大學頭.正五位下布勢朝臣清直爲兵部大輔.從五位下紀朝臣千世爲少輔.從五位下多治比眞人三上爲左京亮.從五位下紀朝臣眞人爲右京亮.從五位下健部朝臣人上爲勅旨少輔.外從五位下和史國守爲造法華寺次官.”

30) 『續日本紀』延曆元年 8月 乙亥條, “以從五位上安倍朝臣常嶋爲圖書頭.從五位下八上王爲內禮正.正五位下石川朝臣眞守爲式部大輔.武藏守如故.從五位下多治比眞人濱成爲少輔.外從五位下和史國守爲園池正.(하략)”

31) 『續日本紀』延曆2年 4月 丙寅條, “左京人外從五位下和史國守等卅五人賜姓朝臣.”

32) 『新撰姓氏錄』左京 諸蕃 高麗 “高麗朝臣. 出自高句麗王好台七世孫延典王也.”

오국의 삼등관(大掾)이었던 餘足人이 757년 이전에 백제조신을 사성 받았고, 758년에는 그의 일족 중 4명이 백제조신을 사성 받았다. 세 번째는 앞에서 언급한 光仁天皇대의 和史新笠과 그녀의 아버지 和史乙繼에 대한 高野朝臣 사성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환무천황대의 和史國守 등 35명에 대한 화조신 사성이다. 8세기 중엽까지 미미한 존재였던 和史씨는 환무천황이 즉위한 후, 천황의 외척 집안이 된 덕분에 8姓 질서 속에서 신하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姓인 朝臣을 받은 것이다.

이후 화조신국수는 784년 1월에는 종5위하로 승진하고 785년 1월에는 下野國의 차관개(介), 787년 2월에는 參河國의 장관(守), 790년 3월에는 대장성의 3등관(少輔)을 역임하였다. 791년 1월에 종5위상으로 승진하였으나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아, 이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죽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화사국수 이외에 『속일본기』에 그 이름이 보이는 화사씨로는 『속일본기』연력2년(783) 춘정월 무자조의 和史家吉이 있다. 家吉이라는 이름에서 추측하건대 뒤에서 언급할 家麻呂와 남매간으로, 환무천황의 외사촌이었다. 그녀는 女孺로서 이날 무위에서 외종5위하의 관위를 받았다.³³⁾ 여유는 內侍司에 소속되어 후궁에서 근무하던 女官을 가리킨다. 그녀가 무위에서 일약 외종5위하로 승서된 이유는 그녀가 환무천황의 외사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和史家吉은 783년 4월에 화사국수가 화조신을 사성 받을 때에 함께 화조신을 사성 받은 듯, 그해 8월에는 和朝臣家吉이라는 이름으로 외종5위하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고 있다.³⁴⁾ 그 후 가길은 여관으로서 종4위하 尙殿까지 승진한 후 806년 5월에 죽는다.³⁵⁾ 환무천황이 806년 3월 17일에 죽은 지 1달 후였다.

尙殿은 후궁의 12司 중의 하나인 殿司의 장관이다. 殿司에서는 尙殿 1명, 典殿 2명, 女孺 6명의 여관이 근무하였다. 관할 업무는 宮內省 主殿寮의 남자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궁궐의 건물을 유지하고, 천황의 행행 때에 수레와 양산 등을 관리하였다. 家吉이 환무천황의 측근에서 근무하였음을 알 수 있다.

783년에 國守와 함께 화조신을 사성 받은 화사씨 중에 三具足과 家麻呂(734-804), 建男, 氏繼, 弟長이 있었을 것이다. 和朝臣三具足은 784년 1월에 외종5위하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고³⁶⁾ 그해 4월에 上總國의 차관(介)으로 임

33) 『續日本紀』延暦2年 春正月 戊子條, “授女孺无位和史家吉外從五位下.”

34) 『續日本紀』延暦2年 8月 壬申條, “授外從五位下和朝臣家吉.眞神宿禰眞絲並從五位下.”

35) 『日本後紀』大同元年 5月 戊辰條, “尙殿從四位下和朝臣家吉卒.”

36) 『續日本紀』延暦3年 春正月 己卯條, “外從五位下和朝臣國守.安都宿祢眞足.正六位上文室眞

명되었다.³⁷⁾ 791년에 종5위상으로 승진하였다.³⁸⁾

和朝臣家麻呂는 804년 4월에 71세로 죽는데 『日本後紀』에 실린 그의 흥전을 통해 그가 高野朝臣弟嗣의 손자임을 알 수 있다.³⁹⁾ 弟嗣는 『續日本紀』에서는 乙繼로 표기하고 있는데, 환무천황의 외할아버지이다. 가마려는 國守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즉 가마려는 환무천황의 외사촌이었다.

家麻呂가 사서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속일본기』연력5년(786) 춘정월 무술조로, 그는 786년 1월 7일에 종7위상에서 일약 종5위하로 승진하였다.⁴⁰⁾ 가마려가 종7위상에서 종5위하로 승진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일본 고대 율령국가에서 관인이 5위 이상이 되는 것을 ‘入內’라고 하는데, ‘入內’에는 외위를 거치는 경우와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종6위상에서 종5위하로 승서되는 경우와 종6위상에서 외종5위하, 외종5위상을 거쳐 종5위하로 승서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는 유력씨족에게만 해당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國守나 家吉, 三具足은 모두 외종5위하를 거쳐서 종5위하로 승서되었으나, 家麻呂가 外位를 거치지 않고 종5위하가 된 것은 화조신씨가 유력씨족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家麻呂는 종5위하로 승서된 그달 24일에는 伊勢國의 大掾(3등관)으로 임명되었다.⁴¹⁾ 788년 2월에는 宮內省 造酒司의 장관인 酒造正이 되었고,⁴²⁾ 789년 5월에는 兵部省 造兵司의 장관인 造兵正이 되었으며,⁴³⁾ 791년 1월에는 內廐寮의 차관인 內廐助가 되었다.⁴⁴⁾ 792년 1월에 종5위상으로 승진하고, 그해 2월에 內廐助로서 美濃國의 차관(介)을 겸직하게 되었다. 793년 1

人眞屋麻呂.藤原朝臣眞作.大伴宿禰永主.大原眞人越智麻呂.和朝臣三具足.石川朝臣魚麻呂.巨勢朝臣家成.大春日朝臣諸公.安倍朝臣廣津麻呂.坂本朝臣大足.田口朝臣清麻呂.笠朝臣小宗.三方宿禰廣名.紀朝臣兄原.佐伯宿禰老竝從五位下.”

37) 『續日本紀』延曆3年 夏4月 壬寅條, “從五位下和朝臣三具足爲上總介.”

38) 『續日本紀』延曆10年 春正月 戊辰條, “從五位下賀茂朝臣大川.多治比眞人乙安.大原眞人美氣.巨勢朝臣總成.百濟王英孫.藤原朝臣繩主.和朝臣三具足.和朝臣國守.紀朝臣楫長.物部多藝宿祢國足並從五位上.”

39) 『日本後紀』延曆23年 夏4月 辛未條, “中納言從三位和朝臣家麻呂薨.詔贈從二位大納言.家麻呂.贈正一位高野朝臣弟嗣之孫也.其先百濟國人也.爲人木訥.無才學.以帝外戚.特被擢進.蕃人入相府.自此始焉.可謂人位有餘.天爵不足.其雖居貴職.逢故人者.不嫌其賤.握手相語.見者感焉.時年七十一.”

40) 『續日本紀』延曆5年 春正月 戊戌條, “從七位上和朝臣家麻呂.正六位上多治比眞人賀智.紀朝臣楫人.藤原朝臣清主.百濟王孝德竝從五位下.”

41) 『續日本紀』延曆5年 春正月 乙卯條, “以從五位下藤原朝臣宗嗣爲伊勢守.從五位下和朝臣家麻呂爲大掾.”

42) 『續日本紀』延曆7年 2月 丙午條, “從五位下和朝臣家麻呂爲造酒正.”

43) 『續日本紀』延曆8年 5月 己巳條, “從五位下和朝臣家麻呂爲造兵正.”

44) 『續日本紀』延曆10年 春正月 己丑條 “從五位下和朝臣家麻呂爲內廐助.”

월에 정5위하로 승진하였고, 2월에는 치부성의 삼등관(大輔)도 겸직하였으며, 4월에 다시 종4위하로 승진하였고, 5월에는 治部大輔로서 大和國의 장관(守)을 겸직하게 되었다. 795년 2월에는 治部大輔로서 相摸國의 장관(守)을 겸직하게 되었다.⁴⁵⁾

그는 796년 3월에는 治部大輔로서 參議를 겸직하게 되어, 의정관이 되었다.⁴⁶⁾ 그해 7월에 종4위하에서 정4위하로 승진하였고,⁴⁷⁾ 797년 3월에는 參議로 衛門府의 장관(督)을 겸직하게 되었고,⁴⁸⁾ 그해 7월에는 참의로서 兵部省의 장관(卿)을 겸직하게 되었다. ⁴⁹⁾

799년 2월에는 종3위로 참의에서 중납언으로 승진하고 治部省의 장관(卿)을 겸직하게 되었다.⁵⁰⁾ 그해 6월에는 중납언으로서 中務省의 장관(卿)을 겸직하게 되었다.⁵¹⁾ 803년 5월에 중납언으로서 宮內省의 장관(경)을 겸직하게 되었으나,⁵²⁾ 804년 4월에 죽는다. 그가 죽자 환무천황은 종2위와 대납언을 추증하였다.

가마려는 화조신씨 중에서 유일하게 의정관이 되어 생전에 중납언까지 승진한 사람으로서, 중앙관사의 주요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지방관도 겸직하였고, 치부경, 병부경, 중무경, 궁내경까지 되었다. 그의 흥전에서 그가 과묵하며 특별한 재주과 학식은 없었지만 천황의 외척이었기 때문에 발탁되어 승진하였다고 적고 있듯이, 환무천황의 외사촌이었던 점이 그의 관인으로서의 출세에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흥전에서는 그가 고관이 된 후에도 옛날에 알던 사람을 만나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악수하고 대화하였으므로 보는 사람들이 감동하였다고 한다. 그의 이러한 겸손한 성품도 그의 출세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환무천황대에 가마려 이외에도 관인으로 활약하는 화조신씨가 여러 명 있었다. 和朝臣入鹿麻呂는 797년 1월에 『속일본기』에 처음 그 이름이 보이는데, 이때 종5위하에서 종5위상으로 승진하였다.⁵³⁾ 入鹿麻呂(이루카마로)는 『正倉院文書』에서도 보이는데, 즉 805년 11월 15일에 「和朝臣今鹿麻呂」가

45) 『公卿補任』桓武天皇 延暦15年條.

46) 『公卿補任』桓武天皇 延暦15年條.

47) 『日本後紀』延暦15年 7月 丁巳條, “從四位下和朝臣家麻呂正四位下.”

48) 『日本後紀』延暦16年 3月 丁酉條, “參議正四位下和朝臣家麻呂爲兼衛門督.”

49) 『公卿補任』桓武天皇 延暦16年條.

50) 『日本後紀』延暦18年 2月 甲午條 “中納言從三位和朝臣家麻呂爲兼治部卿.”

51) 『日本後紀』延暦18年 6月 己丑條 “中納言從三位和朝臣家麻呂爲兼中務卿.”

52) 『公卿補任』桓武天皇 延暦22年條.

53) 『日本後紀』延暦16年 春正月 甲午條, “宴五位已上.賜束帛有差.(중략)從五位下藤原朝臣仲成.藤原朝臣今川.蜷淵真人岡田.和朝臣入鹿麻呂從五位上.”

종4위하 治部省의 삼등관(大輔)으로서 환무천황의 칙사로서 東大寺에 파견되어 꿀 등 약재를 시주하였다고 적고 있다.⁵⁴⁾ 入鹿麻呂(이루카마로)가 「今鹿麻呂(이루카마로)」로도 표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806년 1월에 종4위하로 伊勢國의 장관(守)이 되었으나,⁵⁵⁾ 그 다음 달에 그는 神祇伯이 되어 常陸國의 장관(守)을 겸직하게 되었다.⁵⁶⁾ 신기백은 조정의 제사를 관할하는 최고 관직으로, 中臣(大中臣朝臣)씨가 거의 독점해왔던 관직이었다. 和朝臣入鹿麻呂 이전에 중신(대중신)씨 이외에 神祇伯을 배출한 씨족은 巨勢朝臣씨와 石川朝臣씨, 文室真人씨, 多治比真人씨로, 각각 한 명씩 신기백을 배출하였다. 이 네 씨족은 역대 천황을 조상으로 하는 씨족으로, 8세기에 의정관을 배출한 씨족이기도 하였다.

환무천황은 자신의 치세 말기에 和朝臣씨를 神祇伯으로 임명하였다. 환무천황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까지 和朝臣씨의 정치적 지위를 상승시키고자 노력하였음을 말해준다. 입록마려는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입록마려 이후에 신기백으로 임명된 사람은 藤原朝臣繼業으로, 그는 嵯峨천황대인 811년 5월에 신기백으로 임명되었다.

그밖에도 환무천황대에 종5위하 이상으로 승진한 화조신씨로 和朝臣建男, 和朝臣弟長, 和朝臣氏繼, 和朝臣男成이 있다. 화조신건남은 797년 1월에 정6위상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였다.⁵⁷⁾ 환무천황이 和朝臣家麻呂와 마찬가지로 建男도 외위를 거치지 않고 入內시켰음을 알 수 있다. 건남은 797년 2월에 대재부의 삼등관(大尉)으로 임명되었으며,⁵⁸⁾ 805년 12월에는 근강국의 차관(介)이 되었다.⁵⁹⁾

和朝臣弟長과 和朝臣氏繼는 804년 1월에 종5위하로서 각각 信濃國의 차관(介)과 越後國의 차관(介)으로 임명되었다.⁶⁰⁾ 이후 弟長은 더 이상 보이지

54) 「正倉院御物下行目錄」『平安遺文』권8,3232쪽. 「正倉院御物出納文書」『大日本古文書』권25,4쪽,7쪽,8쪽.

55) 『日本後紀』大同元年 春正月 癸巳條, “從四位下和朝臣入鹿麻呂爲伊勢守.”

56) 『日本後紀』大同元年 2月 丁酉條, “從四位下藤原朝臣大繼爲伊勢守.神祇伯從四位下和朝臣入鹿麻呂爲兼常陸守.”

57) 『日本後紀』延曆16年 春正月 甲午條, “正六位上多治比真人道作.淡海真人福良麻呂.多治比真人今麻呂.大原真人眞福.藤原朝臣星雄.大中臣朝臣諸人.紀朝臣永繼.粟田朝臣入鹿.大野朝臣犬養.安倍朝臣家守.大伴宿禰大關.平群朝臣廣道.田口朝臣息繼.百濟王聰哲.佐伯宿禰鷹成.石川朝臣道益.和朝臣建男.安倍小殿朝臣野守.中臣丸朝臣豐國從五位下.”

58) 『日本後紀』延曆16年 2月 乙丑條, “參議正四位下藤原朝臣雄友爲大宰帥.從五位下和朝臣建男爲大尉.”

59) 『日本後紀』延曆24年 12月 庚戌條, “從五位下和朝臣建男爲近江介.從五位下藤原朝臣友人爲播磨權介.”

60) 『日本後紀』延曆23年 春正月 庚子條, “從五位下笠朝臣庭麻呂爲大和介.外從五位下津宿禰源

않지만, 氏繼는 806년 1월에 越後國의 장관(守)으로 승진한 후⁶¹⁾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和朝臣男成은 雄成으로도 표기되는데, 806년 2월 종5위하로서 궁내성 主殿寮의 장관(頭)으로 임명되어 평안궁 內裏의 관리 업무 책임자가 되었다.⁶²⁾

806년 4월 9일에 환무천황이 서거하고 아들 平城천황(774-824, 재위 806. 4-809. 5)이 즉위한 후, 평성천황대에 활약하는 화조신씨로는 환무천황대부터 활약하던 和朝臣建男이 808년 5월에 兵部省의 삼등관(少輔)으로 임명되었고⁶³⁾ 809년 3월에는 駿河國의 장관(守)이 되었다.⁶⁴⁾ 和朝臣男成은 808년 6월에는 中務省 직속의 大監物(종5위하 상당)이 되어 여러 관청의 창고 열쇠의 관리와 출납 사무를 감찰하였고,⁶⁵⁾ 8월에는 豊前國의 장관(守)이 되었으나,⁶⁶⁾ 이후 더 이상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

809년 5월 18일 형 平城天皇의 양위로 즉위한 嵯峨천황(786-842, 재위 809.5-823.5)대에 활약하는 화조신씨로는 和朝臣建男과 和朝臣繩繼가 있다. 환무천황, 평성천황 대에 활약하던 화조신건남은 813년 1월에는 遠江國의 장관(守)이 되었다.⁶⁷⁾ 건남은 주로 지방관으로 활약하였으나, 813년 1월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繩繼는 차아천황대인 812년 1월에 처음 그 이름이 보이는데, 이 때 정6위상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였고,⁶⁸⁾ 그 다음달에는 式部

爲山城介.從五位下大中臣朝臣弟枚爲伊賀守.從五位下大荒城臣忍國爲遠江介.從五位上高倉朝臣殿繼爲駿河守.從五位下藤原朝臣眞雄爲近江權介.大內記從五位下平群朝臣眞常爲兼大掾.從五位下和朝臣弟長爲信濃介.中衛少將從四位下巨勢朝臣野足爲兼下野守.從五位下大中臣朝臣常麻呂爲介.從五位下佐伯宿禰社屋爲出羽守.從五位下藤原朝臣山人爲越中權介.從五位下和朝臣氏繼爲越後介.(하략)”

61) 『日本後紀』大同元年 春正月 癸巳條, “從五位下和朝臣氏繼爲越後守.”

62) 『日本後紀』大同元年 2月 庚戌條, “從五位下和朝臣男成爲主殿頭.”

63) 『日本後紀』大同3年 5月 壬寅條, “右京大夫從四位下藤原朝臣藤繼爲兼兵部大輔.從五位上和朝臣建男爲少輔.”

64) 『日本後紀』大同4年 3月 丙辰條, “從五位下大中臣朝臣常麻呂爲兵部少輔.右衛士佐如故.從五位上和朝臣建男爲駿河守.圖書頭從五位下磯野王爲兼武藏守.從五位上多治比眞人八千足爲下總守.外從五位下難波連廣名爲丹波掾.”

65) 『日本後紀』大同3年 6月 乙亥條, “從五位下和朝臣男成爲大監物.(하략)”

66) 『日本後紀』大同3年 8月 辛未條, “幸神泉苑.飲宴極歡.賜五位已上綿.各有差.正五位下御長眞人廣岳爲左中辨.從五位下大伴宿禰彌繼爲中務少輔.從五位下小野朝臣眞野爲大監物.從五位下藤原朝臣承之爲大藏少輔.從五位下文室眞人正嗣爲齋宮頭.豊後守如故.從四位下紀朝臣廣濱爲美濃守.右京大夫如故.從五位下和朝臣雄成爲豊前□.從五位下紀朝臣百繼爲左衛士佐.越前介如故.” 현존 『日本後紀』에서는 豊前 다음 글자가 결락되어 있으나, 守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黑板伸夫, 森田悌編, 『譯注日本史料 日本後紀』集英社, 2003, 451쪽)

67) 『日本後紀』弘仁4年 春正月 甲子條, “從五位下藤原朝臣弟川爲伊勢介.從五位上和朝臣建男爲遠江守.”

68) 『日本後紀』弘仁3年 春正月 丙寅條, “正六位上文室眞人末嗣.藤原朝臣櫻麻呂.和朝臣繩繼.

省 散位寮의 차관(助)으로 임명되었다.⁶⁹⁾ 그 후 繩繼는 815년 3월에 中務省의 삼등관(少輔)으로 임명되었으나,⁷⁰⁾ 이후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823년 5월에 형 차아천황의 양위로 즉위한 淳和천황(786-840, 재위 823.5-833.3)대에는 화조신씨 관인들의 활약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 후 차아천황의 아들로써, 833년 3월에 삼촌 순화천황의 양위로 즉위한 仁明天황(810-850, 재위 833.3-850.5)대에 관인으로 활약한 화조신씨로는 和朝臣家主와 화조신평영이 있다. 和朝臣家主는 육국사에는 보이지 않지만 「園城寺文書」와 「北百川家所藏文書」에서 종5위상 諸陵頭 和朝臣家主라고 서명하고 있다.⁷¹⁾

和朝臣豐永은 837년 3월에 仁明天황 측근에서 근무하는 內舍人으로서 정6위상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였다.⁷²⁾ 그 후 850년 5월에 인明天황이 죽고, 그 뒤를 이어 인明天황의 아들 文德천황(827-858, 재위 850.5-858.10)이 즉위한 후 855년 윤4월에 풍영은 上總國의 차관(介)이 되었고,⁷³⁾ 그해 8월에는 종5위상으로 승진하였다.⁷⁴⁾ 그런데 862년 3월에 새로 上總國의 차관이 된 伴宿禰龍男이 상충국의 官物을 조사하니 부족한 것이 많으며 전임 차관 풍영을 구속하였고, 풍영은 억울함을 호소하여 태정관에서 그를 풀어주었다고 한다.⁷⁵⁾ 이후 풍영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文德천황대에 화조신평영 이외에 활약하는 화조신씨 출신 관인으로 和朝臣安子が 있다. 안자는 857년 1월에 정6위하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였는데, 함께 사성 받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추측하건대 이들은 모두 女官이었을 것이다.⁷⁶⁾ 안자가 처음 여관이 된 것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문덕천황대인

橘朝臣淨野.石川朝臣水長.藤原朝臣豐彦.大伴宿禰雄堅魚.粟田朝臣鯨.巨勢朝臣清野.三嶋眞人助成.從六位下安倍朝臣豐柄.粟田朝臣飽田麻呂.石川朝臣淨道.秋篠朝臣男足.從七位下八多朝臣桑田麻呂.正七位上布勢朝臣全繼從五位下.”

69) 『日本後紀』弘仁3年 2月 己亥條, “從五位下和朝臣繩繼爲散位助.”

70) 『日本後紀』弘仁6年 3月 甲申條, “從五位上安倍朝臣眞直爲左少辨.左近衛少將從五位下布勢朝臣全繼爲兼權左少辨.伊豫介如故.從五位下和朝臣繩繼爲中務少輔.從五位下藤原朝臣賀口麻呂爲侍從.武藏介如故.從五位下紀朝臣興道爲備前介.”

71) 天長10年 4月 15日字 「園城寺文書」(『平安遺文』8권, 3311쪽), 「北百川家所藏文書」(『平安遺文』권8, 3312쪽)

72) 『續日本後紀』承和4年 3月 丙子條, “授內舍人正六位上和朝臣豐永從五位下.”

73) 『日本文德天皇實錄』齊衡2年 閏四月 乙酉條, “從五位下和朝臣豐永爲上總介.”

74) 『日本文德天皇實錄』齊衡2年 8月 甲申條, “下總守從五位下清瀧朝臣藤根.上總介和朝臣豐永等並授從五位上.”

75) 『日本三代實錄』貞觀4年 3月 十九日 丁亥條, “從五位上行上總介伴宿禰龍男.到任交替.稱官物多欠.禁固前司介從五位上和朝臣豐永.豐永訟冤.太政官處分.遏其禁.”

76) 『日本文德天皇實錄』天安元年 春正月 丁未條, “無位藤原朝臣穎子授從五位上.從六位上百濟王貞琳.紀朝臣仲岑.從六位下和朝臣安子.從七位上平羣朝臣眞宗.從六位下秋篠朝臣春子.無位林

857년에 정6위하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면서 정사에 기록이 남게 된 것이다. 이후 안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858년 10월에 문덕천황이 죽고, 그해 12월에 문덕천황의 아들 清和천황(850-881, 재위 858.12-876.12)이 즉위하였다. 清和천황 대에 활약하는 화조신 씨로는 和朝臣宜子が 있다. 宜子は 867년 무위에서 일약 종5위하를 사여 받았는데,⁷⁷⁾ 이는 그녀가 女官으로서 清和天皇(850-880, 재위 858-876)의 후궁이 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清和천황은 876년 12월에 아들 陽成천황(868-949, 재위 876.12-884.3)에게 양위하였는데, 이 양성천황대에 활약한 화조신씨로는 和朝臣好道가 있다. 887년 1월에 好道는 관직을 가지지 못한 散位 신분이었지만, 정6위상에서 종5위하로 승서되었다.⁷⁸⁾

이상이 육국사에 보이는 화조신 씨이다. 육국사의 『속일본기』에 처음 그 이름이 보인 후, 『일본후기』 『속일본후기』 『일본문덕천황실록』에 계속 화조신씨 官人의 모습이 보이며, 『일본삼대실록』 기사가 끝나는 887년까지 그 이름이 보이고 있다. 『일본삼대실록』 이후로 관찬사서는 더 이상 편찬되지 않지만, 고문서에서는 鎌倉시대인 嘉元3년(1246)에 和朝臣씨가 있었음이 확인된다.⁷⁹⁾

이는 화조신씨가 환무천황의 외척이었던 점과 관련이 있다. 화조신씨는 환무천황의 모후 和史新笠의 일족으로서, 환무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환무천황대에 화사씨에서 화조신 씨로 개성하였고, 가마려를 계기로 外位를 거치지 않고 종5위하로 승서되는 등 외척으로서 특별대우를 받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환무천황의 후손이 천황자리를 이어갔으므로, 화조신 씨에 대한 특별대우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和氣朝臣清麻呂와 환무천황

환무천황의 적극적인 우대정책에 따라 화조신씨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朝臣氏子等從五位下.”

77) 『日本三代実録』貞觀9年 春正月 8日 己酉條, “外從五位上江沼臣河子.大和朝臣仲子.無位藤原朝臣佐美子.小野朝臣後賢子.田中朝臣原子.和朝臣宜子竝從五位下.”

78) 『日本三代実録』仁和3年 春正月 7日 辛巳條, “正六位上源朝臣任.太皇太后宮少進正六位下藤原朝臣枝良.左兵衛少尉文室朝臣茂典.左衛門少尉藤原朝臣宜宣宜.民部少丞藤原朝臣野風.右近衛少監兼周防掾良岑朝臣時實.左近衛將監藤原朝臣有命.大內記滋野朝臣良幹.文章生橘朝臣有株.式部大丞藤原朝臣興範.内膳典膳人朝臣淨雄.少內記三善宿禰清行.散位和朝臣好道等並從五位下.”

79) 『實躬卿記』嘉元3年 12月 14日條.

되었다. 그리고 화조신씨가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는 계보도 『속일본기』와 『신찬성씨록』에 보이게 되었다. 『속일본기』에서는 환무천황의 모후 新笠이 백제국의 遠祖 都慕王의 후손 武寧王의 아들 純陀太子의 후손이라고 적고 있다.⁸⁰⁾ 815년에 편찬된 『新撰姓氏錄』에서는 和朝臣씨가 백제국 都慕王의 18세손 武寧王에서 시작되었다고 적고 있다.⁸¹⁾

그렇다면 이러한 계보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日本後紀』延曆18년(799) 2월 을미조에 실린 和氣朝臣清麻呂의 薨傳에서는 中宮大夫가 된 화기 청마려가 中宮의 명을 받들어 『和氏譜』를 편찬하여 주상하자 환무천황이 매우 기뻐하였다고 적고 있다.⁸²⁾ 당시 중궁은 황태부인 高野朝臣新笠이었다. 和氣朝臣清麻呂의 薨傳에서는 중궁이 『화씨보』를 편찬하도록 명하였다고 적고 있지만, 이는 중궁이 중궁대부의 상급자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화씨보』의 편찬을 원한 것은 바로 환무천황이었을 것이다. 환무천황은 순인천황대와 광인천황대에 추진된 『일본서기』의 후속 사서 편찬 작업을 이어 사서 편

80) 『續日本紀』延曆8年 12月 乙未條. 同 丙申條, 同 9年 春正月 壬子條.

81) 『新撰姓氏錄』左京 諸蕃 下, 百濟, 和朝臣條.

82) 『日本後紀』延曆18年 2月 乙未條, “贈正三位行民部卿兼造宮大夫美作備前國造和氣朝臣清麻呂薨. 本姓磐梨別公. 右京人也. 後改姓藤野和氣眞人. 清麻呂爲人高直. 匪躬之節. 與姉廣虫共事高野天皇. 並蒙愛信. 任右兵衛少尉. 神護初授從五位下. 遷近衛將監. 特賜封五十戶. 姉廣虫及笄年. 許嫁從五位下葛木宿祢戶主. 既而天皇落飴. 隨出家爲御弟子. 法名法均. 授進守大夫尼位. 委以腹心. 賜四位封并位祿位田. 寶字八年大保惠美忍勝叛逆伏誅. 連及當斬者三百七十五人. 法均切諫. 天皇納之. 減死刑以處流徒. 乱止之後. 民苦飢疫. 棄子草間. 遣人收養. 得八十三兒. 同名養子. 賜葛木首. 此時僧道鏡得幸於天皇. 出入警蹕. 一擬乘輿. 號曰法王. 大宰主神習宜阿蘇麻呂媚事道鏡. 矯八幡神教言. 令道鏡即帝位. 天下太平. 道鏡聞之. 情喜自負. 天皇召清麻呂於牀下. 曰. 夢有人來. 稱八幡神使云. 爲奏事請尼法均. 朕答曰. 法均軟弱. 難堪遠路. 其代遣清麻呂. 汝宜早參聽神之教. 道鏡復喚清麻呂. 募以大臣之位. 先是路眞人豐永爲道鏡之師. 語清麻呂云. 道鏡若登天位. 吾以何面目可爲其臣. 吾與二三子共爲今日之伯夷耳. 清麻呂深然其言. 常懷致命之志. 往詣神宮. 神託宣云云. 清麻呂祈曰. 今大神所教. 是國家之大事也. 託宣難信. 願示神異. 神即忽然現形. 其長三丈許. 色如滿月. 清麻呂消魂失度. 不能仰見. 於是神託宣. 我國家君臣分定. 而道鏡悖逆無道. 輒望神器. 是以神靈震怒. 不聽其祈. 汝歸如吾言奏之. 天之日嗣必續皇緒. 汝勿懼道鏡之怨. 吾必相濟. 清麻呂歸來. 奏如神教. 天皇不忍誅. 爲因幡員外介. 尋改姓名. 爲別部磯麻呂. 流于大隅國. 尼法均還俗. 爲別部狹虫. 流于備後國. 道鏡又追將殺清麻呂於道. 雷雨晦暝. 未即行. 俄而勅使來僅得免. 于時參議右大辨藤原朝臣百川愍其忠烈. 便割備後國封鄉廿戶. 送充於配處. 寶龜元年聖帝踐祚. 有勅入京. 賜姓和氣朝臣. 復本位名. (중략) 清麻呂之先出自垂仁天皇皇子鐸石別命. 三世孫弟彥王. 從神功皇后征新羅凱旋. 明年忍熊別皇子有逆謀. 皇后遣弟彥王. 於針間吉備界山誅之. 以從軍功. 封藤原縣. 因家焉. 今分爲美作備前兩國也. 高祖父佐波良. 曾祖父波伎豆. 祖宿奈. 父乎麻呂. 墳墓在本鄉者. 拱樹成林. 清麻呂被竄之日. 爲人所伐除. 歸來上疏陳狀. 詔以佐波良等四人并清麻呂爲美作備前兩國國造. 天應元年授從四位下. 拜民部大輔. 爲攝津大夫. 異遷中宮大夫民部卿. 授從三位. 延曆十七年上表請骸骨. 優詔不許. 仍賜功田廿町. 以傳其子孫. 清麻呂練於庶務. 尤明古事. 撰民部省例廿卷. 于今傳焉. 奉中宮教. 撰和氏譜奏之. 帝甚善之. (하략)”

찬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사서의 편찬은 791년부터 시작되는데,⁸³⁾ 환무천황은 이 후속사서에는 자신의 외가 집안의 조상계보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화씨보』는 현재 전하지 않지만, 『속일본기』의 新笠 홍전과 『신찬성씨록』 화조신조에 보이는 백제 무령왕의 후손이라는 화씨의 출자에 관한 서술은 이 『화씨보』를 기초로 하였을 것이다.

이 『화씨보』를 편찬한 和氣朝臣清麻呂(733-799)는 신립 황태부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中宮職의 마지막 장관이었다. 『화씨보』라면 화씨가 편찬할 수도 있었다. 화씨는 원래 姓(카바네)이 史였듯이 문필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던 씨족이었다. 또한 환무천황대에는 女官인 和朝臣家吉이나, 參河國 장관이었던 和朝臣國守, 宮內省 造酒司의 장관과 兵部省 造兵司의 장관이었던 和朝臣家麻呂가 관인으로 활약하고 있었다. 이들이 화씨의 계보를 편찬할 수도 있었다. 그런데 화조신씨가 아니라 중궁대부인 화기조신청마려에게 『화씨보』를 편찬하도록 한 것은 이 계보 편찬 작업이 공적인 성격의 것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였다.

환무천황에게는 어머니 집안이 한미하다는 약점이 있었으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환무천황은 조상은 자손에 의해 얼마든지 귀하게 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 집안 和史씨에게 朝臣을 사성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었다. 그는 어머니 집안의 계보를 만들어 비판을 잠재우고자 하였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중궁의 명에 따른 공식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환무천황은 어떤 이유에서 화기조신청마려가 이 사업의 책임자라고 생각하였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청마려와 환무천황의 관계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기조신청마려의 薨傳에 의하면 청마려의 本姓은 磐梨別公(이와나수와케노키미)이었으나, 뒤에 藤野和氣眞人(후지노와케노마히토)으로 개성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本姓은 氏姓을 가리키는 말로,⁸⁴⁾ 청마려의 원래 씨성이 반리별공이었음을 알 수 있다. 磐梨나 藤野는 모두 備前國의 지명으로, 청마려가 備前國의 호족 출신임을 말해준다.

『속일본기』에서 청마려가 처음 보이는 것은 『續日本紀』天平神護元年(765) 춘정월 기해조로, 여기에서는 종6위상 藤野別眞人(후지노와케노마히토)清麻

83) 이재석, 「『續日本紀』 편찬의 제문제」 『일본역사연구』42, 2015.

84) 喜田新六, 「八色之姓制定以後における賜姓の意義」 『中央大學文學部紀要』史學科4, 1958.

몸로 나오고 있다.⁸⁵⁾ 이때 그는 764년 9월에 일어난 藤原仲麻呂의 난 때의 공으로, 누나 중5위하 藤野別真人廣虫女(730-799)와 함께 칭덕천황에게 훈 6등을 사여 받은 것이다.

여기에서 藤野別真人으로 표기되고 있는 점에서 청마려는 765년 1월 이전의 어느 시기엔가 藤野別真人(후지노와케노마히토)이라는 씨성을 사여 받았음을 알 수 있다. 藤野別真人이라는 씨성을 가진 사람으로 사서에 그 이름이 보이는 사람은 청마려와 그의 누나 광충 뿐인데, 이는 이 두 사람이 특별히 이 씨성을 사여 받았음을 말해준다. 真人이라는 姓은 天武 8姓 중에서 가장 높은 姓으로, 6세기 제26대 繼體천황 이후 천황의 근친이나 자손에게 주로 사여되었다. 아마도 磐梨別公이 계체천황 이후의 천황에게서 갈라져 나왔다는 계보를 청마려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덕천황(718-770, 재위 764-770)에게 藤野別真人이라는 씨성을 사여 받았을 것이다. 칭덕천황이 청마려와 광충을 특별히 믿고 총애하였음은 청마려의 홍전의 「與姉廣虫共事高野天皇.竝蒙愛信」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마려와 광충이 칭덕천황의 신임을 받게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청마려의 누나 廣虫(730-799)은 799년 1월20일에 죽는데, 『日本後紀』에는 그녀의 홍전도 실려 있다. 이에 의하면, “광충은 젊었을 때 출가하여 니가 되어 고야천황(효겸천황)을 모셨다. 인품이 정순하고 절조가 있었다. 그녀의 사적에 대해서는 청마려의 전기에 실려 있다. 환무천황이 신뢰하여 중용하였고, 淳和천황은 그녀 생전의 근무와 공적을 생각하여 정3위를 추증하였다. 향년 70세다.” 라고 적고 있다.⁸⁶⁾

그녀가 칭덕천황에게 특별히 중용된 것은 칭덕천황의 출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칭덕천황은 이미 한번 천황자리에 오른 적이 있었다. 성무천황의 양위를 받아 749년에 즉위하였는데, 이때의 그녀를 효겸천황이라고 부른다. 효겸천황은 758년 8월 모후 광명황태후의 병간호를 위해 大炊王(淳仁천황)에게 양위하고 상황이 되었으나 760년 7월에 광명황태후는 죽었다. 近江國에 새로 건설 중이던 保良宮에 761년 10월에 함께 가서 머무르던 효겸상황과 순인천황이 효겸상황을 간병하였던 승려 道鏡 문제로 사이가 나빠졌다. 결국 762년 5월 23일에 두 사람은 평성경으로 돌아갔으나, 순인천황

85) 『續日本紀』天平神護元年 春正月 己亥條, “從六位上藤野別真人清麻呂竝勳六等.”

86) 『日本後紀』延曆18年 春正月 乙丑條, “典侍正四位上和氣朝臣廣虫卒.從三位行民部卿兼攝津大夫清麻呂姉也.少而出家爲尼.供奉高野天皇.爲人貞順.節操無虧.事見清麻呂語中.皇統彌照天皇甚信重焉.今上思勞舊.追贈正三位.薨時年七十.”

은 평성궁의 중궁원으로, 효검상황은 출가하여 법화사에 들어갔다. 법화사는 광명황후가 자신의 皇后宮을 745년 5월에 尼寺로 만든 것으로, 동대사가 전국의 국분사의 총본산이었다면, 법화사는 전국의 국분니사의 총본산이었다. 법화사의 가람 조영 공사는 782년에 조법화사사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이어져, 효검상황이 거주하게 된 762년 5월에는 금당 건립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761년 6월 7일에는 이곳에서 광명황태후의 1주기가 열리기도 하였다. 효검상황은 2주기를 앞둔 762년 5월 23일에 법화사에 들어간 것이다. 이후 효검상황은 6월 3일에 5위 이상의 관인을 법화사에 불러 모은 후, 순인천황이 불효하므로 자신은 불문에 들어가 별거하겠으며, 국가의 대사는 자신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 후 효검상황은 道鏡과 吉備眞備 등을 중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였고, 순인천황은 藤原仲麻呂의 권력을 확대하도록 하여 효검상황측에 대응하였다.

효검상황이 출가한 762년 5월에 광충도 함께 출가한 것이다. 이 때 그녀의 나이는 33세였다. 이후 광충은 法均이라는 법명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764년 9월에 일어난 藤原仲麻呂의 난을 효검상황측이 진압하고 10월에 다시 효검상황이 다시 천황(칭덕천황)으로 즉위한 후에 법균도 尼로서 칭덕천황의 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던 듯하다. 이 때 칭덕천황이 청마려와 그의 누나 法均(廣虫)에게 藤野別眞人이라는 씨성을 사여하였을 것이다.

효검상황이 법균(광충)을 얼마나 신뢰하였는지는 화기조신청마려의 흥전에 보이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764년 9월의 등원중마려의 난에 연루되어 참형에 처해질 사람이 370명이 있었는데, 법균(광충)은 효검상황에게 탄원하여 이들의 감형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법균은 등원중마려의 난 때 발생한 고아 83명을 데려다 양자로 삼고 이들이 남편의 씨성인 葛木首를 가질 수 있게 허가받았다.

765년 3월에 칭덕천황은 藤野別眞人清麻呂와 廣虫(법균)에게 吉備藤野別眞人(기비노우지노와케노마히토)을 사여하였다.⁸⁷⁾ 吉備를 씨성의 앞에 추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길비국의 대표적인 씨족임을 보증하는 것이었다. 칭덕천황은 766년 10월에는 법균에게 종4위하에 준하는 대우를 하도록 하였다.⁸⁸⁾ 769년 5월 28일에 吉備藤野別眞人清麻呂 등에게 輔治能眞人(후지

87)『續日本紀』天平神護元年 三月 甲辰條, “備前國藤野郡人正六位下藤野別眞人廣虫女.右兵衛少尉從六位上藤野別眞人清麻呂等三人賜姓吉備藤野和氣眞人.藤野郡大領藤野別公子麻呂等十二人吉備藤野別宿祢.近衛從八位下別公園守等九人吉備石成別宿禰.”

노마히토)라는 씨성을 사여하였다.⁸⁹⁾輔治能(후지노)은 藤野(후지노)를 다른 한자로 표기한 것이지만, 칭덕천황의 측근임을 말해주는 한자로 바꾸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칭덕천황이 청마려를 얼마나 신임하였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미혼의 여성천황이었던 칭덕천황이 황태자를 책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769년에 大宰府의 主神 習宜阿曾麻呂가 道鏡을 천황으로 삼으면 천하가 안정될 것이라는 宇佐八幡宮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확인하는 절차로 칭덕천황이 믿고 파견한 사람이 바로 청마려였다. 그러나 청마려는 돌아와서 신하가 천황이 된 경우는 없으며, 무도한 사람을 물리치라는 신탁을 들었다고 보고하였다. 광충(법균)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칭덕천황은 청마려가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여, 9월 25일 그의 관위를 박탈하고 이름을 別部穢麻呂로 고쳐 부르게 하고, 그를 九州의 大隅로 유배보냈다. 청마려의 누나 法均(廣虫)도 환속시켜 備後에 유배 보냈다.⁹⁰⁾

칭덕천황이 그 다음해 8월 4일에 죽고 백백왕이 황태자가 된 후에는 그해 9월에 청마려와 광충(광충)은 유배에서 풀려나 평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씨명 別部(와케베)를 和氣(와케)로 고치고 이름도 원래 이름인 清麻呂로 불리게 되었다.⁹¹⁾ 770년 10월에 백백왕(광인천황)이 즉위한 후 771년 3월에는 청마려의 원래 관위였던 종5위하를 회복시켰고, 그해 9월에는 和氣宿禰라는 씨성을 사여하였고,⁹²⁾이어서 774년 9월에는 和氣朝臣을 사여하였다.⁹³⁾ 화기조신을 사성 받는 과정에서 청마려는 자신의 조상계보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였을 것이다. 이 계보는 청마려의 흥전에 보이는 11대 수인천황의 후손이라는 계보였을 것이다. 이에 따라 그와 그의 누나 광충은 朝臣을 사성

88) 『續日本紀』神護景雲2年 冬10月 庚午條, “大尼法均准從四位下.”

89) 『續日本紀』神護景雲3年 5月 乙未條, “從五位下吉備藤野和氣真人清麻呂等賜姓輔治能真人. 從八位上吉備藤野宿禰子麻呂. 從八位下吉備藤野宿禰牛養等十二人輔治能宿禰. 近衛無位吉備石成別宿禰國守等九人石成宿禰.”

90) 앞에 제시한 和氣朝臣清麻呂薨傳. 『續日本紀』神護景雲 3年 9月 己丑條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전략)始大宰主神習宜阿曾麻呂希旨. 方媚事道鏡. 因矯八幡神教言. 令道鏡即皇位. 天下太平. 道鏡聞之. 深喜自負. 天皇召清麻呂於床下. 勅曰. 昨夜夢. 八幡神使來云. 大神爲令奏事. 請尼法均. 宜汝清麻呂相代而往聽彼神命. 臨發. 道鏡語清麻呂曰. 大神所以請使者. 蓋爲告我即位之事. 因重募以官爵. 清麻呂行詣神宮. 大神託宣曰. 我國家開闢以來. 君臣定矣. 以臣爲君. 未之有也. 天之日嗣必立皇緒. 無道之人. 宜早掃除. 清麻呂來歸. 奏如神教. 於是道鏡大怒. 解清麻呂本官. 出爲因幡員外介. 未之任所. 尋有詔. 除名配於大隅. 其姊法均還俗配於備後.”

91) 『續日本紀』寶龜元年 9月 乙丑條, “徵和氣清麻呂. 廣中於備後大隅. 詣京師.”

92) 『續日本紀』寶龜2年 9月 己亥條, “從五位下和氣宿禰清麻呂爲播磨員外介.”

93) 『續日本紀』寶龜5年 9月 甲子條, “從五位下和氣宿禰清麻呂廣虫. 賜姓朝臣.”

받게 되었을 것이다. 광충은 광인천황조정에서 여관으로 근무하게 되어, 777년 1월에 종5위하에서 종5위상으로 승진하였고, 781년 3월에는 다시 종5위상으로 승진하였다.⁹⁴⁾

清麻呂는 道鏡을 천황으로 삼으라는 宇佐八幡宮의 신탁이 있었다는 보고가 거짓이었음을 밝혀 道鏡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으려던 칭덕천황의 계획을 저지한 사람이었다. 결과적으로 광인천황의 즉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었으나, 광인천황 대에는 본래 관위를 돌려받은 것 이외에 특별히 승진하지도 못 하였고, 관직도 가지지 못 하였다. 위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칭덕천황의 遺詔에 따라 즉위한 것으로 된 광인천황은⁹⁵⁾ 칭덕천황이 배신자로 낙인찍은 그를 중용할 수 없었던 듯하다.

화기조신청마려가 중용되는 것은 환무천황대에 들어서였다. 781년 4월에 광인천황의 양위로 즉위한 환무천황은 그해 11월에 청마려를 종5위하에서 일약 종4위하로 네 단계나 승진시켰다.⁹⁶⁾ 환무천황이 즉위하는 데 일등공신이었던 藤原朝臣百川(732-779)은 청마려가 유배 중일 때 그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었는데,⁹⁷⁾ 百川이 생전에 환무천황에게 그를 천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환무천황이 화기조신청마려를 매우 신뢰하였음은 두 번의 遷都가 모두 그의 제안 이후에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우선 장강경 천도와 관련해서는, 783년 3월 이후 攝津職의 장관(大夫)으로 근무하던 청마려가 784년 5월 13일에 환무천황조정에 보고하였다. 難波市 남쪽 길에서 검정 반점의 두꺼비 약 2만 마리가 남쪽으로 이동하여 사천왕사로 들어갔다가 흩어졌다는 것이었다.⁹⁸⁾ 和氣朝臣清麻呂가 두꺼비의 괴이한 행동은 천도의 필요성을 말해준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⁹⁹⁾ 그런데 이 보고를 받은 환무천황은 5월 16일에 中納言 藤原朝臣小黑麻呂(733-794)와 藤原朝臣種繼(737-785) 등을 山背國 乙訓郡 長岡村에 파견하여 땅의 형세를 살피게 하였고,¹⁰⁰⁾ 그 후 장강경 조영공사가 시작되어 그해 11월 11일에는

94) 『續日本紀』寶龜8年 春正月 癸亥條, 同 天應 元年 3月 癸酉條.

95) 김은숙, 「光仁天皇의 즉위과정」 『백제연구』61, 2015.

96) 『續日本紀』天應元年 11月 壬申條, “授從五位下和氣朝臣清麻呂從四位下.(하락).”

97) 『日本後紀』延曆18年 2月 乙未條 和氣朝臣清麻呂 薨傳

98) 『續日本紀』延曆3年 5月 癸未條, “攝津職言.今月七日卯時.蝦蟇二万許.長可四分.其色黑斑.從難波市南道.南行池列可三町.隨道南行.入四天王寺內.至於午時.皆悉散去.”

99) 平野邦雄, 『和氣清麻呂』吉川弘文館, 1964, 145쪽.

100) 『續日本紀』延曆3年 5月 丙戌條, “勅遣中納言正三位藤原朝臣小黑麻呂.從三位藤原朝臣種繼.左大辨從三位佐伯宿禰今毛人.參議近衛中將正四位上紀朝臣船守.參議神祇伯從四位上大中臣朝臣子老.右衛士督正四位上坂上大忌寸荊田麻呂.衛門督從四位上佐伯宿禰久良麻呂.陰陽助

환무천황이 長岡京으로 옮겼다.

화기조신청마려는 천도과정에서 평성경에 남아있던 황후(藤原朝臣乙牟漏)와 중궁(高野朝臣新笠)을 11월 17일에 장강경으로 모셔가는 일을 담당하였다.¹⁰¹⁾ 청마려는 784년 12월에는 長岡宮을 조영한 공로로 다시 종4위상으로 승진하였다.¹⁰²⁾ 청마려의 누나 광충도 환무천황조정에서 여관으로 근무하여 785년 1월에 종4위상으로 승진하였다.¹⁰³⁾

그러나 장강경 조영 공사가 계속 되던 785년 9월에 천도를 반대하는 大伴宿禰繼人, 佐伯宿禰高成들이 장강경 조영의 총 책임자였던 藤原朝臣種繼를 암살하였고, 환무천황의 동생 早良皇太子가 이 사건에 연좌되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후 장강경 조영 공사는 중지되었다. 섭진대부였던 화기조신청마려는 786년 8월에는 民部省의 차관(大輔)을 겸직하게 되었고, 788년 2월에 중궁대부 직까지 겸직하게 되었다.¹⁰⁴⁾

그 후 화기조신청마려는 섭진대부로 민부대보를 겸직하고 있었던 793년에 조영 사업이 중지된 長岡京을 버리고 산성국의 葛野郡에 천도할 것을 환무천황에게 은밀히 건의하였고,¹⁰⁵⁾ 환무천황은 이를 받아들여 과거 784년에 長岡京의 지세를 조사하였던 藤原朝臣小黑麻呂(733-794) 등을 793년 1월에 산성국 갈야군의 宇太村에 파견하여 그 땅을 살펴보도록 하였다.¹⁰⁶⁾ 794년 10월 23일에 미완성인 새 도읍에 천도하여, ¹⁰⁷⁾11월 8일 이 도읍을 평안경이라고 이름 지었다. ¹⁰⁸⁾

民部卿이었던 藤原朝臣小黑麻呂가 794년 1월에 죽은 후, 청마려는 민부경으로 임명되었고, 795년에는 造宮大夫로서 평안경 조영의 책임자가 되었다.

外從五位下船連田口等於山背國.相乙訓郡長岡村之地.爲遷都也.”

101) 『續日本紀』延曆3年 11月 戊申條, “天皇移幸長岡宮.” 同 甲寅條, “先是.皇后遭母氏憂.不從車駕.中宮復留在平城.是日.遣出雲守從四位下石川朝臣豐人.攝津大夫從四位下和氣朝臣清麻呂等.爲前後次第司.奉迎焉.”

102) 『續日本紀』延曆3年 12月 己巳條, “詔賜造宮有勞者爵.又免進役夫國今年田租.授從三位藤原朝臣種繼正三位.正四位上石川朝臣名足.紀朝臣船守竝從三位.從五位下氣太王.山口王.小倉王並從五位上.從四位下石川朝臣垣守.和氣朝臣清麻呂竝從四位上.從五位上多治比真人人足.大中臣朝臣諸魚竝正五位下.(하략)”

103) 『續日本紀』延曆4年 春正月 乙巳條.

104) 『續日本紀』延曆7年 2月 丙午條, “從五位下和朝臣家麻呂爲造酒正.”

105) 앞의 『日本後紀』延曆18年 2月 乙未條 和氣朝臣清麻呂 薨傳.

106) 『日本紀略』延曆12年 正月 甲午條 “遣大納言藤原小黑麻呂.左大辨紀古佐美等.相山背國葛野郡宇太村之地.爲遷都也.”

107) 『日本紀略』延曆13年 10月 23日條, “天皇自南京.遷北京.”

108) 『日本紀略』延曆13年 11月 丁丑條.

796년 9월에는 종3위로서 山城國 葛野郡의 公田 2町을 사여 받았다.¹⁰⁹⁾ 같은 달에 청마려의 누나 和氣朝臣廣虫도 환무천황의 典侍로서 山城國 紀伊郡의 陸田 2정을 사여 받았다.¹¹⁰⁾

청마려는 798년에 사직하고자 하였으나, 환무천황은 이를 만류하고 공전 20정을 하사하여 자손에게 상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¹¹¹⁾ 799년 1월에 그의 누나 광충이 죽은 지 한 달여 지난 2월 21일에 청마려가 종3위 行 民部卿 겸 攝津大夫, 造宮大夫, 美作備前國造로서 죽자, 환무천황은 그에게 정3위를 추증하였다. 환무천황이 청마려와 그의 누나 광충을 죽을 때까지 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6. 『和氏譜』의 편찬과 百濟王仁貞, 津連眞道

환무천황이 신임하던 측근이었던 화기조신청마려가 수행한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이 『화씨보』의 편찬이었다. 자신의 외가 집안의 계보를 만들고자 하였던 환무천황은 이를 수행할 사람으로 청마려를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업을 中宮(신립황태부인)의 명에 의한 공식적인 사업이라는 형식을 갖추기 위해 788년 2월에 청마려를 중궁대부로 임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화기조신마려가 『화씨보』 편찬의 책임자로 발탁된 이유는 무엇일까? 청마려의 흥전에 의하면 그는 古事に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며, 『民部省例』라는 책도 편찬하였다고 한다. 『민부성례』는 청마려가 786년 8월 이후 민부성의 차관을 겸직하였을 때 편찬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그는 『민부성례』 『화씨보』 이외에도 和氣氏の 系譜를 편찬한 경험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화기씨계보는 『和氣氏系圖』만이 전하고 있는데,¹¹²⁾ 이 계도에 의하면 화기씨는 垂仁帝의 후손이다. 이는 『일본후기』에 실린 화기조신청마려의 흥전과 『신찬성씨록』 화기조신조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칭덕천황대에 청마려와 그의 누나 광충이 받은 씨성은 藤野別眞人, 吉備藤野別眞人, 輔治能眞人 등으로 모두 眞人을 姓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는 청마려와 광충에게 제26대 繼體천황 이후의 천황을 조상으로 주장하는

109) 『日本後紀』延暦15年 9月 戊申條, “山城国葛野郡公田二町賜從三位和氣朝臣清麻呂.”

110) 『日本後紀』延暦15年 9月 丙申條, “山城国紀伊郡陸田二町賜典侍從四位上和氣朝臣廣虫.”

111) 『日本後紀』延暦18年 2月 乙未條의 和氣朝臣清麻呂 薨傳.

112) 「和氣氏系圖」『群書類從』第5輯, 群書類從刊行會, 1954.

계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청마려의 조상이 제11대 垂仁천황의 아들 鐸石別命이라는 주장은 뒤에 조상을 바꾼 계보를 새로 만들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조상 계보가 화기조신청마려의 흥전에 보인다는 점에서 이는 그가 생전에 만든 계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계보를 만든 것은 유배에서 풀려나 和氣朝臣이라는 씨성을 774년 9월 이전이었을 것이다.

그는 환무천황이 외가인 화조신씨의 계보를 편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새로 和氣씨 계보를 개변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환무천황의 외가인 화조신씨의 계보의 편찬을 은밀히 건의하였을 것이다. 편찬예정인 『일본서기』의 후속 사서에 기재되기 위해서도 환무천황에게는 자신의 외가인 화조신씨의 조상계보는 꼭 필요하였다.

그런데 화기조신청마려야말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자신의 은밀한 측근으로서, 화기씨 계보를 새로 편찬한 경험 이외에 화기조신청마려라는 인물의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道鏡의 즉위를 막음으로써 천지천황-광인천황-환무천황으로 이어지는 천황가의 역사를 가능하게 한 공신이었다. 게다가 화기조신청마려는 칭덕천황과 道鏡 정권 시대에 감히 최고 권력자의 뜻을 거슬러 고초를 겪은 사람이었다. 화기조신청마려의 파란만장한 경력은 그가 목숨을 걸고 올바른 말과 행동을 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최고 권력자에게도 굴하지 않는 공정한 사람이라는 그의 이미지는 그가 편찬한 책에 대한 인상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 점에 환무천황은 주목하였을 것이다. 환무천황은 和氏 계보를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은 화기조신청마려 이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대해 비판이나 구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그래서 이 계보는 최고 권력자에게도 굴하지 않았던 사람이 편찬한 것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환무천황은 和氣朝臣清麻呂를 중궁대부로 임명하여 『화씨보』의 편찬을 맡긴 것이다.

清麻呂는 『화씨보』 편찬을 위해서 여러 자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중무경을 역임한 적이 있는 중무성 관할의 圖書寮에는 여러 가지 사료가 있으며, 祕庫에는 중요문서가 보관되어 있는데¹¹³⁾ 이는 함부로 꺼내볼 수 없다는 것을 중무경을 역임하였던 환무천황은 잘 알고 있었다. 환무천황은 청마려의 작업을 돕기 위해 788년 6월에 도서관으로 津連眞道

113) 서보경, 『『新撰姓氏錄』의 편찬 자료와 勘校』 『일본연구』 76, 2018.

(741-814)를 임명하였다. 津連眞道는 789년 3월에 도서료의 장관이 되었는데, 이 津連眞道가 청마려의 『화씨보』 편찬에 참가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津連眞道는 백제계 씨족인 津連씨 출신으로, 역시 환무천황이 신임하던 사람이었다. 津連眞道가 처음 사서에 보이는 것은 광인천황대로, 寶龜9년(778) 2월에 中務省 內記局의 少內記(정8위 상당관직)로 임명되어 천황의 詔勅과 宣命, 관위 사여 문서(位記)의 기초, 천황의 공적인 행동 기록을 담당하다가, 780년에 근강국의 4등관(少目)이 되었다. 환무천황대 초기에는 그는 주로 군사관련 직책을 역임하여, 782년에 右衛士府의 少尉, 783년 1월에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고, 5월에 近江國의 3등관(大掾)으로서 左衛士府의 소위를 겸직하였다. 784년 4월에는 近江國의 3등관으로서 右衛士府의 大尉가 되었으며, 그해 11월에는 左兵衛府의 차관(佐)이 되었다.

환무천황이 津連眞道の 능력을 높게 산 것은 785년 11월 25일에는 환무천황의 맏아들 安殿황태자(774-824, 뒤의 平城천황 재위 806-809)의 동궁학사로 임명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이후 그는 806년에 안전황태자가 즉위할 때까지 이 직을 유지하였다.¹¹⁴⁾

788년 2월에는 津連眞道는 伊豫國의 차관(介)을 겸직하였고, 그해 6월에는 도서료의 차관을 겸직하게 되었다. 789년 1월에 종5위상으로 승진하고 그해 3월에는 도서료의 장관을 겸직하게 된 것이다. 도서료는 국립도서관과 같은 곳이었으므로, 진련진도는 『일본서기』를 비롯한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화기조신청마려의 『화씨보』 편찬을 도와주었을 것이다.

和氣朝臣清麻呂는 『고사기』나 『일본서기』에는 和史(倭史)씨가 보이지 않지만, 『일본서기』에 보이는 倭君이 和史(倭史)씨와 마찬가지로 씨명이 倭라는 점에 착목하였다. 『일본서기』 무열천황 7년(504)조에서는 백제왕이 骨族斯我君을 무열천황조정에 파견하였다고 적고, 사아군의 아들 法師君이 倭君씨의 조상이 되었다고 적고 있다.¹¹⁵⁾ 이 倭君씨가 倭史씨와 동일 씨족이라고 할 수 있다면 왜사씨는 백제왕의 골족이 되는 것이다.¹¹⁶⁾

114) 『續日本紀』延暦4年 11月 丁巳條, “詔立安殿親王爲皇太子.大赦天下.高年孝義及鰥寡孤獨不能自存者.並加賑恤焉.是日.(중략)大納言中務卿正三位藤原朝臣繼繩爲兼皇太子傳.大外記從五位下朝原忌寸道永.左兵衛佐從五位下津連眞道並爲學士.參議從四位上紀朝臣古佐美爲春宮大夫.中衛中將式部大輔但馬守如故.從五位上安倍朝臣廣津麻呂爲亮.皇后宮少進常陸大掾如故.”

115) 『日本書紀』武烈天皇7年 夏4月條, “百濟王遣期我君進調.別表曰.前進調使麻那者非百濟國主之骨族也.故謹遣斯我奉事於朝.遂有子.曰法師君.是倭君之先也.”

116) 이근우는 郡姓씨족은 대부분 5위 이상에 오를 수 있는 家格을 가지고 있었던 데 반해

그런데 사아군의 파견 이후 『일본서기』 계체천황 7년(513) 추8월 계미삭 무신조에서는 “백제의 태자 淳陀가 죽었다(薨).”고 적고 있다. 순타태자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를 비롯한 한국 측 사료에는 보이지 않는다. 위의 순타의 사망 기사는 「百濟本記」에 의거한 기사로 추정되지만 순타가 백제에서 죽었는지 왜국에서 죽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일본서기』에서는 사아군을 파견한 백제왕의 이름과 백제 태자가 순타가 어느 왕대의 태자였는지 적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일본서기』무열천황 4년(501) 시세조의 무령왕 즉위 기사¹¹⁷⁾와 계체천황17년(523) 5월조의 무령왕 사망기사, 계체천황18년(524) 춘정월조의 백제태자 明의 즉위기사¹¹⁸⁾를 통해 『일본서기』 편찬자는 이때의 백제의 왕이 무령왕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왜군씨의 조상 사아군과 백제 태자 순타는 모두 무령왕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된다.

화기조신청마려는 『일본서기』에 보이는 무열천황 7년의 백제왕의 斯我君 파견 기사와 계체천황7년의 백제태자 순타 기사의 내용을 융합하여 和氏의 조상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기로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505년에 무령왕이 무열조정에 파견한 골족 사아군은 순타태자로, 무령왕의 명으로 505년에 왜국에 파견되어 체재하다가 513년에 죽었다. 사아군(순타태자)의 아들 법사군과 그 후손이 왜국의 倭(현재 奈良縣) 지역에 계속 거주하면서 倭君氏로 불리게 되었으며, 이들 중에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倭史씨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사씨의 조상을 무령왕의 아들 순타태자로 놓기 위해서는 百濟王氏의 보증이 필요하였다. 백제 의자왕의 아들 善光(禪廣)으로부터 시작되는 백제왕씨에게는 백제왕의 계보가 있어, 이 계보가 백제왕의 정통 계보로 인정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화기조신청마려는 백제왕씨를 『화씨보』의 편찬에 참가시키도록 환무천황에게 건의하였을 것이다. 환무천황은 789년 3월에 중궁직의 차관(亮)으로 종5위하 百濟王仁貞을 임명하였다. ¹¹⁹⁾

百濟王仁貞이 사서에 처음 보이는 것은 광인천황대인 777년 1월로 종6위

史姓 씨족은 대부분 6위-8위에 머물렀던 점에서 왜군과 왜사는 같은 씨족일 수 없다고 보았다.(이근우, 앞 논문)

117) 『日本書紀』武烈天皇4年 是歲條, “百濟末多王無道. 暴虐百姓. 國人遂除而立嶋王. 是爲武寧王.”

118) 『日本書紀』繼體天皇17年 夏5月條, “百濟國王武寧薨.” 同 繼體天皇18年 春正月條, “百濟太子明即位.”

119) 『續日本紀』延暦8年 3月 戊午條, “從五位下百濟王仁貞爲中宮亮.”

상에서 종5위하로 승진하였는데, 그는 그 후 그해 10월에 궁성의 문의 경비를 담당하는 衛門府의 정원 외 차관(員外佐)으로 임명되었다.¹²⁰⁾ 그리고 781년 4월에 환무천황이 즉위한 직후에는 천황의 호위를 담당하는 近衛府의 정원 외 차관(員外少將)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782년 1월에는 播磨國의 차관(介)으로 임명되어 지방관이 되었으나, 789년 3월에 중궁량으로 임명되어 환무천황의 모후 新笠皇태부인의 측근에서 활약하게 된 것이다.

789년 3월에 백제왕씨로서 백제왕인정보다 상위에 있었던 사람으로는 女官으로서 환무천황의 尙侍였던 종3위 百濟王明信과 상충국의 장관(守)이었던 정5위상 百濟王玄鏡이 있었다. 여관이었던 百濟王明信과 上總國의 장관(守)으로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백제왕현경을 제외하고 789년 3월 당시에 百濟王仁貞은 백제왕씨 중에서 가장 고위자였다.

789년 3월에 中宮亮으로 임명된 백제왕인정은 백제왕씨를 대표하여 和氣清麻呂의 『화씨보』 편찬을 도왔다. 和氣朝臣清麻呂가 중궁대부가 된 788년 2월 이후에 편찬 작업이 시작된 『화씨보』는 백제왕인정이 중궁량이 된 789년 3월 이후 편찬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789년 12월 28일에 신립황태부인이 죽자, 790년 1월 14일에 신립황태부인의 시호를 정하고, 15일에 大枝山陵에 매장한 후, 그녀의 시호의 유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其百濟遠祖都慕王者.河伯之女感日精而所生.皇太后卽其後也」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화씨보』에 이미 이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백제의 먼 조상 都慕王은 하백의 딸이 해에 감응해서 낳은 사람이라는 내용은 백제왕씨가 가지고 있던 조상 계보에 있었던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로써 아버지 쪽으로 천조대신이라는 日神의 후손이었던 환무천황은 어머니쪽으로도 日神의 후손이 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新笠 皇태부인의 사후 화기조신청마려와 백제왕인정은 790년 1월 26일에 임명한 周忌御齋會司 10명 중에 포함되어 신립황태부인의 1周忌 불교 齋會를 준비하는 임무를 맡았다.¹²¹⁾ 周忌御齋會司로 임명된 10명 중 7명은 789년 12월 29일 신립황태부인의 장례를 담당하는 御葬司(藤原朝臣繼繩, 神王, 紀

120) 『續日本紀』寶龜8年 春正月 庚申條, “正六位上文室真人久賀麻呂.爲奈真人豊人.田口朝臣祖人.百濟王仁貞.紀朝臣豊庭.佐味朝臣山守.下毛野朝臣船足.波多朝臣百足.車持朝臣諸成.笠朝臣望足.縣犬養宿祢伯.當麻真人枚人.高橋朝臣祖麻呂並從五位下.”

121) 『續日本紀』延暦9年 春正月 癸亥條, “以從二位藤原朝臣繼繩.正三位藤原朝臣小黑麻呂.正四位上神王.正四位下紀朝臣古佐美.從四位上和氣朝臣清麻呂.正五位下文室真人餘企.從五位上藤原朝臣黑麻呂.百濟王仁貞.三嶋真人名繼.從五位下文室真人八嶋.爲周忌御齋會司.六位已下官九人.”

朝臣古佐美,文室眞人餘企,藤原朝臣小黑麻呂)나 山作司(藤原朝臣小黑麻呂,文室眞人八嶋)로 임명되었던 사람이었다. 7명 중에는 당시 태정관의 최고위자였던 대납인 藤原朝臣繼繩을 비롯하여, 중납인 藤原朝臣小黑麻呂, 參議 神王과 紀朝臣古佐美 등 의정관 등이 거의 다 포함되었고,¹²²⁾ 황족 출신의 文室眞人餘企와 八嶋가 포함되었다.

신립 황태부인을 790년 1월 15일에 大枝山陵에 매장하면서¹²³⁾ 어장사와 산작사의 임무는 끝나게 되었고, 신립황태부인 1주기 행사를 위해 새로 周忌御齋會司가 임명되었는데, 御葬司나 山作司로 임명되지 않은 사람 중에서 周忌御齋會司로 임명된 사람은 和氣朝臣清麻呂, 百濟王仁貞, 三嶋眞人名繼이었다. 화기조신청마려와 백제왕인정은 중궁대부와 중궁량으로서 말년의 신립 황태부인의 측근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周忌御齋會司에 임명된 것이다.

한편 三嶋眞人名繼는 서명천황의 황자 賀陽王의 후손으로¹²⁴⁾ 환무천황대인 785년에 內廐寮의 장관(頭)과 山背國의 차관(介)을 겸직하였고, 786년 2월에는 內廐寮의 장관(頭)으로서 산배국의 장관(守)을 겸직하게 된 사람이다.¹²⁵⁾ 신립황태부인의 산릉이 그녀의 고향 山背國 乙訓郡 大枝郷에 소재하였으므로, 환무천황은 산배국의 장관인 三嶋眞人名繼를 周忌御齋會司로 임명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환무천황은 790년 3월에는 새로 巨勢朝臣嶋人을 山背國의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해 6월에 삼도진인명계에게는 內廐寮의 장관(頭)과 美作國의 장관(守)을 겸직시킨다.¹²⁶⁾ 고야신립 황태부인 1주기 행사는 790년 12월 28일에 대안사에서 열렸는데, 이에 대한 서술은 매우 간략하게 남아 있어, 周忌御齋會司의 역할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¹²⁷⁾

신립황태부인의 장례를 마친지 한 달여가 지난 790년 2월 27일에 환무천황은 대납인 藤原朝臣繼繩을 우대신으로 승진시키고 새로 참의를 보충하는 등 태정관 인사를 단행하고, 일부 고위 관인의 관위를 올려주었는데, 이때 和氣朝臣清麻呂도 중4위상에서 정4위하로 승진시켰다. ¹²⁸⁾

122) 『公卿補任』桓武天皇 延暦9年條.

123) 『續日本紀』延暦9年 春正月 壬子條.

124) 『新撰姓氏錄』左京 皇別 三嶋眞人條.

125) 『續日本紀』延暦5年 2월 丁丑條, “內廐頭從五位上三嶋眞人名繼爲兼山背守.”

126) 『續日本紀』延暦9年 3月 丙午條, 同 延暦9年 6月 辛酉條, “內廐頭從五位上三嶋眞人名繼爲兼美作守.”

127) 『續日本紀』延暦9年 12月 己未條, “是日.當中宮周忌.於大安寺設齋焉.”

128) 『續日本紀』延暦9年 2月 甲午條, “詔以大納言從二位藤原朝臣繼繩爲右大臣.中納言正三位

그리고 이날 환무천황은 백제왕씨를 자신의 외척으로 대우하겠다는 뜻을 천명하였다. 百濟王鏡仁을 정6위상에서 종5위하로 한 단계 승진시키고, 百濟王玄鏡을 정5위하에서 종4위하로, 百濟王仁貞을 종5위상에서 정5위상으로 각각 두 단계나 승진시키면서, “백제왕 등은 짐의 외척이므로 지금 한 두 사람을 발탁하여 작위를 더 높여준다.”는詔를 발표한 것이다. 환무천황은 그 후 3월 26일에는 관인들에게 관직을 수여하면서 정5위상 百濟王仁貞을 태정관 辨官局의 左中辨 겸 木工寮의 장관(頭)으로, 종5위하 百濟王元信을 治部省의 3등관(少輔)으로, 종5위하 百濟王忠信을 中衛府의 少將으로 임명하였다.¹²⁹⁾ 『화씨보』편찬에 참가한 사람 중에서 백제왕인정은 791년 1월에 종4위하로 승진하였으나,¹³⁰⁾ 그해 7월에 죽는다.¹³¹⁾

『화씨보』가 편찬된 후에 나온 790년 2월 27일의 ‘백제왕 등은 짐의 외척’이라는 환무천황의 발언은, 자신의 외가를 백제왕족으로 만든 『화씨보』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무천황은 백제 무령왕의 후손 和氏의 후손인 자신에게 백제 의자왕의 후손인 百濟王氏는 외척이나 마찬가지로 말한 것이다. 이는 8세기 이후 일본 조정에서 관인으로서 활약하였던 백제왕씨를 자신의 외가 화조신씨가 같은 씨족으로 간주함으로써 자신의 외가의 격을 높이하고자 한 표현이었다. 그런데 이는 역대 백제왕의 후손이 모두 환무천황의 외척이 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하였다. 이 발언은 백제계 도래인들에게 파문을 일으켰다.

백제계 도래인들은 자신들에게 백제왕의 후손이라는 계보가 있다면 환무천황의 외척으로 간주되어 더 높은姓과 사회적 지위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왕의 후손이라는 계보는 백제왕씨가 이를 보증해 주지 않으면 안 되었음은 790년 7월에 있었던 津連眞道の 개성 과정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和氏譜』의 편찬에 참가하였을 것으로 추측

藤原朝臣小黒麻呂爲大納言.從四位上大伴宿禰潔足.從四位下石川朝臣眞守.大中臣朝臣諸魚.藤原朝臣雄友並爲參議.授從三位紀朝臣船守正三位.正五位上當麻王從四位下.無位謂奈王從五位下.正四位下紀朝臣古佐美正四位上.從四位上和氣朝臣清麻呂正四位下.正五位上文室眞人高嶋.百濟王玄鏡並從四位下.從五位上百濟王仁貞正五位上.從五位上羽栗臣翼正五位下.從五位下藤原朝臣末茂從五位上.正六位上百濟王鏡仁從五位下.是日.詔曰.百濟王等者朕之外戚也.今所以擢一兩人.加授爵位也.”

129) 『續日本紀』延曆9年 3月 壬戌條.

130) 『續日本紀』延曆10年 春正月 戊辰條.

131) 『續日本紀』延曆10年 7月 戊子條, “外從五位下安都宿禰長人爲右京亮.左中弁從四位下百濟王仁貞卒.”

한 津連眞道는 790년 7월에 左中辨 겸 木工頭 정5위상 百濟王仁貞, 治部少輔 중5위하 百濟王元信, 中衛少將 중5위하 百濟王忠信의 서명이 들어간 상표문을 제출하여 자신이 백제 貴須王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면서 朝臣 성을 내려 줄 것을 청원하여, 환무천황으로부터 菅野朝臣을 사성 받았다.¹³²⁾이 菅野朝臣 사성은 도래계 씨족에 대한 다섯 번째 朝臣 사성이었다.

津連眞道는 그 누구보다도 『화씨보』 편찬과정을 잘 알고 있던 인물로, 『화씨보』 편찬을 계기로 百濟王仁貞과 협력하면서 津連氏의 조상 계보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 후 菅野朝臣씨는 815년에 편찬된 『신찬성씨록』右京 諸蕃條에서 백제국 都慕王의 10세손 貴須王에게서 나왔다는 계보를 남기게 되었다.

村尾次郎은 790년 7월의 津連眞道の 菅野朝臣 改姓에 대해, 797년에 편찬 작업이 끝나게 되는 『속일본기』의 편찬사업에 참가하게 되는 津連眞道 등을 격려하기 위해 새로운 씨성을 사여하였다고 한다. 서보경은 『속일본기』 편찬 사업을 통해 津連眞道가 백제왕씨와 동조관계를 형성하여 백제왕족의 후손으로 출신을 바꾸는 데 성공하였다고 보았다.¹³³⁾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津連眞道와 백제왕씨의 긴밀한 관계는 이미 「화씨보」 편찬 단계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무천황이 津連眞道에게 朝臣 姓을 사여한 것은 『화씨보』 편찬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포상이었으며, 791년경부터 본격화하는 『일본서기』 후속 사서 편찬 작업에 眞道를 투입하기 전에 편찬 작업에서 眞道の 발언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津連眞道の 改姓 과정을 통해 백제왕의 후예씨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백제왕씨의 보증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화씨보』의 편찬을 계기로 백제계씨족에 대한 백제왕씨의 영향력 또한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津連眞道는 『화씨보』 편찬에 참가하고 관야조신 성을 사성받은 이후 환무천황대에 治部少輔, 治部大輔, 民部大輔, 左兵衛督, 造宮亮, 伊豫守, 勘解由長官, 左衛士督, 相模守, 但馬守 등의 관직을 두루 역임하고 805년 1월에는 參議로 임

132) 『續日本紀』延暦9年 7月 辛巳條, “左中辨正五位上兼木工頭百濟王仁貞, 治部少輔從五位下百濟王元信, 中衛少將從五位下百濟王忠信, 圖書頭從五位上兼東宮學士左兵衛佐伊豫守津連眞道等上表言, 眞道等本系出自百濟國貴須王, 貴須王者百濟始興第十六世王也, (中略)眞道等生逢昌運, 預沐天恩, 伏望, 改換連姓, 蒙賜朝臣, 於是, 勅因居賜姓菅野朝臣.”

133) 서보경, 「『同祖』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仁, 王辰爾系 씨족」 『한일관계사연구』53

명되어 의정관이 되었으며, 환무천황 말년에는 大宰大貳를 겸직하였다. 平城천황대(806.4-809.5)에도 그는 참의로서 山陰道觀察使, 刑部卿, 民部卿, 左大辨, 大藏卿, 東海道觀察使를 겸직하였고 관위는 종3위까지 승진하였다. 嵯峨천황대(809.5-823.5)에는 參議로서 宮内卿, 大藏卿, 近江守, 常陸守 등을 겸직하고, 70세가 된 811년에 參議를 사직하고¹³⁴⁾ 814년 6월에 종3위 常陸守로서 죽었다.¹³⁵⁾ 관인으로서의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환무, 평성, 차아 천황 3대에 걸쳐 여러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이지만, 菅野朝臣眞道는 자신을 중용한 환무천황의 은혜를 잊지 않고 절을 지어 환무천황을 모셨다.¹³⁶⁾

앞에서 살펴본 화기조신청마려, 백제조신인정 뿐만 아니라 津連眞道도 죽을 때까지 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결론

이상 『신찬성씨록』에서 무령왕의 후손으로 등장하는 화조신씨와 화조신씨의 계보인 「화씨보」 편찬 과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화조신씨의 원래 씨성은 倭史(和史)씨로, 8세기 전반에 조동대사사 사경소의 經師로 고문서에 이름이 보일 뿐이었던 한미한 집안이었으나, 和史新笠의 소생 환무천황의 즉위를 계기로 획기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다.

환무천황은 자신의 어머니집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和史씨에게 朝臣 姓을 사여하여 和朝臣씨로 만들었고, 화조신씨를 중용하여 공경이 된 사람까지 나오게 되었다. 환무천황은 화조신씨의 계보인 『화씨보』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환무천황이 『화씨보』 편찬에서 가장 유의한 것은 『화씨보』에 대한 지배층 내부의 평판이었다. 『화씨보』의 내용이 비판받는다면 이를 편찬한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환무천황이 『화씨보』 편찬의 중임을 맡긴 사람은 和氣朝臣清麻呂였다. 칭덕천황의 최측근 심복이었으나, 道鏡을 즉위시키려는 계획을 막아 칭덕천황의 박해를 받게 된, 최고 권력자에

134) 『日本後紀』弘仁2年 春正月 丙辰條, “參議從三位宮内卿兼常陸守菅野朝臣眞道上表致仕曰. (중략) 伏願歸骸舊里. 收迹蓬廬. 養疾以存餘生. 杜門而待終日. 無任慊懇之至. 謹詣闕奉表以聞. 許之. 但常陸守如故.”

135) 『公卿補任』嵯峨天皇 弘仁4年條.

136) 『續日本後紀』承和4年 2月 庚申條, “從五位下菅野朝臣永岑言. 亡父參議從三位眞道朝臣. 奉爲桓武天皇. 所建立道場院一區. 在山城國愛宕郡八坂鄉. 雖其疆界接八坂寺. 而其形勢猶宜別院. 由是. 道俗號曰八坂東院. 伏望. 限以四至. 別爲一院. 置僧一口. 永俾護持. 許之.”

제도 할 말을 하는 공정하고 강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덕분에 그가 『화씨보』를 편찬한다면, 지배층 내부에서 비교적 논란이 적을 것으로 환무천황은 판단한 것이었다.

화기조신청마려는 또한 자신의 집안의 조상 계보를 만들어 개변한 경험에 있는 사람으로, 그 경험을 살려 『화씨보』를 편찬하였다. 이 『화씨보』의 편찬에는 백제왕씨도 참가하였는데, 그것은 화조신씨를 백제 무령왕의 후손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백제왕씨의 도움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백제왕씨를 대표하여 百濟王仁貞이 中宮亮으로 임명되어 중궁대부인 화기조신청마려를 도왔고, 그 외에 자료를 가지고 있던 대학료의 관료로 백제계였던 津連眞道가 담당하였다.

완성된 『화씨보』에 만족한 환무천황은 790년 2월에 백제왕씨를 자신의 외척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津連眞道는 함께 『화씨보』 편찬에 참가했던 백제왕인정의 협조를 받아, 자신의 조상을 백제 貴須王(근구수왕)의 후손으로 설정하여, 朝臣을 사성 받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다른 백제계 씨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을 백제왕의 후손으로 놓으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으나, 이는 백제왕씨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었으므로, 백제왕씨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환무천황은 『화씨보』의 내용이 길이 전해지기를 바랐다. 그래서 『일본서기』의 후속 사서인 『속일본기』에 자신의 어머니의 흥전을 만드시 신고자 하였다. 따라서 791년부터 시작되어 797년에 끝난 「속일본기」에 791년까지의 내용을 담도록 하였다. 또한 799년부터는 성씨록을 편찬하기 위해 각 씨족에게 씨족의 출자를 기록한 본계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의 일부는 현존 『신찬성씨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일관계사 학술회의

「東西文部」와 大祓

서보경(부경대학교)

「東西文部」와 大祓

서보경(부경대학교)

1. 머리말
2. ‘恒例大祓’의 구조와 의미
3. ‘항례대불’과 「東西文部」
4. 의례 담당 배경과 ‘항례대불’의 성립
5. 맺음말

1. 머리말

고대 일본에서 국가적 규모로 행한 大祓은 중앙에서 시행한 ‘恒例大祓’인 「二季晦日大祓」과 諸國의 國衙에서 부정기 또는 임시로 개최한 「諸國大祓」 그리고 大嘗祭 전후나 齋宮의 卜定과 群行, 역병의 유행이나 재앙으로 인한 변고 등이 생겨 祓해야 할 일이 생겼을 때 필요에 따라 행해진 ‘臨時大祓’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매년 6월과 12월 그믐에 행해진 대불은 祈年祭, 月次祭, 新嘗祭 등과 함께 국가의 중요 제사 가운데 하나로 15세기까지 존속하였다.¹³⁷⁾ 『養老神祇令』¹³⁸⁾에 의하면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의례는 神祇官인 中臣과 卜部뿐만 아니라 「東西文部」가 祓刀 올리기와 祓詞 읽기 의례를 담당하였다고 적혀 있다. 신기관이 아닌 「동서문부」가 대불 의례 담당자로 등장하는 만큼 이들이 대불을 담당하게 된 배경이 논의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延喜祝詞式』에는 「동서문부」의 呪詞가 실려 있어서 대불 때 「동

137) 並木和子, 「大祓の構造と變遷」, 『神道學』146·147, 1990, p.45.

138) ‘신기령’은 일반적으로 唐 『永徽令』의 祀令을 답습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대불에 관한 조항은 신기령의 모법이라 간주되는 『唐令』의 祠令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본에서 독자로 만들어낸 의례이다(井上光貞 外 校注, 岩波思想大系3 『律令』, 岩波書店, 1977, 補注18 pp.538-539).

서문부」가 읽은 불사의 내용을 살피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동서문부」의 대불 의례에 관한 연구는 불사 읽기 의례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먼저 「동서문부」가 읽은 불사의 내용이 도교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¹³⁹⁾에 의거하여 일본의 도교 도입과 불사의 성립 시기와 대불을 담당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¹⁴⁰⁾ 그런데 「동서문부」의 의례는 ‘항례대불’을 구성 하는 요소의 하나인 만큼 「동서문부」의 불사 내용의 분석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동서문부」의 대불 의례 집행에 관한 문제를 제대로 해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항례대불’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검토를 진행한 뒤에 「동서문부」가 대불을 담당하게 된 배경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令義解』와 『令集解』의 불사에 관한 주석에 기재된 “漢音(漢語, 中國語)으로 읽는다.”는 것과 『延喜四時祭式上』에 기재된 대불에 사용된 물품에 ‘말’이 등장하는 것에 주목하여 말 문화, 중국어, 중국문화와 史姓 씨족의 연관성을 규명한 연구가 행해졌다.¹⁴¹⁾ 말과 관련된 문화와 중국어의 사용 등이 「도래」계 씨족이 가진 특성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만, 이 설명은 「동서문부」가 아닌 사성 씨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동서문부」의 ‘항례대불’의 집행은 令文에 등장하는 「동서문부」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정한 뒤에 「동서문부」가 대불 의례를 담당하게 된 배경과 의미, 그리고 ‘항례대불’이 정립된 시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동서문부」의 대불 의례 집행 문제를 연구의 축으로 삼아 ‘항례대불’의 구조와 의미, 성립 시기 등을 재검토하려고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항례대불’의 일익을 담당한 「동서문부」의 실체를 규정하여 대불 의례를 담당하게 된 배경을 규명하려 한다. 일련의 작업이 「도래」계 씨족의 일본에서의 삶을 이해하는 단서를 찾는 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39) 黑板勝美, 「我が上代における道家思想及び道教について」, 『史林』8-1, 1923, pp.44-45 ; 津田左右吉, 「神代の物語」 『日本古典の研究 上』 津田左右吉全集1, 岩波書店, 1963, p.321.

140) 福永光司, 「天皇と真人」 『道教と古代の天皇制 古代史・新考』, 徳間書店, 1978, p.41, 上田正昭, 「古代信仰と道教」, 같은 책, pp.56-58 ; 高山繁, 「日本古代の道教」, 『古代史研究の最前線』, 雄山閣, 1986, p.54 ; 大山城一, 「超越的王權の確立」 『古代國家と大化改新』, 吉川弘文館, 1988, pp.275-277 ; 増尾伸一郎, 「古寫經の跋文と道教的思惟—坂上忌寸石槌供養經を中心に—」, 『古代史研究の課題と方法』, 國書刊行會, 1988, pp.221-221 등.

141) 新川登龜男, 「儀禮の言葉と「もの」」 『日本古代の儀禮と表現—アジアの中の政治文化—』, 吉川弘文館, 1999, pp.105-106 ; 加藤謙吉, 「フミヒトの活動形態と機動性」 『大和政權とフミヒト制』, 吉川弘文館, 2001, p.79 등.

2. ‘恒例大祓’의 구조와 의미

『養老神祇令』大祓조에는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 의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영문에 의거하여 대불 의례의 구조와 의미를 살펴보려 한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사료1】

- 1) 『養老神祇令』大祓條 「凡六月十二月晦日大祓者. 中臣上御祓麻. 東西文部上祓刀. 讀祓詞. 訖, 百官男女. 聚集祓所. 中臣宣祓詞. 卜部爲解除」

1)의 신기령 대불조에는 “무릇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은 ① 中臣(나카토미)이 御祓麻(신기 제사에서 사용하는 삼베)를 올린다. 東西文部(야마토가와 치노후미)가 祓刀를 올리고 祓詞를 읽는다. ② 마치면 백관남녀가 불소에 모인다. 중신이 불사를 선포하고 卜部(우라베)¹⁴²⁾가 해제한다.”라고 적혀 있다. 1)의 신기령 대불조는 「訖」을 전후로 전자가 끝나면 후자가 시작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전후 의례를 ①, ②로 나누어 의례의 대상과 장소, 내용 등에 관해 살펴보자.

1)의 ①에는 ‘중신의 어불마 올리기’에 이어 ‘동서문부의 불도 올리기와 불사 읽기’ 의례가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의례가 이루어진 장소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영집해』에 인용된 『古記』에는 「동서문부」의 불도 의례가 진행된 곳을 「御所」¹⁴³⁾라고 적혀 있고, 『跡記』에는 불도[劍]현상이 「천황」¹⁴⁴⁾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또 ①에는 「御祓麻」, 「上祓刀」 등의 경어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어소」에서 진행된 천황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천황대불’¹⁴⁵⁾에 관한 의례가 기재된 것이다. 그리고 『延喜四時祭式上』의 「六月晦日大祓」조에는 대불에 사용된 물품(祓料, 祓具)이 기재

142) 卜部씨의 氏文인 『新撰龜相記』에는吉凶을 龜甲을 이용하여 점치는 龜卜의 기원과 大祓, 鎮火祭, 鎮魂祭 등 신기 씨족인 북부씨가 관계한 제사의 기원이 기재되어 있다(淺岡悦子, 「古代卜部の研究—『新撰龜相記』からみる祭祀氏族の系譜—」, 『人間文化研究』27, 2017, p.46).

143) 【사료6】 의 4) 참조.

144) 【사료6】 의 2) 참조.

145) 並木和子は 헤이안시대의 ‘6월과 12월 그믐의 御贖’ 의례가 중궁 이하를 대상으로 한 점에 주목하여 올령기 太上天皇 이하에게도 1)과 유사한 의례가 존재했을 것이지만, 승에 서는 「대불」로 규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並木和子, 앞의 논문, p.31).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金裝橫刀 2구 등에는 「동서문부」가 관여한다는 주장 달려 있다.¹⁴⁶⁾ 또 『연희사시제식상』의 御贖條에도 금장횡도 2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中宮御贖[東宮도 이에 준한다.]조에는 금장횡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¹⁴⁷⁾ 따라서 『연희사시제식상』의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에 사용될 물품이라 기재된 금장횡도 2구는 「동서문부」가 천황에게 올린 불도를 가리키는 것이며, 불도 올리기는 ‘천황’만을 대상으로 한 의례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②의 「백관남녀」를 대상으로 한 대불에 관해서는 『양로령』의 공적 주석서인 『영의해』¹⁴⁸⁾에는 주석이 보이지 않지만 사찬 주석서인 『영집해』¹⁴⁹⁾에는 주석이 붙어 있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사료2】

- 1) 「穴云. 文云. 百官男女. 聚集祓所. 未知. 男官女官之官歟. 若舉官內歟. 又里人. 何. 答. 男官女官之人. 不限官人雜色及直丁. 皆可聚集. 但里人進却任意耳. 其可集人. 不參者. 依律科罪耳」
- 2) 「私. 職制律云. 凡祭祀及朝會侍衛. 行事失錯. 及違失儀式者. 答卅. 應集而主司不告. 及告而不至者. 而不各答五十」

1)은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穴記』¹⁵⁰⁾를 인용한 주석이다. 『혈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첫째, 조문에서 말하는 불소에 집결한 「백관남녀」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관해 “남관여관 모두를 칭

146) 【사료7】의 1) 참조.

147) 『延喜式四時祭式上』 「御贖 鐵人像二枚. 金裝橫刀二口. 五色薄繩各一丈一尺. 絲三兩. 安藝木綿二斤. 凡木綿一斤. 麻二斤…宮主一人. 卜部五人. 明衣料調布三端三丈六尺」, 「中宮御贖[東宮准此.] 鐵人像二枚. 五色薄繩各一丈一尺. 絲三兩. 安藝木綿二斤. 凡木綿一斤. 麻二斤…宮主一人. 卜部五人. 明衣料調布三端三丈六尺[但東宮凡木綿. 麻. 米. 酒. 鰻. 腊. 鹽. 柏等八種半減. 自餘物同中宮.]」

148) 瀧川政次郎, 「定本令集解釋義」解題 『日本法制史研究』, 有斐閣, 1941, p.194.

149) 『영집해』는 9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초에 명법가 惟宗直本이 『대보령』의 주석인 『고기』를 비롯하여 『양로령』의 영문과 義解 등에 관한 명법가들의 여러 가지 설을 집대성한 것이다. 유종직본은 『일본삼대실록』 元慶 원년(877) 12월 25일 신묘조와 원경 7년(883) 12월 25일 정사조에 舊姓이 秦公(하타노기미)이고 본관이 讚岐國(사누키국) 那珂郡(나가군, 현재 香川縣[가가와현]에 해당)이며 秦始皇帝의 12세손, 功滿王의 아들, 融通王의 후손이라고 적혀 있다.

150) 『穴記』는 弘仁年間(810~824)~貞觀年間(859~877)에 쓴 주석이고, 『令釋』과 『赤記』는 延暦年間(782~806)에 이루어진 주석이다(井上光貞, 「日本律令の成立とその注釋書」 『日本古代思想史の研究』 井上光貞著作集2, 1986, 岩波書店, p.126, p.136).

하며 무릇 관인, 雜色 및 直丁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매일 출사하는 상근관인인 長上官과 교체 근무하는 番上官인 잡색이나 직정 등을 포함한 「남관여관」 전체를 참가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기제사 가운데 하나인 月次祭와 祇年祭 등도 백관이 참가하는 의례로 규정되어 있지만, 각 司의 4등관인 主典¹⁵¹⁾ 이상을 참가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참가 대상이라는 면에서 보면 ‘백관대불’의 대상이 다른 제사에 비해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양로직원령』에 기초하면 2관 8성의 4등관 정원이 332인이고 여기에 伴部(율령제에서 각 관사에 배속된 번상 관인)까지 포함하면 총 정원이 6487인에 이른다.¹⁵²⁾ 이 통계에 따르면 상당한 인원이 대불의 대상인 셈이다. 둘째, 「里人」 등 관인이 아닌 일반인들의 참가 여부에 관한 물음에 관해서는 「任意」라는 주석을 달고 있어 이들을 참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셋째, 불참자는 「律」에 의거해서 죄를 부과한다고 적혀 있다. 또 2)의 私說은 『영집해』의 저자인 惟宗直本(고레무네 나오토)이 부가한 것이다. 유종직본은 『養老職制律』 「祭祀朝會行事失錯」조의 “의례를 행함에 있어 틀리거나 잘못이 있을 경우 태 40, 마땅히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았거나 알렸는데 참가하지 않은 경우 각기 태 50이다.”라는 율문을 인용하고 있다. 이러한 『영집해』의 주석이 존재한 것으로 보아 의례 참가에 관한 의무규정이 空文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사료1】 1)에는 「백관남녀」를 대상으로 한 의례가 「祓所」에서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지만 구체적인 장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平城宮에 관한 기재라고 간주되는 『法曹類林』에 인용된 「式部記文」에 의하면 6월과 12월 그믐에 백관이 집결하는 대불의가 「大伴任生門之大路」¹⁵³⁾에서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다.¹⁵⁴⁾ 따라서 대불의 참가 인원 등을 고려하면 대불은 대반

151) 主典은 율령제 4등관의 최하위 관을 가리킨다. 기록과 문서를 기초하거나 공문을 읽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太政官과 神祇官에서는 史, 省에서는 録, 寮는 属, 司는 令史, 國司는 目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등 관사에 따라 표기는 다르지만 ‘사칸’이라고 읽는다.

152) 直木孝次郎, 「律令官制における皇親勢力の一考察」『奈良時代史の諸問題』, 塙書房, 1973, pp.272-273 二官八省定員表 참조.

153) 『法曹類林』200 公務 「式部文云, 六月十二月晦日百官會集. 大祓儀. 其日平坦. 大藏. 木工. 掃部. 帳幄鋪設. 御大伴任生門之大路各有常儀」

154) 『양로령』에는 궁의 외곽을 둘러싼 벽에 설치된 문을 「宮城門」이라 적혀 있다. 남북에 각기 3개 동서에 각기 4개의 문이 있는데 동서의 가장 북쪽에 설치된 2개의 통용문을 제외한 12개의 문을 ‘宮城十二門’이라고 부른다. 藤原宮, 平城宮, 長岡宮과 平安宮 등의 창건 당초에는 예부터 문의 守衛를 담당한 씨족의 명칭을 문의 이름으로 삼았지만 이후에 중국풍의 개명이 이루어졌다. 예컨대 조정의 유력 씨족인 大伴이라는 씨명이 붙여진 ‘大

문(주작문)과 임생문 사이의 대로 즉 주작문을 중심으로 한 2조 대로에서 행해졌을 것이다.¹⁵⁵⁾ 또 9세기 후반의 대불 의식을 규정한 『儀式』에는 “주작문 및 동서의 仗舍에 자리를 설치한다.”¹⁵⁶⁾라고 적혀 있고, 연장 5년(927)에 완성된 『연희식』에는 “친왕 이하 백관이 주작문에 모인다.”¹⁵⁷⁾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奈良(나라), 平安(헤이안)시대에 진행된 6월과 12월 그믐의 ‘백관대불’의 주 무대가 궁성의 남문인 주작문 주변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서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이 이른바 ‘천황대불’과 ‘백관대불’의 전후, 2부 구조로 구성되었다는 점은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지만,¹⁵⁸⁾ ①의 「어소」의 ‘천황대불’과 ②의 「불소」의 「백관대불」이 의례 면에서 어떻게 연결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신기령에는 ①과 ②가 각각 완결된 의례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문제를 설명할 단서를 찾기 어렵다. 그래서 『의식』, 『연희식』 등을 참조하여 양자의 연결 고리를 찾고자 한다.

『연희사시제식상』의 「六月晦日大祓[十二月准此.]」조에는 대불에 사용된 물품(【사료8】의 1)이 적혀 있고, 이어서 “그믐날 申時(오후 3시에서 5시 사이) 이전에 親王 이하 백관이 주작문에 모인다. 복부가 축사를 읽는다.”라고 적혀 있다. 또 말미에 「事見儀式」이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¹⁵⁹⁾ 그래서 『의식』의 大祓儀¹⁶⁰⁾에 기재된 ‘백관대불’이 시작되는 시점까지의 의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午四刻(12시 30분에서 1시 사이)에 신기관과 봉전료의 관인¹⁶¹⁾ 등 관

伴門’은 화동 7년(714)에 4신 가운데 남쪽을 수호한다고 간주되는 朱雀의 이름을 붙여 ‘朱雀門’이라 불리게 되었다.

155) 金子裕之, 「平城京と祭場」『國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共同研究「古代の祭祀と信仰」本篇 國立歴史民俗博物館, 1985, p.168.

156) 『儀式』大祓儀[六月十二月並同. 但臨時大祓者不令申, 刀禰數札直令進]「百官會集祓處. 先此神祇官陳祓物於朱雀門前路南[分置但馬在其南方北向.]. 所司設座御朱雀門並東西仗舍」(『古事類苑』神祇部33 大祓)

157) 『延喜四時祭式上』六月晦日大祓[十二月准此.]조 「親王以下百官會集朱雀門」

158) 並木和子, 앞의 논문, p31.

159) 『延喜四時祭式上』「六月晦日大祓[十二月准此.]」【사료7】의 ①

右, 晦日申時以前, 親王以下百官會集朱雀門. 卜部讀祝詞[事見儀式.]」

160) 주 20) 참조.

161) 『江家次第』六月晦日條 「縫殿寮, 奉荒世和世御服事. 神祇官, 奉荒世和世御贖事. 謂之節折御裝束。」

- 런 관인이 延正門 밖에서 의식의 준비를 마치고 기다린다.
- B) 백관이 祓處에 집결한다. 신기관은 주작문 앞 도로에 祓에 사용할 물품을 진열하고 주작문 및 동서의 仗舍에 자리를 설치한다.
- C) 未一刻(1시에서 1시 반 사이)에 外記 이하가 각기 자리에 나아가고 나머지 각 司는 東仗舍 동쪽에 위치하고, 탄정대와 식부, 병부, 중무 등 3성이 版을 설치한다. 3성이 刀禰의 數札을 대조한다. 마친 뒤에 어마를 기다린다.
- D) 어마가 도착하면 祓稻를 끼워 넣는다. 모인 백관이 열을 선다. 대불이 행해진다.

『의식』의 C)와 D)에는 祓處[祓所]에 모인 백관이 어마가 도착하는 것을 기다리고, 「어마」가 도착하면 대불이 시작된다고 적혀 있다. 또 ‘백관대불’의 기점이 된 어마의 움직임은 『연희식』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연희사시제식상』 「六月晦日大祓[十二月准此.]」조에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뿐이지만, 御贖조에는 어마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동서문부」의 의례 등 천황을 대상으로 한 대불 의례가 기재되어 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a) 그믐에 복부가 각기 明衣를 입고, 1인은 어마를 들고, 2인은 荒世를 들고, 2인은 和世를 들고 2인은 항아리를 든다. 다음에 어마, 다음에 동서문부(각기 횡도를 든다), 다음에 황세, 다음에 화세가 나아가 연정문에서 기다린다. 중신이 문부, 4국의 복부¹⁶²⁾를 이끌고 들어가 宣陽殿의 남쪽에서 기다린다.
- b) 중신이 어마를 들고 계단 아래로 나아가면 中臣女가 殿 위에서 받아(천황에게) 올린다. 마치면 중신에게 어마를 준다. 중신이 바로 받아서 복부 1인에게 주면 불소로 향한다.
- c) 동문부가 횡도를 받들고 들어가 계단 아래로 가서 중신녀에게 전한다. 중신녀가 이것을(천황에게) 올린다. 마치면 곧 물러 나온다. 다음 서문부가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도 앞의 의례와 같다.
- d) 중신이 황세를 든 복부를 이끌고 계단 아래로 나아가 자리 위에 둔다

162) 『양로직원령』 신기관조에는 ‘卜部 20인’이라고 정원이 규정되어 있다. 『延喜臨時祭式』 宮主卜部조에는 “伊豆 5인, 壹岐 5인, 對馬 10인이 선발되었다.”고 적혀 있으므로 「四國卜部」의 4국은 ‘伊豆, 壹岐, 對馬上縣, 對馬下縣’을 가리킨다. 또 “宮主는 복부 20인 가운데서 선임되었다”고 적혀 있다.

[소부료는 미리 자리를 계단 아래에 두고 봉전료는 황세, 화세의 어복을 자리 위에 둔다.] 궁주가 황세를 펴서 중신에게 준다. 중신이 이것을 받아 중신녀에게 준다. 바로 御體를 5회에 걸쳐 켜다. 이것을 마치고 나면 다음으로 궁주가 향아리[토기 안에 작은 돌 등을 넣어 방울과 같다.]를 올린다. 중신이 받아서 중신녀에게 주면 (천황에게) 이것을 올린다. 마치면 물러나와 중신에게 주고 중신은 궁주에게 전달한다. 황세의 일이 끝나면 물러난다. 또 중신이 화세를 이끌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것을 황세의 의례와 같이 한다. 荒服은 복부에게 주고 和服은 궁주에게 준다. 마치면 모두 물러나와 강으로 가서 해제한다.¹⁶³⁾

『연희사시제식상』 어숙조에는 신기관과 「동서문부」가 담당한 「어마, 황도, 황세, 화세」 등의 천황의 罪穢를 풀어 없애는 대가로 제시된 御贖 의례가 기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b)에는 중신이 어마를 올리는 의례를 마치면 복부가 불소에 어마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의식』 대불의조에는 D) 「어마」가 도착하고 나서 백관이 열을 서고 대불이 시작된 것으로 적혀 있다. 따라서 「불소」에 어마가 도착한 뒤에 ‘백관대불’이 이루어지므로 천황과 백관남녀의 대불 의례는 대불이 이루어진 장소는 다르지만 「어마」를 매개로 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천황과 관인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元日節會의 장에서 천황의 물품인 「御服」의 사여와 맥을 같이 한다. 즉 1월 1일의 궁정 연례 의례에서 「어복」을 내려주는 행위는 그 자체가 천황과 관인을 연결하는 의미를 갖는다.¹⁶⁴⁾ 따라서 ‘향례대불’의 어마는 천황과 백관남녀를 연결하는 정치적 의미를 띤 祓具(祓料)라고 규정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마를 통해 전후 2부 구조로 이루어진 ‘향례대불’은 백관남녀에게 도성 내 지배자 계급의 정점에 선 천황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매체였다.

또 【사료1】의 1)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은 ‘천황대불’과 ‘백관대불’이 연결된 형태로 하나의 조문에 기재되어 있지만, 『의식』과 『연희식』에는 ‘향례대불’ 의례 가운데 천황을 대상으로 한 중신의 어불마 올리기와 「동서문부」의 불도 올리기, 불사 읽기 의례는 「어숙(절절)」조에 기재되고, 백관을 대상으로 한 의례는 「대불의」와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조에 나누어 기재된 것이다. 그리고 【사료1】의 1)에는 ‘천황대불’이 「동서문부」의 불도(황도)

163) 『延喜四時祭式上』 御贖條.

164) 古尾谷知浩, 「古代内藏寮について」, 『史學雜誌』100-12, 1991, p.37.

올리기와 불사 읽기 의례로 완료되는데, 『연희식』에는 d)의 荒世, 和世, 節折 등의 의례가 더해져 있다. 이러한 대불 의례의 史的인 變容¹⁶⁵⁾에 관한 문제는 검토 주제를 벗어나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신기령 대불조의 ‘천황대불’의 중신의 어불마, 「동서문부」의 불도, 불사 의례에 황세, 화세라고 불리는 의복을 천황에게 바치는 의례와 천황의 신체를 대나무로 측량하는 의례인 절절 의례 등이 부가되어 「어숙」, 「어숙절절」이라는 항목으로 『연희식』과 『의식』에 기재된 것¹⁶⁶⁾이라는 점만 지적해 두고자 한다.

다음은 ‘천황대불’에 포함된 「동서문부」의 불도 헌상과 불사 읽기 의례와 어마를 매개로 한 대불 의례의 관계를 살펴보자. 「동서문부」의 대불 관련 기사는 『속일본기』 대보 2년(702) 12월 임술(30일)조에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임술조에는 “대불을 폐하였다(「廢大祓」). 동서문부의 解除는 평소와 같이 한다.”라고 적혀 있다. 이 기사의 “평소와 같이 한다(「如常」).”는 문구는 702년에는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이 일상화 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래서 『대보령』이 완성된 다음 해인 대보 2년 12월 임술조에 기재된 「廢大祓」이라는 문구는 『대보령』에 「대불」에 관한 법령이 존재했고 이것이 이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대보 2년 12월 임술조는 ‘향례대불’의 성립¹⁶⁷⁾을 나타낸 중요한 사료로 간주되고 있다. 또 이 때에 대불을 폐한 것은 『속일본기』 대보 2년 12월 갑인(22일)조에 기재된 태상천황(지통[持統, 지토]천황)의 죽음[崩]과 관련된다. 궁중에서 殯이 행해지는 喪禮 기간에 해당되었으므로 12월 그믐의 대불의례가 폐해진 것이다.¹⁶⁸⁾ 그런데 “동서문부의 해제는 평소와 같이 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천황의 어마를 매개로 한 의례와 「동서문부」가 집행한 불도, 불사 의례는 분리되어 별개로 행해질 수 있는 의례임을 나타내고 있다.

165) 「대불」 관계 기사의 통시대적인 검토를 통해 ‘향례대불’의 성립과 변용에 관한 문제와 그 성격과 의미의 변화를 추적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三橋正, 「大祓の成立と展開」(『神道古典研究』12, 1990)와 並木和子の 「大祓の構造と變遷」(앞의 논문) 등을 들 수 있다.

166) 野口剛, 「節折儀とその起源」『律令國家の政務と儀禮』虎尾俊哉編, 吉川弘文館, 1995, pp.222-232.

167) ‘향례대불’의 성립 시기에 관한 연구는 대화개신 이전부터라는 설(주4 참조)과 7세기 天武朝라는 설(青木紀元, 「大祓詞の構造と成立過程」, 『藝林』14-6, 1963[『祝詞古傳承の研究』國書刊行會, 1985]; 三橋正, 「大祓の成立と展開」, 『神道古典研究』12, 1990), 持統朝부터 개시되었다는 설(龍野曉啓, 「大祓詞の構造と成立」, 『立命館文學』505, 1988) 등이 제기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천무조라는 설이 통용되고 있지만, 이것을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사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향례대불’의 성립 시기 문제는 뒤에서 살펴보려 한다.

168) 青木和夫 外 校注, 新日本古典文學大系『續日本紀 1』, 岩波書店, 1989, p.63 각주 31.

그렇다면 ‘항례대불’에서 「동서문부」의 불도 올리기와 불사 읽기 의례는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가. 『연희축사식』에 기재된 「동서문부」의 불사에는 천황의 재액을 풀어서 없애고 제위의 연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적혀 있다. 이에 비해 중신이 백관에게 선포한 이른바 ‘大祓詞’에는 백관이 범한 다양한 죄를 풀어서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¹⁶⁹⁾ 따라서 ‘천황대불’의 일부를 구성한 「동서문부」의 의례는 천황 신변의 災厄을 풀어서 없애고 황위의 영속을 기도하는 등 천황 자체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신의 어마 의례에 이어 「동서문부」의 의례가 ‘천황대불’ 의례로 연속적으로 행해졌다 하더라도 양자는 지향하는 바가 다른 이질적인 의례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이질적인 의례가 하나로 연결되어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 의례로 정립된 것이 언제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 문제는 뒤에서 살펴보려 한다. 다만 율령제와 고대 천황 지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 후 구조로 이루어진 대불은 도성 내에서의 지배자 계급의 정점에 선 천황의 위치를 의례를 통해 확인시키는 의의를 가진다.

3. ‘항례대불’과 「東西文部」

(1) 令文의 「東西文部」

『양로신기령』 대불조에는 「동서문부」가 집행한 의례가 매우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 앞에서 살펴본 『의식』이나 『연희식』에도 「동서문부」의 의례에 관해서는 상세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영의해』와 『영집해』에 인용된 주석에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그래서 불도 올리기와 불사 읽기 의례를 담당한 「동서문부」에 관한 『영의해』와 『영집해』의 주석을 검토하는 것에서 출발하려 한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사료3】

- 1) 『영의해』 신기령 대불조 「東西文部[謂. 東漢文直. 西漢文首也.]」
- 2) 『영집해』 신기령 대불조의 「東西文部」
 - ① 「謂. 東漢文直. 西漢文首也」

169) 『延喜祝詞式』에 기재된 ‘中臣의 大祓詞’와 ‘東西文部の 呪詞’에 관해서는 별고를 준비 중이다.

- ② 「釋云. 東文直. 西文首. 是謂文部. 延曆六年六月卅日. 右大臣宣. 奉勅. 自今以後. 令任諸司主典已上者上之」
- ③ 「穴云. 東西文部. 謂稱氏耳. 學令. 史部謂姓也」

1)은 天長 10년(833) 경에 성립된 『양로령』의 공식 주석서인 『영의해』의 「동서문부」에 관한 주석이다. 여기에는 “東漢文直(야마토노아야노후미노아타이)과 西漢文首(가와치노아야노후미노오비토)를 가리킨다.”라고 적혀 있다.¹⁷⁰⁾ 「東漢文直」은 동한씨의 枝氏인 동문씨를 가리킨다. 2)의 ②의 『영석』의 주석에도 「東文直」이라고 적혀 있다. 그런데 1)에는 동한문직과 대를 이룬 존재로 서한문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서한’씨는 천무천황 12년(683)에 直에서 連,¹⁷¹⁾ 천무천황 14년(685)에 連에서 忌寸으로 개성한 씨족이다.¹⁷²⁾ 그래서 1)의 「서한문수」라는 주석은 씨와 성이 맞지 않는 조합을 이루고 있다. 또 2)의 ①은 『의해』의 주를 실은 것이므로 1)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지만, ②의 『영석』에는 「西文首」라고 기재되어 있고, ③의 『혈기』에도 『영석』과 같이 「서문수」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서문’씨는 천무천황 12년(683)에 首에서 連으로,¹⁷³⁾ 천무천황 14년(685) 6월에 기촌으로 개성하였으므로¹⁷⁴⁾ 『의해』에 기재된 首성과 합치된다. 그리고 2)의 ②에는 “동문직, 서문수를 文部(후미)라고 한다.”고 적혀 있고, ③의 『혈기』에는 “「동서문부」는 氏(우지)를 일컫는.”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동서문부」¹⁷⁵⁾는 동(동문직)서(서문수)의 문씨를 의미한다. 또 ③에는 『양로학령』을 인용하여 「史部(후미[히]토)」는 姓(가바네)을 일컫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그리고 『양로학령』¹⁷⁶⁾의 「동서사부」에 관한 『영의해』와 『영집해』의 주석에는 「동서문부」에 관한 내용도 적혀 있으므로 관련 주석을 살펴보자.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170) 「東」은 ‘야마토’라고 읽고 「山東」이라고도 쓰는데, 生駒—金剛산맥의 동쪽(현재 奈良縣) 지역에 해당된다. 그 서쪽은 「山西」혹은 「西」라고 표기하고 ‘가와치’라고 읽는데, 현재 大阪府 지역에 해당된다.

171) 『일본서기』 천무천황 12년(683) 9월 정미조.

172) 『일본서기』 천무천황 14년(685) 6월 갑오조.

173) 『일본서기』 천무천황 12년 9월 정미조.

174) 『일본서기』 천무천황 14년 6월 갑오조.

175) 고대 일본에서 「部」자는 여러 가지 訓讀이 존재한다. 관인의 일종인 토모(伴)는 部자를 혼독하지 않는다(無訓)(中田薫, 「我古典の『部』及び『縣』に就いて」, 『法制史論集3上』, 岩波書店, 1971, p.54(초판 1942).

176) 『養老學令』大學生條 「凡大學生. 取五位以上子孫. 及東西史部子爲之」

【자료4】

- 1) 『영의해』 학령 대학생조 「東西史部[謂. 居在皇城左右. 故曰東西也. 前代以來變世繼業. 或爲史官. 或爲博士. 因以賜姓. 摠稱之史也.]」
- 2) 『영집해』 학령 대학생조 「東西史部」
 - ① 「謂. 居在皇城左右. 故曰東西也. 前代以來變世繼業. 或爲史官. 或爲博士. 因以賜姓. 摠稱之史也」
 - ② 「古記云. 東西史部者. 謂. 倭, 川內文忌寸等爲本東西史等皆是」
 - ③ 「穴云. 東西史部. 分貫於外國者亦補大學生無妨. 其非東西史. 而自餘史姓之類. 補國學生耳. 其東文忌寸. 西文首等. 不更論補大學生耳. 外國並取用」

【자료4】의 1)의 『영의해』의 「동서사부」에 관한 주석에는 “사는 곳이 황성의 좌우에 있기 때문에 동서라고 한다. 예전부터 대대로 업을 이어 史官이 되거나 博士가 되었다. 그래서 성을 내리고 모두 史(후히토)라고 불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2)의 『영집해』에 인용된 ①의 『의해』는 2)의 『영의해』와 같은 내용이다. ②의 『고기』에는 “동서사부에 관해 東=倭(야마토), 西=川內(가와치)의 文忌寸 등을 기본으로 하는 동서의 史(후히토)들 모두이다.”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고기』는 천평 10년(738) 경에 성립된 것으로 간주되는 『대보령』의 주석서이다.¹⁷⁷⁾ 그러므로 『대보령』에서 동서 문기촌씨 즉 「동서문부」가 「동서사부」의 기본이 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동서문부」는 동문씨(직→련)씨와 서문씨(수→련) 중에 문기촌이라는 성을 받은 존재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영의해』에만 등장하는 「서한문수」는 「동한」과 대칭된 존재로 「서한」이라고 기재되면서 씨성의 조합이 맞지 않는 주석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 추정된다.¹⁷⁸⁾

다음은 【자료4】 2) ②의 『영석』에 기재된 “대불에서 불도를 올리는 「동서문부」의 자격 조건에 관해 살펴보자. 연력 6년(787) 6월 30일의 법령(延曆六年格)에는 “불도를 올리는 동서문부는 각 사의 主典 이상자 중에서 선발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延喜臨時祭式』에 기재된 「凡東西文部等上大祓大刀者, 取諸司主典已上者.」라는 내용과 연결된다. 이외에도 불도 올리기와 관련된 「동서문부」에 관한 규정은 『속일본기』 신기 3년(726) 12월 임신(29)조에 기재된 太政官處分에도 보인다. 여기에는 “東文忌寸 등은 이후로

177) 井上光貞, 앞의 책(1986), p.124.

178) 서보경, 「고대 일본의 文筆氏族과 한국계 「渡來」씨족」, 『사림』59, 2017, pp.305-306.

弁官¹⁷⁹⁾의 관인이 되어 있는 자 중에서 대불도를 올리게 하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영문과 법령 등에 제시된 대불에서 불도의례 집행자에 관한 규정을 시기 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대보령』 ; 「동서사부」의 기본인 「동서문부(동서문기촌)」
- 2) 신귀 3년 12월 임신조 태정관처분 ; 弁官의 관인이 되어 있는 「동서문부」
- 3) 연력 6년 6월 30일의 법령(연희6년격) ; 각 司의 主典 이상인 「동서문부」

1), 2), 3)을 통해 「동서문부」가 불도 의례의 주체인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변관의 관인(史生 이상)¹⁸⁰⁾에서 각 사의 주전 이상에 임관된 「동서문부」로 선발 범위가 확대된 것은 「동서문부」 가운데 실무관인으로 임관된 인물이 적었던 나라시대의 상황¹⁸¹⁾이 법령에 반영된 것이다.

요컨대 율령의 영문과 주석서에 의거하면 「동서문부」를 기본으로 한 「동서사부」는 대학 입학에서 특례의 대상이 되었다. 더구나 【사료4】 3)의 ③ 『혈기』에 의하면 史姓을 가진 자 중에서 대학에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내에 한정된다고 적혀 있다. 다만 「동서사부」와 「동서문부(동서문기촌, 서문수)」는 畿內가 아닌 外國에 貫附된 경우에도 대학의 입학 대상이 된다고 적혀 있다. 그러므로 법제상의 규정에 의하면 「동서문부」는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에서 불도와 불사 의례를 담당하고, 「동서사부」의 기본으로 규정되어 대학 입학에서도 특례를 인정받는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東西文氏의 「文忌寸」 賜姓 배경

「동서문부(=동서문기촌)」는 천무천황 14년(685) 6월에 기촌성을 받기 전에는 『일본서기』 등에 「文」 또는 「書」라고 씨명이 표기되고 있지만 일본음으로는 모두 ‘후미’라고 읽힌다. 이른바 ‘天武八姓’의 사여로 「文忌寸」이라는

179) ‘변관’은 태정관의 判官(3등관)으로 左右의 大弁, 中弁, 少弁으로 나뉜다. 대변은 종4위상, 중변은 종5위상, 소변은 정5위하에 상당한다. 변관 아래에는 4등관인 史(左大史, 右大史, 左少史, 右少史)와 使部, 官掌, 史生, 直丁 등이 소속되어 좌우의 변관국을 구성한다.

180) ‘史生’은 대보령제 이후 중앙의 각 관사와 지방 諸國의 4등관 아래에서 공문서의 ‘書寫와 修理’ 등에 종사한 하급 서기관을 가리킨다.

181) 서보경, 앞의 논문, pp.309-312 【표1】 나라시대 전반기 학문과 기예 방면에서 두각을 드러낸 한국계 도래 씨족 참조.

성으로 표기상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천무팔성’은 ‘천무조 당대의 공로’와 함께 ‘선조의 공적’을 함께 고려하여 부여된 것으로 간주된다.¹⁸²⁾ 그러므로 동서문씨에게 기촌성이 내려진 이유를 검토하는 것은 이들이 ‘향례대불’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전제가 된다. 이 문제는 ‘천무조’ 당대의 동서문씨의 활동을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하려 한다.

동문씨는 阿知(智)使主를 조상으로 받들며 대화국 檜前 지방을 중심으로 결집한 東(倭)漢씨의 枝氏이다. 천무조에 활동한 동문씨로는 書直智德(후미노아타이치토쿠), 文直成覺(후미노아타이조카쿠),¹⁸³⁾ 書直藥(후미노아타이쿠스리)¹⁸⁴⁾ 등이 있다. 서직지덕과 문직성각은 일본 최대의 내란이라고 평가되는 임신난에서 大海人(오아마)황자 측에서, 서직약은 大友(오토모)황자 측에서 활동하였다. 또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에는 동한씨의 지씨인 판상씨와 민씨 중에도 임신난에 참가한 인물이 나온다. 예를 들자면 坂上忌寸老(사카노우에노이미키오유, 直廣壹 추증), 民忌寸大火(다미노이미키오히, 정5위상 추증), 坂上直熊毛(사카노우에노아타이구마게, 大錦下 추증) 등이 임신년의 공신이라고 기재된 인물이다.¹⁸⁵⁾ 이 가운데 서직지덕은 천무천황 원년(672) 6월에 吉野(요시노)에서 대해인황자를 따라 출발한 20여인의 舍人 가운데 한 사람으로¹⁸⁶⁾ 近江(오미)의 조정군과의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였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 천무천황 10년(681) 12월에 소금하¹⁸⁷⁾에 서위되었고, 같은 날 연이라는 성을 받았다.¹⁸⁸⁾ 또 천무천황 11년(682) 5월이 되어 왜한직 등에게 연성이 내려진 것¹⁸⁹⁾으로 보아 지덕에 대한 천무천황 10월의 연성 사성은 우대 조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지덕에게 기촌 성을 내린 기록은 보

182) 原島禮二, 「天武八姓の歴史的意義」下, 『歴史評論』123, 1960, p.68 ; 北山茂夫, 『天武朝』, 中央公論社, 1978, p.243.

183) 『속일본기』 영귀 2년(716)년 4월의 임신년 공신 중에 증 소금하(율령제 종5위 상당) 「문직성각」이 보이고, 천평보자 원년 12월의 임신년공신에 대한 공전 하사 기사에 공전4정(中功) 하사 대상이라 적혀 있다.

184) 『일본서기』 천무천황 원년 6월에 “임신년 근강조정의 장군으로 체포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185) 『속일본기』에는 直廣壹(관위 48계제 중에 10위, 율령제 정4위하 상당)에 추증된 坂上忌寸老(문무천황 3년[699] 5월 신유조), 정5위상에 추증된 民忌寸大火(대보 3년[703] 6월 임자조), 大錦下(관위 26계제 중에 7위, 율령제 종4위하 상당)로 추증된 坂上直熊毛(천평보자 원년[757] 12월조) 등이 기재되어 있다.

186) 『일본서기』 천무천황 원년(672) 6월 갑신조

187) 664년부터 685년까지 사용된 관위 26계 가운데 12위에 해당된다(율령제 종5위 상당).

188) 『일본서기』 천무천황 10년(681) 12월 계사조.

189) 『일본서기』 천무천황 11년(682) 5월 갑진조.

이지 않지만 『일본서기』에 문기촌이라는 성으로 기재된 첫 번째 사례가 지통천황 6년(692) 5월 임신조의 「文忌寸智德」이다. 이것은 지덕이 천무천황 14년 6월에 동한씨에게 기촌성 사여 때¹⁹⁰⁾ 기촌으로 개성된 본류 씨족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가 죽자 直大壺¹⁹¹⁾ 추증과 賻物이 내려졌다.¹⁹²⁾ 이러한 조치는 천무, 지통조에 행해진 임신난의 공신이 죽으면 관위를 올려주고 부의로 물건을 내리는 등 우대책 시행과 연관된다. 따라서 지덕의 개사성과 위계를 고려하면 천무조부터 대보령 편찬을 즈음한 시기에 동한씨 가운데 최고 지위를 점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⁹³⁾

그리고 서문씨는 율령제 河內國 古市(후루이치)향을 본거지로 삼고 王仁을 조상으로 받든 馬(우마, 武生[다케후]으로 개성)씨, 藏(倉, 구라)씨 등과 동족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¹⁹⁴⁾ 천무조에 활동한 서문씨로는 書首根麻呂(후미노 오비토네마로)를 들 수 있다. 그는 『일본서기』에 기재된 임신난 관계 기사에서 서직지덕과 함께 활동한 20여인의 사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근강의 조정군을 격파하여 공을 세웠다.¹⁹⁵⁾ 그가 죽자 임신년의 공로를 인정하여 정4위하 추증과 부물이 부여되었다.¹⁹⁶⁾ 『육국사』에는 根(尼, 禰)麻呂에 관한 기록이 이것뿐이지만, 그의 묘지명에는 “임신년 장군 左衛士府 장관(督) 정4위 禰麻呂忌寸(네마로이미키)이 경운 4년(707) 정미 9월 21일에 죽었다.”¹⁹⁷⁾고 적혀 있다. 위사부는 율령 관사의 하나로 좌우 2부가 존재하며, 궁정의 경호

190) 『일본서기』 천무천황 14년(685) 6월 갑오조.

191) 685년부터 사용된 관위 48계 가운데 9위에 해당된다(율령제 정4위상 상당).

192) 『일본서기』 지통천황 6년(692) 5월 갑신조.

193) 『속일본기』 대보 원년(701) 7월 임자조의 임신년의 공을 논하여 등급을 정하여 식봉을 준 기사에는 서직지덕과 書首尼(根)麻呂 등 10인이 각기 봉호 100호를 받고 영에 의거하여 4분의 1을 자식에게 전하게 되었다고 적혀 있다. 또 영귀 2년(716) 4월 계축조에는 ‘임신년공신’ 10인의 자식에게 공전을 지급하였다. 이것은 공신과 자식에 대한 우대조치이다. 지덕의 아들인 정7위상 文忌寸鹽麻呂(후미노이미키시오마로)와 文忌寸根麻呂의 아들인 정7위하 文忌寸馬養(후미노이미키우마카이) 등이 그 대상으로 나온다. 그리고 천평보자 원년(757) 12월 임자조에는 ‘7종의 공신’에게 부여한 공전의 등급을 제정하였고, 임신난에 관해서는 10인의 공신이 열거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문기촌지덕과 문기촌네마로의 임신년 공전 4정이 2대까지 전하는 中功으로 평가되었다고 적혀 있다. 이것은 716년에 아들에게 준 토지의 지급에 관한 처리가 757년에 정해진 것을 의미한다.

194) 井上光貞, 앞의 책(1986), pp.418-419.

195) 『일본서기』 천무천황 원년(672) 6월 갑신조와 원년 7월 신묘조 등 참조.

196) 『속일본기』 경운 4년(707) 10월 무자조.

197) 天保 2년(1831) 9월에 현재 나라현 宇陀市(우타시) 榛原區(하이바라구)의 네마려 묘에서 銅版墓誌가 발굴되었다. 묘지명에는 「壬申年將軍左衛士府督正四位禰麻呂忌寸, 慶雲四年歲次丁未九月廿一日卒。」이라고 적혀 있다.

와 천황이 행차할 때 호위 등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천황의 측근에서 근(네)마려가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에 의거하면 ‘임신년 공신’은 91명이고, 이 가운데 관인으로 활동한 이력이 확인되는 것이 42명이다. 이 42명 중에 伴造 씨족이 9명 포함되어 있는데¹⁹⁸⁾ 그 가운데 한 사람이 근마려이다. 또 아들 文忌寸馬養(후미노이미키우마카이)도 관인으로 활동하며 입내하였다.¹⁹⁹⁾ 따라서 서문씨는 동문씨에 비해 활동 인물의 숫자는 적지만,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중반에 걸쳐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위계만 보유한 것이 아니라 관직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리고 내외계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입내자를 내는 등 율령관료제 사회에서도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동서문씨에게 기촌성을 내린 것은 ‘임신년 공신’이라는 천무조 당대의 활동이 평가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동서문씨는 ‘천무팔성’ 제정 이후부터 『대보령』의 편찬을 전후한 시기에 동한씨와 서문씨 집단 내에서 族姓, 위계, 관인으로서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우위에 서 있었다. 이에 비해 史성을 칭한 씨족은 船(후네)씨만 천무천황 12년(683) 10월에 船史에서 船連으로 개성이 이루어진 정도였다. 또 사성씨족은 『대보령』 편찬을 전후한 시기에 위계 면에서도 동서문씨에 비해 우위에 위치한 것도 아니었다.²⁰⁰⁾ 따라서 「동서문부」를 기본으로 한 「동서사부」라는 『대보령』의 규정도 천무조부터 『대보령』 성립기의 동서문씨의 족성, 위계, 관인으로서의 활동 등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선조의 공적’이라는 측면에서 동서문씨의 활동을 살펴보자. 이 문제는 동서문씨의 기촌 사성과 대불에서 불도 올리기 의례가 忌部(인베, 齋部로 개성²⁰¹⁾)씨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한 『古語拾遺』²⁰²⁾의 관계 기사를 통해 살펴보려 한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198) 倉本宏一, 「「壬申年功臣」たちのその後」 『東アジアの古代文化』118, 大和書房, 2004, p.12.

199) 문기촌마양은 主税頭(천평 10년[738] 윤 7월 계묘조), 筑後守(천평 17년[745] 9월 무오조), 鑄錢長官(천평보자 원년[757] 6월 임진조) 등에 보임되었고, 최고 위계는 종5위하(천평보자 2년[758] 8월 경자삭조)에 이르렀다.

200) 서보경, 「「同祖」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仁, 王辰爾系 씨족」, 『한일관계사연구』53, 2016, pp.96-98.

201) 『일본후기』 연력 22년(803) 3월 을축조 「右京人忌部宿禰濱成等, 改忌部爲齋部」

202) 『고어습유』는 대동 2년(807)에 齋部光成(인베노히로나리)이 쓴 神祇 제사에 봉사한 재부씨의 氏文이다.

【사료5】

- 1) 『古語拾遺』 「至于淨御原朝，改天下萬姓，而分為八等…其四曰忌寸，以秦漢二氏及百濟文氏等姓[蓋與齋部共預齋藏事，因以為姓也，今東西文，獻祓太刀，蓋亦此之緣也.]」

【사료5】의 1)은 淨御原朝(천무조)에 천하 만성을 고쳐 나누어 8종류를 만들었다.…네 번째를 기촌이라고 한다. 秦씨와 漢씨, 百濟文씨 등의 성이다 [아마도 齋部和 함께 齋藏(이미쿠라)에 관한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忌寸(이미키)라는 성이 붙여진 것일 듯하다. 지금 동서문씨가 祓 의례에서 太刀를 바치는 것도 이 일에서 연유한 듯하다.]”²⁰³⁾라고 적혀 있다. 천무조에 진, 한 및 백제문씨²⁰⁴⁾ 등을 대상으로 한 기촌성 사여는 『일본서기』 천무천황 14년 6월 갑오조에는 “秦連, 倭漢連, 書連 등 11씨에게 기촌 성을 주었다.”고 적혀 있으므로 사실에 의거한다. 그런데 주에서 기촌성 사여와 불도 올리기 의례를 담당한 것이 모두 재부씨와 함께 재장에 관여한 것을 연유라고 한 것은 『고어습유』에만 보이는 내용이다. 이 문제는 ‘재부씨의 재장’에 관한 문제를 살피는 것에서 시작하려 한다.

『고어습유』에는 “이 때(神武朝) 神物과 官物에 구별이 없어서 궁 내에 藏을 세워 齋藏이라 부르고 재부씨에게 영원히 그 직을 담당하게 하였다.”고 하고, “後磐余稚櫻朝(履中朝)에 재장의 곁에 다시 內藏을 세워 관물을 분납하게 하였다.”고 적혀 있다. 그리고 “長谷朝倉朝(雄略朝)에 大藏을 세워 三藏[재장, 내장, 대장]의 분립하고 蘇我麻智宿禰(소가마치스쿠네)에게 삼장을 검교하게 하였으며 秦씨에게 출납, 동서문씨에게 장부를 조사하고 기록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일련의 기사는 삼장 관계 전승으로 알려진 내용이

203) 安田尙道·秋本吉徳 校註, 新編 日本古典文庫4 『古語拾遺 高橋氏文』, 現代思潮社, 1976, p.116.

204) 大同 2년(807)에 만들어진 『古語拾遺』에는 서문씨가 「百濟文氏」, 「河內書首」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천평 21년(749)년에 죽은 行基(교키, 속성 高志씨, 서문씨의 枝氏)의 묘지에서 나온 『大僧上舍利瓶記』(『日本古代の墓誌』 銘文篇, 奈良文化財研究所 飛鳥資料館, 1978, p.116)에는 「百濟王者王爾之後」라고 적혀 있으므로 백제 출신이라는 출자(출신)에 관한 전승이 확인된다. 그런데 『속일본기』 연력 10년(791) 4월 무술조의 文思寸最弟의 개성청원 상표문에는 ‘한고조의 후손’ 즉 중국계 「도래」씨족이라고 적혀 있고, 弘仁 6년(815)에 편찬된 『신찬성씨록』에도 ‘한 고조의 후손’으로 諸蕃의 漢조에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史錄의 기록이 존재함에도 재부광성은 서문씨를 백제계 「도래」씨족이라고 판단하고 「백제문씨」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글에서는 논지의 확대를 막기 위해 기촌성 사여와 대불 의례가 재부씨의 재장과 관련되었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를 진행하려 한다.²⁰⁵⁾

먼저 고대 일본의 ‘藏(倉, 쿠라)’의 성립 문제를 살펴보자. 대화왕권에서 ‘장(倉)’이 내장과 대장으로 분리되어 설치된 시기에 관한 연구 중에 대표적인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直木孝次郎(나오키 고지로)이 제시한 6세기 중반 경의 欽明(긴메이)조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수납 면에서 이 시기에 둔창이 확대되고 지방 재지 수장의 공납물이 증가한 것이 장이 분립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 것이다.²⁰⁶⁾ 둘째, 石上英一(이시가미 에이이치)이 주장한 6세기말부터 7세기 전반 경이라는 견해이다. 이것은 관인의 녹으로 대표되는 항상적인 경비의 성립이 대장이 재정 관사로서 정비된 중요한 계기가 되어 백제 22부사제의 內椋部를 모방한 椋(쿠라, 율령제 內藏寮 전신 관사)과 大椋(오쿠라, 율령제 大藏省의 전신관사)으로 분리 설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²⁰⁷⁾ 이 글에서 재정 관사의 성립 문제를 본격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재장에 관한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어습유』의 이중조와 웅략조에 내장과 대장이 분리 설치되었다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지만 고대 일본에 대장과 내장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또 재장에 관한 기록은 『고어습유』가 유일한 것일 뿐만 아니라, 史錄에는 「藏(倉, 椋)」이나 「內藏」, 「大藏」 등을 띤 씨명이 다수 확인되는데 비해 재장을 씨명으로 한 인물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장은 존재 자체가 의심스러운 장이다.²⁰⁸⁾ 둘째, 『고어습유』에서는 「三藏」에 재장, 내장, 대장이라는 주를 달고 있다. 「삼장」은 중국에서 불교성전을 經藏, 律藏, 論藏의 3종으로 분류하여 일컫는 漢譯語이다. 따라서 일본에 불교가 전해지기 이전에 「삼장」이라는 명칭이 존재하기는 어렵다.²⁰⁹⁾ 셋째, 『고어습유』에는 이른바 ‘천무팔성’ 가운데 하나인 「畛寸(이미키)」에 주를 달아 「畛(이미)」자에서 부회한 것

205) ‘삼장검교’ 전승을 비롯한 『고어습유』의 장 관계 기사에 관해서는 별고를 준비 중이다.

206) 直木孝次郎, 「秦氏と大藏」, 『秦氏研究』14, 1982(『日本古代國家の成立』, 社會思想社, 1987, p.300)

207) 石上英一, 「大藏省成立史考」, 『日本古代の社會と經濟 上』 彌永貞三先生還暦記念會編, 吉川弘文館, 1978, pp.237-252 ; 加藤謙吉, 『大和の豪族と渡來人 葛城・蘇我氏・大伴・物部氏』, 吉川弘文館, 2001, p.159.

208) 黛弘道, 「大和國家の財政」 『律令國家成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2, pp.18-20.

209) 角林文雄, 「日本古代の倉の經濟的機能—彌生時代~六世紀を中心として—」, 『日本史論叢』 5, 1975, p.92.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재부씨가 신무천황 시대부터 齋藏을 관리했다는 주장과도 어긋난다.²¹⁰⁾ 즉 기부와 관련된 장이라면 忌藏이라야 하는데 재장이라고 적혀 있다. 이것은 忌 대신에 齋를 씨명으로 사용하게 된 뒤에 재장 관계 기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나타낸다.

요컨대 『고어습유』에 기재된 내장과 대장의 정립에 관한 내용은 후대의 사실을 반영한 것이고, 재장에 관한 기사는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도래」계 씨족이 장(창)과 관련된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는 율령제 관사인 內臟寮와 大藏省의 직명, 직장과 대화개신 이전의 「倉人」의 직장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도래」계로 간주되는 씨족이 「창인」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直木孝次郎의 연구에 따르면²¹¹⁾ 대화개신 이전부터 「장(창, 양)」이나 「내장」, 「대장」 등의 씨명을 띤 「도래」계 씨족이 창(창)의 관리나 출납의 문제만 아니라 기록과 회계 등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를 담당한 것은 분명하다. 또 내장료와 대장성 외에도 8세기에 국가 재정의 중추를 담당하는 관사인 主稅寮와 主計寮의 장관, 차관에 보임된 인물 중에 「도래」계 씨족이 점하는 비율이 40%에 가깝다.²¹²⁾ 예컨대 앞에서 살펴본 외종5위하 문기촌마양은 천평 10년(738) 윤7월에 주세료의 장관에 보임되었고, 그의 뒤를 이어 천평 13년(741) 7월에 외종5위하 文忌寸黑麻呂(후미노이미키구로마로)가 주세료의 장관에 보임되었다(천평 19년[747]재임). 이외에도 秦忌寸朝元(하타노이미키아사모토, 천평 18년[764] 주세료의 장관[頭]),²¹³⁾ 秦忌寸智麻呂(하타노이미키치마로, 신호경운 3년[769] 주세료의 차관[조]), 秦忌寸足長(하타노이미키타리나가, 연력 4년[785] 주세료의 장관), 大[太]秦公忌寸宅守(오우즈마사노기미노이미키야카모리, 연력 7년[788] 주세료의 차관) 등의 진씨, 棕垣直子人(구라가키

210) 津田左右吉, 「古語拾遺の研究」 『日本上代史の研究』, 岩波書店, 1932(『日本古典の研究 下』 津田左右吉全集2, 岩波書店, 1963, pp.508-509)

211) 直木孝次郎, 위의 책, pp.182-185.

212) 加藤謙吉, 「律令官制の成立とフミヒト」 『大和政權とフミヒト制』, 吉川弘文館, 2002, p.382.

213) 『속일본기』에는 양로 4년(720)에 文部黑麻呂(후미베노구로마로) 등 11인이 文忌寸이라는 성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양로년간(717~724)에 기촌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들이 천무조의 기촌 사성 때 문기촌성을 받은 본류 씨족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기촌성을 받은 뒤 정6위상에서 외종5위하로 승진하였고, 主稅寮의 장관(頭, 종5위상당)에 보임되었다. 흑마려가 田租稅의 관리와 미곡창고의 출납, 지방재정 수지의 감사 등을 관장한 주세료의 장관에 역임된 시기는 聖武(쇼무)천황과 孝謙(고켄)천황이 대불조영에 총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노아타이코비토, 경운 4년[707] 주세료의 차관),²¹⁴⁾ 內藏宿禰賀茂麻呂(구라노스쿠네카모마로, 연력 16년[797] 주세료의 차관) 등의 동한씨의 활약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고어습유』에서 재장의 관리가 신무조부터 재부씨의 소관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齋部光成이 당시에 잘 알려진 진씨, 한씨, 서문씨의 내장, 대장 관계 전승을 재료로 삼아 재장 관계 기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다음은 「동서문부」의 祓(太)刀 현상이 재부씨의 재장에 관여한 것에서 연유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이른바 ‘中臣忌部相訴’라고 불리는 중신씨와 기부씨가 각기 자기 씨족을 ‘奉幣使’²¹⁵⁾로 임명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한 내용 가운데 祓에 관한 내용이 보이므로 이것을 살펴보려 한다. 대동 원년(806) 8월 경오조에는 중신씨가 기부씨는 폐백을 만드는 것이 본분이므로 祝詞를 올릴 수 없다고 하며 기부씨를 폐백과 축사를 올리는 폐백사로 삼는 것을 불가하다고 한 것과 기부씨가 폐백과 기도는 기부씨가 담당한 직장이므로 기부씨를 폐백사로 삼고 중신씨에게 祓使에 관한 일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²¹⁶⁾ 따라서 대동 원년까지는 기부씨가 대불 의례와의 관련성을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 중신씨에게는 불사에 관한 일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중신씨의 직장을 대표하는 것으로 대불이 잘 알려져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²¹⁷⁾ 그러므로 재부광성이 『고어습유』에서 동서문씨의 불도 의례를 재부씨와 연결한 것은 중신씨에 대한 대향의식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낸 기사임에 틀림없다. 더구나 9세기 초는 『弘仁式』을 비롯한 각 관사의 시행 세칙에 대한 공적인 법전이 편찬된 시기였다. 그래서 제사 부분에 관한 내용을 쓸 재료로 『씨문』이 제출되었다.²¹⁸⁾ 따라서 재부광성이 당시에 잘 알려진 동서문씨의 대불 의례와 「도래」계 씨족의 「장」 관련 전승 등에 기초하여 재부씨의 재장 관리와 대불 의례의 기원을 설명하는 전승 기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요컨대 ‘천무팔성’ 사성 때 동서문씨가 문기촌이라는 성을 받은 것은 기록,

214) 『속일본기』 경운 4년(707) 2월 신묘조에는 잡호에서 해방된 “주세료의 차관 椋垣直子人(구라카키노아타이코히토)에게 連이라는 성을 내렸다.”고 적혀 있다.

215) 중신씨와 기부(忌部→齋部로 개성)씨 사이에서 전개된 이른바 ‘中臣忌部相訴’에 관한 내용은 서보경, 「『新撰姓氏錄』의 편찬 자료와 勘校」(『일본연구』76, 2018, pp21-23) 참조.

216) 『일본후기』 대동 원년(806) 8월 경오조.

217) 横田健一, 「中臣氏と卜部」, 『日本書紀研究』5, 1973, p.354.

218) 西宮一民 校注, 『古語拾遺』, 岩波文庫, 1990(第6刷). p.164.

회계 등을 담당한 조상의 공로와 임신난 참가 등 천무조의 공로에 의거한 것이다. 또 (동서)문기촌씨는 『대보령』에서는 「동서사부」의 기본을 이루는 「동서문부」로 규정되었고, ‘항례대불’에서 불도 올리기와 불사 읽기 의례를 담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3) 「동서문부」의 의례 관여 방식과 改姓

대불 의례의 장에서 「동서문부」의 대불 의례 관여 방식에 관해 살펴보자. 「동서문부」의 불도 올리기와 불사 읽기 의례는 『영의해』에는 주석이 보이지 않지만, 『영집해』에는 다양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사료6】

- 1) 「穴云. 問. 二文部. 各上別刀. 并讀別祓詞歟. 爲當. 上同刀. 并讀同祓詞祓(歟). 又所云(上)祓刀. 誰刀也. 若一文部上刀. 并讀祓詞訖後. 更不爲哉. 答. 上別刀. 并讀別祓詞. 但有同類耳. 又所上刀. 所司申官令備. 但二文部. 進退行事不見. 其東文部參入. 上刀讀祓詞. 退出訖後. 西文部參入也. 漢語讀音. 謂之祓詞. 宣祓詞. 謂倭詞也.」
- 2) 「跡云. 上劍謂上天皇也. 上劍祓麻(麻祓)詞等事. 兩文部在左右. 而各上亦讀耳.」
- 3) 「朱云. 東西文部. 上祓刀讀祓詞. 謂. 先東文部. 上祓刀後. 次西文部. 讀祓詞者. 未明.」
- 4) 「古記云. 問. 大祓. 東西文部. 上祓刀. 并讀祓詞意何. 答. 東西文部二人. 各以刀一口參入御所. 捧刀各讀申祓詞. 即刀所給也. 東文部刀者. 作造兵司. 少善之. 西文部刀者. 作鍛冶司. 少惡之. 又問. 誰先誰後. 答. 隨文. 東前參. 西後參. 一時恭(共)參入也.」

『영집해』에 인용된 【사료6】 1)~4)의 각 사기에는 「동서문부」가 사용한 불도와 불사의 동일 여부, 불도의 준비, 의례 관여 방식, 불사 문제 등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적혀 있다. 먼저 1)과 4)는 문답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4)의 『고기』에는 불사에 관한 주석은 보이지 않지만 불도를 준비한 관사와 그 품질에 관한 내용까지 적혀 있다. 1)의 『혈기』에는 4가지 항목 모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어 당시의 관습이나 사실에 관한 이해를 돕는다.

더구나 1)~4)에는 공통적으로 「동서문부」의 의례 관여 방식 예컨대 어소에 들어가는 방식과 의례 집행의 순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것은 앞에서 제시한 신기관 내부에서 중신씨와 기부씨가 봉폐사 선정 문제를 두고 논쟁한 것이나, 內膳司 내부에서 高橋(다카하시)씨와 安曇(아즈마)씨가 신금식의 장에서 어선을 들고 가는 순번 문제로 논쟁한 사례²¹⁹⁾ 등에서 나타나듯이 각 씨족에게 ‘의례에 관여하는 순번’이 조정 제사의 장에서 권력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인식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씨족 간에 쟁점 사안인 ‘의례에 관여하는 순번’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동서문부」의 불도와 불사의 의례의 주석에도 사설마다 의례에 관여하는 순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것이다. 위의 1)~4)의 주석을 보면 동서문씨의 대불 의례는 ‘先 동문, 後 서문’이라는 순번이 안정된 체제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영집해』 신기령 대불조의 「동서문부」의 「불도」, 「불사」에 관한 주석

	被刀, 被詞 동일 여부	불도 준비	의례 관여 방식	불사
1)穴記	別刀, 別被詞 (同類)	관사	先東文 後西文	漢音=被詞 *倭音=倭詞
2)赤記	別刀, 別被詞		동서문 좌우 배치 각기 上被刀 讀被詞	
3)朱記			先東文 後西文	未明
4)古記	別刀, 別被詞 2인이 각기 도1구	東文刀 造兵司 ²²⁰⁾ (善) 西文刀 鍛冶司 ²²¹⁾ (惡)	공동 參入 先東文 後西文	

219) 『本朝月令』 六月十一日 神令今祭事に 인용 『高橋氏文』에는 연력 11년의 태정관부에 기재된 내용에는 연력 8년에 2씨가 제출한 2씨의 「私記」(=『家記』)와 「國史」(=『日本書紀』)를 비교 검토한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

220) 조병사는 율령제 兵部省에 속한 관사의 하나로 儀裝, 兵器의 제조와 제조에 필요한 기술 집단을 지배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잡호 해방령에 의거해 천평 16년(744) 폐지되었다가 천평보자 2년(758)에 재설치되었고, 寬平 8년(896)에 신설된 병고료에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延喜兵庫寮式』에는 “무릇 二季大被의 被横刀 8구[金裝二口, 烏裝六口.]를 6월과 12월 28일에 신기관에 보내야 한다.”고 적혀 있다.

221) 단야사는 율령제 궁내성에 소속 관사로 鍛冶部를 관리하고 도검과 철, 동제 기구의 제작을 담당하였다. 조병사와 같이 천평 16년에 폐지되었다가 대동 3년(808) 부활하여 宮内省 소속 木工寮에 병합되었다. 『연희목공료식』 供神料조에는 「金裝太刀一口」와 「烏裝太刀」가 기재되어 있지만 불도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아 불도 제작은 모두 병고료에 이관된

다음은 「동서문부」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지를 개성청원 기사를 통해 살펴보자. 『속일본기』 연력 10년(791) 4월 무술조에는 정6위상 文忌寸 最弟(후미노이미키모오토) 등이 西文首가 東文直과 함께 나란히 2家を 이루어 천황에게 봉사하였는데 東文家が 이미 숙네 성을 받았는데, 西文家が 여전히 기존 성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숙네 성으로 개성을 청원한다고 적혀 있다. 이 청원문을 통해 확인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동서문씨가 「문기촌」이라는 성을 받은 이후에는 씨성만으로는 동문씨인지 서문씨인지 구별이 어렵다. 그런데 이 개성청원문을 통해 문기촌이라는 씨명 아래 동서문씨가 ‘東西의 家’를 이룬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 동문, 서문 양가가 나란히 천황에게 봉사했는데 동문씨가 숙네 성으로 개성하였지만 서문씨가 여전히 기존성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숙네성 개성청원의 이유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고대 일본의 氏姓이 지닌 성격과 연결된다. 먼저 氏(우지)는 일반민의 혈연 집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大和(야마토)왕권 내의 大王(천황)과 지배층 간의 정치적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²²²⁾ 그래서 씨의 본질은 천황에게 氏名을 받은 선조와 같이 그 씨명이 상징하는 직무를 담당하며 천황에게 지속적으로 봉사하는 데 있다.²²³⁾ 또 姓은 각 씨족의 천황에 대한 봉사의 역사성 등에 의해 상하, 존비의 구별이 존재한다. 더구나 대화왕권이 율령제국가로 이행되면서 지배자집단은 위계제를 기반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관인제 기구의 법적인 원칙의 이면에는 출자(출신), 族姓이라는 조건이 상존하였다. 따라서 당시 사회에서 천황에 대한 봉사 이력이 같다는 것은 같은 씨성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된다. 그래서 개성청원문에서 동서문씨가 양가를 이루어 함께 천황에게 봉사한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주장이 청원문에 기재된 것으로 보아 서문가의 봉사 내력에 대한 주장이 당시 사회에서도 성립 가능한 것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둘째, 서문가가 주장한 동문가의 숙네성으로의 개성은 『속일본기』 연력 4

것으로 보인다.

222) 津田左右吉, 「古語拾遺の研究」 『日本上代史の研究』, 岩波書店, 1947 ; 直木孝次郎, 「古代日本の氏」 『日本古代の氏族と天皇』, 塙書房, 1964 ; 義江明子, 「日本古代の氏と「家」」 『日本古代氏の構造』, 吉川弘文館, 1986 등.

223) 阿部武彦, 「氏姓の起源」 『氏姓』, 至文堂, 1960, pp.24-26 ; 吉田孝, 「律令時代の氏族・家族・集落」 『律令國家と古代の社會』, 岩波書店, 1983, pp.126-132.

년(785) 6월 계유조에 당시 동한씨를 대표하는 존재인 右衛士督 중3위 겸 下總守 坂上大忌寸 菟田麻呂(사카노우에노오이미키카리타마로) 등이 올린 개성 청원문에는 坂上씨를 비롯한 지씨(內藏, 平田, 大藏, 文忌寸씨 등)에게 숙네성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 받았다고 적혀 있다. 또 이 개성청원문에는 “後漢 靈帝의 증손 阿智王의 후손이 중국이 혼란할 때 帶方으로 이주하였다가 東國에 聖主가 있다는 말을 듣고 무리를 이끌고 일본열도로 이주하였다.”²²⁴⁾는 시조전승이 실려 있다. ‘후한 영제’의 후손이라는 시조전승은 『신찬성씨록』에도 게재되어 있다.²²⁵⁾ 그런데 『고사기』에는 백제에서 阿知(아치)吉師가 파견된 것으로, 『일본서기』에는 阿知(아치)使主와 아들 都加(쓰카)使主가 일족을 이끌고 이주하였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제시한 문기촌최제의 개성청원문에는 ‘漢高帝(祖)의 후손 鸞이 시조이며, 난의 후손 王狗 때 백제로 이주하였고 백제 구소왕(귀수왕) 때 문인을 찾는 성조의 부름에 따라 왕구의 손자 왕인이 이주했다는 전승이 기재되어 있다. 서문씨의 경우도 『고사기』에는 백제에서 파견된 和邇(와니)길사가 文首 등의 조상이라 적혀 있고, 『일본서기』에는 王仁(와니)가 書首 등의 시조라고 적혀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고사기』, 『일본서기』와 『속일본기』, 『신찬성씨록』 등에 기재된 조상전승의 차이는 『신찬성씨록』의 표문에 기재된 ‘자신이 더욱 고귀한 가문임을 과시하려 하거나, 이름난 씨족임을 내세우기 위해 거짓으로 증조를 내세우거나, 신의 자손이나 천황가의 후예임을 증명하여 존귀한 족속임을 나타내려 했다.’²²⁶⁾는 것과 ‘스스로를 한반도 諸國의 왕이나 중국 황제의 후예라고 칭하기도 한다.’²²⁷⁾라는 씨성제의 문란에 관한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

224) 『속일본기』 연력 4년(785) 6월 계유조

225) 개성청원이 허가된 뒤 後漢 靈帝의 후손으로 공인되어 『신찬성씨록』 諸蕃 漢條에 게재되었다. 예컨대 右京 諸蕃 漢 坂上大宿禰條 「出自後漢靈帝男延王也.」, 右京 諸蕃 漢 檜原宿禰條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孫賀提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內藏宿禰條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四世孫東人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山口宿禰條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四世孫都黃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平田宿禰條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五世孫色夫直之後也.」, 右京 諸蕃 漢 佐太宿禰條 「坂上大宿禰同祖. 都賀直三世孫兔子直之後也.」 등을 들 수 있다.

226) 『신찬성씨록』 表 「高門接軫. 甲姓聯衡. 枝葉寔繁. 派流彌衆. 既而德廣所覃. 占雲靡輟. 情願編戶. 星陣相尋. 或擬丘陵而挺峻. 或飛軒蓋以騰華. 又有僞曾冒祖. 妄認膏腴. 證神引皇. 虛託黻冕.」

227) 『신찬성씨록』 序 「蕃俗和俗氏族相疑. 萬方庶民. 陳高貴之枝葉. 三韓蕃賓. 稱日本之神胤. 時移人易. 罕知而言.」

즉 나라시대 말 헤이안시대 초기에 이르면 원래 전승 상의 시조 위에 새롭게 시조를 더하는 것이 하나의 사회현상이 되었다.²²⁸⁾ 따라서 동, 서문씨의 『속일본기』와 『신찬성씨록』에 기재된 시조 전승은 『고사기』, 『일본서기』 단계의 전승상의 시조 위에 새롭게 시조를 더하여 출신을 바꾼 이른바 ‘始祖加上’의 한 사례이다.

셋째, 동서문씨의 개성청원문에 나타난 ‘시조가상’ 사례를 비교해 보면 동문가에 대한 서문가의 대항의식도 엿보인다. 왜냐하면 동서문씨가 양가를 이루어 천황에게 봉사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동문씨 보다 뒤에 개성한 청원한 서문씨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등장하는 조상인 ‘화이(왕인)’ 위에 ‘한 고조의 후손 난을 시조’로 둔 계보를 제시하여 ‘후한 영제의 증손 阿智王’을 시조로 삼은 동문씨보다 시조 계보를 더 소급시켜 연원이 오래된 씨족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동서문부」가 불도를 올리고 불사를 읽는 대불 의례 집행의 순서나 동서문씨에 대한 숙네성 사여 순서는 영문의 주석에 기재되어 있듯이 先 동문, 後 서문이라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성 청원문에 나타난 시조 가상의 방식을 보면 뒤에 개성을 청원한 서문씨의 동문씨에 대한 대항의식이 확인된다.²²⁹⁾

4. 의례 담당 배경과 ‘항례대불’의 성립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에서 불도를 올리고 불사를 읽는 의례를 「동서문부」가 담당하게 된 배경에 관해 살펴보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선 말의 공회와 동서문씨의 관련성에 주목한 연구를 들 수 있다. 本位田菊士(혼이텐 기쿠시)는 『延喜左右馬寮式』 祭馬條에 기재된 「六月十二月晦祓各三疋」이라는 기사에 의거하여 불 의례와 말의 공회가 본질적으로 인연이 있으며 말과 邪氣祓除는 중국에 기원을 둔 것이라 설명하였다.²³⁰⁾ 이 논리에 기초하여 加藤謙吉(가토 겐키치)은 東文直이 말 사육과 관련이 있는 씨족이란 점, 史姓 씨

228)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研究篇, 吉川弘文館, 1963, p.369 ; 管澤庸子, 「『新撰姓氏錄』における姓意識と渡來系氏族」 『史窓』58, 2001, p.216.

229) 서문씨의 경우는 왕진이게 사성 씨족과도 근접한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의제적 동족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래서 서문씨는 왕진이게 사성 씨족과도 조상 전승 문제로 경합을 벌였다. 이 문제는 별고(앞의 논문[2016])를 참조하기 바란다.

230) 本位田菊士, 「額田部連額田部について」 『續日本紀研究』238, 1985, p.7.

죽이 말의 사육이나 의례 등과 밀접하게 관련된 점, 그리고 천평 12년 10월에 東西史部와 秦氏가 성무천황의 기병으로 징발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아 사성씨족과 한신신앙에 기초한 말 의례가 대불에서의 동서문씨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²³¹⁾ 그래서 대불 의례에 사용된 물품과 제사에 사용된 말에 관한 기록을 비교, 검토하여 말²³²⁾과 「동서문부」의 대불 의례 집행의 관련 여부에 관해 살펴보려 한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사료7】

- 1) 『延熹四時祭式上』 「六月晦日大祓[十二月准此.] 五色薄純各二尺, 緋帛一丈五尺, 絹二疋, 金裝橫刀二口, 金銀塗人像各二枚[已上, 東西文部所預.]. 庸布三段, 木綿五斤二兩, 麻二十斤十兩. 葉十二兩. 烏裝橫刀六口, 弓六張, 篋二百株. 鋏六口. 鹿角三頭, 鹿皮六張. 米二斗, 酒六斗, 稻四束. 鰻二斤, 堅魚七斤, 腊一石五斗, 海藻三十斤, 鹽六斗. 水盆六口, 匏六柄, 櫛二十把. 馬六疋. 祝詞料, 庸布五段, 短帖一枚.」
- 2) 『延喜左右馬寮式』 祭馬條 「凡年中諸祭祓馬者, 二月祈年祭十一疋, 六月十二月月次祭各二疋, 六月十二月晦祓各三疋, 四月七月廣瀨·龍田兩社祭各三疋[四月左二疋, 右一疋. 七月左一疋, 右二疋. 増減之數, 平以輪轉. 前祭二日, 差馬部一人送之.]. 九月伊勢太神宮神嘗祭二疋, 齋宮寮主神司六疋, 齋內親王遷野宮祓一疋, 並覆奏以放近都牧繫飼馬充. 自餘所用, 臨時聽處分.」

1)에는 '6월 그믐의 대불(12월 이것에 준한다.)'에 사용된 물품이 기재되어 있는데, 『연희식』에 기재된 각종 祓, 예컨대 鳴雷祭神·祓料, 春日神四座祭 解除料, 春日神四座祭 釀神酒 해제료, 菌并韓神三座祭 해제료, 平岡神四座祭 해제료, 平岡神四座祭 釀神酒 해제료, 平野祭四座祭 해제료, 御贖料, 御贖, 中宮御贖, 毎月晦日御麻, 中宮晦日御麻, 毎月晦日御贖, 霹雷神祭 해제료, 羅城御贖, 蕃客送界神祭 불료 등은 유사한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에 사용된 물품은 국가가 행하는 불에서 사용된 물품의 전형이라고 간주되고 있다.²³³⁾ 또 2)의 『연희좌우마료식』 제마조에는 연

231) 加藤謙吉, 앞의 책, p.79.

232) 「六月晦日大祓」의 大祓詞 말미에는 「天下四方國[爾波], 自今始[氏]罪[止]云[布]罪[波]不在[止], 高天原[尔]耳振立聞物[止]馬牽立[氏]」라고 적혀 있다. 말은 귀를 움직여 異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밝은 동물로 묘사되어 있다(村山道宜, 「耳のイメージ論」 『口頭傳承の比較研究』2, 弘文堂, 1985, pp.221-223).

중의 각종 제사에 사용되는 말에 관한 기록이 적혀 있다. 여기에도 6월과 12월 그믐의 불에 사용된 말이 각 3필(2회×3필=6필)이라고 적혀 있으므로, 1)에 기재된 말 6필이라는 숫자와 합치된다. 그러므로 말 6필은 좌우마료에서 준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각 종 연중제사에 말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동서문부」가 관여한 6월 그믐의 대불(12월 이것에 준함)에만 말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더구나 1)에 기재된 ‘五色薄繩 各 2척, 緋帛 1장 5척, 絹 2필, 金裝横刀 2구, 金銀塗人像 各 2매’는 동서문부의 대불과 관련된 것이라는 주가 달려 있다. 따라서 제사에 사용된 말 관련 기록과 불에 사용된 물품을 통해 보더라도 「동서문부」의 대불 의례 집행과 말의 연관성은 찾기 어렵다.

또 『영의해』 신기령 대불조의 불사 읽기에 관한 주석²³⁴⁾에는 “문부가 한음²³⁵⁾으로 읽는 것이다.”라고 적혀 있다. 『영집해』에는 『의해』의 주석 이외에도 『영석』에도 “불사는 양(동서)문부가 한어로 읽는 것이다”²³⁶⁾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그리고 【사료6】의 1)에 기재된 『혈기』에도 불사는 漢音으로 읽는 것이라고 적혀 있다. 따라서 중국 문화에 정통한 「동서문부」가 한음 즉 중국어로 불사를 읽는 의례를 담당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다.²³⁷⁾ 이 설명도 『대보령』이 편찬된 시기에 한음으로 축사를 읽을 수 있는 중국 문화에 정통한 존재가 「동서문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음’ 구사 능력이라는 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성 씨족 중에도 渡唐 경험자가 상당수 존재하였다. 예컨대 『일본서기』와 『속일본기』에 기재된 1)백치 5년(654) 2월에 견당압사로 입당(객사)한 高向史黑麻呂(玄理, 다카무코노후비토쿠로마로), 2)백치 4년(653)~제명 7년(661)? 입당학문승 道昭(도쇼, 俗姓 船史), 3)백치 5년~제명 원년 견당관관으로 입당한 田邊史鳥(다나베노후비토토리), 4)제명 5년~제명 7년 견당사 坂合部連石布(사카이베노무라지이와시키) 등을 따라 입당한 伊吉史[連]博德(이키노후비토[무라지]하

233) 三宅和朗, 「律令期祭祀遺物の再検討」 『古代の王權祭祀と自然』, 吉川弘文館, 2008, p.318.

234) 『영의해』 신기령 대불조 「讀祓詞[謂. 文部漢音所讀者也.]」

235) 한음은 장안과 낙양 兩京의 唐言을 가리킨다(新川登龜男, 앞의 책, p.106).

236) 『영집해』 신기령 대불조 「謂. 文部漢音所讀者也」, 「釋云. 祓詞者兩文部所讀漢語耳」

237) 백치 5년(654)~제명 원년(655)에 遣唐判官으로 입당한 書直麻呂와 지통조와 문무조에 南島에 파견된 文忌寸博勢(博士) 등이 대불에 참가한 인물이라고 설명하였다(新川登龜男, 「儀禮の言葉と「もの」」 『日本古代の儀禮と表現-アジアの中の政治文化-』, 吉川弘文館, 1999, pp.106-107).

카토코), 5)천무천황 13년(684) 12월 대당학생 白猪史寶然(骨, 시라이노후비토호네), 6)대보 원년(701) 정월 遣唐少錄 白猪史阿麻留(시라이노후비토아마루) 등을 들 수 있다. 또 고대 일본의 大學에서는 한음으로 전수해야 할 과목은 중국인을 박사로 삼았다.²³⁸⁾ 7세기말부터 8세기 초에 걸쳐 당인 續守信(쇼쿠슈겐), 薩弘恪(사쓰코가쿠) 등이 대학의 음박사로 기용된 사례가 그것이다.²³⁹⁾ 따라서 한음으로 축사를 읽는 것이 「동서문부」가 대불 의례를 집행하게 된 이유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湯川久光(유카와 히사미쓰)는 「도래」계 씨족을 대표하는 「동서문부」가 복속의례로서 불도 올리기와 불사 읽기 의례를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²⁴⁰⁾ 이 논리는 『연희축사식』에 기재된 동서문부의 呪(呪)詞²⁴¹⁾가 성립된 시점을 7세기 후반이후라고 간주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또 「동서문부」와 같이 오래된 「도래」계 씨족은 도교를 비롯한 대륙의 신사상과 지식을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존재이므로 「동서문부」가 읽은 주사는 신지식의 수용과 원용이 가능한 신규 「도래」인이 실제로 담당하였지만 도래계 씨족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로 「문기촌」씨를 표상하여 형식적인 주상자로 자리매김한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런데 「동서문부」가 읽은 주사와 남북조기의 章醮에 기재된 내용을 비교, 검토한 연구에 의하면 남북조기의 도교의례인 장초가 동서문부가 대불 의례에서 읽은 주사의 원류라고 설명되고 있다.²⁴²⁾ 따라서 도교적 색채를 띤 「동서문부」의 주사가 수대 이후에 성립된 것이라는 설명에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 또 씨족을 동원한 집단적인 봉공 사례인 楯伏舞 상연²⁴³⁾을 「동서문부」의 복속의례의 사례라고 제시하였다. 그런데 東大寺에서 大佛開眼式에서 대화국 고시군 회전 지역의 동한씨인 檜前忌寸(히노쿠마노이

238) 内外典 구별 없이 중국인에게 한어(한음)을 배우게 한 예는 양로 4년(720) 12월 25일자 태정관부(『類聚三代格』3)와 『속일본기』 신희경운 원년(767) 2월 정해조 등에도 보인다.

239) 서보경, 「고대 日本의 신지식 전수 방식의 변화와 특징—大學寮의 성립 과정을 중심으로—」 『일본학』38, 2014, pp.174-175.

240) 湯川久光, 「歸化人の服屬儀禮・その形成と意義—東・西文忌寸部の呪詞をめぐって—」 『上代文學』52, 1984, pp.83-85.

241) 『延喜祝詞式』 「東文忌寸部獻横刀時呪[西文部准此.]」

242) 高山繁, 앞의 책, pp.55-57

243) 『속일본기』 천평승보 4년(752) 4월 을유조에는 東大寺의 大佛開眼式에서 久米舞, 楯伏舞 등이 상연되었다고 적혀 있고, 『東大寺要錄』2 供養章3 開眼供養會條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筒井英俊編纂・校訂, 『東大寺要錄』, 國書刊行會, 1944, pp.48-49).

미키)씨 20인이 순복무를 상연한 것을 가리킨다. 이 순복무를 이끈 것은 문기촌흑마려였다. 그가 주세료의 장관을 역임한 시기는 聖武(쇼무)천황과 孝謙(고켄)천황이 대불조영에 총력을 기울인 때였다. 그러므로 흑마려가 회천기촌씨를 이끌고 순복무를 상연한 것은 성무, 효겸조의 관인으로서 활약이 그 배경이 되었다. 이외에 서문씨와 왕진이계 사성 씨족의 ‘집단봉공’ 사례로 보귀 원년(770) 3월에 稱德(쇼토쿠)천황이 하내국 由義宮에 행차하여 연회를 베풀 때 왕진이계 史姓 씨족인 葛井(후지이), 船(후네), 津(쓰)씨와 왕인계 文(후미), 武生(다케후), 藏(구라)씨 등 6씨 230인이 모여 歌垣을 담당한 사례를 들 수 있다.²⁴⁴⁾ 이 가원은 이른바 ‘칭덕, 道鏡(도쿄)’정권에서 활약한 갈정씨가 주도하였다.²⁴⁵⁾ 따라서 효겸조의 문기촌흑마려와 칭덕조의 葛井連根主(후지이노무라지네누시), 葛井連道依(후지이노무라지미치요리) 등 당시의 천황권과 연결된 인물이 일족을 동원하여 일회적, 집단적으로 행한 순복무나 가원을 이끈 것과 「동서문부」의 ‘항례대불’ 의례 집행을 동일 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동서문부」가 대불 의례를 담당한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신기령에 기재된 「祓」에 대한 영문과 그에 관한 『영집해』의 주석에 기재된 내용에 주목하려 한다. 관련 사료는 다음과 같다.

【사료8】

- 1) 『영의해』 신기령 대불조 「凡六月十二月晦日大祓[謂. 祓者. 解除不祥也.]」
- 2) 『영집해』 신기령 대불조 大祓
 - ① 「謂. 祓者. 解除不祥也」
 - ② 「釋云. 祓音甫物反. 周禮. 女巫. 掌歲時祓除. 左伝. 受璧而祓之. 杜預曰. 祓除凶之禮也. 淨御原朝庭(朝廷)記詔曰. 四方爲大解除. 用物. 則國別. 國造輸祓柱. 馬一疋. 布一常. 以外郡司. 各刀一口. 鹿皮一張. 鑊一口. 刀子一口. 矢一具. 稻一束. 且每戶麻一條也」

1)의 『영의해』에는 “불은 상스럽지 못한 것을 풀어서 없애는 것이다.”라는 간결한 내용의 주가 달려 있다. 2)의 ①은 1)과 같은 내용이다. 2)의 ②는 연력 6년부터 연력 10년 사이에 만들어진 『양로령』의 最古 주석서인 『영석

244) 『속일본기』 보귀 원년(770) 3월 신묘조.

245) 서보경, 앞의 논문(2016), pp.103-104.

』²⁴⁶⁾에 기재된 내용인데, 『周禮』, 『春秋左氏傳』, 『左傳集解』 등의 중국 고전을 열거하고 있다. 먼저 『주례』를 인용한 春官인 宗伯(제사와 전례를 관장) 아래에 보이는 「女巫」라는 직명과 “세시에 불제를 주관한다.”라는 직무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또 『좌전』과 杜預曰 이하는 『춘추좌씨전』 僖公 6년 겨울조에 기재된 “옥을 받아서 祓한다.”는 문구와 『좌전집해』의 “祓은 凶을 없애는 예이다.”²⁴⁷⁾라는 주석을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2)의 ②는 중국의 고전을 들어 자구를 해석한 훈고적인 주석에 따르면 祓은 巫적인 존재가 상스럽지 못한 것을 풀어서 없애는 것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 고대의 문자는 단순한 의사전달의 매개가 아니라, 신과 대화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의미가 강하였다.²⁴⁸⁾ 그러므로 上古 중국의 「史」는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巫, 祝, 宗」과 사실상 동일한 성격을 띤 존재였다. 그래서 「사」는 일상적인 제의도 주관하면서 夢, 일식, 혜성, 降神 등과 같은 이변과 神異에 대한 해석과 그 구체적인 길흉의 내용까지 예측하여 중요한 정사와 전쟁, 외교의 자문 역도 담당하였다. 또 필요에 따라 鬼, 神에게 제사하여 예상되는 재난을 祓除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²⁴⁹⁾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훈고적인 주석에서 말하는 祓의 집행자로 「동서문부」가 선발된 것은 「동서사부」의 기본인 「동서문부」가 대화개신 이전부터 담당한 ‘文人, 書人, 史’라는 직장과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동서문부」가 한문으로 쓴 불사를 한음으로 읽은 것도 한자가 지닌 상징성과 무관하지 않다. 한자는 고대에 이루어진 상징의 결정체이며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주술 능력을 지닌 문자를 목소리를 내어 입으로 읽고 외는 것은 중국어 능통 여부가 아닌 한자 자체가 가진 속성에 의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동서문부」가 한자로 쓰인 도교적 呪詞를 한음으로 읽은 것이다. 또 도(검)를 올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무당이 행하는 가무강신 의례

246) 『本朝法家文書目錄』의 養老令部に 「令一部七卷[卅篇]」 「令釋一部七卷[卅篇]」, 「令義解一部十卷[卅篇并序]」 3개가 제시되어 있다. 또 『영의해』의 해설 가운데 『영석』에 기초한 것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양로령』의 주석서로 『영석』이 권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井上光貞, 앞의 책, pp.125-126).

247) 『周禮』 春官 「女巫掌歲時祓除釁浴[釁浴, 謂以香薰草藥沐浴]」; 『春秋左氏傳』 僖公 6年 冬 「昔武王克殷, 微子啓如是, 武王亲释其縛, 受其璧而祓之」; 『左傳集解』 「祓, 除凶之禮」.

248) 이성규, 「史官의 傳統과 中國 歷史敍述의 特色」 『강좌 한국고대사』5 한국고대사연구소 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p.219.

249) 淺野裕一, 「瞽史の官と古代天道思想」 『黃老道の成立と展開』, 創文社, 1992, pp.141-142.

나 중국의 刀劍 제사에서도 보인다. 더구나 祓은 원래 한국어 ‘푸리’와 계통이 같은 말이며 巫가 사용한 祓刀는 祝具였다.²⁵⁰⁾ 그러므로 「동서문부」의 불도 올리기와 불사 읽기 의례는 무적인 존재가 주문을 읽고 도를 올리는 종교 의례가 결합된 것이다.

다음은 【사료8】의 2)②의 淨御原宮²⁵¹⁾에서 천하를 다스린 운운 이하의 내용은 앞부분의 훈고적인 주석과 달리 사실에 기초한 주석이다. 이것은 『일본서기』 천무천황 5년(676) 8월 신해(16일)조의 “사방에 大解除를 행하라. 필요한 물건²⁵²⁾은 국 별로 國造²⁵³⁾가 마련하라. 바치는 공물은 말 1필, 피륙 1常²⁵⁴⁾으로 한다. 그 밖의 물건은 郡司가 담당하며 각각 刀 1구, 鹿皮 1장, 鑊 1구, 刀子 1구, 鎌 1구, 矢 1구, 稻 1속을 마련하고. 또 집집마다 麻 1조를 내도록 하라고 명하였다.”는 기사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일본서기』에는 천무천황 10년(681) 7월 정유조와 주조 원년 7월 신축조 등에 「四方(=諸國)」에서 행해진 「大祓」을 「大解除」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제국대불」은 6월과 12월에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향례대불'과는 구별되는 임시대불이다. 그런데도 『영석』에서는 『일본서기』와 『고사기』에서 불의 기원이라 간주한 須佐之男命(素盞男命, 스사노오노미코토)의 추방신화나 仲哀(쥬아이)天皇段에 기재된 천황의 죽음에 의해 국의 대불을 설명한 기사가 아니라 천무조의 「제국대불」을 '향례대불'과 연결하여 주석을 단 것이다. 이것은 대불의례의 기점으로 천무조에 임시로 행해진 「제국대불」을 제시한 것을 의미한다. 천무조의 「제국대불」은 각 국마다 國造와 郡司가 주체가 되어 행한 것이다. 이것은 군사라는 재지 관인을 매개로 하면서도 舊 제사 통솔자인 국조에 의존하여 전국 제사권의 단일화를 도모한 조치였다.²⁵⁵⁾ 이러한 제사권의 단일화는

250) 松前健, 「鎮魂祭の原像と形成」 『古代伝承と宮廷祭祀』, 塙書房, 1974, p.122.

251) 『일본서기』 천무천황 원년(672) 시세조에 “궁실을 오카모토노미야(岡本宮) 남쪽에 지었다. 그 해 겨울에 그곳으로 옮겼다. 이를 아스카노키요미하라노미야(飛鳥淨御原宮)라고 부른다.”라고 적혀 있다. 또 천무천황 주조 원년(686) 7월조에는 「飛鳥淨御原宮」이라는 궁호가 붙여졌다고 적혀 있다.

252) 『養老神祇令』 諸國大祓條에 「每郡出刀一口, 皮一張, 鎌一口, 及雜物等. 戶別麻一條. 其國造出馬一匹.」이라는 규정이 있다.

253) 「국조」는 대화개신 후의 '1國 1人'의 국조를 가리키며 국조 가운데에서 선발해 일국 내의 祭祀, 神事に 관한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254) 『養老賦役令』에 관한 『令義解』의 해석과 『令集解』 『穴說』에 의거하면 “庸布 1丈 3尺을 1常이라 하고 기재하고 있다.

255) 西宮秀紀, 「律令制國家の<祭祀>構造とその歴史的特質—宗教的イデオロギー装置の分析—」, 『日本史研究』283, 1986, p.46.

내란을 지도하여 권력을 탈취하고 절대 신적인 권위를 부여받은 천무, 지통 천황 시대의 왕권에 기반을 둔 것이다.²⁵⁶⁾

따라서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 의례가 ‘천황대불’과 ‘백관대불’이라는 형태로 정립된시점은 언제부터였는지가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대불 관계 기사의 분석이나 중신의 ‘대불사’와 「동서문부」의 ‘불사’의 분석을 통해 그 시점을 추적하였다.²⁵⁷⁾ 이러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향례대불’은 의례를 집행할 장소와 의례를 항상적으로 관리할 관사의 정비가 전제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천무조의 「神官」, 지통조의 「神祇官」 그리고 『대보령』 이후의 「신기관」을 구조와 기능을 비교, 검토한 西宮秀紀(니시미야 히데키)의 연구에서 시사 받은 바 크다. 그는 신기관 제도의 확립을 단계 별로 해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천무조의 「신관」과 지통조의 「신기관」의 단계 별 차이점에 관해서도 규명하고 있다.²⁵⁸⁾ 이 논리에 의거하면 지통조가 되면 백관이 모이는 것이 가능한 관사의 장이 정비되고, 천무조의 「신관」과 달리 「신기관」에 항상적으로 제사를 관장한 전임 대부가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의례의 집행 장소와 집행 관사의 성립이 이루어진 지통조에 이르러 ‘향례대불’이 집행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나라, 헤이안시대에 진행된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의 주 무대는 궁성의 남문인 주작문 주변이었다. 이것은 대불이 율령제적인 궁이나 경의 성립의 설정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향례대불’은 임신난 이후 본격적으로 율령이 정비되면서 임시로 행하던 대불 의식이 지통조에 이르러 정례 의례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먼저 불에 사용되는 물품의 규정이 이루어지고, 어마를 매개로 하여 ‘천황대불’과 ‘백관대불’을 연결하여 율령국가의 국가 행사로서 전후에 위치 지웠다. 또 천황에게 불도를 올리고 불사를 읽는 의례는 「동서사부」를 대표하는 「동서문부」 2인을 巫적인 존재로 규정하여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고 중신의 ‘대불사’와 복부의 어마 해제는 罪穢를 풀어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인데 비해 「동서문부」의 의례는 천황의 신변의 災厄을 풀어서 없애고 황위의 영속을 기도하는 천황의 수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향례대불’은 이질적인 성격의 중신의 어마 의례와 「동서문부」의 불도, 불사 의례를 결합하여

256) 石母田正, 「國家機構と古代官僚制の成立」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1989, p.219.

257) 주 31) 참조.

258) 西宮秀紀, 위의 논문, pp.26-29 ; 佐佐田悠, 「律令制祭祀の形成過程—天武朝の意義の再検討—」 『史學雜誌』111-12, 2002, pp.51-55.

천황대불로 규정하고, 천황대불에 사용한 어마를 매개로 백관을 대상으로 한 ‘백관대불’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항례대불’을 구성하였다.

5. 맺음말

『養老神祇令』의 大祓條에는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은 神祇官인 中臣, 卜部뿐만 아니라, 「東西文部」가 의례를 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 글은 ‘항례대불’을 담당하는 「東西文部」가 어떤 존재이며, 대불의 집행자로 선발되었는가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항례대불’의 구조와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영문에 나타난 「동서문부」의 실체를 규정하여 이들이 대불 의례를 담당하게 된 배경과 ‘항례대불’이 성립된 시점 등을 규명하였다. 검토의 결과로 맺음말을 대신하려 한다.

첫째, ‘항례대불’은 ‘천황대불’과 ‘백관대불’로 구성되었다. 양자는 천황의 어마를 매개로 하여 전후 2부 구조를 이룬다. 그래서 어마는 백관남녀에게 천황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祓具였다. 전후 2부 구조의 대불은 임신난 이후 본격적으로 율령이 정비되면서 임시로 행하던 대불이 의례를 집행할 장소와 의례를 관리할 관사의 구비가 이루어진 지통조에 이르러 도성 내에서 지배자 계급의 정점에 선 천황의 위치를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의례로 정례화하였다. 또 「동서문부」의 의례와 어마를 매개로 한 대불 의례는 분리되어 별개로 행해질 수 있는 의례였고, 중신의 ‘大祓詞’가 罪穢를 풀어서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 데 비해 「동서문부」의 불사는 천황에게 예상되는 상스럽지 못한 것을 풀어서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천황을 대상으로 한 대불의 핵심적인 의례였다. 따라서 영문에 등장한 ‘항례대불’은 「동서문부」의 불도, 불사 의례에 이질적인 성격의 중신의 어마 의례를 결합하여 ‘천황대불’로 규정하고, ‘천황대불’에 사용한 어마를 매개로 하여 백관을 대상으로 한 ‘백관대불’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동서문부」는 東文直(連으로 개성)과 西文首(連으로 개성)씨 중에 ‘天武八姓’ 사여 때 忌寸성을 받아 文忌寸씨가 된 동서문씨를 가리킨다. 천무조의 동서문씨를 대상으로 한 기촌성 사여는 문필, 회계 등으로 봉사한 조상의 업적과 천무조에 활약한 공로 등에 의거한 것이었다. 문기촌이라는 성을 받은 뒤 동서문씨는 동문, 서문 양가를 이룬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대불 의

례의 장에서는 先 동문, 後 서문이라는 순서로 불도와 불사 의례를 집행하였고, 改姓(기촌→숙네)도 선 동문, 후 서문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뒤에 개성을 청원한 서문씨가 후한 영제의 후손이라 주장한 동문씨보다 더 유구한 역사를 지닌 씨족이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한무제의 후손이라는 시조 전승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동문씨에 대한 대항의식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문기촌으로 개성한 동서문씨는 영문의 규정과 사록에 의거하면 史적인 능력(문필, 회계 등)으로 천황에게 봉사한 이력을 가진 존재이다. 이들은 천무조 이후 율령이 정비되면서 「동서사부」의 기본이 된 「동서문부」로 자리매김 되었고 ‘6월과 12월 그믐의 대불’에서 의례를 담당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이러한 「동서문부」가 대불 의례의 집행자로 선택된 것은 『영집해』에 인용된 『영석』의 “巫적인 존재가 상스럽지 못한 것을 풀어서 없애는 것이 祓이다.”라는 훈고적인 주석이 의미하는 바와 통한다. 즉 「史」는 상고시대 이래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巫, 祝, 宗」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필요에 따라 鬼, 神에게 제사하여 예상되는 재난을 祓除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존재였다. 따라서 「동서문부」의 「불도」 올리기와 「불사」 읽기 의례 집행은 문필, 회계 등을 담당한 동서문씨의 「사」라는 직장이 배경이 되었다.

【참고문헌】

<사료>

『古事記』, 『日本書紀』, 『續日本紀』, 『新撰姓氏錄』, 『養老令』, 『令義解』, 『令集解』, 『延喜式』, 『古語拾遺』, 『法曹類林』 『本朝法家文書目錄』, 『江家次第』, 『周禮』, 『春秋左氏傳』, 『左傳集解』 등

<국문>

김은숙, 「西文氏の ‘歸化’ 傳承」 『歷史學報』118, 1988
김은숙, 「倭漢氏の ‘歸化’ 傳承의 기초적 검토」, 『역사교육』40, 1996.
이성규, 「史官의 傳統과 中國 歷史敍述의 特色」 『강좌 한국고대사』5 한국고대사연구소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서보경, 「고대 日本의 신지식 전수 방식의 변화와 특징—大學寮의 성립 과정을 중심으로—」, 『일본학』38, 2014.
서보경, 「‘同祖’ 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仁, 王辰爾系 씨족」, 『한일관계사연구』53, 2016
서보경, 「고대 일본의 文筆氏族과 한국계 「渡來」 씨족」, 『사림』59, 2017
서보경, 「『新撰姓氏錄』의 편찬 자료와 勘校」, 『일본연구』76, 2018

<일문>

關晃, 「倭漢氏の研究」 『史學雜誌』62-9 1953(關晃著作集 『古代の歸化人』, 吉川弘文館, 1996)
直木孝次郎, 「人制の研究」, 『日本古代國家の構造』, 青木書店, 1958
直木孝次郎, 「律令官制における皇親勢力の一考察」 『奈良時代史の諸問題』, 塙書房, 1973
阿部武彦, 「氏姓の起源」, 『氏姓』, 至文堂, 1960
津田左右吉, 『日本古典の研究』下, 岩波書店, 1963
橫田健一, 「中臣氏と卜部」 『日本書紀研究』5, 1973
松前健, 「鎮魂祭の原像と形成」 『古代傳承と宮廷祭祀』, 塙書房, 1974
安田尙道·秋本吉徳 校註, 新編 日本古典文庫4 『古語拾遺 高橋氏文』, 現代思潮社, 1976
井上光貞, 關晃, 土田直鎮, 青木和夫 校注, 岩波思想大系3『律令』, 岩波書店,

1977

井上光貞, 「日本律令の成立とその注釋書」 『日本古代思想史の研究』井上光貞
著作集2, 岩波書店, 1986)

井上光貞, 「王仁後裔氏族と其の佛教」 『史學雜誌』54-9, 1943(『日本古代思
想史の研究』井上光貞著作集2, 岩波書店, 1986)

石上英一 「大藏省成立史考」 『日本古代の社會と經濟』, 吉川弘文館, 1978

小坂眞二, 「禊祓儀禮と陰陽道」 『早稻田大學大學院研究科紀要』別冊3, 1979

黛弘道, 「大和國家の財政」? 『律令制國家成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2

吉田孝, 「律令時代の氏族・家族・集落」 『律令國家と古代の社會』, 岩波書店,

1983

湯川久光, 「歸化人の服屬儀禮・その形成と意義—東・西文忌寸部の呪詞をめぐって—」 『上代文學』52, 1984

本位田菊士, 「額田部連・額田部について」 『續日本紀研究』238, 1985

伊藤千浪, 「律令制下の渡來人賜姓」 『日本歷史』442, 1985

村山道宜, 「耳のイメージ論」 『口頭傳承の比較研究』2, 弘文堂, 1985

金子裕之, 「平城京と祭場」 『國立歷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 共同研究「古代の
祭祀と信仰」本篇 國立歷史民俗博物館, 1985

西宮秀紀, 「律令制國家の<祭祀>構造とその歴史的特質—宗教的イデオロギー
裝置の分析—」, 『日本史研究』283, 1986

高山繫, 「日本古代の道教」 『古代史研究の最前線』4, 雄山閣, 1986

石母田正, 「國家機構と古代官僚制の成立」 『日本の古代國家』, 岩波書店,

1989

青木和夫 外 校注, 新日本古典文學大系『續日本紀1』, 岩波書店, 1989

並木和子, 「大祓の構造と變遷」 『神道學』146-147, 神道學會, 1990

西宮一民 校注, 『古語拾遺』, 岩波文庫, 1990(第6刷)

三橋正, 「大祓の成立と展開」, 『神道古典研究』12, 1990

古尾谷知浩, 「古代内藏寮について」 『史學雜誌』100-12, 1991

淺野裕一, 「瞽史の官と古代天道思想」 『黃老道の成立と展開』, 創文社, 1992

野口剛 「節折儀とその起源」 『律令國家の政務と儀禮』 虎尾俊哉編, 1995

吉川美春, 「古代禊祓儀禮と御贖物の一考察」 『神道史研究』43, 1995

北林春春香, 「律令文書行政における實務官職の形成」 『ヒストリア』156,

1997

- 新川登龜男, 「儀禮の言葉と「もの」」『日本古代の儀禮と表現-アジアの中の政治文化-』, 吉川弘文館, 1999
- 加藤謙吉, 『大和の豪族と渡來人 葛城・蘇我氏・大伴・物部氏』, 吉川弘文館, 2001
- 加藤謙吉, 「フミヒトの活動形態と機動性」『大和政權とフミヒト制』, 吉川弘文館, 2001
- 佐佐田悠, 「律令制祭祀の形成過程-天武朝の意義の再検討-」, 『史學雜誌』111-12, 2002
- 倉本宏一, 「「壬申年功臣」たちのその後」『東アジアの古代文化』118, 大和書房, 2004
- 関口力, 『摂関時代文化史研究』, 思文閣出版, 2007
- 三宅和朗, 「律令期祭祀遺物の再検討」『古代の王權祭祀と自然』, 吉川弘文館, 2008,
- 浅岡悦子, 「古代卜部の研究-『新撰龜相記』からみる祭祀氏族の系譜-」『人間文化研究』27, 2017

한일관계사 학술회의

고대 일본의 ‘亡命百濟官人’과 그 후예씨족

박재용(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고대 일본의 ‘亡命百濟官人’과 그 후예씨족

박재용(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1. 머리말
2. 天智朝 백제관인의 망명과 관위사여
 - (1) 백제관인의 망명
 - (2) 백제관인의 관위사여
3. 天武·持統朝 망명백제관인에 대한 정책
 - (1) 천무조 백제관인의 등용
 - (2) 지통조 백제왕씨와 백제관인 후손
4. 망명백제관인 후손들의 활약과 改·賜姓
 - (1) 大寶~養老년간 역사서 편찬
 - (2) 神龜년간 백제관인 후손들의 改·賜姓
 - (3) 天平寶字년간 개·사성 정책의 혼란
5. 『新撰姓氏錄』의 亡命百濟官人 후예씨족
6. 맺음말

1. 머리말

고대 일본에서 도왜인·씨족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왜 전승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씨족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7세기 후반 백제의 멸망 후 대거 망명한 백제인들이 율령국가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집중되었다.¹⁾ 이 과

1) 上田正昭, 『歸化人』, 中公新書70, 1965; 今井啓一, 『歸化人の研究』, 綜藝社, 1972; 平野邦雄, 『歸化人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1993; 關晃, 『古代の歸化人』, 吉川弘文館, 1996 등에서 백제 유민들이 일본고대문화 형성에 기여한 구체적인 내용이 연구되었다. 한국에 서는 이근우, 「일본열도의 백제 유민에 대하여」, 『한국고대사연구』23, 2001; 김은숙의 「

정에서 ‘亡命百濟官人²⁾’의 활동과 처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이른바 六國史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는 고대 일본이 율령국가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망명백제관인의 후손들, 특히 2~3세들의 역할과 활동이 부각되어 있다. 『續日本紀』와 『新撰姓氏錄』 등에 의하면 이들은奈良시대에 이르러 대부분 改・賜姓되는데, 그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³⁾는 많지 않다. 따라서 7세기 후반 1세대 백제관인들의 도왜 이후 그 후손들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일본사회에 어떻게 적응하고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에 대한 역사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舊백제계 씨족과 망명백제관인 후예씨족들을 ‘도왜계’라는 공통집단으로 파악하고 동일시각에서 검토해왔는데 개・사성 당시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그 성격과 행보의 차이가 드러난다.

이에 본고에서는 망명백제관인 후예씨족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天智朝 백제관인의 망명과 관위사여

(1) 백제관인의 망명

660년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의 부흥운동도 실패로 끝나자 왕족과 귀족을 비롯한 대규모 유민들이 일본열도로 건너갔다. 백제 유민의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규모를 대략 짐작할 수는 있다. 『일본서기』를 보면 天智 4년(665)에 400여명, 그 이듬해에 2,000여명, 천지 8년(669)에 700여명의 백제 유민을 지방에 안치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시기 이주한 백제 유민의 숫자만 3,100여명에 이른다.

일본 율령국가의 백제왕씨, 『백제유민들의 활동』, 충남역사문화연구원, 2007; 연민수, 「왜로 이주한 백제인과 그 활동」(同書); 박운선, 「度日 백제유민의 정체성 변화 고찰」, 『역사와 현실』83, 2012; 정효운, 「백제멸망 이후 유민들의 일본 내 활동」, 『일본 속의 백제-긴키지역』Ⅱ,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17 등을 참조 바람.

- 2) ‘망명백제관인’이란 백제멸망 이후에 왜국으로 망명한 백제유민들 가운데 백제 관등을 칭한 인물들을 가리킨다.
- 3) 伊藤千浪, 「律令制下の渡來人賜姓」, 『日本歴史』442, 1985; 田中史生, 「律令國家と蕃俗-渡來系氏族の姓と出自の問題」, 『日本古代國家の民族支配と渡來人』, 校倉書房, 1997; 菅澤庸子, 「八世紀における新來渡來人の改賜姓について」, 『世界人權問題研究センター研究紀要』4, 1999; 加藤謙吉, 「初期の藤原氏と渡來人の交流」, 佐伯有清編『日本古代中世の政治と宗教』, 吉川弘文館, 2002 참조.

『일본서기』의 관련 기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天智 4년(665) 2월 이달 백제국의 관위와 계급을 勘校하였다. 그리고 佐平福信의 공 때문에 鬼室集斯에게 小錦下를 제수했다[그 본래의 관위는 達率이다]. 다시 백제 백성 남녀 4백 여인을 近江國 神前郡에서 살게 했다.
- ② 天智 4년(665) 秋8월, 達率 答炆春初를 보내 長門國에 성을 쌓게 했다. 達率 億禮福留, 達率 四比福夫를 筑紫國에 보내 大野·椽 2城을 쌓았다
- ③ 天智 5년(666) 이해 백제의 남녀 2천 여인이 東國에 살았는데, 승려와 속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계해년부터 3년 동안 모두 官食을 주었다.
- ④ 天智 8년(669) 이해 또 佐平 餘自信, 佐平 鬼室集斯 등 남녀 7백 여인을 近江國 蒲生郡에 옮겨 살게 했다.

위 기사들을 보면 먼저 천지조정이 많은 백제유민들을 近江國으로 옮긴 일이 눈에 띈다. 주요 인물들도 대부분 近江으로 이주된 것으로 여겨진다. 천지조정의 백제인에 대한 일종의 사민정책이다. 근강은 천지 6년에 飛鳥지역으로부터 천도한 천지정권의 왕도였다. 근강천도의 주요 이유는 나당연합군의 침공을 대비한 국방상의 문제였다. 이와 관련하여 축성 기술을 가진 백제유민들은 왜국에서 방어시설의 확충에 협조하도록 하였다. 665년 8월에 백제 유민 중에 달솔 答炆春初이 長門國에 가서 성을 쌓는 일을 지휘하였고, 달솔 億禮福留와 달솔 四比福夫이 筑紫國에 가서 大野城과 椽城을 쌓는 일을 지휘하였다.

무엇보다 근강지역에 대규모의 백제인들을 이주시킨 것은 신왕도에서 국가 건설을 새롭게 구상하면서 백제인의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⁴⁾ 이는 5세기대 도왜씨족인 漢氏를 大和의 飛鳥지역에 정착시킨 것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천지천황은 반당·반신라 정책을 유지하면서 고구려와 함께 백제를 회

4) 近江천도에 재지 백제계 씨족과 망명 백제인들의 선진기술과 경제력을 이용했다는 견해(李鎔弼, 「近江政權의 氏族基盤과 그 성격」, 『日本歴史研究』7, 1998)가 참조된다. 백제인의 대규모 이주에 대해 새로운 농업기술의 도입에 의한 개척의 필요에서 시행되었다는 견해(胡口靖夫, 『近江朝と渡來人』, 雄山閣, 1996, 135~136쪽)도 있다.

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왜국에서 백제계 도왜인들을 결집할 사람이 필요했다. 당시 왜국에는 의자왕의 아들 善光(禪廣)이 있었다. 天智는 664년 선광을 百濟王으로 삼아 百濟大井에서 難波로 이주시켰다. 백제계 도왜인들이 모여살고 있던 百濟評은 近江지역과 함께 백제멸망 후에 도왜한 백제 유민들로 갑자기 인구가 늘었다.

天智조정에서 선광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백제유민들을 왜국에 정착시키는 일을 하였을 것이다. 새롭게 도왜한 백제유민들은 일시적으로 難波에 체재하면서 왜국 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였다.⁵⁾ 이 때 善光은 백제유민들이 과거 백제에서 어떤 지위에 있었으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천지조정에 알렸을 것이다. 즉 천지 4년(665) 백제 관인들의 관위와 계급을 선광왕이 勘校한 결과에 기초하여 天智조정에서 백제 관인들에게 왜국의 관위를 주었던 것이다.

(2) 백제관인의 관위사여

백강전투 패전의 직접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 진정된 천지 10년(671) 정월 백제유민들에 대해서 자국에서의 관직을 감안하고 학식과 재능을 고려하여 대규모의 관위를 수여하였다. 백제유민의 제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아래의 賜位 기사와 표를 통해서 엿볼 수 있다.

- ⑤ 天智 10년(671) 춘정월, 이달 佐平 余自信·沙宅紹明[法官大輔이다]에게 大錦下를 주고, 鬼室集斯[學職頭이다]에게 小錦下를 주고, 達率 谷那 晉首[兵法에 밝다]·木素貴子[兵法에 밝다]·憶禮福留[兵法에 밝다]·答怵 春初[兵法에 밝다]·怵日比子贊婆羅金羅金須[藥을 안다]·鬼室集信[藥을 안다]에게 大山下를 주고, 達率 德頂上[藥을 안다]·吉大尙[藥을 안다]·許率母[五經에 밝다]·角福牟[陰陽에 밝다]에게 小山上을 주고, 다른 達率 등 50여인에게 小山下를 제수했다.

5) 『日本後紀』延暦 18年(799) 12월 갑술조에 의하면 甲斐國의 止彌若虫 등이 자신들의 조상은 백제에서 일본으로 투화하여 攝津職에 안치되었으나 이후 甲斐國으로 옮겨갔다고 한다. 이를 통해서 難波 주변에 도왜한 백제인이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1】 천지 10년(671) 정월 백제관인 관위사여 일람표

인 명	백제 관위	직무직능	천지 10년 관위	관련 기록
餘自信	좌평	法官大輔	大錦下	
沙宅紹明	좌평	學職頭	大錦下	『일본서기』 천무 2년(673) 윤6월조 『회풍조』 대우황자전 『등씨가전』(상) 겹죽전
鬼室集斯	달솔	閑 兵法	小錦下	『일본서기』 천지 4년(665) 2월 시 월조
谷那晉首	달솔	閑 兵法	大山下	
木素貴子	달솔	閑 兵法	大山下	『회풍조』 學士
憶禮福留	달솔	閑 兵法	大山下	『일본서기』 천지 4년 추8월조
答林春初	달솔	閑 兵法	大山下	『일본서기』 천지 4년 추8월조 『회풍조』 학사
鬼室集信	달솔	解 藥	大山下	
德頂上	달솔	解 藥	小山上	
吉大尙	달솔	解 藥	小山上	『회풍조』 학사 『속일본후기』 승화 4년(837) 6월조
許率母	달솔	明 五經	小山上	『회풍조』 학사 『일본서기』 천무 6년(677)
角福牟	달솔	閑 於陰陽	小山上	

671년 왜국의 관위를 사위받은 백제유민들 가운데는 2품(達率) 이상의 백제 고위 관료들이 60여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즉 兵法(4명), 解藥(4명), 五經(1명), 陰陽(1명) 등 그 재능에 따라서 大山下나 小山下의 관위를 받았다. 천지조정은 이들의 신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왜국의 관위를 새롭게 사여했던 것이다.

먼저 최고위에 있던 좌평 餘自信(自進)은 『일본서기』 제명 6년(660) 9월조에 복신과 함께 백제부흥운동을 주도한 달솔 餘自進과 동일인물이다. 그 공이 인정된 듯 백제의 重臣으로서 大錦下를 받았다. 『신찬성씨록』 우경제번하에는 “高野造는 백제인 佐平 餘自信의 후손이다”라고 하듯이 그가 조상임을 주장하는 후손들이 平安시대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

沙宅紹明은 그의 학식이 높이 평가되어 죽은 후인 천무 원년(672)에 外小紫位로 추증되었다. 그가 역임한 法官大輔라는 관직은 후대의 式部에 해당하는 관서의 차관에 해당하며 養老습에 따르면 정5위하의 관위에 상당한다. 『懷風藻』의 大友皇子傳에 학사로서 황자와 시문을 교감하는 등 문학적 교류

를 행하였다⁶⁾. 또한 『藤氏家傳』(상) 「鎌足傳」에서 “才思穎拔, 文章冠世”라고 하여 재사가 발굴이고 문장이 세상에 으뜸이라고 평할 정도로 그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같다. 그가 大化개신의 주역이며 천지와 천무의 신임을 독차지 했던 藤原鎌足の 비문을 작성한 것도 최고의 문장가로서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鬼室集斯는 천지 4년(665) 2월에 이미 佐平福信의 공으로 인해 小錦下를 제수받았다.⁷⁾ 좌평 귀실복신은 백제의 부흥운동을 주도했고, 660년 백제 멸망시 왜국에 주도적으로 사신을 보낸 인물이다. 그는 백제부흥운동 과정에서 풍왕자와 갈등을 빚어 살해당했던 비운의 인물이지만, 백제부흥운동기에 실질적으로 백제를 대표하여 왜왕권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귀실집사는 이러한 복신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백제에서 달솔관이었지만 小錦下의 관위를 받는데, 다른 달솔관들이 大山下 이하를 받은 것에 비하면 파격적이다. 이는 백제에서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집안의 백제부흥운동 시기의 공로도 고려되었음을 말해준다.⁸⁾

그리고 그는 學職頭라는 관직에 임명되었는데, 학직두는 율령제하에서 式部省 산하의 大學寮의 장관에 해당한다. 학직두에 임명된다는 자체가 명예로운 일이고 인품과 학식이 뛰어나지 않으면 발탁되기 어려운 관직이다. 따라서 백제망명인을 이 자리에 세웠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이것은 鬼室集斯의 개인적인 능력이 우선이었겠지만, 백제의 선진지식과 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입시키려는 왜왕권의 의도에서 나왔다고 생각된다.⁹⁾

다음은 달솔관을 지닌 木素貴子·谷那晉首·憶禮福留·答炆春初 4인이 보인다. 이들은 달솔의 관위를 갖고 있으면서 모두 군사와 관련된 일에 종사한 공통점이 있다. 한결같이 병법에 밝다고 하여 大山上의 관위를 받고 있다. 이미 2년 전인 천지 4년 8월에 答炆春初는 長門國에 성을 쌓는데 파견되고, 憶禮福留와 四比福夫도 각각 筑紫國의 大野城과 椽(基肄)城에 보내져 축성사업을 관장하였다.

6) 『懷風藻』에는 “淡海朝大友皇子二首. 皇太子, 淡海帝之長子也, <중략> 立爲皇太子, 廣延學士, 沙宅紹明·塔本春初·吉太尙·許率母·木素貴子等, 以爲賓客”이라 하여 사택소명을 비롯해 앞서 거론한 백제망명인 5인의 이름이 보이고 있다.

7) 천지 4년 2월조와 同10년 정월조의 귀실집사 관위사여 내용을 重出로 보기도 한다(坂本太郎, 「天智紀の史料批判」, 『日本古代史の基礎的研究』上, 東京大學出版會, 1964, 216~218쪽).

8) 정효운, 앞의 논문, 2017, 697쪽.

9) 연민수, 앞의 논문, 2007, 74쪽.

이들은 백제에서 군사책임자로 종사했고 백제멸망 후에는 부흥운동의 주역으로서 활동했던 인물들로 여겨진다. 당시 왜왕권은 백제부흥전쟁의 패배로 심각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다. 나당연합군의 침공에 대비하여 국방태세를 갖추는 일이 당면한 국가적 과제였다. 왜왕권으로서는 전투의 실전경험이 있고 군사지식이 뛰어난 백제망명 세력들을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¹⁰⁾

한편 망명백제인들 중에서 약제에 관한 지식이 있는 인물들에게도 관위를 내리고 있다. 달솔 埴日比子贊婆羅金羅金須, 鬼室集信 등에게 大山下를 주고, 德頂上·吉大尙 등에게 小山上의 위를 주었다. 埴日比子贊婆羅金羅金須는 복수의 인명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 鬼室集信은 鬼室集斯와 동족이나 그에 관한 기록은 보이지 않고, 德頂上 역시 그 후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의 중용과 더불어 왜국에 등장하기 시작한 기구가 外藥寮이다. 『일본서기』 천무 4년(675) 정월에 大學寮와 陰陽寮 그리고 外藥寮에서 藥과 珍異한 물건들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으로 볼 때 일본 조정에서는 외약료라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여 백제관인 출신의 의약분야 전문가들을 이곳에 소속시켰을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로운 점은 천무 4년 외약료의 성립과 거의 동시에 일본의 조정에 仙藥을 바쳤다는 기록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조정에 바쳐진 약제는 대부분 백제관인 의약전문가들과 그 후손들에 의해 다루어졌다. 천무천황은 백제 출신의 의사를 신임하여 그에게 크게 포상을 내렸다.¹¹⁾ 醫業은 특수 전문직으로 세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持統천황 4년(690) 12월에는 공을 세웠던 醫博士 務大參 德自珍에게 銀 20兩을 하사하였는데, 그는 천지천황 10년(671)에 의약에 정통하여 小山下에 제수되었던 백제 達率 德頂上의 후예이다.¹²⁾

吉大尙에 대해서는 木素貴子와 같이 『회풍조』에 學士로서 大友皇子의 빈객이 되었다고 하여 그의 학식이 뛰어났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의 아들인 吉宜와 吉智首는 神龜원년(724)에 吉田連으로 賜姓되었다¹³⁾. 吉宜는 文武 4년(700)에는 惠俊이라는 법명을 가진 승려였지만, 이 해에 조정으로부터 환속

10) 연민수, 앞의 논문, 2007, 71쪽.

11) 『일본서기』 천무 원년조에 의하면 朱鳥 5월에 侍醫인 百濟人 億仁이 병으로 죽으려고 하자 그에게 勤大壹位를 제수하고 100호를 봉하였다고 한다.

12) 關晃, 앞의 책, 1996, 102쪽.

13) 『續日本紀』 神龜 元年 5月 辛未條

의 명을 받아 務廣肆(중7위하 상당)의 관위를 받았다. 조정에서는 吉宜의 의술에 대한 재능을 이용하기 위해 민간인으로 환속시켰던 것이다¹⁴⁾. 그는 후에 圖書頭와 典藥頭로서 활약하는 등¹⁵⁾ 학문과 의술 등 다방면에 걸쳐 재능을 발휘하였다.

오경에 밝은 許率母와 음양에 밝은 角福牟에게는 小山上의 관위를 수여했다. 천무 6년(678)에 大博士 백제인 率母에게 칙을 내려 大山下의 관위와 함께 봉호 30戶를 하사하였다. 그 역시 『懷風藻』에 學士로서 大友皇子의 빈객이 되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유학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대학자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왜왕권에서는 백제망명관인들의 백제에서의 관위와 관직 등을 고려하고 학문과 기술 등 제각기 소유하고 있던 경험과 능력에 따라 관련분야에 종사하게 하였다. 특히 율령관인의 운영과 양성에 관련된 관직에 백제관인들이 집중 배치되었다.¹⁶⁾ 이를 통해 일본의 각종 제도가 급격히 정비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천지 10년(671) 정월에 있었던 망명백제관인들에 대한 관위사여가 바로 그 시작이었던 것이다. 이는 천지 3년 2월에 26계제로 개정된 지¹⁷⁾ 얼마 지나지 않아 이루어진 정책으로 망명백제관인들에 대한 왜국조정의 특별조치였다고도 할 수 있다.

당시 천지조정은 대외정책은 실패했지만 근강천도를 단행하는 등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주도권을 유지하였다. 내부적으로 먼저 664년 2월에 새로운 관위제도를 만들고 씨족의 대표자들을 정하도록 하여 씨족들을 통제하였다. 이와 함께 많은 망명백제관인들에게 관위를 사여하여 대화정권에 등용함으로써 새로운 국가체제의 기반을 다지고자 했던 것이다. 천지 10년까지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백제멸망 후 방위체제의 구축이나 천지의 즉위 등 정치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천지조에는 백제망명 관인들에게 씨성을 하사하지는 않고 있다. 이는 당시 아직 나당전쟁 중이고 상황에 따라 백제관인들이 귀국할 가능성이 있어 ‘外臣’ 내지 ‘蕃客’ 대우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즉 이들을 둘러싼 당시

14) 『續日本紀』神龜 4年 8月 乙丑未

15) 『續日本紀』天平 5年 12月 庚申未; 同 10年 閏7月 癸卯條

16) 이근우, 앞의 논문, 2001. 37~38쪽.

17) 현재 천지 3년 2월조의 ‘增換官位階名’ 선언에 대해서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青木和夫, 「淨御原令と古代官僚制」, 『日本律令國家論攷』, 岩波書店, 1992(초출 1954), 79~80쪽; 黛弘道, 『律令國家成立史の研究』, 吉川弘文館, 1982; 虎尾俊哉, 『日本古代の參議制』, 吉川弘文館, 1998).

환경은 매우 불안정하였고, 왜국의 씨성을 받기 위해서는 일본의 ‘風俗’에 익숙해져야했던 것이다.¹⁸⁾

4. 天武·持統朝 망명백제관인에 대한 정책

(1) 천무조 백제관인의 등용

671년 天智천황이 사망하고 그 아들 大友황자가 大津京에서 권력을 승계하자, 천지의 동생 大海人は 672년 난을 일으켰다. 임신의 난이다. 백제계 도왜인들도 어느 편에 서야할 지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선광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력 백제관인은 이 난에 개입하지 않았다. 그 결과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선택이었다.¹⁹⁾

대해인이 임신의 난에서 승리하고 673년 즉위하였다. 왜왕의 칭호도 천황으로 바꾸었다. 즉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9월에 天武천황은 한반도로부터 도왜한 사람들에게 10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 연장선상에서 천무천황은 임신의 난 때 대우황자 편에 서지 않았던 백제관인들을 우대하였다.

⑥ 天武 2년(674) 윤6월 大錦下 百濟 沙宅昭明이 죽었다. 사람됨이 총명하고 밝은 슬기를 지녀 당시 사람들이 수재라고 칭하였다. 이에 천황이 놀라며 은혜를 베풀어 外小紫位를 추증하고 본국의 大佐平의 위계도 거듭 추증하였다.

⑦ 天武 6년(678) 5월 大博士 백제인 率母에게 칙을 내려 大山下位를 주었다. 인하여 30戶를 봉하였다.

먼저 674년 6월에 백제계 도왜인 출신 왜국 관인 중에서 가장 고위였던 大錦下 沙宅紹明이 사망하자, 外小紫(令制의 종3위 상당)의 위를 추증하는 한편 大佐平위도 주었다. 대좌평위를 추증한 것은 사택소명의 백제 관위가 佐平이었으므로 한 단계 더 높인 것이다. 왜국에서 새로 관위를 받은 후에도 그는 백제의 관위도 계속 가지고 있었다. 당시 왜국의 망명백제관인들이 백

18) 『속일본기』 천평보자 원년 4월 신사조 “舊慕姓化來. 附我俗”; 同書 천평보자 2년 10월 정묘조 “自加羅國慕化來朝. 當時未練風俗. 不著姓字”기사 참조.

19) 利光三津夫·上野利三, 「律令制下の百濟王氏」, 『法史學の諸問題』, 慶應通信, 1987, 7쪽.

제부흥을 꿈꾸면서 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75년에는 百濟王 善光의 맏아들 昌成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자 천무천황은 小紫(중3위 상당)위를 추증하여 예우하였다. 이에 백제왕 선광은 676년 1월 1일에 천무천황에게 약과 진기한 물건을 바쳐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677년에는 백제인 率母를 大博士에 임명하고 그 이듬해 大山下(令制의 중6위 상당)와 함께 30호의 봉호를 주었다. 천무천황은 682년 8월 도왜한 지 10년이 지난 사람들에게 다시 10년간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는 조치를 연장해 주도록 하였다.

기록상 임신의 난 때 천무편에 서서 近江朝의 대우황자측에 대항한 유일하게 백제유민이 淳武微子였다. 지통 5년(691)조에는 “百濟 淳武微子の 壬申年の 공을 칭찬하고 直大參의 위를 내리고, 굵은 비단과 피륙을 하사했다²⁰⁾”라는 기록이 보인다. 淳武微子が 백제멸망 시에 건너온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672년에 일어난 임신의 난에 참가한 것을 보면 망명백제인일 가능성이 높다. 백제멸망으로부터 불과 9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백제라는 국명을 淳武라는 성 앞에 관칭하고 있어 백제출신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다. 다만 관직을 칭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백제관인 출신으로 보기는 어렵다. 『신찬성씨록』 우경제번 하에도 “不破勝, 백제국인 淳武之等の 후예”라고 기록하고 있다. 百濟淳武微子の 후손인 不破勝의 이름은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美濃國 不破郡에 거주한 것과 관련이 있다. 임신의 난 때 대해인황자측이 美濃國의 不破道を 막으라고 지시한 것²¹⁾도 이곳이 군사·교통상의 요지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淳武微子は 비록 백제관인 출신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다.

드디어 천무천황은 즉위 13년(684) 10월 8色の 姓을 제정하여 씨족들을 새로운 질서 속에 편입시켰다. 일찍이 백제에서 도왜한 錦織造, 川內直, 阿直史, 縵造 등은 連姓을 받았다. 그러나 백제 멸망 이후 도왜한 遺民들은 8色姓 질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때 새롭게 망명한 백제관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전에 도왜하여 정착해 있던 백제계 씨족을 우대했기 때문은 아닐까 한다.²²⁾ 천무천황은 임신의 난을 일으켰을 때 東西漢氏계의 무력을 이용했고,²³⁾ 그 공으로 사성을 하고 있다.²⁴⁾

20) 『日本書紀』 持統 5年 2月 辛卯條

21) 『日本書紀』 天武 元年 6月 壬午條

22) 일찍이 백제에서 도왜한 金織造·川內直·阿直史 등은 連姓을 받았다.

23) 자세한 것은 줄고, 「고대 일본 藤原氏과 백제계 도왜씨족, 『백제연구』54, 충남대 백제연

한편 이듬해인 천무 14년 정월과 2월에는 대폭 관위를 개정하거나 하사한다. 정월에 실시한 관위 개정의 내용은 諸王 이하 12계, 諸臣이 48계로 개정되었다. 여기서 제신의 48계제는 관사의 다양화와 함께 8색성 제정으로 관인의 증가에 따른 조치로 주로 하급관료가 대상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²⁵⁾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2월에 내린 대규모 도왜인들에 대한 조치이다.

⑧ 大唐人, 百濟人, 高麗人, 모두 147인에게 爵位를 하사하였다.

위 기록에서 작위는 천무 14년(685) 정월조와 같은 관위를 가리킨다. 도왜인 147인에게 대거 관위가 수여된 것이다. 대당인은 천무 4년 정월 遠江國에 안치한 30여 명을 가리키며, 고려인의 경우는 『일본서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백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멸망 전후한 시기에 왜국에 건너 온 유민들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망명백제관인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천지조에 이미 관위를 수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때의 관위수여에는 천지조에 관위를 받지 못한 자들이나 그 전후에 도왜한 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망명백제관인들이 망명 직후 바로 등용되면서 관위를 받은 것과는 구체적인 내용도 보이지 않고, 사뭇 다르다.

7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율령국가 형성기에 도왜인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도왜인의 개별 능력에 의한 등용이라는 측면이 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천지 3년부터 천무 14년 사이에 이루어진 관위제의 개정이나 이에 따른 일련의 관위사여는 망명백제관인들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수립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이 시기 망명백제관인들에 대해서는 개별 능력에 의한 등용이라는 표면적인 평가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고대 일본이 율령국가

구소, 2011 참조.

24) 한편 신라와의 통교가 활발해지고 중국풍 율령제 도입으로 인해 백제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기도 한다(關晃, 「遣新羅使の文化史的意義」, 『歸化人-古代の政治・經濟・文化を語る』, 講談社, 2009).

25) 虎尾達哉, 「天武朝における冠位の抑制をめぐる」, 『續日本紀研究』371, 2007, 12쪽; 篠川賢, 『古代日本の歴史-飛鳥と古代國家』2, 吉川弘文館, 2013, 214쪽.

의 기틀을 다지는데 반드시 이들이 필요했고, 이들을 등용하기 위해 관위제까지 정비한 것으로 판단해도 무리는 없을 듯하다.

(2) 지통조 百濟王氏와 백제관인 후손

천무천황이 사망한 후 686년 그의 부인 持統이 즉위하였다. 그때까지 善光은 왜국에서 백제왕으로 대우받고 있었으므로 왜국왕과 마찬가지로 氏姓이 필요없었다. 690년 말경 百濟王 善光은 이미 노쇠하였고 백제를 회복할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善光과 그의 일족은 망명자 생활을 접고 어떻게든 왜국에 정착해야 하였다. 선광은 百濟王을 왜국에서의 氏姓으로 쓰고, 백제 왕족의 姓이었던 餘를 자신의 이름 앞에 부쳐서 자신이 백제왕의 후예임을 나타내고자 하였다.²⁶⁾

691년 정월 지통천황은 善光의 뜻을 받아들여 百濟王을 氏姓으로 쓰도록 하였다. 百濟王의 ‘王’은 8色姓의 상위에 있는 것으로 왜국의 왕족에게만 주어지는 칭호다. 지통천황은 선광과 그 자손에게 百濟王의 칭호를 내려줌으로써 기존 백제계 씨족들에 대한 우위를 인정하였다.²⁷⁾

이처럼 지통천황은 백제왕씨의 왜국 내 위치를 명확히 하는 한편, 백제관인 출신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한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지통 5년(691)에 醫博士 務大參 德自珍, 呪禁博士 木素丁武와 沙宅萬首에게 각기 銀 20兩을 하사했다고 한다. 여기서 주금박사란 주술에 의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주금생을 가르키는 관리이다.²⁸⁾ 7세기 후반 망명백제관인들의 활약이 이 시기부터 다시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의박사와 주금박사가 함께 출현하고 관위가 명확히 나타난 이유는 지통 3년(689)에 이미 실행되었던 飛鳥淨御原에 醫疾令이 구비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금사를 비롯한 백제관인 1~2세대들의 업무와 능력이 일본의 율령제도의 관료조직에 흡수되면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천지조에 비해 천무·지통기에는 망명백제관인 또는 그 2세대의 활

26) 김은숙, 앞의 논문, 2007, 92쪽.

27) 송완범, 「동아시아세계 속의 ‘백제왕씨’의 성립과 전개」, 『백제연구』44, 충남대 백제연구소, 2006, 254쪽.

28) 養老令에는 宮內省 被官의 典藥寮에 醫博士 1인, 呪禁博士 1인을 두고 醫生 40인, 呪禁生 6인을 두었다고 한다.

동의 장소가 아직 왕경이었던 飛鳥·藤原京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들이 중앙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그 후 平城京(奈良) 시대를 기다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8세기 대에는 백제유민 후손들이 일본의 씨성을 칭하며 율령제하의 실무적 관직을 맡게 된다.

이것은 그들이 秦氏·漢氏 등 大化이전 도왜씨족의 伴造의 세습적 관직을 대신해서 새로운 직무에 임하게 됨을 의미한다. 물론 畿内の 개척, 문필과 수공업 등의 기술, 군사지식 등을 활용한 업무에 종사한 부분은 기존 도왜계 씨족 및 백제왕씨와 큰 차이는 없다.²⁹⁾ 여기서 새로운 망명백제관인의 직무라는 것은 명경·명법·문장·역산·천문·음양·주금·의술·병법·축성·조불·야금 등 율령제도하의 다양한 분야를 말한다. 즉 고대 일본이 율령제국가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데 백제관인들은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시기 일본 조정의 실권은 藤原鎌足の 아들인 藤原不比等이었다는 점 또한 향후 이해를 위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5. 망명백제관인 후손들의 활약과 改·賜姓

(1) 大寶~養老년간 역사서 편찬

701년 大寶律令이 시행되면서 日本이라는 국호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되고, 702년에는 견당사가 파견되는 등 8세기 초는 외교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기에 백제왕씨는 나라시대 전반에 걸쳐 지방관이나 중앙의 衙府, 馬寮, 兵庫 등 군사적 관사의 상급관직이나 鎮守府의 무관을 역임하는 등 세습적인 군사관료로서 요직을 점하고 있었다.³⁰⁾ 이에 비해 백제관인의 경우는 사료상 養老년간에 이르러 그들의 후손들의 족적이 서서히 확인된다.

『속일본기』에 의하면 양로 4년(720) 『일본서기』가 편찬된 후 그 이듬해인 양로 5년에 많은 인물들이 元正천황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다. 뛰어난 문장 실력을 인정받은 山田史三方·紀朝臣清人·下毛野朝臣虫麻呂·樂浪河內가 표창을 받았고, 鍛冶造大隅·越智直廣江·背奈公行文·調忌寸古麻呂·額田首千足이 유교 경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졌다는 이유로 상을 받았다. 그리고 율령 관련

29) 長山泰孝, 「渡來人の動き」, 『古代の地方史-畿内-』3, 朝倉書房, 1979, 110~120쪽.

30) 利光三津夫·上野利三, 앞의 논문, 1987; 김은숙, 앞의 논문, 2007; 송완범, 「奈良時代の 백제왕씨 사회와 문화적 특성」, 『일본언어문화』10, 2007 참조.

箭集宿禰虫麻呂・鹽屋連吉麻呂와 산술에 뛰어난 山口忌寸田主・志裴連三田次・私部首石村이 표창을 받았다. 이상의 山田史三方・紀朝臣清人・樂浪河內・越智直廣・江・鹽屋連吉麻呂・山口忌寸田主와 추가로 船連大魚・刀利宣令 등은 首황자의 스승으로 발탁되었다. 이들은 당대의 일류 학자들로 관인으로서 활약한 시기가 『일본서기』 편찬시기와 중복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일본서기』의 편찬에 관여하였을 것이다. 이들 가운데 바로 山田史三方・樂浪河內・船連大魚・刀利宣令이 백제계 사관이다.

山田史三方은 원래 승려였으나, 지통 6년(692)에 환속의 명령을 받은 후,³¹⁾ 문무조에는 文章博士를 역임하였다. 『회풍조』에 大學頭로서 그가 쓴 漢詩 3수가 전해질 정도로 당대 제일의 문장가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양로 6년(722) 4월 詔에 의하면 당시 ‘문장’의 최고권위자로서 대우받고 있다. 山田史씨는 후에 山田宿禰라는 성을 받고 『신찬성씨록』 右京 諸蕃과 河內國 제번에서 周 태자의 후손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원래는 6세기에 백제에서 건너간 도왜씨족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³²⁾ 망명백제관인과는 거리가 멀다.

船連大魚는 和銅 2년(709) 民部大錄에 재직하였고, 양로 7년(723)에 정6위상에서 중5위하에 승진하였다. 船連의 본래 성은 史로서 船史씨는 河內國 丹比郡 野中郷을 거점으로 있었던 백제계 씨족이다. 선련대어 역시 산전사어방과 마찬가지로 이른 시기의 백제계 도왜씨족의 후손이다.

樂浪河內는 『속일본기』 神護慶雲 2년(768) 6월 경자조에 실린 아들인 高丘宿禰比良麻呂의 卒傳에 의하면 천지 2년(663)에 백제에서 망명한 승려 詠의 자식이라고 한다. 712년에 播磨國 大目으로 있으면서 正倉을 건설한 공로를 인정받아 관위와 물품을 받았다.³³⁾ 또한 문장이 뛰어난 학사로 사물을 받기도 하였다.³⁴⁾ 후술하겠지만 신귀 원년(724)에 高丘連이라는 씨성을 사성받았으며,³⁵⁾ 735년 外從五位下로 승진하여 9월에는 右京亮에 임명되었다.³⁶⁾ 이렇듯 『속일본기』에 의하면 낙랑하내는 승려출신 유민의 2세대가 된

31) 고대 일본 율령국가에서 승려가 환속될 때는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이다. 한 가지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가 그 승려의 학예를 널리 활용하고자 했을 때이다(田中卓, 「還俗」, 『續日本紀研究』1-12, 1954). 산전사삼방의 경우는 후자에 해당한다.

32) 줄고, 『日本書紀』 편찬과 백제계 史官, 『백제학보』6, 백제학회, 2011.

33) 『續日本紀』 和銅 5年 7月 甲申. 樂浪河內가 播磨國 大目으로 있으면서 『播磨國風土記』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34) 『續日本紀』 養老 5年 正月 甲戌

35) 『續日本紀』 神龜 元年 5月 辛未

다. 그런데 『신찬성씨록』 하내국 제번 高丘宿禰조에서 백제국의 公族출신이라고 한 기록에 의하면 낙랑하내의 집안이 백제에 있었을 때는 고급관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刀利宣승이야말로 백제관인 출신의 후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속일본기』 천평보자 5년(761) 3월 경자조에 ‘백제인’ 刀利甲斐麻呂 등 7인이 久上連을 사성받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백제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는 『經國集』에 和銅4年(711) 3월 對策文 2수, 『회풍조』에 5언시 2수, 『만엽집』 단가 2수를 남기고 있어 당시 대표적인 학자이자 문인이었다. 『등씨가전』(하)에는 慶雲2년(705) 藤原武智麻呂의 요청에 의해 釋奠文을 썼다는 刀利康嗣가 나온다. 도리강사는 『회풍조』에 대학박사로 81세로 기록되어 있는데 연령이나 학식으로 보면 천지 2년에 망명한 백제관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 도리강사가 도리선령의 아버지일 것이다.³⁷⁾

이렇듯 대보~양로년간에는 6세기 대부터 문필·기록직을 담당했던 河内の 백제계 사관(주로 史姓 씨족)은 물론 천지조에 망명한 백제관인의 2세들도 『일본서기』 편찬에 보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³⁸⁾ 新舊 백제계 도왜인들은 율령관인으로 관료제 사회에 점차 동화되어 가면서 문필 관련 전통을 계속 계승·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⁹⁾ 무엇보다 율령국가의 역사적 기반이 되는 역사서 편찬에 새롭게 백제관인 및 그 후손들이 가담했다는 것은 이들의 정치적 입지가 기존 백제계 씨족 만큼 확립되었음을 말해준다.

한편 『속일본기』 양로 5년(721) 정월 갑술조에도 학업과 스승의 모범이 될 만한 17명의 도왜인들에게 포상과 관위를 하사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1/3인 6명이 망명백제관인 또는 그 2세대에 해당한다. 자세한 것은 후술하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백제관인 출신 및 그 후손들로는 樂浪河內, 角兄麻呂, 餘秦勝, 吉宜, 吳肅胡明, 賈受君이 있다. 이들은 神龜 원년(724) 5월 사성기사에도 등장하며, 『藤氏家傳』(하) 「武智麻呂傳」에서 무지마려 측근의 지식인들 가운데 포함된 인물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은 대보~양로년간 활약하는 백

36) 『續日本紀』 天平 13年 9月 癸酉

37) 沖林卓也·佐藤信·矢嶋泉, 『藤氏家傳-注釋と研究-』, 吉川弘文館, 1999, 314~316쪽.

38) 加藤謙吉, 『『日本書紀』と渡來人』, 大山誠一 편 『聖德太子の眞實』, 平凡社, 2003, 242~251쪽.

39) 奈良시대 도왜계 관인들이 계속 승진하며 가업을 이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才技의 전통이 있었다고 한 연구(정진아, 「奈良시대의 渡來系 官人の 승진-五位이상 귀족관인의 승진형태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21, 2004)가 참고된다.

제관인 출신 1~2세대가 대부분 등원씨 집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들은 황태자의 스승이 되기도 하지만, 당대 최고 유력씨족인 등원씨 집안의 교육도 담당했던 것이다. 「무지마려전」에는 낙랑하내가 729년에 ‘文章’·‘文雅’·‘曆算’ 등에 뛰어난 인물로 칭송받으며, 등원씨 집안과 가깝게 지냈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낙랑하내의 아들인 高丘宿禰比良麻呂는 등원중마려의 측근으로 나오며, 도리강사는 藤原武智麻呂의 요청에 의해 釋奠文을 썼던 인물이다.

『등씨가전』에는 이밖에 養老 5년(721)에 藤原武智麻呂를 도와 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러 인물 가운데 余仁軍이 나온다. 余仁軍은 余自信과 同族으로 백제관인 후손에 해당한다. 余仁軍의 관위는 養老 7년(723)에 正6位上에서 從5位下로 높아졌다.⁴⁰⁾ 『養老律令』 「官位令」에 의하면 典藥寮의 장관인 典藥頭가 종5위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余仁軍은 주금사로서 전약료의 장관인 전약두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약료 내에서 주금사의 높은 위상과 역할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대보~양로년간은 율령과 역사서가 편찬되던 시기로 많은 백제계 도왜인들이 활약하게 된다. 그 가운데 7세기 후반 망명백제관인 또는 그 후손들도 『일본서기』 편찬에 직접 참여하게 되고, 등원씨 집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입지를 확고히 한다. 한편 등원씨 집안에서도 정치적 성장 및 역량 강화를 하는데 백제관인 출신의 지식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이는奈良시대 전반에 걸쳐 엿볼 수 있는 상황이다.

(2) 神龜년간 백제관인 후손들의 改·賜姓

神龜 원년(724) 2월 聖武천황은 “官마다 봉사하는 韓人部 사람들에게 일에 맞는 氏姓을 하사하라”⁴¹⁾고 詔를 내렸다. 여기서 ‘韓人部’에는 여러 관사에 등용된 망명백제관인 후손들도 포함되며, 이 조를 통해 그들이 秦氏·漢氏 등 옛 도왜씨족의 세습적 관직을 대신하여 새로운 직무를 맡게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인부에는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 등에서 온 도왜인도 포함되어 있었다.⁴²⁾ 즉 고구려의 왕족·귀족들도 씨성을 받고 고대 일본의 씨성제에 편입되면서 점차 율령관인으로서 등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聖武천황은 출신국

40) 『續日本紀』 養老 7년 正月 丙子條.

41) “又官官仕奉韓人部一二人. 其負而可仕奉姓名賜”

42) 平野邦雄, 『歸化人と古代國家』, 吉川弘文館, 2007, 128~129쪽.

을 차별하지 않고 인재에게 새로운 씨성을 주어 일본적 씨성질서 속에 포함시켰다.⁴³⁾

한편 율령제하에서 漢氏 및 왕진이 후예씨족인 東西史部 역시 『經國集』을 통해서 負名氏로서 대학료 등에서 율령관인으로 직능을 수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천지조에 도왜한 귀실집사가 학직두로 임명되고, 그 후 율령제의 大學頭나 諸박사에 백제관인 출신들이 계속 임명되면서 이들은 舊백제계 씨족에 대한 우월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 직무는 대학뿐만 아니라 明經, 明法, 文章, 曆算, 陰陽, 天文, 呪禁, 醫術, 兵法, 築城, 造佛, 冶金 등 여러 분야에 걸쳐있음을 『속일본기』를 통해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이전 백제계 도왜씨족의 직능과는 확실히 다양함을 보이고 있다.

드디어 聖武천황은 같은 해 많은 도왜인들에게 改賜姓의 조를 내리는데, 이 가운데는 백제관인 출신 후손들이 많았다. 『속일본기』 신귀 원년(724) 5월 신미조에 의하면 모두 20씨 24명이 사성되었는데 이 가운데 백제계로 여겨지는 인물이 11명, 고구려가 6명, 신라계가 2명, 기타 5명이다.⁴⁴⁾ 이때 씨성이 율령제국가의 양인신분을 보여주는 표상이라는 점⁴⁵⁾을 감안하면, 사성이나 개성은 백제관인 출신들이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백제관인 출신 후손들의 사성과 그 일족들이 임용된 관직·전문분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신귀원년 5월 백제관인 후예씨족 사성 일람표

인명	위계	직무 직능	개사성	관련 기록
吉宜	중5위상	醫術(續) 圖書頭(續) 典藥頭(續)	吉田連	『속일본후기』 承和 4년(837) 6월기미조 『회풍조』, 『만엽집』

43) 김은숙, 「일본율령국가의 고구려계 씨족」, 『동북아역사논총』15, 2007, 440쪽.

44) “從五位上薩妙觀賜姓河上忌寸. 從七位下王吉勝新城連. 正八位上高正勝三笠連. 從八位上高益信男掾連. 從五位上吉宜. 從五位下吉智首並吉田連. 從五位下都能兄麻呂羽林連. 正六位下賈受君神前連. 正六位下樂浪河内高丘連. 正七位上四比忠勇椎野連. 正七位上荊軌武香山連. 從六位上金宅良. 金元吉並國看連. 正七位下高昌武殖槻連. 從七位上王多寶蓋山連. 勳十二等高祿德清原連. 无位狛祁乎理和久古衆連. 從五位下吳肅胡明御立連. 正六位上物部用善物部射園連. 正六位上久米奈保麻呂久米連. 正六位下賓難大足長丘連. 正六位下胛巨茂城上連. 從六位下谷那庚受難波連. 正八位上答本陽春麻田連.”

45) 加藤晃, 「我が國における姓の成立について」, 坂本太郎博士古稀紀念會編『續日本古代史論集 上卷』, 吉川弘文館, 1972, 433쪽.

吉智首	중5위하	出雲介(懷)	吉田連	『회풍조』 『신찬성씨록』 좌경황별 하 백제조
觥兄麻呂	중5위하	陰陽博士(古) 陰陽(續) 丹後守(續)	羽林連	『일본서기』 천지 10년(670) 정월 시월조 『만엽집』
賈受君	정6위하	解工(續)	神前連	『일본서기』 천지 4년(665) 2월시월조 『신찬성씨록』 좌경제번 하 백제조
樂浪河內	정6위하	文雅(家) 右京亮(續) 造離宮司(續) 伯耆守(續) 大學頭(續)	高丘連	『속일본기』 신호경운 2년(768) 6월경자조 『속일본기』 신호경운 원년(767) 3월 병자 『신찬성씨록』 하내국제번 고구숙네 『만엽집』
四比忠勇	정7위상	兵法(續)	椎野連	『일본서기』 천지 4년(665) 추8월조
荊軌武	정7위상	미상	香山連	『신찬성씨록』 좌경제번 하 백제조
吳肅胡明	중5위하	醫術(續) 方士(家)	御立連	『신찬성씨록』 좌경제번 하 백제조
谷那康受	중6위하	陰陽(家)	難波連	『일본서기』 천지 2년(663) 9월조 『신찬성씨록』 우경제번 하 고려조 『속일본기』 천평보자 2년(758) 4월조
答本陽春	정8위상	大宰大典(萬) 石見守(懷)	麻田連	『일본서기』 천지 4년(665) 추8월조 『회풍조』, 『만엽집』 『신찬성씨록』 우경제번 하 백제조

이상 신귀 원년(724) 5월의 개사성 기사에서 백제관인 출신 후손들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드러난다.

첫 번째 대보~양로년간에 이어 이 시기에도 백제관인 출신 후예씨족들이 藤原氏 집안과 밀접하다는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속일본기』 양로 5년(721) 정월에 등장한 인물이 여기에서도 보이고 있다. 초기 등원씨가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원인 가운데 하나로 도왜계 지식인들과의 결합을 들 수 있는데,⁴⁶⁾ 망명 백제관인 후손들 입장에서든 등원씨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모습을 『등씨가전』 등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등씨가전』의 관련 기록은 신귀 6년(729) 長屋王의 변 이후 武智麻呂를 중심으로 등원씨의 권력집중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포상기록이자, 그 자체가 무지마려의 측근에 해당하는 황족 및 지식인들 명단기록이다.⁴⁷⁾ 여기에

46) 加藤謙吉, 앞의 논문, 2002.

47) “當是時. 舍人親王, 知太政官事, 新田部親王, 知總管事, 二弟北卿, 知機要事. <중략> 宿儒, 有守部連大隅, 越智眞廣江, 肖奈行文, 箭集宿禰虫麻呂, 塩屋連吉麻呂, 檜原造東人等. 文雅. 有紀朝臣清人, 山田史御方, 葛井連廣成, 高丘連河內, 百齊公倭麻呂, 大倭忌寸小東人等. 方士, 有吉田連宜, 御立連吳明, 城上連眞立, 張福子等. 陰陽, 有津守連通, 余眞人, 王仲文, 大津連首, 谷那康受等.”

는 『속일본기』 편찬에 공이 있는 자들에게 직위를 승서하는 기록인 『속일본기』 양로 5년 정월 경오조, 학업과 스승의 모범이 될 만한 자들에게 포상을 내리는 同 갑술조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과 겹치는 인물들이 있다. 樂浪河內와 吉宜, 吳肅胡明, 谷那康受가 그들이다.

먼저 樂浪河內는 신귀 6년 단계에서는 高丘連河內로 등장하며, 앞서 언급한 바대로 양로년간부터 등원씨와 관계를 맺었던 씨족의 일원이다.

『등씨가전』에 ‘方士’로 나오기도 하는 吉宜(吉田連宜)와 吳肅胡明(御立連吳明)은 藤原武智麻呂가 신귀 6년(729)에 조정에서 大納言으로 활약하고 있었을 때 도와준 인물들이다. 文武와 元正천황에게도 탁월한 의술을 인정받아 관직을 받았던 吉宜는 나라시대 초기에 일본 醫術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그는 천지천황 10년(671)에 의약에 정통하여 小山下에 제수되었던 백제 達率 吉大尙의 아들이다. 후일 일본 조정에서 그의 의술을 전승하기 위해 제자를 양성하도록 하는 특별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으며,⁴⁸⁾ 醫員로서는 최고직인 宮內省 典藥寮 典藥頭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의 뛰어난 의술은 계속 가업으로 전승되었다.⁴⁹⁾ 이러한 吉宜와 함께 吉智首가 신귀 원년(724) 5월에 吉田連을 사성받았다. 이후 弘仁 2년(811)에 이르러 宿禰성을 받았다.

麻田連이라는 씨성을 사성받은 答本陽春의 경우도 藤原仲麻呂와 친분이 두터웠다. 答本陽春은 천지 10년(671) 정월에 병법에 밝아 억레복류 등과 함께 관위를 받은 망명백제관인 答炁春初의 후손이다. 答本陽春은 천평 2년(730)에 대재부에 大宰大典으로 부임하였다. 『신찬성씨록』 우경 제번 하에서는 마전련이 朝鮮王淮의 후예라고 나온다.

吉宜와 함께 뛰어난 의술을 인정받아 사성을 받은 從5位下 吳肅胡明도 백제관인 집안출신으로 백제 덕술 吳伎側의 後裔이다.⁵⁰⁾ 그는 신귀 원년(724) 5월에 御立連이란 씨성을 하사받았고, 吉宜와 함께 제자를 양성하였다.⁵¹⁾

여기서 이들이 方士로 칭해졌다는 것은 당시의 백제관인 출신 의사들이 보유한 의학지식이 신선술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⁵²⁾ 신선술과 관련된 전문 의학 지식을 보유한 백제관인 후손들이 外藥寮에 소속되어 활

48) 『속일본기』 천평 2년 3월조

49) 關晃, 앞의 책, 996, 102~107쪽.

50) 『校訂新撰姓氏錄』未定雜姓 右京條.

51) 『속일본기』 천평 2년 3월조.

52) 장인성, 「고대 일본에 전파된 백제도교」, 『한국고대사연구』55, 2009, 320~321쪽.

약하면서 일본에 각지에 本草學에 대한 지식이 보급되었고, 이에 따라 선술에 필요한 선약의 약재를 일본 각지에서 올리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선약의 제조는 당시 일본에서는 신비한 침단의 의술로 각광받았고 이에 능통했던 백제관인 출신들이 일본의 조정에서 重用되어 크게 활약하면서 고대 일본 의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정8위상부터 중5위상까지 해당하는 율령관인으로서 백제쪽의 경우 대부분 백제관인 2세대들이 사성을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속일본기』에는 ‘文章(文雅)’, ‘陰陽’, ‘醫術(方士)’, ‘咒禁’이라는 분야에 능력이 있는 백제관인 출신 후손들이 많이 나온다. 사실 이러한 능력으로 인해 1세대부터 등원씨와도 인연을 맺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특징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타국에서 삶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길로 조상들의 특수한 직능, 기술의 전승이 매우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후대의 인식이지만 『영의해』에 “三世習醫業. 相承爲名家者也”라고 하여 유력한 씨족들에게는 ‘習業’이 중요했다. 吉宜와 吳肅胡明 집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게다가 잡령취제생조에는 “凡取陰陽寮諸生者. 並准醫生”이라고 정해졌고, 음양사 등 후보자 선발에 있어서도 ‘세습’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음양박사였던 餘兄麻呂 경우가 바로 대대로 음양에 해박한 집안 출신이었다. 餘兄麻呂는 망명관인 2~3세 정도로 추정되는데, 비로소 명가집안이 되어 그 일족들이 중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밖에 신귀 원년(724) 5월 사성기사에는 보이지 않지만 餘兄麻呂와 함께 천문이나 기상, 점복에 능해 陰陽학자로 칭송받던 餘眞人 또한 백제관인 출신의 후손이다. 백제 국내에서 사용하던 ‘여’씨를 왜국에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717년 정월 중5위하에 서위되고 있기 때문에⁵³⁾ 도왜 1세대는 아닌 듯하다. 천지 2년(663) 9월에 왜국으로 망명한 백제 좌평 餘自信(進)과 동족일 것이다.

세 번째로 선조의 도왜 당시 정주했던 지역이름을 씨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백제관인 후예씨족들이 많다는 점이 주목된다. 신귀 원년 5월에 받은 姓(카바네)은 대부분 連·造姓이며, 씨명은 일찍이 거주지와 관련되어 나타난다.⁵⁴⁾ 특히 씨명은 『속일본기』 천평보자 원년·2년조에 의하면 ‘我俗’의 소재 즉 일본 내 본거지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⁵⁵⁾ 近江國 神前郡의 출신인 賈受君의

53) 『續日本紀』 養老 원년 정월.

54) 伊藤千波, 앞의 논문, 1985, 25~28쪽.

55) 田中史生, 앞의 논문, 1997, 125~128쪽.

씨성은 神前連, 河內國 古市郡의 樂浪河內는 高丘連을 사성받고 있다. 또한 大和國 十市郡의 荊軌武는 香山連을 사성받았다. 이들 지역은 모두 도왜계 씨족, 특히 백제계 씨족들의 집단 거주지역이기도 했다.

한편 『속일본기』 화동 7년(714) 11월 무자조에 의하면 四比信紗라는 인물이 東漢氏와 인맥을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四比信紗은 『일본서기』 천지 10년 정월 시월조와 『속일본기』 신귀 원년 5월 신미조에 보이는 四比福夫, 四比忠勇과 동족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례는 백제관인이 도왜 후기존 도왜계 씨족의 네트워크에 편입되어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말해준다. 많은 백제계 씨족이 등원씨와 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과 그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하며, 이들의 인맥 형성에 있어서 파이프역할을 한 존재가 百濟王氏이지 않을까 한다.

이렇듯 신귀년간의 백제관인 후손들에 대한 대규모 賜姓은 1세대들의 뛰어난 재능을 이어받아 율령관인으로 출사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⁵⁶⁾ 그 이면에는 후손들의 개인 관위의 상승이나 등원씨와의 관계 등 신분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측면도 엿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기반이 된 것은 천지조에 망명한 1세대들의 위계와 직능이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사성은 후손들이 거주하던 지역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씨명이 대부분 지명에서 유래하는데, 이는 1세대가 망명한 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토지개발이 이루어지고, 그곳을 중심으로 2~3세대에 걸쳐 살아왔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3) 天平寶字년간 개·사성 정책의 혼란

백제관인의 후예씨족의 씨성을 고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神龜 원년(724) 2월의 詔와 天平寶字 원년(757) 4월의 이른바 ‘無制限賜姓’의 勅⁵⁷⁾이 내려진 시기이다. 이에 따라 신귀 원년 5월(20씨, 24인)과 천평보자 5년(761) 3월(36씨 188인)의 대규모 개사성⁵⁸⁾이 이

56) 伊藤千波, 앞의 논문, 1985, 26~27쪽; 송완범, 「일본율령국가의 百濟郡·高麗郡·新羅郡에 보이는 교류와 공존」, 『사충』68, 2009, 45~46쪽.

57) “其高麗百濟新羅人等, 舊慕姓化, 來附我俗, 志願給姓, 悉聽許之”

58) “庚子, 百濟人余民善女等四人賜姓百濟公, 韓遠智等四人中山連, 王國嶋等五人楊津連, 甘良東人等三人清篠連, 刀利甲斐麻呂等七人丘上連, 戸淨道等四人松井連, 憶頼子老等四十一人石野連, 竹志麻呂等四人坂原連, 生河內等二人清湍連, 面得敬等四人春野連, 高牛養等八人淨野造, 卓杲智等二人御池造, 延爾豐成等四人長沼造, 伊志麻呂福地造, 陽麻呂高代造, 烏那竜神

루어졌다. 일련의 대규모 개사성의 대상은 당시까지 이른바 ‘蕃姓’을 가진 백제관인 후손을 비롯한 많은 도왜인들에게 주로 해당되었다.

【표 3】천평보자 5년 3월 경자조의 백제인 개사성 일람표⁵⁹⁾

국명	대표 이름	新姓	인원수
백제 (22씨)	餘 民善女	百濟公	4
	韓 遠智	中山連	4
	王 國嶋	楊津連	5
	甘良 東人	清篠連	3
	刀利 甲斐麻呂	丘上連	7
	戶 淨道	松井連	4
	億賴 子老	石野連	41
	竹志 麻呂	坂原連	4
	生 河內	清瑞連	2
	面 得敬	春野連	4
	高 牛養	淨野連	8
	卓 杲智	御池連	2
	廷爾 豐成	長沼連	4
	伊志 麻呂	福地連	
	陽 麻呂	高代連	
	烏那 瀧神	木雄連	
	科野 友麻呂	清田連	2
	賜臘 國足	清海連	2
	佐魯 牛養	小川造	3
	王 賓受	楊津造	4
	荅他 伊奈麻呂	中野造	5
	調 阿氣麻呂	豐田造	20

위의 표에 의하면 백제계 씨족 22씨족 가운데 사료상 백제관인 후에씨족으로 확인되는 것은 餘民善女 등의 후에씨족인 百濟公씨, 刀利甲斐麻呂 등의

水雄造, 科野友麻呂等二人清田造, 斯國足等二人清海造, 佐魯牛養等三人小川造, 王寶受等四人楊津造, 荅他伊奈麻呂等五人中野造, 調阿氣麻呂等廿人豐田造, 高麗人達沙仁德等二人朝日連, 上部王虫麻呂豐原連, 前部高文信福當連, 前部白公等六人御坂連, 後部王安成等二人高里連, 後部高吳野大井連, 上部王弥夜大理等十人豐原造, 前部選理等三人柿井造, 上部君足等二人雄坂造, 前部安人御坂造, 新羅人新良木舍姓具麻呂等七人清住造, 須布呂比滿麻呂等十三人狩高造, 漢人伯德広足等六人雲梯連, 伯德諸足等二人雲梯造”

59) 菅澤庸子, 앞의 논문, 1999, 14쪽 <표-2>를 참고로 수정함.

후예씨족 丘上連씨, 億賴子老 등의 후예씨족인 石野連씨, 荅他伊奈麻呂 등의 中野造씨를 들 수 있다.

百濟公씨는 『신찬성씨록』 좌경제번 하에 의하면 汶淵王(문주왕)의 후손이라고 하며, 우경제번 하에서는 귀실씨의 후예씨족으로 나온다. 사료상 여씨족 여자신(진)의 후예씨족으로 등장하는 것은 『신찬성씨록』 우경제번 하의 高野造씨 뿐이다. 따라서 천평보자 5년 3월에 여민선녀 등이 사성받은 백제 공씨가 『신찬성씨록』 좌경제번 하의 문주왕 후손인 백제공씨와 같다⁶⁰⁾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이 시기 여민선녀 등이 문주왕 및 귀실씨 후예들처럼 백제공을 사성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씨라는 백제왕족의 성씨를 칭하고 있었던 것과 관계가 깊지 않을까 한다.

刀利甲斐麻呂 등의 丘上連씨 또한 『신찬성씨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등씨가전』(하)에는 慶雲 2년(705) 藤原武智麻呂의 요청에 의해 釋奠文을 썼다는 刀利康嗣가 나온다. 그리고 양로 4년(720) 『일본서기』 편찬의 공으로 표창을 받은 백제관인 刀利宣승이 나오는데 모두 감비마려와 동족이다.

이에 비해 億賴子老 등 41명에게 대규모로 사성된 石野連씨는 『신찬성씨록』 좌경제번 하에 관련기록이 보인다. 역외 집안의 망명 1세대인 億賴福留는 천지 4년(671) 추8월에 큐슈의 大野城을 쌓는데 파견된 바 있고, 천지 10년 춘정월에 병법에 밝아 大山下를 받았다. 億禮 혹은 億賴라는 백제의 성은 복성으로 웅략 20년(476)조에 분주로 인용된 『百濟記』에 보이는 尉禮라는 지명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한다.⁶¹⁾ 석야라는 씨명도 지명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⁶²⁾

荅他伊奈麻呂 등의 中野造씨는 『신찬성씨록』 우경제번 하에 의하면 杵率 荅他斯智의 후예씨족이다. 답타이내마려 등은 사성받기 위해 망명백제관인이었던 답타사지를 시조로 주장하였고, 이것이 조정에게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面得敬의 春野連씨는 『신찬성씨록』 우경제번 하에 의하면 比流王(제 11대)의 후손이라고 한다. 백제왕의 후예씨족임을 주장하는 씨족들이 천평보자년간에도 계속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나머지 백제계 씨족들에 대해

60) 佐伯有清은 여민선녀가 사성받은 백제공씨가 좌경제번 하의 백제공씨와 같다고 추정하기도 한다(『新撰姓氏錄の研究-考證篇 第5-』, 吉川弘文館, 1983, 25~26쪽).

61) 鮎貝房之進, 「日本書紀朝鮮地名攷」, 『雜攷』7, 1931, 123쪽.

62) 佐伯有清, 앞의 책, 1983, 40쪽.

서는 각 후손들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고, 『신찬성씨록』에도 씨족 관련기록이 보이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어쨌든 천평보자년간의 도왜인 사성기록은 당시까지 백제관인 후손들을 비롯한 많은 백제계 도왜인들이 옛 성을 쓰고 있었고, 이들이 집단적으로 사성을 요구하자 대부분 허락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본국 또는 망명 후 조상들의 직위와 활약 등이 사성받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시말해 도왜한 지 한 세기가 지나도 과거 조상들의 행적이 그 후 예씨족들, 특히 도왜계씨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자산이었다. 사성과 그 기준이 곧 율령제하 사회적 지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할 때 당연히 도왜계 씨족들은 사성받고자 노력하였을 것이고, 자신들 조상들의 활약담을 강조하거나 천황가 또는 당대 유력씨족인 등원씨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을 것이다.

한편 이 시기는 백제계 씨족과 함께 고구려(10씨), 신라(2씨), 당(漢 2씨)으로터 건너 온 사람들도 대규모 개사성에 편승하게 된다. 이후에도 도왜계 씨족들의 개사성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이는데, 각 씨족들이 원하는대로 개사성되었다. 이는 당대의 유력가였던 등원중마려가 757년 4월 자신이 지지하는 대흠왕을 황태자로 만든 뒤 도래인에 대한 대규모 사성을 통해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하고자 한 것이었다.⁶³⁾ 이를 계기로 757년부터 761년까지 모두 50여씨 2,000여명의 도왜계 사람들이 새로운 씨성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백제관인 후손들도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천평보자년간의 대규모 개사성은 결과적으로 여러 씨족들 간의 混融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게다가 이후 延曆 18년(799) 2월 단계에 이르러서는 도왜계 일반민들에게도 개사성의 길이 열리면서 더욱 혼란이 가중된다. 당시의 혼란상은 『신찬성씨록』을 통해서 엿볼 수 있다.

5. 『新撰姓氏錄』의 亡命百濟官人 후예씨족

『신찬성씨록』은 平安京과 5畿內를 본관으로 하던 고대 씨족들의 系譜書이다. 전체 30권, 목록 1권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현재 完本은 전해지지 않고 초록본만 전한다. 799년 桓武천황의 명으로 씨족들의 계보를 모으는 사

63) 김은숙, 「『신찬성씨록』의 가야계 씨족」, 『한국고대사논총』2, 1991, 198~199쪽.

업이 시작된 후, 815년에 萬多親王 등이 완성하였다. 平安京과 5畿内に 살던 1,182씨족의 出自를 조사하여, 천황가에서 유래한 씨족(皇別), 天神地祇에서 유래한 씨족(神別), 도왜계 씨족(諸蕃) 등으로 분류하고, 다시 지역별로 정리하였다. 이 가운데 백제계 씨족들은 제번에 속해 있다. 제번 씨족 총 326씨족 가운데 백제계 씨족은 104씨족이다.⁶⁴⁾

이러한 『신찬성씨록』에는 사료상 백제관인 후예씨족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씨족이 16씨족에 이른다. 신귀 원년(724) 5월과 천평보자 5년(761) 3월에 사성받은 씨족이 많은데, 과반수는 그 해당시기를 알 수 없다. 한편 이들 가운데는 조상인 망명백제관인이 『일본서기』 등에는 보이는데 『신찬성씨록』에는 보이지 않거나 전혀 반대의 경우도 있다.

【표 4】『신찬성씨록』 망명백제관인 후예씨족 일람표(기재순)

지역	분류	국명	氏姓	同祖	개사성 시기	내용
左京	皇別	百濟	吉田連	大春日朝臣	724	觀松彦香殖稻天皇皇子天帶彦國押人命四世孫彦國菴命之後也.<후략>
			林連			出自百濟國人木貴公也
			香山連		724	出自百濟國人達率荊員常也
			高槻連			出自百濟國人達率名進也
			石野連		761	出自百濟國人近速王孫憶賴福留也
			神前連		724	出自百濟國人正六位上賈受君也
右京	諸蕃	百濟	大丘造			出自百濟國速古王十二世孫恩率高難延子也
			城篠連		766	出自百濟國人達率支母未惠遠也
			百濟公		759	因鬼神感和之義. 命氏謂鬼室. 廢帝天平寶字三年. 改賜百濟公姓.
			清道連		791	出自百濟國人恩率納比旦止也
			麻田連		724	出自百濟國朝鮮王淮也
			高野造			百濟國人佐平余自信之後也
			中野造		761	百濟國人杵率答他斯智之後也
			林	林連同祖		百濟國人木貴之後也
摂津国			大石林	林連同祖		百濟國人木貴之後也
			林史	林連同祖		百濟國人木貴之後也

64) 『신찬성씨록』의 편찬과정 및 목적, 구성 내용에 대해서는 서보경의 논고(『신찬성씨록』의 편찬과 목적, 『한일관계사연구』41, 한일관계사학회, 2012) 참조.

먼저 좌경 제번 하에 기재된 씨족으로는 林連, 香山連, 高槻連, 石野連, 神前連, 大丘造씨가 있다. 이들 가운데 향산련과 신전련씨는 신귀 원년 5월에, 석야련는 천평보자 5년 3월에 사성받았다. 이밖에 임련, 고규련, 대구조씨는 사성시기를 알 수 없다.

林連氏의 조상인 木貴公 혹은 木貴는 『일본서기』 천지 10년(671) 춘정월 조의 망명백제관인 木素貴子를 가리킨다. 木素씨는 木氏의 복성이며, 그 동족으로 『일본서기』 지통 5년(691) 11월조에 呪禁博士 木素丁武가 나온다. 목소귀자의 후손임을 주장하는 씨족으로는 林連씨 이외에 우경의 林씨와 大石林씨, 攝津國 제번의 林史씨가 있다.⁶⁵⁾ 林이라는 씨명은 河內國 志紀郡 拜志郷(현 大阪府 藤井寺市 道明寺町林) 지명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⁶⁶⁾ 임련이라는 씨명의 사성시기는 알 수 없고, 신호경은 3년(769) 2월에 숙네성으로 개성된다.

香山連씨는 옛 씨명이 荊으로 기록상 신귀 원년(724) 5월에 荊軌武가 처음 사성받는다. 향산이라는 씨명은 대화국 十市郡 天香山 지명에서 유래한다고 보기도 한다.⁶⁷⁾ 그런데 『신찬성씨록』에는 향산련이 達率 荊員常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 형원상은 백제관등을 칭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망명백제관인임은 확실하다. 향산이라는 씨명을 보면 형원상이 도왜 후 정착하게 된 곳이 대화국의 천향산 부근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후손인 형무제가 형원상을 조상으로 삼고 사성을 요구할 때는 이들의 거주지가 좌경으로 옮겨진 뒤였을 것이다. 이 향산련씨는 『속일본후기』 승화 2년(835) 11월 신유조에 香山連清貞 등이 숙네성으로 개성되었다. 이때도 그 선조가 백제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高槻連씨는 達率 名進을 조상으로 하고 있다. 고규라는 씨명은 지명으로 보기도 하며, 고구련씨의 옛 씨명은 名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 사성시기는 알 수 없지만, 조상인 명진은 달솔이라는 백제관등을 칭하고 있기 때문에 660년 전후하여 도왜한 망명백제관인일 것이다.

石野連씨와 神前連씨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각각 천평보자 5년(761) 3월과

65) “林連. 出自百濟國人木貴公也.”(『新撰姓氏錄』左京諸蕃下 百濟條).

“林. 林連同祖. 百濟國人木貴之後也.”(『新撰姓氏錄』右京諸蕃下 百濟條)

“大石林. 林連同祖. 百濟國人木貴之後也.”(上同).

“林史. 林連同祖. 百濟國人木貴之後也.”(『新撰姓氏錄』攝津國諸蕃 百濟條).

66) 佐伯有清, 앞의 책, 1983, 30쪽.

67) 佐伯有清, 앞의 책, 1983, 32쪽

신귀 원년(724) 2월에 사성되었다. 두 씨족의 씨명은 모두 향산과 고규와 같이 지명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신전련씨의 신전은 近江지역에 해당하며 천지조에 많은 백제망명인들이 사민된 곳이다. 이곳에서 터를 잡고 성장하다 어느시기엔가 좌경으로 이주한 후, 그곳에서 가수군 같은 인물이 씨족을 대표하여 활약했음을 엿볼 수 있다. 가수군은 양로 5년(721) 정월에 解工으로서 정6위하로 나온다.

大丘造씨의 옛 성은 高難이며 사성받은 시기는 미상이다. 『삼대실록』 정관 6년(864) 8월에 大丘連田刈와 함께 숙네성을 받았다. 『일본서기』에 의하면 고난과 谷那는 같은 지명을 가리키는데 이를 근거로 『신찬성씨록』의 高難延子를 천지 2년(663) 일본에 망명한 谷那晉首의 일족으로 보기도 한다.⁶⁸⁾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속일본기』 신귀 원년 5월 신미조에 종6위하 谷那康受가 難波連을 사성받았다는 기록을 통해서 보면 양자는 별도의 씨족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우경 제번 하에 기재된 씨족으로는 城篠連, 百濟公, 清道連, 麻田連, 高野造, 中野造, 林·大石林씨가 있다. 이들 가운데 마전련씨는 신귀 원년 5월에, 중야조씨는 천평보자 5년 3월에 사성받았다. 그리고 성조련씨는 766년, 백제공은 759년, 청도련씨는 791년에 사성받았다. 그밖에 고야조, 임·대석림씨는 사성시기를 알 수 없다.

城篠連씨는 옛 씨명은 支母末이다. 『속일본기』 천평신호 2년(766) 3월 임신조에 의하면 대초위상 支母末吉足 등 5명이 함께 성조련씨를 사성받았다고 한다. 『신찬성씨록』에 의하면 達率 支母末惠遠이 시조라고 하기 때문에 지모말길족 등이 당시 사성을 요구할 때 망명백제관인 지모말혜원을 시조로 주장했고, 이것이 공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조련씨 일족으로는 지모미길족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

百濟公씨는 鬼室集斯와 鬼室集信 등 귀실씨 후예씨족으로 天平寶字 3년(759)에 사성되었다. 귀실씨가 백제공이라는 씨성을 사성받은 것은 귀실씨가 원래 백제왕의 姻族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기도 한다.⁶⁹⁾ 이때 백제공씨를 처음 사성받은 百濟公和麻呂는 신귀 년간에 시문에 뛰어난 사람으로 이름을 떨쳤다.⁷⁰⁾ 특히 『등씨가전』(하) 「武智麻呂傳」에는 『일본서기』 편찬자

68) 鮎貝房之進, 『雜攷日本書紀朝鮮地名攷』, 341쪽.

69) 佐伯有清, 앞의 책, 1983, 221~228쪽.

70) 『회풍조』에 정6위상 但馬守로 나오며 시 3수를 남겼다. 또한 『경국집』권20에 경운 4년(707) 9월 대책문 2편이 남아있다.

인 紀朝臣淸人 등과 함께 文雅로 나오는데 藤原씨 집안과도 관계가 깊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公姓씨족이 連姓씨족 다음, 그것도 백제왕족의 후예라고 주장하는 백제공씨가 성조런씨 뒤에 기재되고 있는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찬성씨록』에서 성(카바네)의 순서와 관계없이 씨족이 배열되는 것은 右京諸蕃 뿐만 아니라 좌경 및 여러 國에서도 종종 보인다. 이는 『신찬성씨록』 편찬을 전후한 시기에 諸蕃 씨족들의 존재양태 및 세력고하와 관계가 깊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이 단계에 이르면 씨족간의 예전 지위를 떠나 현실적으로 어느 씨족의 누가 더 활약하고 있는냐에 따라 각 씨족의 姓사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⁷¹⁾

淸道連씨는 恩率 納比旦止이 조상이라고 한다. 청도라는 씨명은 미칭으로 여겨진다. 청도런의 옛 성은 造로서 연역 10년(791) 12월에 淸道造岡麻呂가 連성으로 개성되었다.⁷²⁾ 은술 납비단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료에 보이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은술이라는 관등을 통해서 망명백제관인임은 분명하다.

麻田連씨는 옛 씨명은 答本 또는 答炆로 신귀 원년(724) 5월에 정8위상 答本陽春이 사성받았다. 『일본서기』 천지 10년(671) 정월에 병법에 밝아 관위를 받은 答炆春初가 선조이다. 마전이라는 씨명은 지명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며, 앞서 언급한 좌경제번 하의 향산런·신전런씨와 마찬가지로 거주지의 변화가 보인다.

천지조에 망명한 백제관인 가운데 관위가 가장 높았던 좌평 餘自信(餘自信)의 후예씨족이 高野造씨이다. 고야라는 씨명은 大和國 添下郡 高野라는 지명에서 유래한다. 그러나 고야조라는 씨성을 사성받은 이후의 일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아 그 사성시기를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속일본기』 양로 5년(721) 정월 갑술조에 餘秦勝과 餘眞人 등 여자진의 후손들로 보이는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고야조씨의 사성은 양로 5년 이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中野造씨는 천평보자 5년(761) 3월에 答他伊奈麻呂 등에게 사성되었다. 『신찬성씨록』에서는 杵率 答他斯智의 후예씨족으로 나온다. 답타이내마려 등

71) 『속일본기』 천평승보 9년(757) 4월조에 도왜인들에게 무제한 사성을 허가하는 칙이 내려진 이후의 상황과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신찬성씨록』 서문에서 씨족간 서열 등의 혼란이 있었다는 내용과도 연결된다.

72) 『속일본기』 연역 10년 12월 병신조.

이 중야조라는 씨성을 사성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답타사지와 동족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여겨진다.

한편 좌경황별 하의 吉田連씨는 그 출자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신찬성씨록』 좌경황별 하에서는 孝昭천황의 황자의 4세손 彦國菴命의 후손으로 나오지만, 『日本文德天皇實錄』가상 3년(850) 11월 기묘조에는 백제출신이라고 적혀있기 때문이다. 길전련이라는 씨성은 神龜 원년(724) 5월에 吉宜와 吉智首이 사성받았다. 여기서 길의와 길지상은 천지 10년(671) 춘정월에 왜국 관위를 받은 達率 吉大尙의 아들이다. 따라서 길전련은 원래 망명백제관인의 후예씨족이라고 할 수 있고, 황별씨족으로 『신찬성씨록』에 기재된 것은 出自 개변의 산물로 여겨진다.⁷³⁾ 이렇게보면 길전련 외에도 그 출자를 개변하여 황별이나 신별씨족으로 기재된 백제관인 후예씨족이 더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이 있다.⁷⁴⁾

이밖에 『일본서기』 천지기에 보이는 망명백제관인 또는 그 후예씨족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천지 10년(671) 정월에 길대상과 함께 의학에 해박하여 小山下를 받은 德頂上이 그렇다. 신귀 원년 5월에 觥兄麻呂(달솔 角福牟의 후손)와 四比忠勇(달솔 四比福夫의 후손)이 각각 羽林連과 椎野連을 사성받은 내용은 『신찬성씨록』에 전혀 관련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속일본기』 신귀 원년(724) 5월조에 의하면 谷那晋首의 후손으로 여겨지는 谷那康受가 難波連을 사성받는데,⁷⁵⁾ 두 사람 모두 『신찬성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는 현존 『신찬성씨록』이 抄略本과 逸文의 형태로 남아있다는 점⁷⁶⁾을 기본적으로 감안해야겠지만, 편찬당시 도왜계 씨족들의 존재양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반드시 필요함을 느낀다.⁷⁷⁾

이와 같이 『신찬성씨록』에 다양한 백제관인 후예씨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각 후손들의 諸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의 개사성의 시기는 신귀 원년(724)을 시작으로 여러 시기에 걸쳐 이루어지며, 대부분 連姓과 造姓

73) 길전련씨의 출자 개변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서보경의 「『신찬성씨록』의 吉田連氏 出自와 氏姓 標題에 관하여」, 『한일관계사연구』58, 2017 참조.

74) 황별이나 신별의 諸氏 가운데 황별과 신별로 출자를 바꾼 도왜계 씨족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연구(關晃, 『歸化人-古代の政治・經濟・文化を語る』, 至文堂, 1996, 90~91쪽)가 참조된다.

75) 다만 우경제번 하에는 난파련씨가 고구려의 호태왕의 후손이라고 나온다.

76) 田中卓, 「新撰姓氏錄の基礎研究-原本と抄本に關する諸問題-」, 『大阪社會事業短期大學研究紀要』2, 1953(『新撰姓氏錄の研究』田中卓著作集9, 國書刊行會, 1996, 35~38쪽).

77)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을 받았다. 이후 宿禰姓을 받는 씨족도 나온다. 씨명은 지명에 의거해서 대부분 인정받고 있고, 그 본거지는 좌경과 우경에 집중되어 있다. 무엇보다 조상들의 백제의 관직과 천지조의 관위수여의 경험이 향후 각 후예씨족들이 개사성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 때문인지, 조상을 천지조로 올려보 고자하는 모습도 보인다.

일본 고대의 씨족계보는 선조로부터 자신에게 이어지는 혈연적인 흐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職位의 계승 즉 천황에 대한 봉사의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왜계 씨족들은 사성 및 개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皇別 및 神別의 유력씨와 同朝, 同族관계를 공인받고자 출자를 개변하게 되고, 주변국의 황제 또는 왕의 후예임을 주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번과 일본씨족의 구분이 모호하고, 씨성의 혼란이 심각해진 당시의 상황이 『신찬성씨록』의 서문이나 표에 잘 묘사되어 있다. 백제관인 후예씨족들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舊백제계 씨족과는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 보인다. 즉 고대 유력씨족들의 전승조차 구백제계 씨족들의 오래된 전승에 의지하는 모습이 『일본서기』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신찬성씨록』에는 황별이나 신별을 칭하고, 숙네성까지 사성받는 구도왜계 씨족이 적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새롭게 도왜하고 당시 기록행정이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백제관인 후예씨족들의 조상전승은 상당수 사실에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맺음말

백제가 멸망한 후 왜국으로 건너간 많은 백제관인들은 재능과 기술에 따라 왜국의 관위를 받았다. 天智조정은 이들의 신지식을 토대로 국가의 새로운 기반을 다지기위해 율령관인의 운영과 양성에 관련된 관직에 집중 배치하였다.

天武朝에서도 망명백제관인들의 백제에서의 관위와 관직 등을 고려하고, 학문과 기술 등 제각기 소유하고 있던 경험과 능력을 중시하였다. 그럼에도 천무천황은 이들을 8色姓 질서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천무천황은 임신의 난을 일으켰을 때 舊백제계 씨족의 무력을 이용했고, 이들을 먼저 대우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천지~천무년간 관위제의 개정과 일련의 관위사여는 백

제관인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持統朝에 백제관인들이 율령제도하의 새로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기반이 되었다.

大寶~養老년간은 백제관인 1세대뿐만 아니라 2세대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일본서기』의 편찬에 새롭게 가담하면서 정치적 입지 또한 기존 백제계씨족만큼 확립되었다. 이 과정에서 藤原氏 집안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한 관계는 奈良시대 전반에 걸쳐 유지된다.

망명백제관인 및 그 후예씨족의 諸문제를 고찰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은 神龜 원년(724) 5월과 天平寶字 5년(761) 3월의 대규모 사성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이 일련의 대규모 賜姓정책은 당시까지도 ‘蕃姓’을 가진 백제관인 후손을 비롯한 새롭게 건너온 도왜인들에게 해당된 것이다.

먼저 신귀년간 이루어진 백제관인 후손들에 대한 대규모 사성은 1세대들의 뛰어난 재능을 이어받아 율령관인으로 출사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이면에는 후손들의 개인 관위의 상승이나 등원씨와의 관계 등 신분적·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측면도 엿볼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 기반이 된 것은 천지조에 망명한 1세대들의 위계와 직능이었을 것이다.

천평보자년간의 도왜인 사성기록은 당시까지 백제관인 후손들을 비롯한 많은 백제계 도왜인들이 옛 성을 쓰고 있었고, 이들이 집단적으로 사성을 요구하자 대부분 허락했다. 이 시기는 백제계 도왜인들 뿐만 아니라 고구려, 신라, 당으로부터 건너 온 사람들도 대규모 사성에 편승하게 된다. 이러한 천평보자년간의 대규모 개사성은 결과적으로 여러 씨족들 간의 混融을 발생시키는 단초가 되었다. 게다가 이후 延暦 18년(799) 2월 단계에 이르러서는 도왜계 일반민들에게도 개사성의 길이 열리면서 더욱 혼란이 가중된다.

현존 『신찬성씨록』에 다양한 백제관인 후예씨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각 후손들의 諸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들의 개사성의 시기는 신귀 원년(724)을 시작으로 여러 시기에 걸쳐 이루어지며, 대부분 連姓과 造姓을 받았다. 이후 宿禰姓을 받는 씨족도 나온다. 씨명은 지명에 의거해서 대부분 인정받고 있고, 그 본거지는 좌경과 우경에 집중되어 있다.

일본 고대의 씨족계보는 선조로부터 자신에게 이어지는 혈연적인 흐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職位의 계승 즉 천황에 대한 봉사의 역사를 설명하는 하나의 상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도왜계 씨족들은 사성 및 개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皇別 및 神別의 유력씨와 同朝, 同族관계를 공인받고자 출자를 개변

하게 되고, 주변국의 황제 또는 왕의 후예임을 주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번과 일본씨족의 구분이 모호하고, 씨성의 혼란이 심각해진 당시의 상황이 『신찬성씨록』의 서문이나 표에 잘 묘사되어 있다. 백제관인 후예씨족들도 이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舊백제계 씨족과는 그 정도의 차이가 분명 보인다. 즉 고대 유력씨족들의 전승조차 구백제계 씨족들의 오래된 전승에 의지하는 모습이 『일본서기』에 여실히 나타나고 있고, 『신찬성씨록』에는 황별이나 신별을 칭하고, 숙네성까지 사성받는 구도왜계 씨족이 적지 않게 보인다. 그러나 비교적 새롭게 도왜하고 당시 기록행정이 체계를 갖춘 상황에서 백제관인 후예씨족들의 조상전승은 상당수 사실에 근접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말해 백제관인 후예씨족의 諸문제는 도왜인 연구뿐만 아니라 한일 양국 고대사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한일관계사 학술회의

고대 일본의 씨족 개념으로 본 도래인

이근우(부경대학교)

고대 일본의 씨족 개념으로 본 도래인

이근우(부경대학교)

1. 머리말
2. 씨성과 씨족
 - (1) 씨와 성
 - (2) 씨성과 씨족의 관계
 - (3) 고대 일본의 씨와 성
3. 고대 일본의 씨성 개념
 - (1) 정치적 집단설 및 가(家) 집합설
 - (2) 부계 출자 씨족설
 - (3) 모계 출자 씨족설
 - (4) 쌍계 출자 씨족설
 - (5) 무계 친족(kindred)설
4. 도래인의 개사성
 - (1) 시대적 배경
 - (2) 개사성의 실태
 - (3) 개사성의 원리
5. 맺음말

1. 머리말

『신찬성씨록』에 기재된 씨성 중에는 그 이전 시기의 출신지역 및 시조에 대한 전승과 전혀 다른 계보를 주장하여 자신들의 출자(出自)를 크게 바꾼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서보경이 이미 상세하게 검토한 바 있는 길전련(吉田連)이다.¹⁾ 길전련은 백제의 달솔이라는 관

1) 서보경, 「『신찬성씨록』의 吉田連氏 出自와 氏姓 標題에 관하여」, 『한일관계사연구』58.

등을 가지고 있었고 일본열도로 건너온 시기로 보아도,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망명한 백제유민으로 보아 큰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소(孝昭) 천황의 5세손 언국증명(彦國菴命)을 시조로 한다고 하여, 대춘일조신(大春日朝臣)과 동족이라고 주장하였다.²⁾ 만약 『신찬성씨록』의 기재에 따라서 길전련과 같은 씨족을 중국·한반도에서 건너간 제번씨족이 아니라 황별씨족으로 판단한다면, 『신찬성씨록』의 도래계 씨족에 대한 연구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조차 상존하고 있는 셈이다.

길전련씨가 대춘일조신과 마찬가지로 효소(孝昭) 천황의 황자(皇子)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그러한 주장이 인정되어 『신찬성씨록』에 기재되기에 이른 것은, 당시 씨성 및 그 출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성 개념이 중국의 씨성 개념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고대 일본에 적용할 수 없다. 이제 이 글에서는 먼저 『신찬성씨록』에 이르기까지, 일본 고대의 씨성 개념이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길전련씨와 같이, 제번씨족으로 생각되는 씨족이 황별씨족으로 전화될 수 있었던 배경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종래의 연구는 그 개성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분석하였으나, 왜 그러한 개성이 가능하였는지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다.

2. 씨성과 씨족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씨성의 개념은 중국적인 것이다. 씨와 성은 혈연에 바탕을 둔 것이고, 부계 혈연을 중심으로 계승된다(父系單系出系, patrilineal descent).³⁾ 또한 동성동본 간의 혼인은 관습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동일한

2) 『新撰姓氏錄』左京 皇別 吉田連. 大春日朝臣同祖. 觀松彦香殖稻天皇[諡孝昭.]皇子天帶彦國押人命四世孫彦國菴命之後也. 昔磯城瑞籬宮御宇御間城入彦天皇御代, 任那國奏曰, 臣國東北有三己汶地.[上己汶·中己汶·下己汶.]地方三百里, 土地人民亦富饒. 與新羅國相爭, 彼此不能攝治. 兵戈相尋, 民不聊生. 臣請將軍令治此地, 即爲貴國之部也. 天皇大悅, 勅群卿, 令奏應遣之人. 卿等奏曰, 彦國菴命孫鹽垂(乘?)津彦命, 頭上有贅三岐如松樹[因號松樹君.], 其長五尺, 力過眾人, 性亦勇悍也. 天皇令鹽垂津彦命遣. 奉勅而鎮守. 彼俗稱宰爲吉, 故謂其苗裔之姓, 爲吉氏. 男從五位下知須等, 家居奈良京田村里間. 仍天璽國押開豐櫻彦天皇[諡聖武.]神龜元年, 賜吉田連姓[吉本姓. 田取居地名也.]. 今上弘仁二年, 改賜宿禰姓也. 續日本紀合.

3) descent를 出系로 옮겼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出自라고 한다. 출계율(descent rule)은 혈통에 따라 친족 집단의 일원으로 귀속시키는 원칙을 말한다. 단계(unilineal

씨족이 혼인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족외혼(族外婚, exogamy)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부계 혈연을 근간으로 하는 현재 우리의 인식은 일본 고대의 씨성을 이해하는 데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고대 일본의 씨성 개념이 현재의 우리와 크게 다른 것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지금까지도 일본의 천황은 씨성이 없다. 신유한은 이미 『해유록』에서 천황이 씨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천황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여긴다고 하였다.⁴⁾ 왕조 교체를 역성혁명(易姓革命), 즉 군주의 성을 바꾸고 천명을 바꾼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일본에 적용할 수 없었던 셈이다. 군주가 씨성이 없기 때문에 일본 사회 내에서 씨성이 갖는 사회적인 함의나 기능도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일본 고대의 씨성의 개념, 그리고 가족·친족 및 혼인 형태, 지위의 계승과 재산의 상속의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신찬성씨록』에 나타나는 씨성(氏姓)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1) 씨와 성

현재는 씨와 성 사이에 큰 구별이 없으나, 주(周) 나라의 성(姓)은 부족적인 집단(제후)이 칭하는 것으로, 제후 간의 관계를 보이는 역할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씨(氏)는 성을 가진 집단에서 분화한 지역적인 집단의 호칭으로, 국명(國名)·봉읍명(封邑名)·관명(官名)·혈연관계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춘추전국시대에 성을 가진 제후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체제가 무너지고, 경·대부 등 씨를 중심으로 한 정치체제가 운용되었다. 이에 따라 성의 정치적인 기능이 약화되고, 씨의 정치적인 비중이 커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성과 씨가 구별되지 않기에 이르렀다. 전국시대를 통일한 진에 이르러서, 종래 제후·경·대부들이 가지고 있던 씨성을 서민들도 사용하게 되었고, 씨성을 갖지 않은 사람은 노비들뿐이었다. 동시에 동성불혼(同姓不婚)과 이성불양(異姓不養)⁵⁾이라는 예(禮)가 확산되었다. 이후 청이 멸망할 때까지 씨성을 바탕으로 한 혈연집단과 그와 관련된 예는 지배구조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로 지속적으로 작동하였다.

descent)는 부계나 모계 어느 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고, 선거(選系, ambilineal or cognatic descent)는 세대별로 출계를 선택하므로 실질적으로 단계에 속한다.

4) 신유한, 『海遊錄』中卷 9월 11일. (전략) 彼其爲君之法, 但有焚香禮天, 而自謂天降神人. 擬已於歲起攝提無爲而化者, 則初未有姓氏之可論也. (하략)

5) 다른 성을 가진 자는 양자로 들이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2) 씨성과 씨족의 관계

다음으로 씨성과 씨족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씨성과 씨족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씨성 개념에 입각하면, 같은 씨성을 가진 사람은 같은 조상에서 출발하여 부계로 이어져 온 혈연집단(patrilinal clan)이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씨성을 가진 사람끼리는 혼인할 수 없다(exogamy). 그러나 인류학적인 개념으로 씨족(clan)은 출자 의식을 가진 혈연적 혹은 의제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학의 최근의 씨족 개념을 인용해 보자.

clan이라는 개념은 실질적인 혹은 인식하는(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친족 관계와 출계(出系 出自)를 통해서 결합된 인간 집단을 말한다. 비록 구체적인 혈통을 알 수 없더라도, clan 구성원은 시조나 clan의 중심적 인물을 중심으로 조직될 수 있다. clan은 같은 clan 내의 다른 구성원과 결혼할 수 없는 즉 족외혼의 경향이 있다. clan은 보다 집중화된 형태의 사회 조직이나 국가보다 먼저 출현한 조직이며, 어느 국가에나 존재한다. 구성원은 그들이 독자적인 clan이라는 사실을 보이기 위한 문장(紋章)이나 다른 심벌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혈족이라는 인식에 기반한 결합의 중심에는 상징적인 시조가 있으며, clan은 그들의 통합의 상징인 정해진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 그 시조가 인간이 아닐 때는 종종 동물 토템이기도 하다.

즉 흔히 씨족으로 번역되는 clan은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의제적인 관계도 그 구성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혈연적인 원리만으로 운용되는 현재 우리의 씨성 개념과 다르다. 동시에 인류학의 clan에 대한 개념 자체도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씨성 개념을 clan 중에서 부계 출계 씨족으로 간주하였다. 그런데 현재는 그 개념이 포괄적으로 혹은 모호하게 변화하였으면, 의제적인 관계도 clan의 구성원리로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씨성 사용의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자. 씨성과 이름으로 구성된 인명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씨성과 개인의 이름을 연칭하는 제도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

한 시대에 발생하여 과급된 것이다. 부족명이나 씨족명은 대부분의 미개사회에도 존재하지만, 이를 개인의 이름과 연칭(連稱)하는 제도가 반드시 생기지는 않았다. 현재도 개인의 이름만 사용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고대 신라의 경우도 중국과 교섭하기 전에는 개인의 이름만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이슬람문화의 경우는 ‘누구의 아들인 누구’, ‘누구의 아들인 누구의 아들인 누구’처럼, 고대 그리스나 구약성서에 보이는 인명 표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⁶⁾

다음으로 씨성의 계승원리에 대하여 살펴보자. 씨성의 문제와 함께 씨성으로 대표되는 친족집단 및 혈연집단의 계승원리도 문제가 된다. 중국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은 우리의 경우는 중국의 씨성제도 및 가족제도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대의 삼국·고려이나 일본열도의 경우에는 중국적인 개념의 종족(宗族)이나 가(家, 가문)에 상응하는 친족집단이나 가족이 존재하였는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⁷⁾ 각각의 언어가 다른 것처럼 친족집단이나 가족의 유형도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친족집단이나 가족의 실태나 개념이 결코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일 수 없고, 각각의 지역은 고유하고 개성적인 양상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중국의 종족제는 부계 단계 출계(patrilinal descent)라는 혈연적 원리에 입각하여 운영되며, 종족 구성원의 자격(membership)은 혈연을 통해 획득되고 그것은 인위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구성원(member)의 신분 및 사회적인 지위는 출생 순서, 혈연의 친소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혼인조차도 해당 혈연집단이 대대로 연속될 수 있도록 자식을 번식시킬 의무와 동일시되었다.⁸⁾

(3) 고대 일본의 씨와 성

한자는 중국에서 생겼지만, 주변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글자가 가지는 내포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씨와 성의 경우는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원래 성이 상위개념이고 씨가 하위개념이

6) 吉田孝, 「古代社會におけるうち」, 『日本の社會史』6, 1988. 40~41쪽.

7) 노명호, 「고려시대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과 가족」, 『한국사론』19, 1988. 이 논문에서는 고려시대 후기 및 조선 전기의 친족제도가 부계단계출자가 아님을 지적하고, stock 즉 ‘직계의 선대 계보가 모아지는 범위’ 혹은 ‘한 사람 또는 부부의 남녀를 통한 모든 후손 범위로 단위집단적인 기능이 없는’ 혈연관계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8) 官文娜, 『日中親族構造の比較研究』, 思文閣出版, 2005. 6~7쪽.

었으나, 점차 구별없이 쓰이게 되었다. 그러나 고대 일본의 경우는 씨와 성이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엄밀하게 씨(氏)는 ‘우지’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성(姓)은 ‘카바네’라는 개념을 나타내었다.

‘우지’는, 후술할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직장(職掌)의 부계(父系) 계승을 기층으로 편성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⁹⁾ 예를 들어 선사(船史) 왕진이(王辰爾)와 같이, 왕(王)과 선(船) 중에서 선은 ‘우지’이고, 왕은 씨(氏)라고 할 수 있다. 즉 혈연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씨와 정치적인 직장을 나타내는 ‘우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흔히 씨(氏)로 표기되는 ‘우지’를 단순히 혈연 관계를 반영하는 지표로 볼 수 없다.¹⁰⁾

한편, 성(姓, 카바네)은 대왕(大王)이 유력한 각 우지 집단에게 수여한 칭호로서, 우지의 성격 및 왕권과의 관계, 정치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다.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걸쳐서, 야마토 왕권이 중앙과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에 이르자, 유력 호족들의 성격, 지위, 직장(職掌)에 따라 부여하였다. ‘카바네’는 해당 우지 집단이 세습하는 칭호로서, 정치적·사회적인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이었다.¹¹⁾ 제도화된 ‘카바네’로 들 수 있는 것은 국조(國造, 쿠니노미야즈코), 현주(縣主, 아가타노누시), 별(別, 와케), 도치(稻置, 이나기)를 비롯하여, 공(公·君, 키미), 신(臣, 오미), 연(連, 무라지), 직(直, 아타이), 수(首, 오비토), 사(史, 후비토), 촌주(村主, 스구리) 등이 있다. 『일본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윤공(允恭) 때 신(臣)·련(連)을 두고 ‘와케’는 ‘키미’, ‘쿠니노미야즈코’·‘아가타노누시’는 ‘아타이’로 바꾸었다고 한다. 아부무엔(阿部武彦)은 ‘키미’는 독립성이 강한 지방 호족, 왕실의 근친자, 제사 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우지’에게 주어졌고, ‘오미’는 종래 대왕가와 더불어 기내 지역을 지배하던 유력 호족, ‘무라지’는 품부(品部)·명대(名代)·자대(子代)를 거느리고 대왕가에 봉사하는 ‘우지’, ‘아타이’는 종래 ‘쿠니노미야즈코’에게 각각 부여된 ‘카바네’로 보았다.¹²⁾

9) 熊谷公男, 「ウジはどのようにして成立したか」, 『新視點日本の歴史2- 古代篇』, 新人物往來社, 1993. 258쪽.

10) 이 글에서는 혼동의 소지가 있는 씨·씨족 대신 우지·우지 집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11) 熊谷公男, 앞의 논문, 258쪽. 그는 ‘카바네’를 직명과 관련된 칭호이며, 職掌의 계승에 수반되는 칭호로서, 자손에게 일률적으로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직장 자체가 통상 우지의 구성원에 의해 부계로 계승된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개인의 직명과 관련된 칭호가 드디어 우지 집단의 칭호로 전화되었다고 보았다.

12) 阿部武彦, 『氏姓』, 至文堂, 1960.

‘카바네’가 극적으로 변화한 것은 천무(天武)의 8색 사성이다. 임신의 난을 계기로 군주가 된 천무는 이전의 군주와 달리 중앙의 유력 호족들에게 전체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임신의 난의 과정에 기존의 유력 호족들의 대부분이 천지(天智)의 아들인 대우(大友) 측에 가담하여 천무와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8색 성은 종래 상위의 성이었던 신·연 위에 진인(眞人), 조신(朝臣), 숙네(宿禰), 기촌(忌寸), 도사(道師)를 두어, 기존의 ‘카바네’ 질서를 전면적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씨와 성을 조합하여, 특정 ‘우지’의 직능과 지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씨성제(氏姓制)’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씨와 성이 구별되지만, 성은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즉 씨 혹은 씨와 성을 아울러 일컬을 경우도 성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등원조신중마려(藤原朝臣仲麻呂)에서 엄밀하게는 등원이 ‘우지’, 조신이 ‘카바네’이지만, 등원도 ‘카바네’라고 할 수 있고, 등원조신도 ‘카바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고대 일본의 씨성(氏) 개념

그렇다면 과연 일본의 씨성(氏姓)의 실상은 어떠하였을까? 씨성이라는 한자로 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姓)은 ‘우지’의 신분표지에 가까운 의미로 사용되었고, 씨(氏) 역시 반드시 혈연적인 계보를 기초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우지’의 기초에는 다시 가(家, 이에)가 존재하는데, 그 ‘이에’ 역시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가(家)’와는 다르다.

일본의 가(家, 이에)는, 대체적으로는 혈연관계로 결합된 가족 즉 부부를 중심으로 자식을 낳고 생산과 소비를 영위하는 기초적인 사회생활의 단위라기보다는, 경제력을 가진 가산의 영속 상속을 목적으로 경영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이 경영체는 사회생활의 단위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의제혈연적·경제적·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집단이었다. 이러한 ‘이에’라는 집단의 구조적인 특징은 그 직계를 중시하는 데 있었다.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가장·족장 지위의 직계 계승, 둘째, 가산의 (장자에 의한) 단독 상속, 셋째, 가족의 직계적인 거주형태를 들 수 있다고 한다.¹³⁾

(1) 정치적 집단설 및 가(家) 집단설

13) 이러한 家は 14세기 경에 완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官文娜, 앞의 책, 序文, 7쪽).

그러나 고대 일본의 상황은 달랐다. 먼저 쓰다 소오키찌(津田左右吉)은 고대 일본 사회에서는 가족에 관한 언어(친족호칭)의 분화가 충분하지 않은 점, 아버지의 권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점, 장자제가 성립되지 않은 점 등에서 가족 제도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였다.¹⁴⁾ 쓰다(津田)는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씨족에서 가족으로라는 모건 등 당시 문화인류학자의 이론에 깊은 영향을 받았다. 가족의 미발달,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이행하는 과도기라는 진전의 생각은 모건 이론의 영향이다. 진전은 또한 우지나 부(部) 제도가 단계 출자집단인 clan과 이질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본 고대 사회에는 모계 출계 집단의 유제도, 부계 출계 집단의 유제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쓰다는 단계출자집단, 공통의 시조로부터 부계 또는 모계 즉 단계로 추적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혈연집단, 즉 협의의 clan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공통의 시조를 가진다는 믿음으로 결합된 혈연집단의 존재도 부정하였다. 나아가서 기기(記紀)에 기재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일본 민족은 한편으로는 가족이 명확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가족의 생활이 촌락적인 집단과 그 영주인 귀족·호족의 정치적인 통제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혈족적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여지가 없었다.¹⁵⁾ 이처럼 진전은 우지(氏)도 부(部)도 정치적인 제도라고 하여 사회조직에서 분리하였다.

또한 쓰다는 일본의 상대에는 가(家)는 있었으나 부족(clan)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가의 이름은 있었으나 부족의 이름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었으며, 가의 선조는 있어도 부족의 조선(祖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또 촌락의 수장은 있었으나 부족의 수장은 없었다. 요컨대, 가의 생활, 촌락의 생활은 있었으나, 부족의 생활은 없었다고 보았다.¹⁶⁾ 이때 부족은 씨족(clan)을 뜻한다.

쓰다 이전에는 고대 일본의 ‘우지’를 clan 즉 씨족(원시적 혈족조직)과 유사한 혈연집단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였다. 그런데 쓰다는 고대 일본에는 족외혼제도 혈연조직도 존재하지 않으며, ‘우지’는 내부적으로는 가장에 의해서 통일을 유지하는 계급적인 조직이며, 정치적으로 국가에 대한 지배예속관계

14) 津田左右吉, 「上代の家族生活」,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新研究』, 洛陽堂, 1919. 350~380쪽.

15) 津田左右吉, 「大化改新の研究」, 『日本上代史の研究』, 1947, 268쪽.

16) 津田左右吉, 「上代の部の研究」, 『日本上代史の研究』, 1947. 132쪽.

에 의해 통합된 정치집단으로 보았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우지’는 정치조직이며 왕권과의 정치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쿠마가이 쿠니오(熊谷公男)에 의하면, “소아씨(蘇我氏)·대반련(大伴連)·상모야군(上毛野君)·동한직(東漢直) 등 율령 이전의 우지(氏=氏族)은, 동조(同祖) 계보에 의하여 족적(族的) 집단을 이루는 친족집단인 동시에, 야마토왕권과 일정한 정치관계를 맺고, 왕권의 존속에 필요한 대왕의 정치적인 보좌·군사·제사·특수기능 등 여러 가지 직무가 동반되는 정치적인 지위(쓰카사, 司)에 나아가, 대대로 왕권에 봉사하는 정치조직이기도 하였다. (중략) 요컨대 율령제 이전의 우지는 쓰카사의 부계 계승을 기축으로 하여 편성된 야마토 왕권을 구성하는 정치적 친족집단이었다.”고 정의하였다.¹⁸⁾

한편 아루가 키자에몬(有賀喜左衛門)은 사회학 및 민속학의 측면에서 일본 고대 씨족의 실상을 추구하고자 하였다. 그는 일정한 취락에 거주하는 가(家)들이 혈연의 유무와 관계없이 유력한 가를 중심으로 하는 계보관계에 의해 결합되어,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가의 연합체를 동족단(同族團, 씨족)이라고 불렀다. 지연집단으로서의 동족단이 협의의 씨족이며, 동족단이 다시 연합한 것을 광의의 씨족(우지)이라는 것이다.¹⁹⁾

이처럼 그는 혈연의 규제적이 약하고 지연의 규제가 상대적으로 강한 일본의 사회구조에 관류하는 기본적인 성격을 포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어디까지나 근세 근대의 농촌을 소재로 구성된 논리이므로, 이 이론이 고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유하(有賀)는 계승되는 가를 고대에서는 향호(郷戸)와 우지(氏)라고 보았으나, 고대에 계승되어 가는가가 과연 있었는가? 또한 호적(戶籍) 계장(計帳)의 적자(嫡子)를 계승되는 가의 지표로 보았으나, 이는 제도적인 포장에 불과하고 실태는 아니었다. 미조구찌 아쓰코(溝口睦子)도 적자는 정치적인 제도로 새롭게 설정된 것이고 당시 사회에서는 거의 실체가 없었다고 보았다.²⁰⁾

와카모리 타로오(和歌森太郎)는 가(家)가 계보관계에 의해 결합된 동족집단

17) 中村友一, 『日本古代の氏姓制』, 八木書店, 2009. 5쪽.

18) 熊谷公男, 「ウジはどのようにして成立したか」, 『新視點日本の歴史-古代篇』, 新人物往來社, 1993. 250쪽.

19) 有賀喜左衛門, 「日本上代の家と村落」, 『東亞社會研究』 1권, 1943.

20) 溝口睦子, 「律令國家における嫡庶子制について」, 『日本史研究』 105, 1969.

으로 씨를 이해하였다. 와카모리는 ‘우지’는 하나의 결속된 협동체가 아니고, 미우찌(身内)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 이른바 혈통관계를 보여주는 데 불과한 것이라고 보았다.²¹⁾ 가를 기초로 한 ‘우지’라는 관점에서는 유하(有賀)와 일치한다.

나오키 코오지로오(直木孝次郎)은 ‘우지’의 정치적 혹은 계급적인 입장을 중시하는 쓰다·후지마 쇼오타(藤間生大)의 설과 동족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유하·화가삼 등의 설을 종합 발전시켰는데, 기본적으로는 역시 가의 집합체로서 ‘우지’를 위치시켰다. 확실하게 단계 출계 집단으로서 clan은 일본 고대에 적어도 7~8세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우지는 이처럼 정치적인 집단인 측면을 가지며, 그 중핵에 시조가 천황을 섬긴 것처럼 영원히 천황을 섬긴다는 정치적인 이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출운국조(出雲國造)는 그들의 시조인 아메노호히노미코토의 위령(威靈)을 항상 시조로부터 직접 계승하는 전통을 유지해 왔다. 이는 시조가 천황을 섬긴 것처럼 영원히 천황을 섬긴다는 이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고사기』의 내용도 씨족과 관계된 것은 그 시조를 명확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이다.

도하산철검(稻荷山鐵劍) 역시 그러한 사례의 하나이다. 가의 혈연적 원리에 의한 계승이 아니라, 시조를 잇는다는 계보의식에서 보면, 족장의 지위가 방계 씨족에게 용이하게 계승되는 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연력(延曆) 18년에 씨족의 본계장(本系帳) 제출을 명했을 때도, 단 시조 및 별조(別祖) 등을 기록하고 지류 및 계사 역명을 나열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시조를 직접 계승하고 있다는 의식이 헤이안시대 초기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²⁾

(2) 부계 출계 집단설

한편, 후지마 쇼오타(藤間生大)와 이시모다 쇼오(石母田正)는 기본적으로 엥겔스의 발전단계론을 계승하여, 씨족공동체로부터 친족공동체를 거쳐 고대 가족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우지’가 고대가족적인 통치양식과 사회질서에 의하여 결집된 정치적 집단이라고 주장하였다.²³⁾ 특히 석모전정은 우지집단은

21) 和歌森太郎, 『國史における協同體の研究』上卷, 1947, 帝國書院.

22) 吉田孝, 앞의 책, 39~40쪽.

23) 藤間生大, 『古代國家論』, 1946, 伊藤書店. 石母田正, 「古代家族の形成過程」, 『社會經濟史學』12-6, 1942.

혈족·인족(姻族, 非單系의 혈연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쓰다 소오키치에 대하여, 이시모다는 모건 앵겔스의 사회발전단계론에 입각하여, 고대가족이 부계단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패전 후의 씨족 연구에 대한 관심은 주로 정치조직으로서 우지가 갖는 성격을 밝히는 데 쏠렸다. 다만 정치조직이라는 의미를 주로 조정의 정치조직을 구성하는 기초단위로 이해할 것인지, 그 내부의 정치적 지배예속관계로 통합된 조직이라는 점에 주목할 것인지는 논자에 따라서 상당히 달랐다. 아베 타케히코(阿部武彦)와 세키 아키라(關晃)는 전자에, 후지마와 히라노 쿠니오(平野邦雄)는 후자에 관심을 가졌다. 전자에 대해서는 이미 우지가 지배층에게만 특유한 조직이라는 점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이 기내 호족에 국한할 수 있는가는 중심으로 관황이 연구를 진전시켰다. 후자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설정된 부(部)가 우지의 중요한 경제적인 기반을 이루고 있는 점은 이론이 없었으나, 부가 우지 조직에 포함되는지를 중심으로 히라노 쿠니오가 연구를 진행하였다.²⁴⁾

다만 이시모다와 후지마의 연구는 전후 고대사학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으나,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다. 우선 연구의 소재로 사용한 호적(戶籍)과 계장(計帳)이 갖는 사료적인 성격에 관한 문제이다. 발전단계 차이와 지역 차이를 보이는 자료 속에서 일본 편호제(編戶制)의 특질에서 나타난 왜곡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키시 토시오(岸俊男)의 연구에서 밝혀졌다.²⁵⁾

또 다른 문제점은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발전, 단계출자집단을 기초로 한다는 모건과 앵겔스의 이론을 기본적으로 그대로 계승한 점이다. 이시모다는 가족은 사회적·제도적 집단으로 이해하는 한, 부계거나 모계의 단계성을 원리로 조직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3) 모계 출계 집단설

특정 개인과 씨족의 출계를 따지는 문제는 혼인형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문제를 천착한 인물로 1930년대부터 활동한 타카무레 이즈에(高群逸枝)를 들 수 있다. 그녀는 『母系制の研究』·『招婿婚の研究』·『日本婚姻史』 등의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고대 일본이 모조(母祖)의 지위와 그 역할을 중시하는 모계씨족의 단계를 지나서 대화개신 전에는 모계와 부계가 혼

24) 熊谷公男, 앞의 논문, 251쪽.

25) 岸俊男, 『古代籍帳の研究』, 塙書房, 1973.

합된 단계를 거쳤고, 개신 후에 부조(父祖)·부계 씨성·부계 씨족이 확립된 것으로 보았다. 고대 일본의 우지 집단을 혈연 집단으로 보고, 혼인이라는 관점에서 그 내부구조를 연구하였다는 점에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녀의 연구업적은 가부장적인 시대상황과 맞물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그녀가 제시한 모계적인 현상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²⁶⁾

예를 들어 그녀는 소아도목(蘇我稻目)의 아들이자 소아마자(蘇我馬子)와 형제 사이인 마리세(摩利勢)가 경부마리세(境部摩利勢), 소아경부마리세(蘇我境部摩利勢)로 나타나는 사실을 근거로 마리세의 모계가 경부신(境部臣)일 것으로 보았다. 물부수옥(物部守屋)의 경우는 생모가 궁삭왜고(弓削倭古)의 딸 아좌희(阿佐姬)인데, 그를 씨명을 표기할 때 물부궁삭수옥(物部弓削守屋)이라고도 하고, 혹은 궁삭대련(弓削大連)처럼 모계의 씨명만 칭한 경우도 있다.²⁷⁾ 소아하이(蘇我蝦夷) 역시 물부대신(物部大臣)이라고 한 사례가 있다.²⁸⁾ 소아하이 역시 생모가 물부수옥(物部守屋)의 누이인 태원(太媛)이었다. 그밖에도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계모소(父系母所)’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즉 혈통적으로는 부계를 따르지만, 거처는 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이다.

드디어 1950년대에 들어서 모계설을 주장하는 타카무레·호라 토미오(洞富雄)과 부계설을 주장하는 에모리 이쓰오(江守五夫)·오오바야시 타로오(大林太良)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다. 호라 토미오는 황족의 혼인 사례 중에서 당사자의 혈연 관계를 알 수 있는 사례를 망라한 다음, 모계적인 족외혼의 규제가 분명하게 존재하였다고 보았다.²⁹⁾

(4) 쌍계 혹은 쌍방 출계 집단설

고대 일본의 친족집단에 대하여 이처럼 정반대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직면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견해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이후 쌍계 출계 혹은 쌍방(bilateral) 친족집단으로 이해하려는 견

26) 伊東すみ子, 「書評鷲見等曜著, 『前近代日本家族の構造-高群逸枝批判』, 『法制史研究』34, 1984. 198~203쪽.

27) 『先代舊事本紀』5권 「天孫本紀」. 物部大市御狩連의 아우로 보인다.

28) 蘇我蝦夷의 동생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생모를 太媛으로 보면 역시 모계를 따라 씨를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29) 洞富雄, 『日本母權制社會の成立』, 淡路書院, 1957.

해가 나타났다. 오오바야시 타로오(大林大良)은 1971년에 동남아시아의 혼인 습속인 가원(歌垣), 일시적인 방처혼 등의 습속 등과 비교하여 고대 일본사회에서도 부계제와 동시에 쌍계제 사회와 공통되는 구조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74년에는 스미 토오요오(鷺見等曜) 역시 동남아시아의 관행과 일본의 일시적인 처측 거주혼, 재산상속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쌍계제 사회와 유사하다고 하였다.³⁰⁾

1976년부터 요시다 타카시(吉田孝)는 중일의 고대사회를 비교하고, 일본고대사회는 중국과 같은 가부장제 하의 대가족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사회의 상층부는 신화화된 혈연 계보를 가지고 결속되어 있으나, 기층사회는 쌍계제적인 친족관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각각 다른 구조를 가진 두 종류의 친족집단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³¹⁾ 또한 비단계제 사회에 관한 문화인류학적인 연구 성과를 배경으로 비단계(非單系, 雙系)·비외혼제(非外婚制)·성원 간의 계층성(지배-종속관계)을 특질로 하는 원추형 씨족(圓錐clan)으로 일본의 ‘우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우지명은 천황을 섬기는 직무를 상징하는 것이며, 조상의 이름(祖名)이 우지명이었다고 보고, 이러한 신화적인 계보의식·시간의식이 나라시대에는 이미 쇠퇴하고 있었으며, 중국 율령의 수용과 더불어 새로운 계보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고 하였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부자 계승을 중심으로 하는 적자제이며, 적자를 세우는 이유는 가(家)를 계승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 가는 후대의 ‘이에’가 아니라 ‘야케’이며, 재지수장층의 경제적 기반이자 수장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야케는 재지수장이 대표하는 공동체의 중심이었으므로, 공동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야케를 중심으로 형성된 경제적인 집적은 재지수장 집단의 공유재산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³²⁾

쌍계제 및 공유재산인 ‘야케’라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고전적인 씨족 개념에 비해서 일본 고대 씨의 특징을 보다 잘 파악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고대의 경우 씨는 사회의 성원 모두를 조직한 것이 아니고, 시조로부터 분기되어 온 혈연적 거리가 계층 차이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원추형 클랜을 그대로 일본 사회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30) 鷺見等曜, 「平安時代の婚姻」, 『岐阜經濟大學論集』8-4, 1974.

31) 吉田孝, 「律令制と村落」, 『岩波講座日本歴史』1976. 「ウヂとイエ」, 『新編日本史研究入門』, 東京大學出版會, 1982.

32) 吉田孝, 앞의 책.

그 후 요시에 아키코(義江明子)는 쌍계제를 부정하고 양속성을 주장하였다.³³⁾ 또한 1987년에 키토오 키요아키(鬼頭清明)가 쌍계제를 비판하고 쌍방 친족집단설을 제기하였다.³⁴⁾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쌍계제 혹은 양속성으로 파악하려는 입장이 확산되었으며, 일본 고대의 경우, 친족의 원리가 ‘쌍계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명확한 족적(族的) 집단을 구성하는 지배층의 ‘우지’에 대해서도 부계출자집단이라고 보았던 종래의 견해와 달리, 여러 가지 국면에서 모측과의 연관이 강하는 점, 족장 지위의 계승에 있어서도 모계 계승이 종종 개재된다는 점, 어떤 개인이 복수의 집단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 집단의 구성원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용이하게 재편 통합 분할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요시에 아키코는 개인이 어떤 집단에 귀속되는 규칙이 출자이고, 이를 확인절차에는 단계(單系)와 비단계(非單系)가 있다고 하였다. 단계란 부계이든 모계이든 한 개인은 출생과 동시에 그 속하는 집단이 결정되며, 집단의 구성 범위도 극히 분명하지만, 비단계(쌍계)의 경우는 혈통이 부가와 모가의 양쪽을 통해서 추적될 수 있으며, 개인은 양가 집단의 잠재적인 성원 자격을 가지며, 집단에 대한 귀속은 어떤 조건(거주, 재산, 지위 등) 하에서 출생 후에 선택된다는 것이다. 즉 이른바 쌍계제는 출자 규칙으로 보면 선택출자이며, 이 경우에도 단계 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상으로부터 시작된 명확한 집단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없다고 하였다.³⁵⁾

이에 대해서 집단에 대한 귀속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를 상정하고, 부측과 모측 쌍방으로 연결된 관계 그 자체는 본래 자기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는 친족관계로서, 모든 사회에서 보편적인 관계인 부모자식 관계의 연쇄 중에서, 부측과 모측 어느 쪽에 대하여 치우치지 않는 사회의 특질을 파악하는 개념으로 ‘양속성’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성립된 쌍방적 친족관계는 그 성격상 세대가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내용으로 재편성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영속적인 집단 형성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중출자나 병행출자라는 원리가 있다고 하였다. 이중출자는 어떤 개인이 토지재산은 부계적으로, 분묘제사는 모계적으로 귀속되는 방식과 같이,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 따라서 각각 두 집단에 귀속될 수 있으며, 병행출자는 아버지로부터 남자로서, 어머니로부터 여자로서 귀속이 결정되는 방식이라고 하였다.³⁶⁾ 이중출자와 병

33) 義江明子, 『日本古代の氏の構造』, 吉川弘文館, 1986. 133쪽.

34) 鬼頭清明, 「歴史における家族と共同體」, 『現代を生きる歴史學』2, 1987.

35) 義江明子, 『日本古代の氏の構造』, 吉川弘文館, 1986.

행출자의 원리에 따르면, 개인은 사회생활의 서로 다른 국면에서 복수의 집단에 귀속되는 셈이다.

(5) 무계 친류설

한편 부계(父系) 의제적(擬制的)이고 비출계적(非出系的)이며 무계적(無系的)이며 또한 혈통상으로 미분화 상태의 친류(kindred)의 성격을 가진 것이 ‘우지’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³⁶⁾ 관문나는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출자·씨족 개념을 명확히 한 다음, 기존의 여러 견해를 종합적으로 비판하였다. 관문나가 제시한 출자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 1) 출자는 혈연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그 사회의 일정한 규정 즉 계적(lineally)으로 전달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용어이다.
- 2) 혈연집단의 구성원 자격의 범위라는 관점에서 보면, 즉 어떤 구성원은 혈연 전체가 아니고, 부계나 모계 어느 쪽의 집단에 속한다. 즉 부와 모는 다른 혈연계통의 집단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외혼제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출자란 공동체가 절대적으로 분화된 집단으로 이루어진 때 이외에는 의미가 없다. 혹은 충분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불확정적 집단이나, 서로 중복되는 집단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아니어야 한다).
- 3) 리버스는 가족 등 혈연집단의 구성원 자격(membership)과 집단 내의 공공권력(족장·가장 등의 지위)의 계승권 및 재산의 상속권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즉 리버스의 출자이론에 의하면, 출자집단의 구성원 자격은 조상의 혈통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자격을 가리키는 것이며, 혈연집단 내의 공공권력 즉 지위의 계승(succession)과 재산의 상속(inheritance)의 자격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출자집단은 그 경계가 명확하므로 구성원도 분명하므로, 집단의 구성원 자격을 기록한 계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출자는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계보적인 규준이며, 출자집단은 그러한 계보적인 규범에 입각한 배타적·폐쇄적 단체(corporation)이다. 계보를 찾아가는 것은 단계적이어야만 하고, 성원권에 대한 단계적인 계보 규준만 출자를 구성할 수 있다.

36) 吉田孝, 앞의 책.

37) 官文娜, 『日中親族構造の比較研究』, 思文閣出版, 2005. 8쪽.

이러한 출자에 대한 엄밀한 기준을 적용하면, 고대 일본에는 부계 단계, 모계 단계 혹은 쌍계의 clan은 존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대신 도입한 개념이 비단계 구조의 혈연집단인 ramage이다.

이는 R. Firth의 「폴리네시아의 출자집단에 대한 메모」를 중근천지(中根千枝)가 번역·소개한 것이다. 퍼스는 ramage를 단계의 lineage에 대한 비단계의 혈연집단을 나타내는 용어로 쓸 것을 제안하였다. ramage라고 부르는 혈연집단의 큰 특색은 외혼제가 없다는 점과 혈연집단의 성원 간의 비계보적 관계이다. 무릇 외혼이란 서로 다른 혈통집단에 속한 사람 사이의 혼인을 뜻한다.

출자를 기준으로 한 집합 형태를 출자 범주, 친류(kindred)라는 집합을 형성하는 관계 기준을 친족(kinship)이라고 부른다. 먼저 출자 기준은 조상을 중심으로 하여 그 조상의 혈통을 계통적으로 계승 전달하는 것을 가리킨다. 출자 집단에서는 외혼제가 행해지고 자식들은 부나 모 어느 쪽 집단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계보적인 기준의 출자 집단은 영속성 안정성을 가진다. 이에 대해서 친족 기준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아버지 쪽 혹은 어머니 쪽이라는 의미의 쪽 lateral 혈연(혈통이 아님) 관계자를 가리킨다. 이러한 쪽이라는 기준에 의해 집합된 친류의 구성원의 자격은 부모 양쪽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개인(자기)으로부터 친등(親等)을 인정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므로, 각 사람마다 시야가 다른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친류는 clan처럼 영속적 고정적 집단이 아니다. 출계 기준에 의하여 출계 집단이 만들어지는 것과 달리, 친족 기준에 의하여 친류가 만들어지는데, 이 친류란 고정적인 집단이 아니라 동거·이주·결혼 등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집단이다.

관계 기준 : descent <-> kinship,

집합 형태 : descent category <-> kindred

출계 집단은 시조를 중심으로 하는 시조의 혈통에 의하여 계통적인 관계 기준에 의하여 집합된 집단이다. 이에 대하여 친류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혈연(혈통이 아님) 관계로 lateral한 관계 기준에 의하여 형성되는 집단이다. 출계 집단은 부계출계 모계출계 이중출계 혹은 쌍계출계 등으로 나뉘고, 친족도 쌍방적인 사회에서 보이는 미분화된 카테고리로서의 친류와, 단계출자

체계를 가진 사회에서 보이는 내적으로 분화된 카테고리로서의 쌍방 친족으로 나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쌍계 출자집단과 쌍방 친족집단이 혼동하기 쉽다는 점이다. 쌍방친족집단은 단계출계 체계를 가진 사회에서 보인다. 단계출계 사회는 외혼제를 전제로 하므로, 쌍방친족집단도 외혼제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 단계출계 사회에서는 부와 모가 각각 다른 혈통의 출계 집단에 속한다. 자식은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쪽의 혈연조상의 혈통을 잇고, 다음 세대로 전달할 수 있다. 부계출계 집단과 모계출계 집단이 서로 외혼집단을 이루면, 그 조상으로부터의 혈통은 각각이 배타적으로 지배되는 두 단계출계 집단에 있어서 계승 전달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자신의 아버지 쪽 친족과 어머니 쪽 친족도 서로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2가지의 친족 집단에 속하므로, 쌍방친족집단은 그 사회에서 성립할 수 있다. 중국적인 친족제도는 부계단계출계를 기본으로 하는 쌍방친족집단이다. 그래서 아버지 쪽 친류를 혈족(congates), 어머니 쪽 친류를 인족(姻族, affines)라고 부른다. 또한 부방과 모방의 친족 호칭도 다르다. 이러한 친족제도는 중국뿐만 아니라, 트럭섬 거주민의 친족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쌍계출계 집단과 쌍방친계 집단은 혼인제 즉 외혼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인식이 일치하고 있다.

귀두청명(鬼頭清明)이 쌍방 친족집단(중국 한족의 친족 관념 및 기준)이라고 고대 일본의 친족제로 본 점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그가 그렇게 단정한 근본적인 원인은 혼인제가 어떻게 혈연집단의 구조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일본 고대사회에 있어서는 동부동모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같은 남녀 간 이외의 혼인에 대하여 전혀 금기가 없기 때문에 혈연집단의 혈통은 미분화 즉 공계, 무계의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계 집단이 형성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두청명이 말하는 쌍방친족집단의 성립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³⁸⁾

그는 족외혼을 행하는 단계 집단은 출계 집단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외혼 즉 족내혼이 행해지는 혈연 친족집단은 출자가 의의를 갖지 않으며, 그러므로 쌍방친족 집단일 수 없다고 하였다. 즉 부계 모계, 부방 모방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공계(共系) 무계(無系) 및 혈통상으로 미분화된 친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단계출계구조의 사회이든, 비단계 즉 공계 무계 및 혈통상의 미분화된 친류의 사회이든, 문제로 삼아야 할 것은 집단의 구성원

38) 관문나, 앞의 책, 60쪽.

자격과 그 자격의 인정양식이라고 보았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자격이, 단계 출계 집단이든 무계적 및 혈통상 미분화된 친류이든, 지위 및 재산의 계승·상속의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상속·계승되는 재산과 지위는 동일하지 않으며 재산은 분할할 수 있지만, 지위는 분할할 수 없고, 무엇을 분할할 수 있고, 무엇을 분할할 수 없는지, 또 집단 중에서 누가 상속할 수 있는가는 각 민족 및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재산은 일반적으로 혈연집단 내의 재산을 가리키므로, 그 상속은 혈연 및 친족원리에 기초하여 행해진다. 그러므로 상속·계승이라는 개념은, 단계 출계 집단 및 무계적 및 혈통상의 미분화된 친류에도 다 적용된다고 하였다.

무계적 및 혈통상 미분화 친류의 구성원 자격을 가진 개인은 부방 혹은 모방의 친족 또는 부와 모의 혈통을 혼동한 친류 내에서 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 예를 들어 전술한 지위의 계승과 재산의 상속 등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집단은 혈연 조상으로부터의 혈통에 의한 계통은 갖지 않는다. 따라서 혈통을 전달하거나, 밝힐 수 있는 계통이 없다. 따라서 또한 단계 출계 집단처럼 출계계보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혈연집단이 단계인지 무계인지 혈통상 미분화된 친류인지를 구별하는 중요한 판단근거라고 하였다. 이는 노명호가 지적한 고려시대나 조선 전기의 stock과 유사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다.³⁹⁾

결국 관문나는 우지 집단은 중국처럼 종족 구성원의 자격 및 혈연신분이 태생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그 신분을 바꿀 수 있었고, 신분 자체도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헤이안 시대의 경우 음위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혈통이나 세대 서열을 무시하고 친척을 양자로 취하는 관행이 유행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인류의 친족제도가 보편적으로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전환되었다고 생각한 때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인류학적인 조사가 진전되면서 기존의 설명체계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된 것이 쌍계제이다. 쌍계제는 부계제 혹은 모계제 어느 한쪽이 아닌 비단계(非單系)의 출계 원칙을 말한다. 다만 비단계의 원칙은 다시 출생 후에 부계와 모계 중에서 선택하는 선계(選系)와 부계·모계와의 관련성 전체를 지칭하는 공계(共系)를 들

39) 노명호, 앞의 논문.

수 있는데, 쌍계제가 그 중에 어느 쪽을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나뉘어 있다. 이는 출계(descent)를 배타적인 친족집단을 구성하는 요소로 볼 것인지, 공통의 조상을 가진 계보적인 연결만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자의 입장에서 서면 출계 집단의 존재 자체를 상정하지 않는 공계는 출계의 개념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명확한 출계집단이 존재하지 않는 쌍방적인 친족집단을 구성하는 사회만을 가리키면, 후자의 입장에 서면 공계도 쌍계제에 포함된다.

1970년대에 이르러 비로소 ‘모계제에서 부계제로’라는 엥겔스의 주박에서 풀려나서, 1) 명확한 혼인거주 규제의 부제 및 부측·모측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친족호칭, 중세 전기까지 지속된 남녀 구별없는 균분상속, 외척 및 여자친왕의 등장, 일부에서 확인되는 여계에 의한 정치적·사회적 지위의 계승 등을 근거로 하여, 고대 일본의 친족제도를 쌍계제 사회로 보는 학설이 등장하여 유력한 가설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출계 및 쌍계제 사회의 정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쌍계제를 부계·모계 쌍방의 출계집단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출계집단의 결여에 의한 현상으로 보는 설과 모계제에서 부계제로 전환되는 과도기가 장기화된 것으로 보는 설 등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하여 아에 특정 출계를 문제삼지 않았다고 하는 과격적인 견해도 나타났다. 관문나(官文娜)는 일본의 가(家, 이에)의 모태를 부계의제적·비출계적(비출자적)·무계적 및 혈통상으로는 미분화된 친류(kindred)⁴⁰⁾라고 보았다.⁴¹⁾

한편 시미즈 아키토시(清水昭俊)에 의하면, 인류학상의 출계(descent)라는 개념 자체가 결코 단일하지 않고, 현실적인 집단 구성의 구체적인 존재방식도, 또한 구성원의 집단에 대한 소속을 결정하는 규정의식도, 조상과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한, 출계라는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 청수는 전자를 사실상의 출계, 후자를 이데올로기적 출자 혹은 출자(출계) 이데올로기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출계 의식은 오히려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한다. 나아가서 시미즈는 부계적인 출계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회에 있어서도, 사실상 부계 친족 이외의 구성원을 적지 않게 포함하는 편이

40) 개인을 중심으로 한 근친의 범위를 뜻하며, 혈통을 따지는 출계율에 의거한 하나의 영속적인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 세대에서 남녀 양쪽으로 출계를 따지는 관습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41) 官文娜, 앞의 책.

오히려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이는 출계가 그 이외의 문화적 요소(가축 가옥의 소유, 조상제사 등)와 결합되어, 그것이 출계집단의 편성에 가소성을 부여하므로, 예를 전형적인 부계 출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분절구조를 취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아프리카 누아족의 경우에도, 혼인 자금으로서 가축의 거래를 문화적 매개로 하여, 계보상의 아버지의 위치에 죽은 사람 여자 친족이 아닌 덩카족조차 세운다고 한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적인 출계와 사실상의 출계 사이에는 적지 않은 괴리가 생기는 것이다. 생활집단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사실상의 출계를 문제삼는 것인데 대하여, 정치체제 차원에서 접근하면, 먼저 이데올로기적인 출계에 관심이 쏠리므로, 그것이 양자 사이에 평가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처럼 최근의 인류학에서는 한 사회에 복수의 서로 다른 출계 형식이 병존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시미즈는 어떤 사회의 친족 현상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난폭한 작업이며, 출계 개념은 친족 출계 집단 등, 개별적인 대상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일본 고대의 고계보에 대해서도, 미조구찌가 봉사 형식이라고 명명한 계보형식을 가진 형식으로, 출자 씨성 직장의 기원, 왕권에 대한 봉사 기원과 내력을 기록한 계보(『粟鹿大明神元記』와 『因幡國伊福部臣古志』, 『新撰姓氏錄』 등)와, 최근 요시에가 취생(聚生) 형식의 양속 계보(兩屬系譜)라고 명명한 형식과 같이 쌍방으로 확대되는 계보 관계를 기록한 것(『千壽國繡帳銘』, 『上宮記』 逸文의 계체 관계 기사 계보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유형이 있는데, 이러한 유형 자체도 앞에서 제시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시에는 우지의 출계 형식을 논의할 때 중요한 것은, 지배층의 친족조직인 동시에, 특정 직장의 계승을 기축으로 하여 편성된 왕권의 정치조직이기도 한 우지 집단의 특질을 전체로서, 또한 근거에서 규정하는 출계 형식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문제삼아야 한다고 보았다. 즉 계보의 유형으로 말하자면, 봉사의 형식인 계보에는 우지의 시조 및 씨성 직장의 기원 등, 우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을 기록한 것에 대하여, 후자는 요시에가 “어디까지나 하나의 집단 구성이 아니고 개인의 귀속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 것처럼, 일정한 정치적인 변용을 거치기는 하였지만, 기본적으로는 쌍방적인 친족 관계(kindred) 속에서 특정한 개인의 계보적인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또한 해당 우지집단의 성격 규정에 필수적인 사항

은 기재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전자야말로 우지의 출계 형식을 규정하는 계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후자는 고계보의 중요한 유형의 하나임은 분명하지만, 씨족 계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우지 출계 형식의 논의에서 제외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양식의 계보야말로 우지의 정치적 측면과 생활상의 측면을 보여주며, 그것은 각각 다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⁴²⁾

이처럼 고대 일본의 ‘우지’의 개념은 그 실체를 쉽게 규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지’를 친족조직의 성격과 정치조직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 사용되는가에 따라서 그 함의도 달라진다. 현 단계에서는 ‘우지’의 성격을 어느 쪽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ramage나 stock과 같이 양속적인 성격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는 친족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4. 도래인의 개사성

(1) 시대적 배경

일반적으로 천무천황의 8색성 개성 이전의 공(公)·신(臣)·연(連) 등의 성은 씨의 출자 신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성은 처음에는 존칭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지위의 상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점차 상하존비의 관념이 명확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은 특정 씨족의 선조의 출신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설령 그것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넘쳐나는 각 씨족의 시조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씨족이 가진 성의 종류와 조상의 출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⁴³⁾

그런데 『일본서기』에서 천무 10년 이후에 확인되는 개성의 사례를 보면, 아래의 자료와 같이 원래의 성은 조(造), 직(直), 무성(無姓) 등 여러 가지인데 새롭게 모두 연(連)이라는 성을 사여하였다. 이는 출자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원래 출자 및 직장과 연동되어 있던 성으로부터 씨족의 상하차별을 나타내는 작위와 같은 성격으로 변화였다.

42) 義江明子, 앞의 책.

43) 阿部武彦, 「氏族制度の崩壊と氏族の物語」, 『日本古代の氏族と祭祀』, 220쪽.

천무천황 13년에 조신(朝臣)이라는 성을 받은 물부(物部) 계의 우지 집단은 종래의 물부씨 일족 전체가 아니다. 어떤 집단은 연(連)이고 어떤 집단은 신(臣)이다. 따라서 『신찬성씨록』에 보이는 것처럼, 동일한 씨족으로 묶을 수 있는 개별 집단이 실로 다양한 성을 칭하는 것도, 씨성이 작은 범위의 우지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특수한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조정 내에서 받을 수 있는 관위가 높을수록 더 심화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5위 정도의 씨족은 결집해서 그 세력을 확대할 수 있었지만, 반대로 최고 관위에 오를 수 있는 씨족의 경우는 그 구성원이 많을수록 씨족 내부의 투쟁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천무천황 대에 200씨 이상의 개성이 이루어진 다음 지통(持統) 문무(文武) 원명(原明) 원정(元正) 대에는 이전의 사성에 대한 추가 개사성으로 보이는 사성이 이루어졌으며, 그 사성의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런데 성무(聖武) 천황 대에는 62건, 효겸(孝謙) 천황대에 41건, 순인(淳仁) 천황대에 66건, 칭덕(稱德) 천황대에 127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처럼 성무천황을 경계로 하여 개사성 건수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도래인에게 기촌(忌寸)이나 연(連) 등의 성을 주고 있다. 특히 연(連)의 경우는 대부분 도래인이다. 또한 무성(無姓)인 사람에게 새롭게 숙네(宿禰)와 같은 높은 성을 내리는 경우도 주목을 끈다. 이는 씨성의 질서가 문란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된다.⁴⁴⁾

한편 씨족의 분화도 개사성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고대 일본의 복성은 예를 들어 아담산배련(阿曇山背連), 아배구노조신(阿倍久努朝臣)과 같이, 원래의 씨족에서 새로운 이름을 가진 씨족으로 분열되어 가는 경향을 보인다. 같은 인물이 복성(複姓)으로 기록된 경우와 단성(單姓)으로 기록된 경우 함께 기록되는 경향이 대화개신 전후 시기에 확인된다.

	原姓	천무	지통	문무	원명	원정	성무	효겸	순인	칭덕
眞人	公	13								
	王						2	16	3	
	連									1
朝臣	君	10					1			1
	臣	40				4			1	10
	連	2				3	1		1	4

44) 阿部武彦, 앞의 책, 224쪽.

	無姓							4		4
	宿禰							1	1	1
	王							1		
	直							1		
	比等									2
	公									5
宿禰	臣	1								2
	連	49		1		2	3	2	4	12
	無姓						2	2	1	1
	王						1			
	忌寸						1			
	史							1		
	公									3
	比等									1
	直									3
	縣主									2
	造									1
忌寸	連	10								
	直	1					1			
	造		1							
	無姓					3	3	1	1	4
	村主									2
	比等									1
	畫師									1
連	村主	2		1	1					2
	造	(41)		1	2		2	1		5
	直	(14)		1	1		1		3	
	首	(5)					1			1
	無姓	(4)		2	6	1	31	5	21	27
	吉師	(3)								
	史	(3)				2		1	4	
	縣主	(3)								
	手人					1	1			
	藥師							1		
	畫師								1	
	宿禰									1
臣	無姓			2			1			11

	造							1		
	鐵師									1
	直									1
	比等									1
君(公)	造			1						
	無姓			1	1	3	3	1	1	10
	首					1				
	縣造						1			
	史							1		
	連									1
	村主									3
	直									1
造	無姓			1			1		21	1
	史								2	
	首								1	
直	手人					1				
	無姓						3			
	史							1		

8~9세기에 들면, 동족동성의 원리에 따른 종래의 씨성제도에 근거하여, 출자를 부회하거나 거짓으로 지어내어 사회적으로 신분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성을 획득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이때 출자를 가탁하려고 하는 즉 새롭게 동족이 되려고 하는 씨의 장자(長者)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형식적으로는 관이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계보와 대조하여 일치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본종 씨의 장자가 예로부터 분명한 동족이었다고 밝히면, 그 본종 씨가 유력할수록, 씨성 가탁을 달성할 수 있었다.⁴⁵⁾

실질적으로 9세기 중엽 문덕천황(文德天皇) 때, 신성(臣姓) 2씨, 련(連) 2씨, 숙네(宿禰) 5씨, 왕(王) 5씨, 직(直) 5씨, 공(公) 5씨, 수(首)·기촌(忌寸) 2씨, 조(造) 4씨, 진인(眞人) 1씨, 심지어 무성(無姓) 4씨가 모두 조신(朝臣)으로 개성되었다.⁴⁶⁾

특히 효경천황대에 고구려계인 초나왕복신(肖那王福信)이 고려조신(高麗朝臣), 백제계인 여익인(余益人)과 여동인(余東人) 등 6인이 백제조신(百濟朝

45) 溝口睦子, 『古代氏族の系譜』, 吉川弘文館, 1987. 34쪽.

46) 阿部武彦, 「氏族制度の崩壊と氏族の物語」, 『日本古代の氏族と祭祀』, 吉川弘文館, 1984.

臣), 역시 도래인계인 산전사(山田史)가 산전어정숙네(山田御井宿禰)라는 성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신찬성씨록』 서문에서도 “승보(勝寶) 연간에 특히 은혜로운 명령이 있어서 제번(출신)에게 원하는 대로 (새로운 성을) 내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래서 전성과 후성이 문자가 같아지니, 번속(蕃俗)과 화속(和俗)의 씨족이 서로 의심하였다.”고 하였다.⁴⁷⁾ 한편 『유취삼대격』 17, 연력(延曆) 17년 2월 8일자 격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근년에 개명하는 자가 많은데, 그 피하는 바가 다양하다. 어떤 자는 과역을 피하여 불과(不課)가 되고, 어떤 자는 음위의 대상이 아닌데, 음위가 있는 데로 붙는다. 이와 같은 무리들의 간사함이 번다하다.⁴⁸⁾

이처럼 임신의 난이라는 고대 일본 최대의 전란을 거치면서, 기존의 씨성제가 크게 동요하게 되었다. 특히 대해인(大海人) 황자(후의 천무)를 도운 지방 호족들이 중앙 호족들에 버금가는 ‘카바네’를 받기에 이르렀다. 또한 환무(桓武) 천황의 즉위로 도래계 우지 집단들이 조신(朝臣)이라는 성을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대표적으로 환무천황의 모후인 신립(新笠)에게 고야조신(高野朝臣), 그 일족에게 화조신(和朝臣)이라는 성을 부여되었다. 환무 대에 도래계 우지 집단에 많은 사성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상황이 『신찬성씨록』이 편찬되는 단계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2) 개사성의 실태

『속일본기』 이후의 사서에는 개사성에 관한 기사가 빈번하게 보인다. 그 중에서도 도래계라고 할 수 있는 ‘우지’의 개사성의 사례를 살펴보자.

승화 원년에는 진련(津連)의 별성인 중과숙네직문(中科宿禰直門)·계문(繼門)이 관야조신(冠野朝臣)이라는 성을 받았고, 승화 3년에는 고구려인의 후예임을 주장하는 고잠숙네정계(高岑宿禰貞繼)가 고잠조신(高岑朝臣), 승화 6년에는 내장숙네영자(內藏宿禰影子), 고수(高守), 정문기촌제족(井門忌寸諸足), 산구기촌영사(山口忌寸永嗣), 대장숙네웅계(大藏宿禰雄繼), 대장기촌계영(大藏

47) 『新撰姓氏錄』 서문.

48) 『類聚三代格』 17. 頃年改名者衆, 其計多端. 或避見課而入不課, 或除無蔭而附有蔭. 如此輩類, 其奸繁多.

忌寸繼永), 회원숙네충통(檜原宿禰聰通)이 후한 영제의 묘예로 칭하면서 내장조신(內藏朝臣)이라는 성을 받았다. 이 경우에도 내장·대장을 관칭한 씨족들이 동일한 성을 받고 있다.

한편 천무천황의 8색 개성은 소씨족 범위까지 적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8색 개성 때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후에 조신을 칭하는 자가 있고, 모두 각각 조신이라는 성을 받은 52씨족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때의 성은 일정 범위의 씨족에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그 범위가 줄어들어, 나라시대에는 새롭게 개사성이 행해진 경우, 소가족에게 주어진 것이 통례로 생각된다. 또한 광인(光仁) 천황 때는 1대에 한해서 성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보귀 2년 5월 무자에 외종5위하 시원승을매녀(柴原勝乙妹女), 훈10등 시원승정정(柴原勝淨定) 두 사람에게 숙네라는 성을 주었는데, 이 성은 당사자에게만 한정된 것이었다.⁴⁹⁾

이처럼 고대 일본 씨성제의 본질과 관련되는 문제로 주목해야 할 것은 씨성에 대한 개성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개성의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는가이다. 이는 특정한 씨성을 칭하는 집단이 어떤 규모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개사성은 1인, 2인, 3인과 같이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 특정 씨성 전체에 미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특정 씨성 전체에 미치는 경우는 지방이거나 도래인이다.

그와 달리 중앙 씨족 특히 고위 관위에 오를 수 있는 씨족인 경우에는 개사성의 범위가 극히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문무 2년 8월 병신에 등원조신이라는 성은 겐족의 아들 불비등에게만 계승되며,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다고 명기하였다. 천평보자 2년에 등원조신중마려를 등원헤미조신압승이라고 고쳤는데, 이때 등원헤미조신을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압승의 자식들뿐이었다. 『속일본기』에서 등원헤미를 칭하고 있는 것은 압승의 아들 진광(眞光), 구수마려(久須麻呂), 조수(朝狩), 소인마(小引麿), 살웅(薩雄), 아중(兒從, 이상天平寶字 2년 6월 경술조), 신가지(辛加知), 동인(東人), 액(額, 천평보자 5년 정월), 집도(執棹, 천평보자 7년 정월)이었고, 다른 등원씨는 헤미씨로 개성한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중신청마려(中臣清麻呂)가 신호경은 3년에 대중신씨로 개성하였을 때, 역시 대중신씨를 칭할 수 있는 것은, 숙내마려(宿奈麻呂)·계마(繼麿)·자로(子老)·제어(諸魚)·금마(今麿) 등 청마려의 자손에 한정되었다. 나라시대 전체로 보아도 개사성은 소가족의 호주를 대상으로 이

49) 阿部武彦, 앞의 책, 239쪽.

루어지고 그 호구들만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가 3/4이다.⁵⁰⁾

이와 표리를 이루는 현상이 우지의 결속력이다. 즉 사회조직의 단위인 우지도 결코 강고한 씨족 조직의 상태가 아니었다. 소아씨가 중앙에서 세력을 얻고 있을 때 그 씨족 속에서도 소아마자와 소아만리세는 숙부와 조카 사이에도 다투었고, 소아석천마려와 소아입록은 종형제 간이었었고, 소아석천마려와 소아일향은 이모형제 사이였으나 서로 다투고 있다.

요컨대 각 씨의 대표자가 개성을 보증하거나 개성 청원자가 직접 개성을 청원하며 개성을 주장할 때 동족, 동조 관계와 천황가에게 대한 봉사 연원이 같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고대 일본의 우지·카바네가 지닌 의미가 나라시대에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⁵¹⁾

개사성의 범위가 적게는 1명 혹은 몇 사람, 혹은 1대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 자체가 씨성이라는 것이 혈연적인 원리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부계제라면 최소한 동거하는 혈족 모두가 새로운 성을 쓰게 될 것이다. 부계제 자체가 혈연적인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1명 혹은 몇 명에게만 새로운 씨성을 부여하게 되면서, 동거하는 혈족 간에도 다른 씨성을 사용하게 된다.

나아가서 제한된 사람에게만 개사성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씨성이 정치적인 표지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씨성의 특권이 클수록 그 수는 제한되고 반대로 씨성의 의무가 클수록 넓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개사성의 가장 특이한 예는 환무천황의 모후인 화사신립을 들 수 있다. 원래 화사라는 씨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녀는 환무천황의 생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사성이 이루어졌다.⁵²⁾ 그런데 고야조신이라는 성은 오직 신립과 그녀의 아버지인 을계(乙繼)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⁵³⁾ 신립의 다른 일족들은

50) 阿部武彦, 앞의 책, 60~61쪽.

51) 서보경, 「동조 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왕인 왕진에게 씨족」, 『한일관계사연구』53, 한일관계사학회, 2016. 73~79쪽.

52) 『續日本紀』延暦九年 正月壬子 (延暦八年 十二月附載) 壬午 葬於大枝山陵 皇太后姓和氏 諱新笠, 贈正一位乙繼之女也, 母贈正一位大枝朝臣眞妹. 后先出自百濟武寧王之子純陀太子, 皇后容德淑茂, 夙著聲譽. 天宗高紹天皇龍潛之日, 娉而納焉, 生今上·早良親王·能登內親王. 寶龜年中, 改姓爲高野朝臣. 今上即位, 尊爲皇太夫人. 九年追上尊號, 曰皇太后. 其百濟遠祖都慕王者, 河伯之女感日精而所生, 皇太后即其後也. 因以奉諡焉.

53) 『續日本紀』延暦 十二月壬辰朔. 詔曰, 春秋之義, 祖以子貴. 此則禮經之垂典, 帝王之恒範. 朕君臨宇內, 十年於茲, 追尊之道, 猶有闕如. 興言念之, 深以懼焉. 宜朕外祖父高野朝臣, 外祖母土師宿禰, 並追贈正一位, 其改土師氏爲大枝朝臣. 夫先秩九族, 事彰常典, 自近及遠, 義存曩籍. 亦宜菅原眞仲·土師菅麻呂等同爲大枝朝臣矣.

그 누구도 고야조신이라는 성을 쓸 수 없었다.⁵⁴⁾ 대신 그 일족에게는 화조신이라는 씨성이 부여되었다. 을계의 아들과 국수(國守)에게는 783년(연력 2년)에 조신이라는 성을 내려 화조신(和朝臣)이라는 새로운 성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길전련과 같이 『신찬성씨록』 단계에서 황벌 ‘우지’임을 주장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도래계 ‘우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서기』나 『속일본기』의 출자에 대한 기록과 대조하면서, 그 출신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전변사(田邊史)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변사의 시조 격인 전변백손(田邊伯孫)은 도래계 씨족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하내(河內) 비조호군(飛鳥戶郡)에 거주하고 있었고, 또한 그가 사위의 집을 방문하러 간 일과 연관된 설화가 있다. 고대 일본의 경우 방처혼 혹은 처측 거주였던 것과 달리, 전변백손은 시집간 딸이 사위의 집에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혼거(婚居) 자체도 도래계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찬성씨록』에서 전변사가 우경 황벌로 되어 있지만, 제번(諸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진야신(眞野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진야신은 효소천황의 아들인 천족연국압인(天足彦國押人命)의 후손이라고 하여 황벌로 되어 있다.⁵⁵⁾ 그러나 같은 이름을 가진 진야조(眞野造)는 우경 제번으로 분류되어 있다.⁵⁶⁾ 진야신 역시 진야조와 마찬가지로 도래계 씨족일 것이다.⁵⁷⁾

또한 진야수제자(眞野首弟子)는 백제에서 건너온 미마지(味摩之)로부터 기악무를 배우기 위하여, 대시(大市)로 거처를 옮겼기 때문에 대시수(大市首)로 씨성을 바꾸었다. 이러한 사례 역시 ‘우지’의 명칭을 쉽게 바뀔 수 있었다는

54) 그러나 和乙系가 생존시에 高野朝臣이라는 성을 받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연력 9년조에 보이는 것처럼 고야신립의 崩傳에 황태후의 성이 화씨이고 증정1위 을계의 딸이라고만 하였고, 또한 고야조신이라는 성을 받았다고 한 내용에도 화을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환무천황이 자신의 외조부 고야조신이라고 하였지만, 이는 생모인 신립의 씨성을 외조부에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외조부에 대한 존칭으로 말한 것이지 실태를 반영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볼 수 있다.

55) 『新撰姓氏錄』 右京皇別. 天足彦國押人命三世孫彦國菴命之後也. 男大口納命, 男難波宿祢, 男大矢田宿祢. 從氣長足姬皇尊[諡神功]. 征伐新羅. 凱旋之日. 便留爲鎮守將軍. 于時娶彼國王猶榻之女, 生二男. 二男兄佐久命, 次武義命. 佐久命九世孫和珥部臣鳥. 努大肆忍勝等, 居住近江國志賀郡眞野村. 庚寅年負眞野臣姓也.

56) 『新撰姓氏錄』 右京諸蕃. 出自百濟國肖古王也.

57) 서보경, 「『新撰姓氏錄』에 기재된 鎮守將軍 후에 씨족의 出自改變」, 『일본연구』57, 2013, 51~56쪽.

사실을 잘 보여준다. 즉 거주지가 바뀔에 따라 ‘우지’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은 ‘우지’가 반드시 혈연적인 관계에 구속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대시수와 벽전수(辟田首)는 『신찬성씨록』에서는 가야계 도래씨족으로 보인다.⁵⁸⁾ 이처럼 거주지의 이전 등에 기인하는 ‘우지’의 변화를 추적하여 원래 어떤 계통의 ‘우지’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도래계 씨족을 찾는 데 유용하다.

아울러 이와 반대로 해당 ‘우지’의 출신 배경 및 속성을 나타내는 ‘카바네’를 통해서, 한반도 도래계 씨족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승(勝, 스구리)라는 ‘카바네’는 압도적으로 한반도계 도래인이 많이 갖고 있다. 『신찬성씨록』에는 차전승(茨田勝)⁵⁹⁾, 내계승(奈癸勝)⁶⁰⁾, 상승(上勝)⁶¹⁾, 불파승(不破勝)⁶²⁾, 백제승(百濟勝)⁶³⁾, 차전승(茨田勝)⁶⁴⁾, 진승(秦勝)⁶⁵⁾, 목승(木勝)⁶⁶⁾이 보이는데, 그 중 상승, 불파승, 백제승이 백제 계통이고, 목승도 백제계로 보인다.⁶⁷⁾ 진승을 신라계로 본다면, 차전승과 내계승이 남게 되는데, 차전승은 각각 황벌과 제번으로 되어 있다. 오국왕(吳國王) 손호(孫皓)의 후손이라고 한 차전승의 경우, 그 시조의 이름이 의부가모지군(意富加牟柁君)으로 중국 계통 사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스구리’라는 ‘카바네’는 촌주(村主)라고도 표기한다.⁶⁸⁾ 촌주는 고구려·백제 계통의 도래인을 비롯하여 중국의 한(漢)·위(魏) 계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승(승)으로 표기하든 촌주(村主)로 표기하든, ‘스구리’라는 용어 자체가 한반도에서 유래된 용어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 계통의 도래인이 굳이 한반도 계열의 ‘스구리’라는 ‘카바네’를 쓸 이유는 충분하지 않다. 예를 상원사(桑原史)의 경우 상원촌주(桑原村主)와 동조(同祖) 관계이고, 고

58) 『新撰姓氏錄』大和國 諸蕃. 辟田首, 出自任那国主都奴加阿羅志等也.

59) 『新撰姓氏錄』山城國 皇別. 茨田勝, 景行天皇皇子, 息長彥人大兄瑞城命之後也.

60) 『新撰姓氏錄』山城國 神別. 奈癸勝, 佐爲宿禰同祖.

61) 『新撰姓氏錄』右京 諸蕃. 上勝, 百濟國人多利須須之後也.

62) 『新撰姓氏錄』右京 諸蕃. 不破勝, 百濟國人淳武止等之後也.

63) 『新撰姓氏錄』山城國 諸蕃. 勝, 上勝同祖. 百濟國人多利須須之後也.

64) 『新撰姓氏錄』河內國 諸蕃. 茨田勝, 吳國王孫皓之後意富加牟柁君之後也. 大鷦鷯天皇[諡仁德.]御世, 賜居地於茨田邑, 因爲茨田勝.

65) 『新撰姓氏錄』和泉國 諸蕃. 秦勝, 秦忌寸同祖.

66) 『新撰姓氏錄』山城國 雜姓. 木勝, 津留木之後也.

67) 木勝의 시조인 津流木은 백제 계통의 末使主·木曰佐의 시조인 津流牙와 동일인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68) 秦氏의 관할 하에 있는 집단은 勝, 동한씨 계열의 집단에는 촌주를 쓰는 경향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일본서기』雄略 15년 진주공이 180종의 勝을 이끌고, 비단을 바쳐 조정에 쌓았다는 기사가 보인다.

구려 사람 만덕사주(萬德使主)의 후예라고 하였다.⁶⁹⁾ 그런데 동일한 만덕사주의 후예인 좌경제번(左京諸蕃)의 상원촌주는 만덕사주가 한 고조(高祖)의 7세손이라고 하였다.⁷⁰⁾ 이처럼 동일한 만덕사주가 고구려인으로도 보이고, 한 고조의 후손으로도 보인다. 다시 한 고조의 7세손으로 만득사주(萬得使主)가 보이는데, 그를 시조로 하는 씨성 역시 상원직(桑原直)이고 상원촌주와 동조라고 하였으므로, 만덕사주와 만득사주가 동일 인물임을 알 수 있다.⁷¹⁾ 이들은 원래 고구려인 만덕(만득)을 시조로 하는 집단이었으나, 한반도보다 중국 왕조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유리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한 고조의 계보를 가상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신찬성씨록』의 출자 전승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우며, 자신들의 직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출자를 개변하거나 계보를 가상하는 방식으로 출신 지역 자체를 바꾼 경우가 빈번하였을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상승(上勝)과 승(勝)은 백제인 다리수수(多利須須)의 후손이라고 하였고, 백제 계통의 도래 씨성으로 분류되어 있다.⁷²⁾ 그런데 공조(工造)와 축부(祝部)는 오국인 전리수수(田利須須)로부터 나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전(田)을 일본에서는 ‘타’로 읽으므로, 다리수수와 동일한 인물이다. 우경제번의 공조는 오국인 태리수수(太利須須)의 후손이라고 한 점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⁷³⁾

이처럼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출자를 전혀 다르게 주장한 경우도 확인된다. 좌경황별(左京皇別)의 상모야조신(上毛野朝臣)은 하모야조신(下毛野朝臣)과 동조 관계이며, 송신천황(崇神天皇)의 아들 풍성입언명(豐城入彦命)의 5세손인 다기파세군(多奇波世君)의 후예라고 하였다. 이어서 노하군(努賀君)의 백존(百尊)이 출산하는 딸을 위하여 사위집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을 탄 사람을 만나 서로 말을 바꾸었는데, 다음날 보니까 흙으로 만든 말이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⁷⁴⁾ 이 이야기는 우경제번(右京諸蕃)의 전변사(田邊史) 조에도 실려 있는데, 전변사는 한왕(漢王)의 후손 지총(知攄)에서 나왔

69) 『新撰姓氏錄』攝津國 諸蕃. 桑原史, 桑原村主同祖. 高麗國人萬德使主之後也.

70) 『新撰姓氏錄』左京 諸蕃. 桑原村主, 漢高祖七世孫萬德使主之後也.

71) 『新撰姓氏錄』大和國 諸蕃. 桑原直, 桑原村主同祖. 漢高祖七世孫萬得使主之後也.

72) 『新撰姓氏錄』右京 諸蕃. 上勝, 百濟國人多利須須之後也.

73) 『新撰姓氏錄』右京 諸蕃. 工造, 吳國人太利須須之後也.

74) 『新撰姓氏錄』左京 皇別. 上毛野朝臣. 下毛野朝臣同祖. 豐城入彦命五世孫多奇波世君之後也. 大泊瀨幼武天皇[諡雄略.]御世, 努賀君男百尊, 爲阿女產向聲家犯夜而歸. 於應神天皇御陵邊, 逢騎馬人, 相共話語, 換馬而別. 明日, 看所換馬, 是土馬也. 因負姓陵邊君. 百尊男德尊, 孫斯羅. 諡皇極御世, 賜河內山下田, 以解文書, 爲田邊史. 寶字稱德孝謙皇帝天平勝寶二年, 改賜上毛野公. 今上弘仁元年, 改賜朝臣姓. 續日本紀合.

다고 하였다.⁷⁵⁾ 즉 동일한 인물을 조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황별과 제번으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다.

이밖에도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게 출자를 주장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약강조(若江造)는 후한 영제(靈帝)의 후예인 나솔(奈率) 장안력(張安力)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후한 황실의 성은 유(劉)이므로 장(張)이라는 성을 가진 사람이 그 후손일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제 혈연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의제적인 관계를 주장할 수 있었던 고대 일본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다.

(3) 개사성의 원리

길전련과 대춘일조신과의 동족 의식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두 씨족이 모두 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씨의 개념에는 시조 이래로 특정한 직능·직장으로 대왕(천황)에게 봉사한다는 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씨족의 시조는 특별한 상황에서 군주를 보필·보좌하였다는 전승과 맞물려 있다. 따라서 동일하게 의술로 천황에게 봉사하는 씨족 간에는 동족 의식을 공유할 소지가 있다. 이는 혈연적인 관계 못지않게 동일한 직능이 씨족이 의제적으로 결합하는 단서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동일한 직능을 수행하는 씨족들 간에 실질적인 혈연 관계 없이 광범위하게 의제적 동족 관계를 형성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의제적 동족 관계는 조정 내에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길전련과 대춘일조신은 의술이라는 직능을 중심으로 동족 관계를 형성하면, 상호협력을 통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굳힐 수 있고, 한편으로 불필요한 경쟁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대춘일조신 씨가 길전련씨를 포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술의 측면에서 길전련씨가 우위에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승화(承和) 6년(839)에는 내장숙네영자(內藏宿禰影子) 등이 조신이라는 성을 받을 때 대장숙네웅계(大藏宿禰雄繼) 등도 함께 조신이라는 성을 갖게 되었는데, 이 경우도 내장·대장이라는 유사한 직장(職掌)을 가진 우지 집단이 함께 사성되었다. 동일한 직장 혹은 유사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사

75) 『新撰姓氏錄』右京 諸蕃 田邊史. 出自漢王之後知摠也. 大泊瀨幼武天皇[諡雄略.]御世, 努賀君男百尊, 爲聞女産兒往賀賀家, 犯夜而歸. 於應神天皇御陵邊, 騎馬人, 相共語話, 換馬而別. 明日, 看所換馬, 是土馬也. 因負姓陵邊君百尊. 男德尊, 孫斯羅. 諡皇極御世, 賜河內山下田, 以解文書爲田邊史.

성의 주요한 근거가 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지’와 ‘카바네’의 정치집단적인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찬성씨록』의 씨성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부계 단계 출계의 개념에 입각한 것이 아니고 대단히 유동적이다. 따라서 설령 특정 씨족이 황벌 혹은 신별로 되어 있거나, 진·한 계통이라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사료의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가장 이른 시기의 출자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진씨와 한씨처럼 실로 많은 씨족이 군집된 형태의 씨족의 경우, 실질적인 혈연관계가 아니라, 동일한 직능을 중심으로 결집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집을 통해서 특정 직능에 대하여 배타적인 지위를 확보할 수 있고, 직능 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상호보완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특정 직능을 독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혈족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 이유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씨성을 받을 때 그 범위가 1인, 2인, 몇 명 혹은 당사자 1대에 한정하는 등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만약 혈족을 씨로 인정한다면, 특정한 사람에게 심지어 한 세대에 한해서 씨성을 내린다는 발상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씨성을 수여하는 주체가 천황이고, 씨성에 관해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대 일본의 씨성이 혈족이라면, 씨성은 혈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천황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중국이나 한반도에서도 큰 공로를 세운 경우에 새로운 성을 하사하여 그 공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 후손들이 새로운 성을 대대로 계승해 가는 것이지, 한 사람 혹은 한 세대에 국한하여 성을 내리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셋째, 개성을 요청하는 이유 중에서 처음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랐으나, 다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겠다고 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즉 경우에 따라서 모계를 따를 수도 있고, 다시 부계를 따르는 경우도 허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개사성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지’와 관련된 몇 가지 특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일본 고대의 ‘우지’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끄는 점은 일찍부터 확인되는 계보관념이다. 도하산철검명문에는 상조 오호히코로부터 요와케오미에 이르는 8대에 걸친 일계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씨(氏名, 氏姓)가 보이지 않는다. 씨가 집단으로 형성되는 맹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씨는 강고한 계보관념을 단서로 이른바 계보 선행형의 집단형성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에서는 대대로 장도인(杖刀人)의 우두머리(首)로서 봉사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내가 봉사한 근원을 기록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서 씨는 대왕에 봉사하는 직무의 세습을 축으로 결집한 집단이며, 계보관념에 있어서도 대왕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강도 높은 구심성과 전승을 공유하는 정치적 세계 내의 횡적인 연계를 아울러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의 일반적인 계보 형태라고 보기 어렵다. 7세기 후반 이전에는 전혀 원리를 달리하는, 복수의 조상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으로 수렴하는 계보가 있었다. 계체 천황에 대한 『상궁기』의 계보가 그런 예이다. 일계 계보와 양속 계보가 병존하고 있었던 셈이다.

전자는 족장위의 계승을 보여줄 뿐이고 횡적인 확장이 보이지 않는다. 시조와 자신을 직결시키는 계보관념에 근거하고 있으며, 봉사근원(奉事根源)이라는 문구가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양속 계보는 위로 확산되는 친족관계를 내포하며, 부모자식 관계의 연쇄에 의한 계보관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누구와 혼인하여 자식을 낳았다(娶~生兒)는 표현방식이 나타난다. 전자는 개개 집단의 성격을 보여주며, 그 영속성을 나타내는 데 대하여, 후자는 자기가 쌍방적인 친족관계에 의하여 복수의 집단에 귀속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하여 집단 상호 간의 유기적 결합을 강화한다. 그런 점에서 후자는 양속 계보라고 부를 수 있다.

우지는 아직 이 단계에서는 출자집단이 아니며, 개인의 출자는 일계 계보와 양속 계보에 의해서 표시될 수 있는 것이었다. 어떤 개인이 동시에 복수의 집단에 귀속된다고 한다면, 그 집단의 범위는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다. 무릇 강고한 집단 형성 자체가 곤란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지는 족장을 통한 대왕에 대한 봉사를 축으로, 비교적 이른 단계부터 명확한 집단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집단으로서 우지를 지탱한 것은 강한 일계성만 아니다.

쌍방적인 친족관계가 단지 관계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복수의 조상에서 시작하여 자신으로 수렴되는 계보(양속계보)로서, 즉 출자에 관한 개념으로 명확하게 되었다는 점이 일본 고대의 우지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우지는 쌍방적인 친족관계가 집단형성의 원리 그 자체로서 고도로 활용된

조직이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특색을 가지며, 고도의 일계성은 그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었다. 우지의 이러한 특질을 쌍방적 친족관계와도, 지위계승에 관한 일계성과도 구별되는, 다름 아닌 귀속에 관한 특질이라는 의미에서, 양속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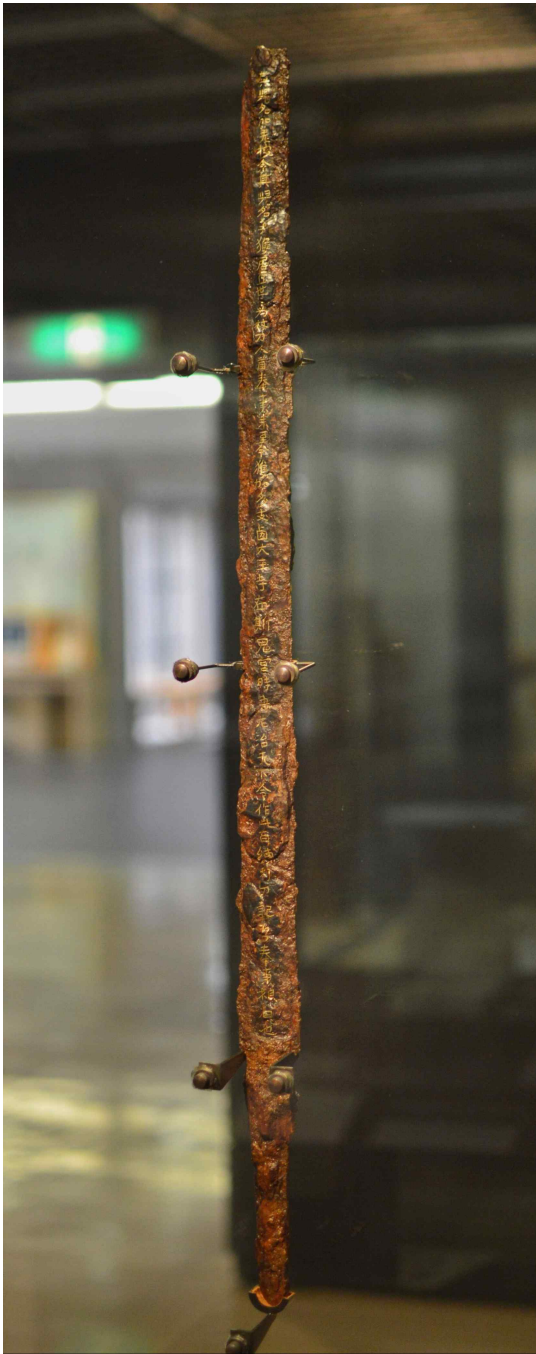
일계성과 양속성을 양 바퀴로 하여, 공동체 수장층은 지배자 집단으로서의 결집을 조속하게 달성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계보는 실제의 혈연 관계를 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혈연관계를 뒤섞은 정치관계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계보 관념 때문에 공동의 시조를 설정함으로써 쉽게 ‘우지’ 집단을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립된 씨 집단은 점차 본거지의 지명이나 지배기구 내의 직무명 등을 따서 집단의 명칭으로 삼게 된다. 어떤 집단에 대한 개인의 귀속은 사회적으로는 그 집단명의 사용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양속성 원리 하에서는 어떤 개인의 사회적 존재는 복수의 집단명을 나열함으로써 표시된다. 예를 물부수옥은 『일본서기』에 물부궁삭수옥대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수옥은 물부씨의 성원으로 대련이라는 지위를 아버지로부터 계승하였고, 궁삭씨의 성원으로서 본거지 노비 등을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존재는 물부궁삭이라고 나타낼 수밖에 없다. 후세에 궁삭도경은 이 수옥을 자신의 정치적인 지위를 규정하는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신·련·직 등의 카바네는 원래 왕권과 씨의 연결하는 관념적인 혈연 질서의 표현이다. 그러나 이는 오로지 족장위에 관련된 정치적인 혈연 논리이며, 부모자식 관계의 연쇄를 내포하는 양속성의 혈연원리와는 질이 달랐다. 부성 계승의 원칙 수립과 더불어, 이 양자는 통합되어, 개인명의 표시방식으로서 이른바 성(집단명 + 카바네)가 성립된다. 이러한 의미의 성씨의 제도적인 성립은 7세기 후반이다. 이후 복수의 집단명에 의한 통칭으로 이루어진 개인명이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은 상실되었다. 다만 이 성씨는 아직 극히 정치적인 성격이 농후한 것이었으며, 부계 출자집단의 사회적인 표시명으로서, 즉 후세적인 의미에서 씨명이 성립되는 것은 9세기 이후이다.

‘우지’ 집단의 편성을 가장 근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자 이데올로기는, 조명의 관념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⁷⁶⁾ 조명은 『속일본기』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선명(宣命)에,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혹은 아버지가 공손하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겨서 가르친 일이 틀림이 없도록 가문을 황폐하게 하지

76) 熊谷公男, 앞의 논문, 254쪽.



않도록, 천황을 섬기라”고 한 것처럼, 부계 출계 관념이며, 우지의 구성원인 자가, 부조(父祖)로부터 전래된 그 우지의 고유한 직장(예를 들어 大伴氏라면 토모(伴)를 통할하고 군사, 中臣氏라면 제사)을 계승하면서, 부·조와 마찬가지로 왕권에 봉사하여 우지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직장을 자손까지 계승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부계의 계보관계에 의하여 지탱되는 규범의식이다.

각각의 우지에 고유한 조상의 이름이라는 규범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우지의 구성원이 우지집단에 대한 귀속의식의 원천인 동시에, 직장을 매개로 하여 왕권에 대하여 봉사하는 의무를 가진 것이다. 미조구찌가 지적한 것처럼, 고대의 씨족 계보 씨족 전승은 선조 대대로 왕권에 대한 봉사의 내력을 기술하는 데 본질이 있지만, 이러한 봉사 형식의 씨족 계보와 전승은 조명(祖名)의 규범의식의 소산이다. 즉 조명은 왕권에 의한 우지의 편성을 지탱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일 뿐만 아니라, 우지 집단의 내부 구성을 규정하는 부계 출계의 이데올로기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보아, 조명이라는 관념이야말로 왕권의 정치조직이자 동시에 친족조직이기도 한 우지의 본질적인 성격을 전체로서, 또한 근저에서 규정하는 출계 관념이었던 것으로 본다.⁷⁷⁾

조명이 직장의 부계 계승이라는 관념을 중핵으로 한 출자 이데올로기였다는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우지는 직장의 계승을 문화적인 매개로 한 부계

77) 熊谷公男, 앞의 논문, 255쪽.

출자에 의해 집단 편성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동일한 부계 출자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종족 출자 이데올로기가 부자동기(父子同氣)라는 자연적 생득적인 관념을 매개로 하고 있는데 대하여, 직장은 후차적으로 왕권에서 부여된 정치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조명은 정치적인 성격을 농후하게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 정치적 지위의 여하에 의하여 우지 내부의 지위가 좌우되기도 하였다. 우지의 수장의 지위 계승이, 왕권의 직장 계승(율령제 하의 씨상의 경우는 위계의 고하)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 직장의 계승을 매개로 하여, 방계친이 수장의 지위를 계승하거나, 또 드물게 친족이나 비친족이 우지의 구성원에 추가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에서 우지의 집단편성은 종족 등에는 없는 정치성 계급적인 구성이라는 아주 큰 가소성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이는 이데올로기적인 출자와 사실상의 출자 사이에 적지 않은 괴리가 생기는 원인이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우지의 성립을 생각할 때, 먼저 직장의 계승에 의하여 보장되는 부계의 출자 이데올로기인 조명 관념의 성립이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고대 일본의 우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료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통일된 인식에 도달하지 못했다. 인식의 불일치는 우지의 친족적인 성격을 파악할 때, 현실적인 생활 집단의 차원에서 볼 것인지 혹은 정치체제의 차원에서 볼 것인지 그 기본적인 입장이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찬성씨록』과 같이 정치적인 영역에서 주장된 씨성의 개념과 혈연적인 연결을 중심으로 한 현실적인 씨족의 개념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길전련의 경우도 이러한 고대 일본의 이중적인 씨성 관념에 비추어 보면 납득할 수 있다. 길전련이 대춘일조신과 관념적인 동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신찬성씨록』이 편찬되는 시기에 대춘일조신과 동일한 직장(職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동일한 직장을 가진 혈연집단들이 동일한 조상을 공유한다는 의식 하에 의제적 씨성(우지) 집단을 형성하는 편이 더욱 유리했던 것이다. 도래계 씨족의 대표격인 서문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원래 왕인계와 왕진이계로 나뉘어 있었는데 한 황제의 후손을 자처하면서 하나의 씨성을 이루었다.⁷⁸⁾

78) 서보경, 「『同祖』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仁·王辰爾系 씨족」, 『한일관계사연구』53, 2016.

이를 통해서 보면, 고대 일본의 씨성에서 조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쿠마가이의 견해도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명이 씨성에서 절대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씨성’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내거나, 잘 알려진 인물을 조상으로 내세우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서문씨라는 씨성은 하내(河內) 지역에 거주하는 도래계 문한(文翰) 관련 집단의 범칭이라고 해야 할 정도이다. 나아가서 그 소속 집단 중 왕인(王仁)을 시조로 하는 집단 역시 그런 방식으로 결집된 결과물일 수 있다. 왜냐하면 4세기 후반 내지 5세기 전반의 인물로 보이는 왕인조차도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712년에 편찬된 『고사기』에 등장하는 화이(和邇, 와니)와 720년에 성립된 『일본서기』의 왕인(王仁, 와니)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고사기』의 화이는 『논어』와 『천자문』 11권을 가져왔다고 하였지만, 『일본서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고사기』에서는 현자라고 했지만, 『일본서기』에서는 박사라고 하였고, 왕인을 박사라고 한 것은 『일본서기』뿐이고, 『속일본기』나 『신찬성씨록』에도 박사라고 하지 않았다. 화이와 왕인은 일본열도에 건너온 시기가 다소 다르고 애매하다. 『고사기』에서는 화이가 『천자문』을 가져왔다고 하였지만, 현재 전하는 주홍사의 『천자문』은 6세기 초반에 만들어졌다. 즉 화이가 『천자문』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 허구이거나, 그가 일본열도에 건너온 시기에 대한 내용이 허구일 수밖에 없다. 또한 박사라는 호칭 자체도, 후한이 멸망한 이후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대학 제도가 소멸되자, 함께 사라졌다. 이 대학 제도와 박사 제도를 부활시킨 것이 남조 양의 무제였다. 즉 4세기 이후 6세기 전반까지 박사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왕인이 박사였다는 전승은 6세기 이후에 성립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허구적인 ‘조명(祖名)’을 만들어내면서까지 특정 우지가 주장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또한 왕인의 전승 속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 왕인은 이름이나 활동 시기 등은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활동 자체는 오로지 문한(文翰)과 관련되어 있다. 『논어』와 『천자문』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경전에 통달하였다는 것도 그렇고, 태자의 스승이 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렇다. 왕인의 활동이야말로, 서문씨(西文氏)의 직장과 직접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특정한 개인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일반적으로 서문씨가 도달할 수

있는 극위(極位)를 넘어서자, 그들은 다시 새로운 우지를 만들어 서문씨로부터 분리되는 길을 걷는다. 결국 우지를 생성하는 일이나 특정 우지에 결집하는 것은 직장(職掌)을 통하여 정치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고대 일본의 ‘우지(氏)’와 ‘카바네(姓)’가 씨(氏)와 성(姓)이라는 한자가 원래 뜻했던 의미와 다르다고 한다면, 『신찬성씨록』의 성씨(姓氏)의 개념도, 혈연적인 계보로 연결되어 있는 씨족(clan)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고대 일본의 우지(氏)가 인류학적인 개념의 부계제·모계제·쌍계제 등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우지’가 직능의 계승에 있어서 부계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고대 일본의 ‘우지’의 성격을 단정하기보다는, ‘우지’가 여러 레벨에서 서로 다른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두고자 하였다.

『신찬성씨록』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한반도계 도래씨족들이 도래계라는 원래의 출신 배경(諸蕃)에서 벗어나, 천황가의 후예(皇別) 및 토착 호족(臣別) 출신임을 주장하는 경우도 확인된다. 8세기 이후부터 전반적으로 ‘카바네’의 상향 조정 및 조신(朝臣) 편중 현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도래계 씨족도 황별·신별 출신임을 주장하면서 높은 ‘카바네’를 받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원래 도래계 씨족이 아닌데, 도래계로 가탁한 경우도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도래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토착 ‘우지’임을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그 수는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카바네’와 직장(職掌)을 근거로 『신찬성씨록』의 여러 씨족 중 황별·신별 및 제번 중 한(漢)으로 분류되어 있는 씨족 중에서 한반도 계열의 씨족을 동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원자료

『日本書紀』, 『續日本紀』, 『日本後紀』, 『新撰姓氏錄』, 『海遊錄』, 『先代舊事本紀』, 『類聚三代格』

2. 단행본

坂靖·青柳泰介, 『葛城の王都』, 新泉社, 2011.
官文娜, 『日中親族構造の比較研究』, 思文閣出版, 2005.
阿部武彦, 『氏姓』, 至文堂, 1960.
中村友一, 『日本古代の氏姓制』, 八木書店, 2009.
洞富雄, 『日本母權制社會の成立』, 淡路書院, 1957.
義江明子, 『日本古代の氏の構造』, 吉川弘文館, 1986.
官文娜, 『日中親族構造の比較研究』, 思文閣出版, 2005.
溝口睦子, 『古代氏族の系譜』, 吉川弘文館, 1987.

3. 논문

서보경, 『『신찬성씨록』의 吉田連氏 出自와 氏姓 標題에 관하여』, 『한일관계사연구』58, 2017.
서보경, 『『新撰姓氏錄』에 기재된 鎮守將軍 후에 씨족의 出自改變』, 『일본연구』57, 2013,
서보경, 「'同祖'계보의 변화를 통해 본 王仁·王辰爾系 씨족」, 『한일관계사연구』53, 2016.
吉田孝, 「古代社會におけるうち」, 『日本の社會史』6, 1988.
노명호, 「고려시대 향촌사회의 친족관계망과 가족」, 『한국사론』19, 1988.
熊谷公男, 「ウジはどのようにして成立したか」, 『新視點日本の歴史2- 古代篇』, 新人物往來社, 1993.
津田左右吉, 「上代の家族生活」, 『古事記及び日本書紀の新研究』, 洛陽堂, 1919.
津田左右吉, 「上代の部の研究」, 『日本上代史の研究』, 1947.
津田左右吉, 「大化改新の研究」, 『日本上代史の研究』, 1947,
有賀喜左衛門, 「日本上代の家と村落」, 『東亞社會研究』1권, 1943.

- 溝口睦子, 「律令國家における嫡庶子制について」, 『日本史研究』 105, 1969.
- 和歌森太郎, 『國史における協同體の研究』 上卷, 1947, 帝國書院.
- 藤間生大, 『古代國家論』, 1946, 伊藤書店.
- 石母田正, 「古代家族の形成過程」, 『社會經濟史學』 12-6, 1942.
- 岸俊男, 『古代籍帳の研究』, 塙書房, 1973.
- 伊東すみ子, 「書評鷺見等曜著, 『前近代日本家族の構造-高群逸枝批判』」, 『法制史研究』 34, 1984.
- 鷺見等曜, 「平安時代の婚姻」, 『岐阜經濟大學論集』 8-4, 1974.
- 吉田孝, 「律令制と村落」, 『岩波講座日本歴史』 1976.
- 吉田孝, 「ウヂとイエ」, 『新編日本史研究入門』, 東京大學出版會, 1982.
- 鬼頭清明, 「歴史における家族と共同體」, 『現代を生きる歴史學』 2, 1987.
- 阿部武彦, 「氏族制度の崩壊と氏族の物語」, 『日本古代の氏族と祭祀』,